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공법의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¹

제1.3조 의무의 범위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1.4조 시청각 공동제작

¹ 이 협정 적용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어느 협정이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사실이 이 항의 의미 내에 불일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합의한다.

1. 양 당사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 간 문화 및 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부속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에 합의한다.

제2절 일반적 정의

제1.5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10장(투자)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KCS)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GATT 1994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세계무역기구 의무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또는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8장(제도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다음에 의하여 취해진 당사국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지역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국민이란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 또는 그 승계 법률의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자국 법에 따른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부속서2-가(관세양허표)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각 관세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의 영역과 뉴질랜드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말하나 토켈라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 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모든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 2.3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절 관세 철폐

제 2.4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을 대체하고, 제18장(제도

규정)과 양 당사국 각각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 발효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6.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이를 검토 중인 당사국은 새로운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행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자국의 의도를 공표한다.²

제3절 특별 제도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경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행사를 포함하여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²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인쇄된 형식으로 공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거래·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 임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수입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 관세 협약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는 담보를 수반할 것
-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출국 이전,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국내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허가된 출국지점 외의 다른 통관 허가된 출국지점을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당사국에게 제시하면 그 일시 반입된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담배 제품을 예외로 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은 당사국이 제2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5.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공표한다. 그리고
 - 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2.9조 비관세조치

1. 제17장(투명성)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제2.8조제1항에서 허용되는 비관세 조치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제2.15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한 비관세조치를 확인할 때 그 조치를 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그러한 조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후에만, 그 비관세조치를 검토한다.

3. 상품무역위원회는 제2항에서 언급된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교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은 검토 또는 조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제출된다.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³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웹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용된 기준에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허가의 부여와 거부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답변한다. 수입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기준의 공표를 고려한다.

³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6. 당사국이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관련하여 수입허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한다.

제2.11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부과금, 형식 및 요건이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2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도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5절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제2.13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각 당사국은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1994년도 GATT 제13조 및 그 주해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 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며,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3.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기업이나 인도 그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에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4.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국경에서의 선착순 운영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10일 이내에 관세율할당이 소진되었음을 공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적시하고, 그 기관 또는 기관들의 어떠한 변경이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6. 각 당사국은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를 개시한다. 합의 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7. 부록 2-가-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그 부록에 설정된 전체 쿼터 물량을 첫 해 동안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연도의 첫 번째 영업일에 시작하여 쿼터 신청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8. 어느 한쪽 당사국이 국경에서의 선착순 운영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당국이 제4항에 따라 관세율할당이 소진되었음을 알리기 전에 운송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쿼터 외 물량 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상품은 해당 쿼터 연도 동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 중인 제품은 차기 연도의 관세율할당 물량으로 산입된다.

제6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14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그 농산물의 어떠한 연도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더 높은 수입관세 형태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 2-나에 규정된 관세율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또는

다.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4. 당사국은 이 절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 조치를 적용한 연도의 말까지만 유지한다.

5. 당사국은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조치를 적용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당사국과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전에 이용 가능한 잔여 수입 물량을 다른 쪽 당사국 및 무역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6.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차기 연도에서의 제1항 규정의 발동 목적상 차기 연도 동안 해당 상품의 수입 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다.

7. 이 조의 이행과 운영은 제2.15조에 따라 설립된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절 제도 규정

제2.15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또는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제2항에서 언급된 장의 이행을 검토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것, 그리고

라.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서 고려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제2.16조 접촉선 및 협의

1.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그 조치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정보 및 협의에 대한 그러한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제1절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 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9년 1월 1일 발효 중인 한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a) 단계별 양허유형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b) 단계별 양허유형 “3”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c) 단계별 양허유형 “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d) 단계별 양허유형 “6”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e) 단계별 양허유형 “7”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f) 단계별 양허유형 “1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g) 단계별 양허유형 “12”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h) 단계별 양허유형 “13”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i) 단계별 양허유형 “1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j) 단계별 양허유형 “17”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k) 단계별 양허유형 “18”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l) 단계별 양허유형 “2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m) 단계별 양허유형 “B”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50퍼센트를 인하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관세율이 유지된다.
- (n) 단계별 양허유형 “S-1”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2)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단계별 양허유형 “S-2”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 2)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더. 단계별 양허유형 “X” 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한국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 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1. 1988년도 뉴질랜드 관세법과의 관계: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은 일반적으로 1988년도 뉴질랜드 관세법(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9나절 제2항에 규정된 상응하는 품목으로 표현되며, 이 부속서 제2절의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에 대한 해석은 관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이 관세법 제9나절 제2항에 규정된 상응하는 품목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은 관세법상의 상응하는 품목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9년 1월 1일 발효중인 뉴질랜드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뉴질랜드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a)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b)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c)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d)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품목에 대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뉴질랜드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뉴질랜드달러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뉴질랜드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뉴질랜드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상의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전지분유)
 밀크와 크림(연유)(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않은 것)

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500
2	1,545
3	1,591
4	1,639
5	1,688
6	1,739
7	1,791
8	1,845
9	1,900
10	1,957

이행 10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0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너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및 0402999000

버터 및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

3. 가. 특정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800
2	824
3	849
4	874
5	900
6	927
7	955
8	984
9	1,013
10	무제한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바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0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5100000 및 0405900000.

치즈(신선, 갈았거나 분상인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종류)

4. 가. 특정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7,000
2	7,210
3	7,426
4	7,649
5	7,879
6	8,115
7	5,669
8	5,839
9	6,014
10	6,194
11	6,380
12	2,112
13	2,175
14	2,241
15	무제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 쿼터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 1) HSK 세번 0406901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마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7
- 2) HSK 세번 040610101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사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2, 그리고
- 3) HSK 세번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자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5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 이행 1년차부터 이행 6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 2) 이행 7년차부터 이행 11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그리고
- 3) 이행 12년차부터 이행 14년차까지는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홍합

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600
2	1,701
3	1,808
4	1,922
5	2,043
6	2,172
7	2,308
8	2,454
9	2,608
10	2,773
11	2,947
12	3,133
13	3,331
14	3,540
15	3,763
16	3,999

이행 16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쿼터 연도의 첫째 날부터 홍합에 대한 쿼터 내 물량의 50퍼센트는 선착순 방식에 따라 반입된다. 한국이 선착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은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제품의 소진된 쿼터 물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번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605909040

조제분유 및 기타

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230
2	235
3	239
4	244
5	249
6	254
7	259
8	264
9	269
10	275
11	280
12	286
13	3
14	3
15	무제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쿼터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 1) HSK 세번 190110101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아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3, 그리고
- 2) HSK 세번 190110109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자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5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는 1901101010 및 1901101090, 그리고
- 2) 이행 13년차부터 이행 14년차까지는 1901101090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 양허표

1. 이 부속서는 제2.14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7,000	37,740	38,495	39,265	40,050	40,85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	40	40	40	40	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41,668	42,501	43,351	44,218	45,103	46,00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0	30	30	30	24	24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 (메트릭톤)	46,925	47,863	48,821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	24	24	0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위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양허표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101101000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0	0	
0101109000	기타	8	10	
0101901010	경주말	8	5	
0101901090	기타	8	10	
0101909000	기타	8	10	
0102101000	젖소	89.1	5	
0102102000	육우	89.1	5	
0102109000	기타	89.1	0	
0102901000	젖소	40	E	
0102902000	육우	40	E	
0102909000	기타	0	0	
0103100000	번식용	18	0	
010391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5	
010392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3	
0104101000	번식용	0	0	
0104109000	기타	8	5	
0104201000	젖산양	8	7	
0104209000	기타	8	0	
0105111000	번식용	9	15	
0105119000	기타	9	10	
0105120000	칠면조	9	0	
0105191010	번식용	0	0	
0105191090	기타	18	0	
0105199000	기타	9	0	
0105941000	번식용	9	0	
0105949000	기타	9	3	
0105991010	번식용	0	0	
0105991090	기타	18	3	
0105992000	칠면조	9	3	
0105999000	기타	9	3	
0106110000	영장류	8	0	
01061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106191000	개	8	5	
0106192010	번식용	0	0	
0106192090	기타	8	0	
0106193000	사슴	8	5	
0106194000	곰	8	3	
0106195010	번식용	0	0	
0106195090	기타	8	0	
0106196010	번식용	0	0	
0106196090	기타	8	3	
0106199000	기타	8	7	
0106201000	뱀	8	3	
0106202000	자라	8	7	
0106203000	거북	8	0	
0106209000	기타	8	5	
0106310000	맹금류	8	7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7	
0106390000	기타	8	0	
0106901000	양서류	8	0	
0106902010	꿀벌	8	0	
0106902090	기타	8	0	
0106903010	갯지렁이	8	0	
0106903020	실지렁이	8	0	
0106903090	기타	8	0	
0106909000	기타	8	0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15	부속서 2-나 참조
0201201000	갈비	40	15	부속서 2-나 참조
0201209000	기타	40	15	부속서 2-나 참조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15	부속서 2-나 참조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15	부속서 2-나 참조
0202201000	갈비	40	15	부속서 2-나 참조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202209000	기타	40	15	부속서 2-나 참조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15	부속서 2-나 참조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3191000	삼겹살	22.5	E	
0203199000	기타	22.5	E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E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E	
0203291000	삼겹살	25	E	
0203299000	기타	25	E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10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0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10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10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0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10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2.5	10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10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7	15	
0205002000	냉동한 것	27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5	
0206210000	혀	18	15	
0206220000	간(肝)	18	15	
0206291000	꼬리	18	15	
0206292000	족	18	15	
0206299000	기타	18	15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8	
0206410000	간(肝)	18	18	
0206491000	족	18	18	
0206499000	기타	18	18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8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8	
020711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18	E	
0207119000	기타	18	18	
020712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20	E	
0207129000	기타	20	E	
0207131010	다리	18	E	
0207131020	가슴	18	E	
0207131030	날개	18	E	
0207131090	기타	18	E	
0207132010	간	22.5	E	
0207132090	기타	27	E	
0207141010	다리	20	E	
0207141020	가슴	20	E	
0207141030	날개	20	E	
0207141090	기타	20	E	
0207142010	간	22.5	18	
0207142090	기타	27	E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0	
0207261000	절단육	18	10	
0207262010	간	22.5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207262090	기타	27	15	
0207271000	절단육	18	15	
0207272010	간	22.5	10	
0207272090	기타	27	15	
020732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5	
020733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18	
020734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15	
0207351000	절단육	18	15	
0207352010	간	22.5	15	
0207352090	기타	27	15	
0207361000	절단육	18	18	
0207362010	간	22.5	15	
0207362090	기타	27	15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15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7	
020840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10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0	
0208901000	사슴의 것	27	1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10	
0208909090	기타	18	15	
0209001000	돼지 비계	3	0	
0209002000	가금의 비계	3	0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7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18	
0210190000	기타	25	18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27	15	
0210209000	기타	27	15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2109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10	
0210991010	소의 것	22.5	15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15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22.5	15	
0210991090	기타	22.5	18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22.5	15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22.5	15	
0210999090	기타	22.5	15	
0301101000	비단잉어	10	5	
0301102000	열대어	10	7	
0301109000	기타	10	3	
03019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10	0	
0301912000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0	
0301921000	실뱀장어(양식용에 한정한다)	0	0	
0301929000	기타	27% 또는 1,879 원/kg, 양자중고액(율)	10	
0301930000	잉어	10	3	
030194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3	
0301992000	방어	10	0	
0301994010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4090	기타	34% 또는 2,292 원/kg, 양자중고액(율)	7	
0301995000	붕장어	10	5	
0301996000	갯장어	10	0	
0301997000	먹장어	10	0	
0301998000	넙치류	10	3	
0301999010	능성어	10	5	
0301999020	복어	10	0	
0301999030	틸라피아	10	3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5	
0301999051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9059	기타	34	10	
0301999060	숭어	10	3	
0301999070	미꾸라지	10	0	
0301999080	메기	10	3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종 · 아그라무스(Agrammus)종]	10	3	
0301999092	붕어	10	3	
0301999093	연어	10	0	
0301999094	초어	10	0	
0301999095	민어	34	7	
0301999099	기타	10	7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2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길래(<i>Oncorhynchus gilae</i>)			
0302112000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와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20	0	
030212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웅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웅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hawytscha</i>) · 웅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웅코링쿠스 마소 (<i>Oncorhynchus masou</i>)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20	0	
0302190000	기타	20	3	
0302210000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i>Reinhardtius hippoglossoides</i>) · 히포글러 서스 히포글러서스(<i>Hippoglossus hippoglossus</i>)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i>Hippoglossus</i>	20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stenolepis)]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10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20	10	
0302290000	기타	20	3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20	7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7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20	7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7	
03023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20	7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20	7	
0302390000	기타	20	7	
030240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5	
030250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가두스 오각(Gadus ogac),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Gadus macrocephalus)](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2610000	정 어리[사르디나 필 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 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 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20	7	
03026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i>Melanogrammus aeglefinus</i>)]	20	0	
03026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20	5	
03026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20	3	
030265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5	
0302660000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20	7	
03026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0	7	
030268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 ostichus</i>)종]	20	7	
0302691000	명태	20	10	
0302692000	방어	20	7	
0302693000	갈치	20	7	
0302694000	돔	20	7	
0302695000	붕장어	20	7	
0302696000	갯장어	20	0	
0302697000	전갱이	20	10	
0302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2699010	삼치	20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2699020	복어	20	0	
0302699030	병어	20	5	
0302699040	아귀	20	7	
0302699090	기타	20	7	
0302701000	간(肝)	20	3	
0302702000	어란(魚卵)	20	0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10	0	
0303190000	기타	10	5	
030321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10	
030322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10	
0303290000	기타	10	10	
0303310000	넵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 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10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stenolepis)]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12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10	10	
0303390000	기타	10	15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10	12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15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10	15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15	
03034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15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3	
0303490000	기타	10	15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5	
03035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15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12	
03036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 ostichus)종]	10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 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 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10	7	
0303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 us aeglefinus</i>)]	10	0	
0303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10	12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킵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킵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10	15	
030375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10	
0303760000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10	7	
0303770000	농어[디센트라투스 라브락스(<i>Dicentrarchus labrax</i>), 디센트라투스 푼크타투스(<i>Dicentrarchus punctatus</i>)]	10	0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 s</i>)종 · 유르피키스 (<i>Urophycis</i>)종]	10	10	
0303791000	명태	30	E	
0303792000	은대구	10	12	
0303793000	갈치	10	12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쿠스(<i>Branchiostegus Japonicus</i>)]	10	12	
0303794090	기타	10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3795000	붕장어	10	10	
0303796000	조기	10	15	
0303797000	전갱이	10	10	
03037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31	12	
0303799010	삼치	10	10	
0303799020	복어	10	7	
0303799030	보리멸	10	3	
0303799040	홍살치	10	0	
0303799050	달고기	10	3	
0303799060	임연수어	10	0	
030379907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15	
0303799080	새꼬리민태	10	5	
0303799091	아귀	10	10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10	
0303799093	홍어	10	10	
0303799094	밀크피쉬	10	10	
0303799095	민어	53	15	
0303799096	가오리	10	10	
0303799097	까나리	10	10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10	15	
0303799099	기타	10	10	
0303801000	간(肝)	10	3	
0303802010	명란	10	10	
0303802090	기타	10	5	
0304111000	피레트	20	7	
0304112000	연육	20	7	
0304119000	기타	20	7	
0304121000	피레트	20	5	
0304122000	연육	20	5	
0304129000	기타	20	5	
0304191010	피레트	20	5	
0304191020	연육	20	5	
0304191090	기타	20	5	
0304192010	피레트	20	7	
0304192020	연육	20	7	
0304192090	기타	20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4193010	피레트	20	7	
0304193020	연육	20	7	
0304193090	기타	20	7	
0304199010	피레트	20	7	
0304199020	연육	20	5	
0304199090	기타	20	5	
03042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7	
03042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 ostichus)종]	10	15	
0304291000	명태의 것	10	12	
0304292000	붕장어의 것	10	7	
0304293000	대구어의 것	10	15	
0304294000	가자미의 것	10	12	
0304295000	참다랑어의 것	10	12	
0304296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 ostichus)종은 제외 한다]의 것	10	15	
0304297000	틸라피아의 것	10	5	
0304298000	쥐치의 것	10	7	
0304299000	기타	10	3	
0304911000	냉동 연육	10	7	
0304919000	기타	10	7	
0304921000	냉동 연육	10	5	
0304929000	기타	10	5	
0304991010	냉동 연육	10	12	
0304991090	기타	10	12	
0304999010	냉동 연육	10	7	
0304999090	기타	10	5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0	
0305201000	간(肝)	20	3	
0305202000	건조 어란(魚卵)	20	3	
0305203000	훈제 어란(魚卵)	20	3	
0305204010	명태의 것	20	10	
0305204020	조기의 것	20	3	
0305204030	청어의 것	20	0	
0305204090	기타	20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5301000	건조한 것	20	5	
030530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7	
0305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 (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 (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 [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 [후코 후코(Hucho hucho)]	20	0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0	
0305491000	멸치	20	3	
0305492000	명태	20	7	
0305499000	기타	20	7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Gadus macrocephalus)]	20	7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7	
0305592000	멸치	20	10	
0305593000	명태(복어)	20	12	
0305594000	조기(굴비)	20	10	
0305595000	복어	20	3	
0305596000	갯장어	2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5597000	까나리	20	3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0	
0305599000	기타	20	3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0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i>Gadus macrocephalus</i>)]	20	5	
0305631000	멸치젓	20	10	
0305639000	기타	20	7	
0305691000	연어	20	5	
0305692000	송어	20	0	
0305693000	갈치	20	7	
0305694000	정어리	20	5	
0305695000	고등어	20	7	
0305696000	조기	20	7	
0305697000	전갱이	20	3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5699000	기타	20	5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i>Palinurus</i>)종 · 파누리루스 (<i>panulirus</i>)종 · 자수스(<i>Jasus</i>)종]	20	3	
03061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i>Homarus</i>)종]	20	5	
0306131000	새우살	20	15	
0306139000	기타	20	15	
0306141000	게살	20	12	
0306142000	왕게	20	12	
0306143000	꽃게	14	12	
0306149000	기타	14	12	
0306190000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2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62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20	3	
03062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0	7	
030623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7	
0306232000	건조한 것	20	7	
030623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42% 또는 287 원/kg, 양자중고액(을)	5	
0306241010	꽃게	20	7	
0306241020	대게	20	7	
0306241090	기타	20	7	
0306242000	건조한 것	20	7	
03062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7	
030629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7	
0306292000	건조한 것	20	10	
0306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7	
0307101011	종패용	0	0	
0307101019	기타	5	0	
0307101090	기타	20	0	
0307102000	냉동한 것	20	10	
0307103000	건조한 것	20	7	
03071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3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10	
0307291000	냉동한 것	20	15	
0307292000	건조한 것	20	5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20	5	
0307391000	냉동한 것	20	3	
0307392000	건조한 것	20	3	
0307399000	기타	20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7411000	갑오징어	10	5	
0307412000	오징어	10	5	
0307491010	갑오징어	10	12	
0307491020	오징어	22	E	
03074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0	5	
0307493000	건조한 것	10	5	
0307511000	낙지	20	7	
0307512000	주꾸미	20	7	
0307519000	기타	20	10	
0307591010	문어	20	12	
0307591020	낙지	20	12	
0307591030	주꾸미	20	12	
0307591090	기타	20	3	
03075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599000	기타	20	5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0	
0307911110	치패	20	3	
0307911190	기타	20	3	
0307911200	전복	20	E	
0307911300	소라	20	10	
0307911410	종패용	0	0	
0307911490	기타	20	7	
0307911510	종패용	0	0	
0307911590	기타	20	10	
0307911600	새조개	20	3	
0307911700	개아지살	20	7	
0307911800	바지락	20	3	
0307911910	재첩	20	7	
0307911990	기타	20	7	
0307919010	성게	20	7	
0307919020	해삼	20	0	
0307919031	종패용	0	0	
0307919039	기타	20	10	
0307919040	해파리	20	7	
0307919090	기타	20	5	
0307991110	새조개	20	7	
0307991120	개량조개	20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307991130	바지락	20	10	
0307991140	개아지살	20	10	
0307991150	피조개	20	10	
0307991160	소라(냉동)	20	10	
0307991190	기타	20	5	
0307991910	해삼	20	3	
0307991920	우렁챙이	20	10	
0307991990	기타	20	5	
0307992110	개량조개	20	5	
0307992120	개아지살	20	7	
0307992130	바지락	20	7	
0307992190	기타	20	5	
0307992920	해삼	20	3	
0307992930	우렁챙이	20	7	
0307992990	기타	20	5	
0307993110	개량조개	20	5	
0307993120	바지락	20	7	
0307993130	소라(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7	
0307993190	기타	20	7	
0307993910	성게	20	5	
0307993920	해삼	20	5	
0307993930	해파리	20	3	
0307993990	기타	20	5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36	20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36	20	
0401301000	냉동크림	36	13	
0401309000	기타	36	17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76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101090	기타	176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109000	기타	176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402211000	전지분유	176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219000	기타	176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290000	기타	176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89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919000	기타	89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89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2999000	기타	89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36	15	
0403102000	냉동한 것	36	15	
0403109000	기타	36	15	
0403901000	버터밀크	89	부록 2-가-1 의 제 2 항 참조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36	10	
0403903000	케피어(kephir)	36	10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10	
0404101011	사료용	49.5	10	
0404101019	기타	49.5	15	
0404101091	사료용	49.5	10	
0404101099	기타	49.5	15	
0404102111	사료용	49.5	10	
0404102119	기타	49.5	15	
0404102121	사료용	49.5	10	
0404102129	기타	49.5	15	
0404102131	사료용	49.5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404102139	기타	49.5	15	
0404102191	사료용	49.5	10	
0404102199	기타	49.5	15	
0404102910	사료용	49.5	10	
0404102990	기타	49.5	10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36	10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36	10	
0405100000	버터	89	부록 2-가-1 의 제 3 항 참조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8	3	
0405900000	기타	89	부록 2-가-1 의 제 3 항 참조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101020	크림 치즈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101090	기타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102000	커드(curd)	36	15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36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6909000	기타	36	부록 2-가-1 의 제 4 항 참조	
0407001010	종란	27	18	
0407001090	기타	27	18	
0407009000	기타	27	15	
0408110000	건조한 것	27	15	
0408190000	기타	27	15	
0408910000	건조한 것	27	15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41.6	15	
0408999000	기타	27	15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 원/kg, 양자중고액(율)	E	
0410001000	거북알	8	0	
0410002000	칼새둥지	8	0	
0410003000	로열젤리	8	18	
0410009000	기타	8	0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0	
0502902000	염소털	3	0	
0502909000	기타	3	0	
0504001010	소의 것	27	15	
0504001090	기타	27	15	
0504002000	방광	27	10	
0504003000	위	27	15	
0505100000	송털, 충전재용 깃털	3	5	
0505901000	깃털 가루	5	7	
0505909000	기타	5	7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0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	0	
0506901020	소의 것	9	7	
0506901090	기타	3	0	
0506902000	뿔가루	25.6	10	
0506909000	기타	3	0	
0507101000	상아	8	0	
0507102000	서각	8	0	
0507109000	기타	8	0	
0507901110	전지(全枝)	20	15/E 1)	
0507901190	기타	20	15	
0507901200	녹각	20	E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8	5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3	
0507902030	천산갑(穿山甲)	8	5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	5	
0507902090	기타	8	3	
0508001000	산호	8	0	
0508002010	진주패각	8	0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0	
0508002050	트로커스(Trochus) 패각	8	0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e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종]	8	0	
0508002090	기타	8	0	
0508009000	기타	8	0	
0510001000	용연향(ambergris)	8	3	
0510002000	해리향(castoreum)	8	3	
0510003000	사향	8	15	
0510004000	우황	8	0	
0510005000	오령지	8	0	
0510009010	채장	8	3	
0510009020	담즙	8	3	
0510009030	합개(蛤蚧)	8	0	
0510009090	기타	8	0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알	8	0	
0511911090	기타	8	0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5	0	
0511919000	기타	8	5	
0511991000	동물의 피	8	7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511992090	기타	0	0	
0511993010	소의 것	18	15	
0511993020	돼지의 것	18	15	
0511993090	기타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15	
0511995011	정돈한 것	3	0	
0511995019	기타	3	0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3	0	
0511996000	동물성의 천연해면	8	0	
0511999010	잠종(蠶種)	18	0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 3 류 동물의 사체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8	10	
0511999090	기타	8	0	
0601101000	튤립의 것	8	0	
0601102000	백합의 것	4	0	
0601103000	달리아의 것	8	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8	0	
0601108000	수선화의 것	8	0	
0601109000	기타	8	0	
0601201000	튤립의 것	8	0	
0601202000	백합의 것	8	0	
0601203000	달리아의 것	8	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8	0	
0601209010	수선화의 것	8	0	
0601209090	기타	8	0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8	0	
0602109000	기타	8	10	
0602201000	사과나무	18	5	
0602202000	배나무	18	5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5	
0602204000	포도나무	8	5	
0602205000	감나무	8	5	
0602206000	귤나무	18	5	
0602207010	밤나무	8	10	
0602207020	호도나무	8	10	
0602207030	잣나무	8	10	
0602209000	기타	8	10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10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602901010	난초	8	0	
0602901020	카네이션	8	3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3	
0602901040	안개초	8	3	
0602901050	국화	8	10	
0602901060	선인장류	8	3	
0602901090	기타	8	0	
0602902011	분재용	8	10	
0602902019	기타	8	10	
0602902020	낙엽송	8	10	
0602902030	삼나무	8	10	
0602902040	편백	8	10	
0602902050	리기테다	8	10	
0602902061	분재용	8	10	
0602902069	기타	8	10	
0602902071	분재용	8	10	
0602902079	기타	8	10	
0602902081	분재용	8	10	
0602902089	기타	8	10	
0602902091	분재용	8	10	
0602902099	기타	8	10	
0602909010	목단	8	10	
0602909020	동백	8	10	
0602909030	뽕나무	18	10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8	3	
0602909090	기타	8	10	
0603110000	장미	25	18	
0603120000	카네이션	25	18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5	10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25	10	
0603139000	기타	25	15	
0603140000	국화	25	15	
0603191000	튤립	25	15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15	
0603193000	백합	25	15	
0603194000	안개초	25	15	
0603199000	기타	25	15	
0603900000	기타	25	18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604100000	이끼와 지의(地衣)	8	7	
0604911010	은행잎	8	10	
0604911090	기타	8	10	
0604919000	기타	8	5	
0604990000	기타	8	5	
0701100000	종패용	304	10	
0701900000	기타	304	E/S-1 2)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중고액(율)	E	
0703102000	쪽파	27	E	
0703201000	껍질을 깐 것	360% 또는 1,800 원/kg, 양자중고액(율)	E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 원/kg, 양자중고액(율)	E	
0703901000	리크(leek)	27	7	
0703909000	기타	27	7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7	10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7	
0704901000	양배추	27	7	
0704902000	배추	27	5	
0704909000	기타	27	5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45	18	
0705190000	기타	45	18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3	
0705290000	기타	8	3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 원/kg, 양자중고액(율)	E	
0706102000	순무	27	10	
0706901000	무	30	15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10	
0706903000	더덕	27	E	
0706904000	도라지	27	E	
0706909000	기타	27	15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15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7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7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27	5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7	3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5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7	5	
0709517000	양송이버섯	30	15	
0709519000	기타	30	15	
0709591000	송이버섯	30	15	
0709592000	표고버섯	42% 또는 1,625 원/kg, 양자중고액(율)	E	
0709593000	영지버섯	30	18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18	
0709594090	기타	30	18	
0709595000	팽이버섯	30	18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709596000	송로(松露)	27	15	
0709599000	기타	30	18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 원/ kg, 양자중고 액(율)	E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 원/ kg, 양자중고 액(율)	E	
0709700000	시금치류	27	7	
0709901000	고사리	30	15	
0709902000	고비	27	15	
0709903000	호박	27	S-2	
0709909000	기타	27	15	
0710100000	감자	27	15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15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15	
0710290000	기타	27	15	
0710300000	시금치류	27	15	
0710400000	스위트콘	30	15	
0710801000	양파	27	15	
0710802000	마늘	27	18	
0710803000	죽순	27	15	
0710804000	당근	27	10	
0710805000	고사리	30	15	
0710806000	송이버섯	27	15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27	E	
0710809000	기타	27	15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15	
0711200000	올리브	27	7	
0711400000	오이류	30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15	
0711591000	송로(松露)	27	15	
0711599000	기타	30	15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0711903000	죽순	27	15	
0711904000	당근	30	15	
0711905010	고사리	30	15	
0711905020	고비	27	15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0711905099	기타	27	15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7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18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 (율)	18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 (율)	18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30% 또는 1,218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8	
0712391010	송이버섯	30	18	
0712391020	표고버섯	42% 또는 1,625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E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 원/k g, 양자 중 고액 (율)	18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18	
0712391050	팽이버섯	30	18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8	
0712392000	송로(松露)	27	15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E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5	
0712902020	무	30	15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E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 원/kg, 양자 중 고액 (율)	18	
0712902050	호박	30	15	
0712902060	양배추	30	15	
0712902070	토란줄기	30	15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15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15	
0712902092	스위트콘(종자용은 제외한다)	370	15	
0712902093	감자	27	7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 원/kg, 양자 중 고액 (율)	15	
0712902095	더덕	30	E	
0712902099	기타	30	15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7	
0713101000	종패용	27	5	
0713102000	사료용	0	0	
0713109000	기타	27	1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27	10	
0713311000	종패용	607.5	E	
0713319000	기타	607.5	E	
0713321000	종패용	420.8	7	
0713329000	기타	420.8	E	
0713331000	종패용	27	7	
0713339000	기타	27	10	
0713390000	기타	27	15	
0713400000	렌즈콩	27	10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27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0713900000	기타	27	7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10	
0714102010	칩	887.4	15	
0714102020	펠릿(pellet)	887.4	15	
0714102090	기타	887.4	E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E	
0714104000	냉동한 것	45	15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E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E	
0714204000	냉동한 것	45	E	
0714209000	기타	385	E	
0714901010	냉동한 것	45	18	
0714901090	기타	18	15	
0714909010	냉동한 것	45	10	
0714909090	기타	385	E	
0801110000	말린 것	30	15	
0801190000	기타	30	15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5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15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7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0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0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0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0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0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E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E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8024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19.4% 또는 1,470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E	
0802402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9.4% 또는 1,470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E	
0802500000	피스타치오	30	18	
0802600000	마카다미아 너트	30	7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66.8% 또는 2,664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5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566.8% 또는 2,664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5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7.0% 또는 803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8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27.0% 또는 803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8	
0802909000	기타	30	E	
08030000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30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한한다)			
0804100000	대추야자	30	15	
0804200000	무화과	30	15	
0804300000	파인애플	30	15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30	10	
0804501000	구아바(guava)	30	10	
0804502000	망고(mango)	30	E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30	15	
0805100000	오렌지	50	E	
0805201000	감귤	144	E	
0805209000	기타	144	E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30	15	
0805501000	레몬(시트리스 리몬, 시트리스 리머눔)	30	10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30	15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44	15	
0805900000	기타	144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	E	
0806200000	건조한 것	21	18	
0807110000	수박	45	E	
0807190000	기타	45	18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15	
0808100000	사과	45	E	
0808201000	배	45	E	
0808202000	마르멜로(quince)	45	10	
0809100000	살구	45	7	
0809200000	체리	24	0	
080930000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E	
0809401000	자두	45	E	
0809402000	슬로(sloe)	45	15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E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81020000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45	15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45	10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45	6	
0810600000	두리안(durian)	45	15	
0810901000	감	50	E	
0810902000	단감	45	E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10905000	매실	50	E	
0810909000	기타	45	E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E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30	15	
0811901000	밤	30	18	
0811902000	대추	30	E	
0811903000	잣	30	15	
0811909000	기타	30	7	
0812100000	체리	30	10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10	
0812909000	기타	30	15	
0813100000	살구	45	15	
0813200000	프룬(prune)	18	18	
0813300000	사과	45	E	
0813401000	감	50	E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양자	E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중 고액 (율)		
0813409000	기타	45	18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10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15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15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7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7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0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7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18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40	18	
0903000000	마테(maté)	25	7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10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10	
0904201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E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90420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E	
0905000000	바닐라	8	15	
0906110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10	
0906191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8	10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10	
0906201000	계피	8	10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10	
0907000000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 莖)에 한한다]	8	10	
0908100000	육두구	8	10	
0908200000	메이스	8	7	
0908300000	소두구	8	3	
0909100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 香)의 씨	8	7	
0909200000	코리앤더의 씨	8	7	
0909300000	커민의 씨	8	7	
0909400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7	
0909500000	회향의 씨, 쥬니퍼의 열매	8	7	
09101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 g, 양자 중 고액 (율)	E	
091010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 g, 양자 중 고액 (율)	E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091010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0910200000	사프란(saffron)	8	10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8	7	
0910910000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 한다)	8	5	
0910991000	타임, 월계수의 잎	8	5	
0910992000	카레	8	5	
0910999000	기타	8	5	
1001100000	듀럼종의 밀	3	3	
1001901000	메슬린(meslin)	3	3	
1001909010	종패용	1.8	0	
1001909020	사료용	0	0	
1001909030	제분용	1.8	0	
1001909090	기타	1.8	0	
1002001000	종패용	108.7	15	
1002009000	기타	3	0	
1003001000	맥주보리	513	E	
100300901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중고 액(율)	E	
100300902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1003009090	기타	299.7	E	
1004001000	종패용	554.8	15	
1004009000	기타	3	0	
1005100000	종패용	328	B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005901000	사료용	328	B	
1005902000	팝콘	630	B	
1005909000	기타	328	B	
1006100000	벼	-	X	
1006201000	메현미	-	X	
1006202000	찰현미	-	X	
1006301000	맷쌀	-	X	
1006302000	찰쌀	-	X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	X	
1007001000	종패용	779.4	E	
1007009000	기타	3	3	
1008100000	메밀	256.1	E	
1008201010	종패용	18	10	
1008201090	기타	3	10	
1008209000	기타	3	3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0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800.3	E	
1101001000	밀가루	4.2	5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5	0	
1102100000	호밀가루	5	0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0	
1102901000	보릿가루	260	E	
1102902000	쌀가루	-	X	
1102909000	기타	800.3	E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288.2	E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2.9	E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260	E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E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	X	
1103199000	기타	800.3	E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288.2	E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	X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260	E	
1103209000	기타	800.3	E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E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	X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233	E	
1104199000	기타	800.3	E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18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7	E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800.3	E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126	E	
1104299000	기타	800.3	E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	E	
1104309000	기타	5	7	
110510000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및 가루	304	E	
110520000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및 펠릿(pellet)	304	E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7	
1106201000	참깨리의 것	8	10	
1106209000	기타	8	10	
1106300000	제 8 류 물품의 것	8	7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269	B	
1107201000	훈연한 것	269	18	
1107209000	기타	27	15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50.9	E	
1108121000	식품용	226	B	
1108129000	기타	226	B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455	B	
1108141000	식품용	455	E	
1108149000	기타	455	E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241.2	E	
1108199000	기타	800.3	B	
1108200000	이눌린(inulin)	800.3	B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8	15	
1201001010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B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201001020	사료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120100901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120100909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120210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E	
120220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E	
1203000000	코프라(copra)	3	0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109000	기타	10	7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909000	기타	10	7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5	15	
1207200000	면실	3	0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 원/kg, 양자 중 고액 (율)	E	
1207500000	겨자씨	3	0	
1207910000	양귀비씨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 원/kg, 양자 중 고액 (율)	15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3	0	
1207993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3	0	
1207994000	피마자	3	0	
1207995000	잇꽃씨	3	0	
1207999000	기타	3	0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3	0	
1208900000	기타	3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0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 [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0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	0	
1209299000	기타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1209911090	기타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209919000	기타	0	0	
1209991010	참나무 종자	0	0	
1209991090	기타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1209993000	담배 종자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1209999000	기타	0	0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30	15	
1210201000	홉(hop)	30	15	
1210202000	루플린(lupulin)	30	10	
1211201100	수삼	222.8	E	
1211201210	본삼	222.8	E	
1211201290	기타	222.8	E	
1211201310	본삼	754.3	E	
1211201390	기타	754.3	E	
1211202110	가루	18	E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18	E	
1211202190	기타	18	E	
1211202210	가루	754.3	E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754.3	E	
1211202290	기타	754.3	E	
1211209100	인삼잎과 줄기	754.3	E	
1211209200	종자	754.3	E	
1211209900	기타	754.3	E	
1211300000	코카잎	8	5	
1211400000	양귀비줄기	8	5	
1211901000	부자(附子)	8	5	
1211902000	황련(黃連)	8	10	
1211903000	원지(遠志)	8	5	
1211904000	패모(貝母)	8	5	
1211905000	두충(杜沖)	8	5	
1211906000	감초	8	3	
1211909010	사인(砂仁)	8	5	
1211909020	산조인(酸棗仁)	8	10	
1211909030	사군자(使君子)	8	7	
1211909040	용안육(龍眼肉)	8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211909050	산사자(山査子)	8	7	
1211909060	연자육(蓮子肉)	8	7	
1211909070	박하	8	7	
1211909080	초피(椒皮)	8	10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8	E	
1211909099	기타	8	15	
1212201010	건조한 것	20	3	
1212201020	냉장한 것	20	3	
1212201030	냉동한 것	10	0	
1212201090	기타	20	3	
1212202010	건조한 것	20	7	
1212202020	염장한 것	20	5	
1212202030	냉장한 것	20	5	
1212202040	냉동한 것	45	5	
1212202090	기타	20	5	
1212203010	건조한 것	20	7	
1212203020	냉장한 것	20	5	
1212203030	냉동한 것	45	5	
1212203090	기타	20	5	
1212204010	신선한 것	20	5	
1212204020	냉장한 것	20	5	
1212204030	냉동한 것	45	7	
1212204090	기타	20	3	
1212205010	염장한 것	20	3	
1212205020	냉장한 것	20	3	
1212205030	냉동한 것	45	3	
1212205090	기타	20	3	
1212206010	냉동한 것	45	7	
1212206090	기타	20	7	
1212207011	냉동한 것	45	3	
1212207019	기타	20	5	
1212207021	냉동한 것	45	3	
1212207029	기타	20	3	
1212207031	냉동한 것	45	5	
1212207039	기타	20	5	
1212208011	냉동한 것	45	3	
1212208019	기타	20	3	
1212208021	냉동한 것	45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212208029	기타	20	5	
1212208031	냉동한 것	45	3	
1212208039	기타	20	3	
1212209011	냉동한 것	45	5	
1212209019	기타	20	7	
1212209091	냉동한 것	45	3	
1212209099	기타	20	3	
1212910000	사탕무	3	0	
1212991000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것 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5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8	15	
1212993000	꽃가루	8	15	
1212994000	사탕수수	3	0	
12129950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 의 씨를 포함한다)	20	15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nectari ne)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核)	8	7	
1212999000	기타	8	5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	7	
1214101000	사료용	1	0	
1214109000	기타	10	15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00.5	B	
1214909011	사료용	1	0	
1214909019	기타	18	15	
1214909090	기타	100.5	E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0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3	5	
1301902010	셀락(shellac)	3	0	
1301902090	기타	3	0	
1301909000	기타	3	5	
1302110000	아편	8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8	10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30	18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20	E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20	E	
1302191190	기타	20	E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754.3	E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754.3	E	
1302191290	기타	754.3	E	
1302191900	기타	20	E	
1302192000	캐슈너트 쉼액(cashew nut shell liquid)	8	5	
1302193000	생칠(生漆)	8	1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8	10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8	3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8	7	
1302199099	기타	8	E	
130220000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8	15	
1302311000	실 한천	8	5	
1302312000	가루 한천	8	5	
1302319000	기타	8	3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8	15	
1302390000	기타	8	15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8	10	
1401102000	청환죽(靑丸竹)	8	10	
1401109000	기타	8	10	
1401201000	쪄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8	10	
1401209000	기타	8	10	
1401901000	취줄기껍질	8	10	
1401909000	기타	8	10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자)	3	5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3	5	
1404902020	삼지닥나무(edgeworthia papyrifera) 껍질	3	5	
1404902090	기타	3	5	
1404903010	떡갈잎	5	10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10	
1404903090	기타	5	10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 [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3	5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 및 이스틸리(istle)] (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3	0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3	5	
1404906020	아몬드 껍질(almond hull)	3	5	
1404906090	기타	3	5	
1404909000	기타	3	5	
150100101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0	
1501001090	기타	3	0	
1501002000	가금지	3	0	
1502001010	산가가 2 이하인 것	2	3	
1502001090	기타	2	10	
1502009000	기타	3	3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3	3	
1503009000	기타	3	3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3	0	
1504109000	기타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0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3	0	
1504309000	기타	3	0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3	
1505009000	기타	3	3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3	
1506009000	기타	3	3	
1507101000	식품용	5.4	1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5.4	7	
1507109000	기타	5.4	10	
1507901010	식품용	5.4	10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4	7	
1507901090	기타	5.4	7	
1507909000	기타	8	7	
1508100000	조유(粗油)	27	15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27	15	
1508909000	기타	27	15	
1509100000	버진(virgin)	8	10	
1509900000	기타	8	10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8	10	
1511100000	조유(粗油)	3	3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	3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3	
1511909000	기타	2	3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10	7	
1512112000	잇꽃유	8	5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10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512191020	잇꽃유	8	5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10	7	
1512199020	잇꽃유	8	5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4	5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5.4	7	
1512299000	기타	8	5	
1513110000	조유(粗油)	3	3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3	3	
1513199000	기타	3	3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5	3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8	3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5	5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8	3	
1513299000	기타	8	3	
1514110000	조유(粗油)	8	15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10	15	
1514199000	기타	10	10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8	15	
1514912000	겨자유	30	15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10	15	
1514991020	겨자유	30	15	
1514999000	기타	10	15	
1515110000	조유(粗油)	8	7	
1515190000	기타	8	10	
1515210000	조유(粗油)	8	10	
1515290000	기타	8	10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8	1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0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8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30	호호바유(jobba oil)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8	10	
1515909090	기타	8	10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8	5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8	0	
1516109000	기타	8	10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36	15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15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36	15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5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15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7	
1516202090	기타	8	10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8	15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8	7	
1517902000	쇼트닝	8	7	
1517909000	기타	8	10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7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8	7	
1518009000	기타	8	7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8	7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7	
1521102000	팜왁스	8	7	
1521109000	기타	8	7	
1521901000	경납(鯨蠟)	8	3	
1521902000	밀랍(蜜蠟)	8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521909000	기타	8	7	
1522001010	천연의 것	8	5	
1522001090	기타	8	5	
1522009000	기타	8	7	
1601001000	소시지	18	5	
1601009000	기타	30	5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18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5	
1602209000	기타	30	15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5	
1602319000	기타	30	15	
1602321010	삼계탕	30	18	
1602321090	기타	30	E	
1602329000	기타	30	E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399000	기타	30	E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19000	기타	27	E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29000	기타	27	E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99000	기타	27	E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15	
1602509000	기타	72	15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5	
1602909000	기타	30	15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30	15	
1603002000	육즙	30	15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30	3	
1603004000	어류의 즙	30	3	
1603009000	기타	30	10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19000	기타	20	3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4129000	기타	20	0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39000	기타	20	3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604141012	삶은 것	20	7	
1604141019	기타	20	7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7	
1604141022	삶은 것	20	7	
1604141029	기타	20	7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7	
1604141032	삶은 것	20	7	
1604141039	기타	20	7	
1604149000	기타	20	7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59000	기타	20	5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69000	기타	20	5	
1604191010	공치	20	10	
1604191020	전갱이	20	7	
1604191030	뱀장어[양귀라(Anguilla)종]	20	7	
1604191090	기타	20	5	
1604199010	쥐치포	20	7	
1604199090	기타	20	7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20	5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20	5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7	
1604204010	게맛의 것	20	7	
1604204090	기타	20	5	
1604209000	기타	20	5	
1604301000	캐비아	20	0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20	0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5101020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20	7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7	
1605101099	기타	20	7	
1605109000	기타	20	7	
1605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209010	훈연한 것	20	5	
1605209020	빵가루를 입힌 것	20	5	
1605209090	기타	20	5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605309000	기타	20	7	
1605401000	밀 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5409000	기타	20	5	
1605901010	굴	20	5	
1605901020	홍합	20	3	
1605901030	바지락	20	5	
1605901040	새조개	20	5	
1605901070	굴뱅이	20	10	
1605901080	오징어	20	5	
1605901091	전복	20	10	
1605901092	소라	20	7	
1605901099	기타	20	3	
1605902010	오징어	20	7	
1605902020	굴뱅이	20	7	
1605902030	새조개	20	7	
1605902090	기타	20	3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	7	
1605909020	해삼	20	3	
1605909030	굴뱅이	20	7	
1605909040	홍합	20	부록 2-가-1의 제 5 항 참조	
1605909090	기타	20	7	
170111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3	3	
170111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5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3	3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40	E	
1701990000	기타	40	18	
1702111000	유당(乳糖)	49.5	10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20	15	
1702191000	유당(乳糖)	49.5	E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20	10	
1702201000	단풍당	8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7	
1702301000	포도당	8	15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15	
1702401000	포도당	8	15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15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15	
1702601000	과당	8	15	
1702602000	과당시럽	8	15	
1702901000	인조꿀	243	E	
1702902000	캐러멜당	8	10	
1702903000	맥아당	8	15	
1702909000	기타	8	15	
1703101000	주정 제조용	3	3	
1703109000	기타	3	3	
1703901000	주정 제조용	3	0	
1703909000	기타	3	3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10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15	
1704902010	드롭스(drops)	8	10	
1704902020	캐러멜	8	10	
1704902090	기타	8	10	
1704909000	기타	8	7	
1801001000	생 것	2	0	
1801002000	볶은 것	8	0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8	0	
1802009000	기타	8	5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10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3	
1804000000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5	3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10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	
1806209090	기타	8	10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319000	기타	8	5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15	
1806329000	기타	8	15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902111	조제분유로 만든 것	36	17	
1806902119	기타	40	17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15	
1806902199	기타	8	10	
1806902210	보릿가루로 만든 것	8	10	
1806902290	기타	-	X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로 만든 것	30	5	
180690292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36	18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7	
1806902992	보릿가루로 만든 것	8	7	
1806902999	기타	-	X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5.4	5	
1806903091	날알 모양의 쌀	8	E	
1806903099	기타	8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	
1806909090	기타	8	5	
1901101010	조제 분유	36	부록 2-가-1의 제 6 항 참조	
1901101090	기타	40	부록 2-가-1의 제 6 항 참조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5	
1901109090	기타	8	7	
1901201000	쌀가루의 것	—	X	
1901202000	보릿가루로 만든 것	8	10	
1901209000	기타	—	X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30	15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36	15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것	36	15	
1901909010	오트밀	8	10	
1901909091	쌀가루의 것	—	X	
1901909092	보릿가루로 만든 것	8	10	
1901909099	기타	—	X	
1902111000	스파게티	8	7	
1902112000	마카로니	8	7	
1902119000	기타	8	7	
1902191000	국수	8	7	
1902192000	당면	36% 또는 284 원/kg, 양자 중 고액 (율)	15	
1902193000	냉면	8	5	
1902199000	기타	8	1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1902301010	라면	8	0	
1902301090	기타	8	0	
1902309000	기타	8	10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8	10	
1903001000	타피오카	8	10	
1903009000	기타	8	10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5.4	3	
1904102000	콘 칩	5.4	3	
1904103000	튀긴 쌀	5.4	3	
1904109000	기타	5.4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45	15	
1904209000	기타	5.4	3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8	3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E	
1904901090	기타	8	E	
1904909000	기타	8	5	
1905100000	귀리빵	8	10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이와 유사한 것	8	10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10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10	
1905400000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8	10	
1905901010	빵	8	10	
1905901020	건빵	8	10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1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8	15	
1905901050	쌀과자	8	15	
1905901090	기타	8	15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7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7	
1905909090	기타	8	7	
2001100000	오이류	30	15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15	
2001909010	쪽파	30	15	
2001909020	토마토	30	15	
2001909030	꽃양배추	30	15	
2001909040	스위트콘	30	15	
2001909050	염교(rakkyo)	30	15	
2001909060	마늘	30	15	
2001909070	양파	30	15	
2001909090	기타	30	15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8	15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 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2002909000	기타	8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15	
2003109000	기타	20	15	
2003200000	송로(松露)	20	15	
2003901000	표고버섯	20	E	
2003902000	송이버섯	20	15	
2003909000	기타	20	15	
2004100000	감자	18	3	
2004901000	스위트콘	30	15	
2004909000	기타	30	15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20	10	
2005109000	기타	20	10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15	
2005209000	기타	20	15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15	
2005511000	녹두의 것	20	15	
2005512000	팥의 것	20	15	
2005519000	기타	20	15	
2005591000	녹두의 것	20	15	
2005592000	팥의 것	20	15	
2005599000	기타	20	15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18	
2005700000	올리브	20	15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15	
2005910000	죽순	20	15	
2005991000	김치	20	15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20	15	
2005999000	기타	20	15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30	E	
2006002000	파인애플	30	15	
2006003000	생강	30	15	
2006004000	연 뿌리	30	10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10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20	10	
2006006090	기타	20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7	
2006008000	올리브	20	7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7	
2006009020	죽순	20	15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20	7	
2006009090	기타	30	15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15	
2007911000	잼 · 과일젤리와 마말레이드(marmalade)	30	15	
2007919000	기타	30	15	
2007991000	잼 · 과일젤리와 마말레이드(marmalade)	30	15	
2007999000	기타	30	15	
2008111000	피넛 버터	50	15	
2008119000	기타	63.9	15	
2008191000	밤	50	E	
2008192000	코코넛	45	15	
2008199000	기타	45	15	
2008200000	파인애플	45	15	
2008301000	유자	45	15	
2008309000	기타	45	E	
2008400000	배	45	E	
2008500000	살구	45	15	
2008600000	체리	45	15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15	
2008709000	기타	45	15	
2008800000	초본류 딸기	45	7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45	15	
200892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E	
2008921090	기타	45	15	
2008922000	과실 샐러드	45	15	
2008929000	기타	45	15	
2008991000	포도	45	10	
2008992000	사과	45	7	
2008993000	팝콘	45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45	10	
2008999000	기타	45	10	
2009110000	냉동한 것	54	15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4	15	
2009190000	기타	54	15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7	
2009290000	기타	30	15	
2009311000	레몬주스	50	7	
2009312000	라임주스	50	7	
2009319000	기타	54	10	
2009391000	레몬주스	50	10	
2009392000	라임주스	50	5	
2009399000	기타	54	10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7	
2009490000	기타	50	7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10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7	
2009690000	기타	45	7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10	
2009790000	기타	45	7	
2009801010	복숭아주스	50	10	
2009801020	딸기주스	50	15	
2009801090	기타	50	10	
2009802000	채소 주스	30	10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15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1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15	
2009901090	기타	50	10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30	15	
2009909000	기타	50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5	
2101119000	기타	8	5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5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5	
2101129090	기타	8	5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10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10	
2101209019	기타	40	10	
2101209090	기타	40	10	
2101301000	보리로 만든 것	8	3	
2101309000	기타	8	3	
2102101000	양조효모	8	5	
2102102000	증류효모	8	10	
2102103000	제빵효모	8	10	
2102104000	배양효모	8	7	
2102109000	기타	8	10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5	
2102202000	누룩	8	10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3090	기타	8	5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4090	기타	8	5	
2102209000	기타	8	10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7	
2103100000	간장	8	5	
2103201000	토마토 케찹	8	5	
2103202000	토마토 소스	45	5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8	3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7	
2103901010	된장	8	5	
2103901020	춘장	8	5	
2103901030	고추장	45	5	
2103901090	기타	45	5	
2103909010	마요네스	8	3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15	
2103909040	메주	16% 또는 64 원/kg, 양자 중 고액 (을)	7	
2103909090	기타	45	15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18	15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30	5	
2104103000	야채로 만든 것	18	15	
2104109000	기타	18	15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10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7	
2105001090	기타	8	7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5	
2105009090	기타	8	3	
2106101000	두부	8	3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0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8	0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3	
2106901090	기타	8	3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	
2106903011	인삼차	8	10	
2106903019	기타	8	3	
2106903021	홍삼차	754.3	E	
2106903029	기타	754.3	E	
2106904010	김	8	0	
2106904090	기타	8	0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3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8	10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고 100 분의 70 이하인 것	8	7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8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00 분의 70 을 초과하는 것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7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7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7	
2106909060	도토리 가루	8	10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7	
2106909091	로열젤리 및 벌꿀조제품의 것	8	7	
2106909099	기타	8	5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8	3	
2201901000	얼음과 눈	8	3	
2201909000	기타	8	7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8	7	
2202109000	기타	8	10	
2202901000	인삼음료	8	7	
2202902000	과실주스 음료	9	7	
2202903000	식혜	8	7	
2202909000	기타	8	7	
2203000000	맥주	30	7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5	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12000	흰 포도주	15	0	
2204219000	기타	15	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0	
2204292000	흰 포도주	15	0	
2204299000	기타	15	0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30	0	
2205100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15	
2205900000	기타	15	15	
2206001010	사과주	15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206001020	배술	15	5	
2206001090	기타	15	5	
2206002010	청주	15	3	
2206002020	약주	15	3	
2206002030	탁주	15	3	
2206002090	기타	15	15	
2206009010	와인쿨러(제 2009 호나 제 2202 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5	
2206009090	기타	15	10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10	E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E	
2207109090	기타	30	10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8	15	
2208201000	꼬냇	15	10	
2208209000	기타	15	15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15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10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20	10	
2208309000	기타	20	10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10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10	
2208600000	보드카	20	10	
2208701000	인삼주	20	10	
2208702000	오가피주	20	15	
2208709000	기타	20	10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 2208.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10	
2208904000	소주	30	3	
2208906000	고량주	30	5	
2208907000	데킬라	20	5	
2208909000	기타	30	5	
2209001000	양조식초	8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209009000	기타	8	7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9	7	
2301102000	수지박(greaves)	5	5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5	0	
2301209000	기타	5	0	
2302100000	옥수수로 만든 것	5	5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2	0	
2302401000	쌀로 만든 것	5	5	
2302409000	기타	5	5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5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갸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0	
2303300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5	0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0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0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0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0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3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0	
2306490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0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63% 또는 72 원/kg, 양자 중 고액 (율)	10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5	3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3	
2306909000	기타	5	3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5	0	
2308001000	도토리	5	1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10	
2308003000	목화씨 껍질	5	3	
2308009000	기타	46.4	10	
2309101000	개사료	5	0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0	
2309901010	양돈용	4.2	0	
2309901020	양계용	4.2	0	
2309901030	어류용	5	0	
2309901040	축우용	4.2	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71	15	
2309901099	기타	5	0	
2309902010	무기물 또는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15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	15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0	
2309902099	기타	50.6	15	
2309903010	향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90	기타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309909000	기타	50.6	15	
2401101000	황색종(種)	20	10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10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20	10	
2401109000	기타	20	10	
2401201000	황색종(種)	20	10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10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20	10	
2401209000	기타	20	10	
2401301000	옆의 주맥(主脈)	20	10	
2401302000	옆 부스러기	20	10	
2401309000	기타	20	10	
2402101000	시가(cigar)	40	15	
2402102000	셔루트(cheroot)	40	15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40	15	
2402201000	필터담배	40	15	
2402209000	기타	40	15	
2402900000	기타	40	15	
2403101000	파이프 담배	40	15	
2403109000	기타	40	15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32.8	15	
2403919000	기타	40	15	
2403991000	씹는 담배	40	15	
2403992000	코 담배	40	15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40	15	
2403999000	기타	40	15	
2501001010	암염(岩鹽)	1	0	
2501001020	천일염	1	0	
2501009010	식염	8	0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0	
2501009090	기타	8	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0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 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0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109000	기타	3	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3	0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909000	기타	3	0	
2505100000	규사	3	0	
2505901010	점토사	3	0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3	0	
2505901090	기타	3	0	
2505909000	기타	3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06 미만인 것	3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06 이상이고 100 분의 0.1 이하인 것	3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1 을 초과하는 것	3	0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06209000	기타	3	0	
250700101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3	0	
2507001090	기타	3	0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3	0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3	0	
2507002090	기타	3	0	
2507009000	기타	3	0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3	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3	0	
2508401000	산성백토	3	0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3	0	
2508409000	기타	3	0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3	0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3	0	
2508503000	규선석(硅線石)	3	0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3	0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3	0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0	
2509000000	초크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	0	
25101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1	0	
2510109000	기타	1	0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3	0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3	0	
2510209000	기타	3	0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0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 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3	0	
2513109000	기타	3	0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3	0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0	
2513201030	천연 석류석	3	0	
2513201090	기타	3	0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3	0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0	
2513202030	천연 석류석	3	0	
2513202090	기타	3	0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4009000	기타	3	5	
2515111000	대리석	3	0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0	
2515121000	대리석	3	0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碑石)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 석고(alabaster)	3	0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5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5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5	
2516909000	기타	3	5	
2517101000	자갈	3	0	
2517102000	쇄석(碎石)	3	0	
2517109000	기타	3	0	
2517200000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3	0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0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3	5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3	5	
2517499000	기타	3	0	
251810000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0	
251820000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0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0	
2519901000	용융(溶融) 또는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0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3	0	
2519909000	기타	3	0	
2520101000	석고	5	0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5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3	
2520209000	기타	5	0	
2521001000	석회석	3	0	
2521009000	기타	3	0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3	0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3	0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3	0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7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7	
2523290000	기타	5	7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7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7	
2523909000	기타	5	7	
2524100000	청(靑)석면	5	0	
2524901000	갈(褐)석면	5	0	
2524902000	백(白)석면	5	0	
2524909000	기타	5	0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3	0	
2525200000	운모 가루	3	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3	0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0	
2526109000	기타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5	0	
2528100000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0	
2528901000	붕산칼슘	3	0	
2528902000	염화붕산마그네슘	3	0	
2528903000	천연 붕산	3	0	
2528909000	기타	3	0	
2529100000	장석(長石)	3	0	
2529211000	가루	2	0	
2529219000	기타	2	0	
2529221000	가루	2	0	
2529229000	기타	2	0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2	0	
2529302000	하석(霞石)	2	0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2	0	
2530101000	질석(蛭石)	3	0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3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스	3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3	0	
2530904000	주사(朱沙)	3	0	
2530905000	납석(蠟石)	3	0	
2530906000	불석(沸石)	3	0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3	0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3	0	
2530909010	도석(陶石)	3	0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3	0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8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0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3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530909099	기타	3	0	
2601111000	적(赤)철광	0	0	
2601112000	자(磁)철광	0	0	
2601119000	기타	0	0	
2601121000	적(赤)철광	0	0	
2601122000	자(磁)철광	0	0	
2601129000	기타	0	0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	0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	0	
2611009000	기타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3100000	배소한 것	0	0	
2613900000	기타	0	0	
2614001000	금홍석(rutile)	0	0	
2614002000	예추석(anatase)	0	0	
2614009000	기타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9000	기타	0	0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	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2	0	
2619001090	기타	2	0	
2619002000	드로스(dross)	2	0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2	0	
2619009000	기타	2	0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	0	
2620190000	기타	2	0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2	0	
2620290000	기타	2	0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2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0	
2620990000	기타	2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0	
2621900000	기타	2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701110000	무연탄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	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	0	
2701129010	취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2701129090	기타	0	0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	0	
2701201000	연탄	1	0	
2701202000	조개탄(ovoid)	1	0	
2701209000	기타	1	0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	0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1	0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0	
2703002000	응결시킨 것	1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0	
2704001090	기타	3	0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3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0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0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5	0	
2706002000	갈탄 타르나 토탄 타르	5	0	
2706009000	기타	5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0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0	
2707400000	나프탈렌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 · 에스 · 티 · 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0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5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0	
2707999000	기타	5	0	
2708100000	피치(pitch)	5	0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0	
270900101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796 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3	0	
270900102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1 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3	0	
270900103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7 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3	0	
270900104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55 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3	0	
270900105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69 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3	0	
270900106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85 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3	0	
270900107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99 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3	0	
270900108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904 를 초과하고 0.966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이하인 것			
2709001090	기타	3	0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3	0	
2710111000	자동차 휘발유	5	0	
2710112000	항공 휘발유	5	0	
271011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0	
2710114000	나프타	0	0	
2710115000	엔·지·엘(NGL)	0	0	
2710119000	기타	5	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0	
2710191090	기타	5	0	
2710192010	등유	5	0	
2710192020	제트 연료유	5	0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5	0	
2710192090	기타	5	0	
2710193000	경유	5	0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5	0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5	0	
2710194030	벙커시유	5	0	
2710194090	기타	5	0	
2710195010	조유(粗油)	7	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0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8	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0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0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0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7	0	
2710197230	기어오일	7	0	
2710197240	터빈오일	7	0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0	
2710197310	컴파운드오일	7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0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0	
2710197410	방청유	7	0	
2710197420	절삭유	7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710197430	세척유	7	0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0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0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0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0	
2710197530	열처리유	7	0	
2710197540	열매체유	7	0	
2710197900	기타	7	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90	기타	8	0	
2710199000	기타	8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11090	기타	5	0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12090	기타	5	0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5	0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중유(벵커비유) 및 벵커시유의 것	5	0	
2710914090	기타	5	0	
271091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0	
2710919000	기타	8	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91090	기타	5	0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2090	기타	5	0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 및 벙커시유의 것	5	0	
2710994090	기타	5	0	
271099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基油)의 것	7	0	
2710999000	기타	8	0	
2711110000	천연가스	3	0	
2711120000	프로판	3	0	
2711130000	부탄	3	0	
2711141000	에틸렌	5	0	
2711142000	프로필렌	5	0	
2711143000	부틸렌	5	0	
2711144000	부타디엔	5	0	
2711190000	기타	5	0	
2711210000	천연가스	3	0	
2711290000	기타	5	0	
2712101000	바셀린	8	0	
2712109000	기타	8	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8	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0	
2712901090	기타	8	0	
2712909010	몬탄왁스	8	0	
2712909020	토탄왁스	8	0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0	
2712909090	기타	8	0	
271311000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5	0	
2713120000	하소(煨燒)한 것	5	0	
2713200000	석유역청(瀝靑)	5	0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5	0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타르샌드(tar sand)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5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0	
2715001000	컷백(cut-back)	5	0	
2715002000	아스팔트 · 역청(瀝靑) · 피치(pitch) 또는 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5	0	
2715003000	매스틱(mastic)	5	0	
2715009000	기타	5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0	
2801100000	염소	5.5	0	
2801200000	요드	5.5	0	
2801301000	플루오르	5.5	0	
2801302000	브롬	5.5	0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5	0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5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0	
2803009010	카본 블랙(carbon black)	5.5	0	
2803009090	기타	5.5	0	
2804100000	수소	5.5	0	
2804210000	아르곤	5.5	0	
2804291000	헬륨	5.5	0	
2804292000	네온	5.5	0	
2804293000	크립톤	5.5	0	
2804294000	크세논	5.5	0	
2804299000	기타	5.5	0	
2804300000	질소	5.5	0	
2804400000	산소	5.5	0	
2804501000	붕소	5.5	0	
2804502000	텔루르	5.5	0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2804690000	기타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04701000	황린	5	0	
2804709000	기타	5.5	0	
2804800000	비소	5.5	0	
2804900000	셀렌	5.5	0	
2805110000	나트륨	5.5	0	
2805120000	칼슘	5.5	0	
2805190000	기타	5.5	0	
2805301000	세륨그룹	5.5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0	
2805304000	이트륨	5.5	0	
2805305000	스칸듐	5.5	0	
2805309000	기타	5.5	0	
2805400000	수은	5.5	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7001090	기타	5.5	0	
2807002000	발연황산	5.5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8001090	기타	5.5	0	
2808002000	황질산	5.5	0	
2809100000	오산화인	5.5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9201090	기타	5.5	0	
2809202010	메타인산	5.5	0	
2809202020	피로인산	5.5	0	
2809202090	기타	5.5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0	
2810001090	기타	5.5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0	
2810003000	메타붕산	5.5	0	
2810009000	기타	5.5	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11119000	기타	5.5	0	
2811191000	황화수소	5.5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0	
2811193000	술파민산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11194000	과염소산	5.5	0	
2811195000	염소산	5.5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0	
2811197000	아인산	5.5	0	
2811198000	비산	5.5	0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청산)	5.5	0	
2811199090	기타	5.5	0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0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0	
2811229010	실리카겔	5.5	0	
2811229090	기타	5.5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0	
2811299000	기타	5.5	0	
2812101010	삼염화요드	5	0	
281210102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3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0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5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0	
2812101060	설퍼 디클로라이드	5	0	
2812101090	기타	5	0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0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0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0	
2812102090	기타	5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0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0	
2812909000	기타	5.5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0	
2813901020	오황화인	5.5	0	
2813901090	기타	5.5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0	
2813902090	기타	5.5	0	
2813903000	황화규소	5.5	0	
2813909000	기타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1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0	
2815110000	고체	5.5	0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0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5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0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0	
2817001000	산화아연	5.5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0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3	0	
2818109000	기타	3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1	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0	
2818309000	기타	5.5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0	
2819901090	기타	5.5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5.5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0	
2820909000	기타	5.5	0	
2821101000	산화철	5.5	0	
2821102000	수산화철	5.5	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5.5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0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4	0	
2822001099	기타	5.5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0	
2822002090	기타	5.5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23009000	기타	5.5	0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5	0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5.5	0	
2824909000	기타	5.5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0	
2825109010	히드라진	5.5	0	
2825109020	히드라진의 무기염	5.5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 아민염산염)	5.5	0	
2825109049	기타	5.5	0	
2825201000	산화리튬	5.5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5.5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2	0	
2825309000	기타	3	0	
2825401000	산화니켈	5.5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0	
2825501000	산화구리	5.5	0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5502090	기타	5.5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0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5.5	0	
2825901010	산화칼슘	5.5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0	
2825901030	산화석	5.5	0	
2825901090	기타	5.5	0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0	
2825902040	수산화석	5.5	0	
2825902090	기타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0	
2825903090	기타	5.5	0	
2825909000	기타	5.5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0	
2826193090	기타	5.5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5.5	0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0	
2826199000	기타	5.5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 [인조 빙정석(氷晶石)]	5.5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0	
2826909000	기타	5.5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0	
2827200000	염화칼슘	5.5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0	
2827391000	구리염화물	5.5	0	
2827399000	기타	5.5	0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5.5	0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7412090	기타	5.5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27599000	기타	5.5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0	
2827609090	기타	5.5	0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0	
2828901090	기타	5.5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0	
2828902090	기타	5.5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0	
2829199000	기타	5.5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0	
2829901090	기타	5.5	0	
2829902010	브롬산염	5.5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0	
2830109000	기타	5.5	0	
2830901000	황화물	5.5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0	
2831102000	숯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 드 숯폭실산나트륨)	5.5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0	
2831902000	숯폭실산염	5.5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2109000	기타	5.5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0	
2832209000	기타	5.5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0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0	
2832309000	기타	5.5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9000	기타	5.5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0	
2833220000	황산알루미늄	5.5	0	
2833240000	황산니켈	5.5	0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33259000	기타	5.5	0	
2833270000	황산바륨	5.5	0	
2833291000	황산철	5.5	0	
2833299000	기타	5.5	0	
2833300000	명반	5.5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0	
2833409000	기타	5.5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0	
2834109000	기타	5.5	0	
2834210000	질산칼륨	5.5	0	
2834291000	질산바륨	5.5	0	
2834299000	기타	5.5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0	
2835101090	기타	5.5	0	
2835102000	아인산염	5.5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0	
2835240000	인산칼륨	5.5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칼슘)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5.5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0	
2835299000	그 밖의 인산	5.5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 나트륨)	5.5	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0	
2835399000	기타	5.5	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4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0	
2836400000	탄산칼륨	5.5	0	
2836500000	탄산칼슘	5.5	0	
2836600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00	탄산리튬	5.5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5.5	0	
2836991090	기타	5.5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0	
2837111000	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12000	산화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91010	시아나화칼륨	5.5	0	
2837191020	시아나화구리	5.5	0	
2837191030	시아나화아연	5.5	0	
2837191090	기타	5.5	0	
2837192000	산화시아나화물	5.5	0	
2837201000	페로시아나화물	5.5	0	
2837202000	페리시아나화물	5.5	0	
2837209000	기타	5.5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0	
2839190000	기타	5.5	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0	
2839902000	규산바륨	5.5	0	
2839909000	기타	5.5	0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40190000	기타	5	0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5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0	
2841509000	기타	5.5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0	
2841692000	망간산염	5.5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0	
2841901000	주석산염	5.5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0	
2841902030	티탄산납	5.5	0	
2841902090	기타	5.5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0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5.5	0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0	
2841909000	기타	5.5	0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6.5	0	
2842109000	기타	5.5	0	
2842901000	셀렌산염	5.5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겐염이나 착염	5.5	0	
2842905000	셀렌의 겐염이나 착염	5.5	0	
2842909000	기타	5.5	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0	
2843109000	기타	5.5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19000	기타	5.5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99000	기타	5.5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43309000	기타	5.5	0	
2843901000	아말감(amalgam)	5.5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0	
2843909090	기타	5.5	0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	0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109000	기타	0	0	
284420100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0	0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209000	기타	0	0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309000	기타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409000	기타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0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2845909000	기타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0	
2846909000	기타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7009000	기타	5.5	0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	0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5.5	0	
2848009000	기타	5.5	0	
2849100000	탄화칼슘	5.5	0	
2849200000	탄화규소	5	0	
2849901000	복탄화물	5.5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0	
2849909090	기타	5.5	0	
2850001000	수소화물	5.5	0	
2850002000	질화물	5.5	0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0	
2850004000	규화물	5.5	0	
2850005000	붕화물	5.5	0	
2852001000	소호 제 2825.90 호, 제 2827.39 호, 제 2827.49 호, 제 2827.60 호, 제 2830.90 호, 제 2833.29 호, 제 2834.29 호, 제 2835.39 호, 제 2837.19 호, 제 2837.20 호, 제 2841.50 호, 제 2842.10 호, 제 2842.90 호, 제 2843.90 호, 제 2848.0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 또는 제 2853.00 호의 것	5.5	0	
2852002000	소호 제 2918.11 호, 제 2931.00 호,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 또는 제 3822.00.2091 호의 것			
2852003000	소호 제 2934.99.2000 호, 제 3822.00.1092 호 또는 제 3822.00.2092 호의 것	6.5	0	
2852004000	소호 제 3502.90 호 또는 제 3504.00 호의 것	8	0	
2852005000	소호 제 3822.00.101 호, 제 3822.00.102 호, 제 3822.00.1093 호, 제 3822.00.201 호, 제 3822.00.202 호 또는 제 3822.00.2093 호의 것	0	0	
2852006000	소호 제 3822.00.1099 호 또는 제 3822.00.2099 호의 것	8	0	
2853001000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0	
2853002000	압축공기	5.5	0	
2853003000	아말감(amalgam)	5.5	0	
28530040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0	
2853004090	기타	5.5	0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5.5	0	
2853009000	기타	5.5	0	
2901101000	부탄	0	0	
2901102000	헥산	0	0	
2901103000	헵탄	0	0	
2901109000	기타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2901291000	헥센	0	0	
2901292000	옥텐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01299000	기타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0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0	
2902199000	기타	5	0	
2902200000	벤젠	3	0	
2902300000	톨루엔	3	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0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티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2902909000	기타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0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0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0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0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드메탄	5.5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플루오르에탄(HFC-134a)	5.5	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0	
2903410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420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430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5	0	
290344100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CFC-114)	5.5	0	
2903442000	클로로펜타플루오르메탄(CFC-115)	5.5	0	
290345101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5.5	0	
2903451090	기타	5.5	0	
2903452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1)	5.5	0	
2903452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12)	5.5	0	
2903452090	기타	5.5	0	
2903453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5.5	0	
2903453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5.5	0	
2903453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5.5	0	
2903453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5.5	0	
2903453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215)	5.5	0	
2903453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5.5	0	
29034530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5.5	0	
2903453090	기타	5.5	0	
29034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034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5.5	0	
29034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하론-2402)	5.5	0	
2903471000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5.5	0	
2903479000	기타	5.5	0	
29034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5.5	0	
290349112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5.5	0	
2903491130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5.5	0	
2903491190	기타	5.5	0	
290349121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HCFC-123)	5.5	0	
290349122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HCFC-124)	5.5	0	
290349123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141)	5.5	0	
290349124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142)	5.5	0	
2903491290	기타	5.5	0	
290349131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5.5	0	
2903491390	기타	5.5	0	
29034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5.5	0	
2903499000	기타	5.5	0	
29035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0	
29035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5.5	0	
2903590000	기타	5.5	0	
2903611000	클로로벤젠	5.5	0	
2903619000	기타	5.5	0	
29036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036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0	
2903691000	염화벤질	5.5	0	
29036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0	
2903692090	기타	5.5	0	
29036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0	
2903699000	기타	5.5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0	
2904109000	기타	5.5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0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그 염	5.5	0	
2904209090	기타	5.5	0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0	
2904909000	기타	5.5	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3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0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905122090	기타	5.5	0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0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5	0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0	
2905169000	기타	5.5	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0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0	
2905199090	기타	5	0	
2905221000	게라니올 · 시트로네올 · 리날롤 · 로디놀 및 네롤	5	0	
2905229000	기타	5	0	
2905290000	기타	5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0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0	
2905399000	기타	5.5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430000	만니톨	8	7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7	
2905450000	글리세롤	8	3	
2905490000	기타	5.5	0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0	
2905590000	기타	5.5	3	
2906110000	멘톨	5.5	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131000	스테롤	5.5	0	
2906132000	이노시톨	5.5	0	
2906191000	보르네올	5.5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0	
2906199000	기타	5.5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0	
2906299000	기타	5.5	0	
2907111000	페놀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07112000	페놀의 염	5.5	0	
2907121000	크레졸	5.5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0	
2907131000	옥틸페놀	5.5	0	
2907132000	노닐페놀	5	0	
2907139000	기타	5.5	0	
2907151000	나프톨	5.5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0	
2907191000	티몰	5.5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5.5	0	
2907199000	기타	5.5	3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0	
2907231000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 페놀에이)	5.5	0	
2907232000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 페놀에이)의 염	5.5	0	
2907291000	카테콜	5.5	0	
2907299000	기타	5.5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 은 제외한다)	5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0	
2908199000	기타	5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5.5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9000	기타	5.5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09199000	기타	5.5	0	
2909201000	시네올	5.5	0	
2909209000	기타	5.5	0	
2909301000	아니솔	5.5	0	
2909302000	아네톨	5.5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0	
2909304000	엠브렛 머스크	5.5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0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09309090	기타	5.5	0	
2909410000	2,2'- 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 콜, 디골)	5.5	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5	0	
2909449000	기타	5.5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0	
2909499000	기타	5.5	0	
2909501000	오이게놀	5.5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0	
2909509000	기타	5.5	5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0	
2909609000	기타	5.5	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0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 드)	5.5	0	
2910300000	1-클로로-2,3- 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드린)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0	
2910900000	기타	5.5	0	
2911001010	아세탈	5.5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0	
2911009000	기타	5.5	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192000	시틀알	5.5	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 이성체)	5.5	0	
2912199000	기타	5.5	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5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0	
2912299000	기타	5.5	5	
2912301000	히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309000	기타	5.5	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 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0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 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1000	3,4,5- 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9000	기타	5.5	0	
2912501000	트리옥산	5.5	0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5.5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0	
2912509000	기타	5.5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0	
291300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14110000	아세톤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5.5	0	
2914199000	기타	5.5	0	
2914210000	장뇌	5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0	
2914231000	이오논	5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0	
2914291000	자스몬	5	0	
2914299000	기타	5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0	
2914390000	기타	5.5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0	
2914409000	기타	5.5	0	
2914501000	케톤-페놀	5.5	0	
2914509000	기타	5.5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0	
2914699010	퀴논알코올·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0	
2914699090	기타	5.5	0	
2914701000	케톤 머스크	5	0	
2914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4709090	기타	5	0	
2915110000	포름산	5.5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0	
2915129000	기타	5.5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0	
2915139000	기타	5.5	0	
2915210000	초산	5.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5.5	0	
2915291000	초산칼슘	5.5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0	
2915299000	기타	5.5	0	
2915310000	초산에틸	5.5	0	
2915320000	초산비닐	5.5	0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915339000	기타	5.5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0	
2915391000	초산아밀	5.5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0	
2915393000	초산메틸	5.5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0	
2915395000	초산 2-에톡시에틸	5.5	0	
2915399000	기타	5.5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0	
2915409000	기타	5.5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5	
2915600000	부탄산,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3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5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5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0	
2915702090	기타	5.5	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0	
2915909090	기타	5.5	0	
2916111000	아크릴산	6.5	0	
2916119000	기타	6.5	5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0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0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0	
2916129000	기타	6.5	0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0	
2916139000	기타	6.5	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0	
2916149000	기타	6.5	5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3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53000	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90000	기타	6.5	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0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209090	기타	6.5	0	
2916311000	벤조산	6.5	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0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0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319090	기타	6.5	5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0	
2916351000	페닐아세트산에틸	6.5	0	
2916352000	페닐아세트산이소부틸	6.5	0	
2916353000	페닐아세트산이소아밀	6.5	0	
2916359000	기타	6.5	0	
2916360000	비나파크릴(ISO)	6.5	0	
2916391000	계피산	6.5	0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399090	기타	6.5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17111000	옥살산	6.5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0	
2917121000	아디프산	6.5	0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0	
2917123090	기타	6.5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0	
2917191000	말레산	6.5	0	
2917192000	숙신산	6.5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0	
2917199000	기타	6.5	0	
2917200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 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6.5	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0	
2917329000	기타	6.5	0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 디노닐	6.5	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 디데실	6.5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헥틸	6.5	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0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0	
2917349000	기타	6.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0	
2917369000	기타	6.5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0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0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 .T.M)	6.5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17399000	기타	6.5	0	
2918111000	락트산	6.5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5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40000	시트르산	6.5	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0	
2918151090	기타	6.5	5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61000	글루콘산	6.5	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5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0	
2918191010	말산	6.5	0	
2918191090	기타	6.5	0	
2918192010	말산의 염	6.5	0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4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0	
2918199000	기타	6.5	5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0	
2918212090	기타	6.5	3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염	6.5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0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18299010	갈산	6.5	0	
2918299020	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6.5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0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999000	기타	6.5	3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	6.5	5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9901019	기타	6.5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0	
2919901090	기타	6.5	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9909000	기타	6.5	3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119000	기타	6.5	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199010	0.0-디메틸-0-(3-메틸-4-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6.5	0	
2920199090	기타	6.5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0	
2920901090	기타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0909090	기타	6.5	0	
2921111010	메틸아민	6.5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3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6.5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0	
292119906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6.5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1199090	기타	6.5	5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21229000	기타	6.5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0	
2921299000	기타	5	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0	
2921309000	기타	6.5	0	
2921411000	아닐린	6.5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0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29090	기타	6.5	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 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 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 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9010	톨루이딘	6.5	0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39099	기타	6.5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0	
2921449000	기타	6.5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 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 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 트리술폰산과 그 염	5	0	
2921459090	기타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21460000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텍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6.5	0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99000	기타	6.5	5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0	
2921519090	기타	6.5	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0	
2921599010	벤지딘	6.5	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0	
2921599090	기타	6.5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3	0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0	
2922193010	엔, 엔-디메틸-2-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90	기타	6.5	0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0	
2922199000	기타	6.5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9000	기타	6.5	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6.5	0	
2922299090	기타	6.5	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6.5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6.5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0	
2922399000	기타	6.5	0	
2922411000	리신	6.5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5	
2922421000	글루탐산	5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0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0	
2922491000	글리신	6.5	5	
2922492000	알라닌	6.5	0	
2922493000	류우신	6.5	0	
2922494000	바린	6.5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5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0	
2922499000	기타	6.5	0	
2922501000	세린	6.5	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6.5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0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2509090	기타	6.5	5	
2923101000	콜린	6.5	0	
2923102000	콜린의 염	6.5	0	
2923201000	레시틴	6.5	0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3	
2923900000	기타	6.5	3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0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6.5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0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199090	기타	6.5	0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4219000	기타	6.5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6.5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5	
2924291090	기타	6.5	0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5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0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및 이오메프롤	0	0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4299099	기타	6.5	0	
2925111000	사카린	6.5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6.5	0	
2925191000	프탈아미드	6.5	0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199090	기타	6.5	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0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299090	기타	6.5	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0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6909099	기타	6.5	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0	
2927001900	기타	6.5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0	
2927002990	기타	6.5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0	
2928009010	페릴랄틴	6.5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0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8009099	기타	6.5	5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9000	기타	6.5	0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6.5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 아미데이트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3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202090	기타	6.5	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6.5	0	
2930400000	메티오닌	6.5	0	
2930501000	캡타폴(ISO)	6.5	0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6.5	0	
2930901000	2-아미노-4- 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0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0902099	기타	6.5	0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0	
2930903020	티오페놀	6.5	0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 아미노에탄티올	6.5	0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 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4010	티오디글리콜(INN)[비스(2- 하이드록시에틸) 술파이드]	6.5	3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0	
2930904090	기타	6.5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6.5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6.5	0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6.5	0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5	0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6.5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0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0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6.5	0	
2930905090	기타	6.5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7000	오,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0	
2930909010	티오산	6.5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0	
2930909030	시스테인	6.5	3	
2930909040	시스틴	6.5	3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5	
2930909060	8-클로로-6-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토실로틴산에틸에스테르			
293090907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6.5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0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0909099	기타	6.5	5	
2931002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0	
29310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002099	기타	6.5	0	
293100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10033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0034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10035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0	
29310037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0	
2931003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2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5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003919	기타	6.5	0	
2931004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0	
2931004090	기타	6.5	0	
2931005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20	메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40	에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90	기타	6.5	0	
29310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0	
29310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0	
2931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009099	기타	6.5	3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199000	기타	6.5	0	
2932211000	쿠마린	5	0	
2932212000	메틸쿠마린	5	0	
2932213000	에틸쿠마린	5	0	
2932291000	노나락톤	5	0	
2932292000	운데카락톤	5	0	
2932293000	부티로락톤	5	0	
2932294000	산토닌	5	0	
2932295000	페놀프탈레인	5	0	
2932296000	글루쿠로노락톤	5	0	
293229700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0	
2932298000	아세틸케텐(디케텐)	5	0	
2932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299090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 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991000	디옥산	6.5	0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0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 디메틸-4- 메틸아미노피라조론-5)	6.5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0	
2933119030	설피린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0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0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3	
2933199099	기타	6.5	5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91000	리시딘	6.5	0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299090	기타	6.5	5	
2933311000	피리딘	6.5	5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0	
2933321000	피페리딘	6.5	3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0	
2933330000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 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 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 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 N) · 페치딘(INN) · 페치딘(IN 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 P) · 페노페리딘(INN) · 피프 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 NN) ·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6.5	0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6.5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메틸피페리딘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0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6.5	0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3399090	기타	6.5	3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6.5	0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0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499090	기타	6.5	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와 그 염	6.5	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 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도바르 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 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 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 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 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 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6.5	0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6.5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 론(INN) · 메타과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6.5	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0	
2933591910	피리미딘	6.5	0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591999	기타	6.5	0	
2933592010	피페라진	6.5	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0	
2933592090	기타	6.5	5	
2933599000	기타	6.5	0	
2933610000	멜라민	6.5	0	
2933691000	염화시아눌	3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0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0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699099	기타	6.5	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 카프로락탐)	3	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0	
2933791000	이사틴	6.5	0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6.5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0	
2933799000	기타	6.5	5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 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 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 N) · 디아제팜(INN) · 에스타 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 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 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 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 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 N) · 니메타제팜(INN) · 니트 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 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 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6.5	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999090	기타	6.5	5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6.5	0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109090	기타	6.5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0	
2934202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6.5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릴 디술파이드	6.5	0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209090	기타	6.5	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0	
2934309000	기타	6.5	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6.5	0	
2934991000	모르포린	6.5	0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6.5	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0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4999090	기타	6.5	3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6.5	0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5006000	술파메톡사졸	6.5	0	
2935007000	술파메톡신	6.5	0	
2935008010	술파민	6.5	0	
2935008020	술파피리딘	6.5	0	
2935008030	술파디아진	6.5	0	
2935008040	술파메라진	6.5	0	
2935008050	술파티아졸	6.5	0	
2935008090	기타	6.5	0	
293500902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5009090	기타	6.5	5	
2936210000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20000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30000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 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5	3	
2936250000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60000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3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6.5	3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3	
2936279000	기타	6.5	3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3	
2936289000	기타	6.5	3	
2936291010	비타민 B9	6.5	3	
2936291090	기타	6.5	3	
2936292000	비타민 D 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93000	비타민 H 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94000	비타민 K 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6.5	3	
2936299000	기타	6.5	3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2936909000	기타	6.5	3	
293711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7119000	기타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199000	기타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2937214000	프레드니손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온	0	0	
2937292000	소호 제 2914.50 호의 것	5.5	0	
2937299000	기타	0	0	
2937310000	에피네프린	0	0	
2937391000	소호 제 2922.50 호의 것	6.5	0	
2937399000	기타	0	0	
2937400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2937501000	소호 제 2918.19 호 또는 제 2918.9 호의 것	6.5	0	
2937502000	소호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509000	기타	0	0	
2937901000	소호 제 2933.9 호 또는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909000	기타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5	
2938903000	사포닌	6.5	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3	
2938909000	기타	6.5	3	
2939111000	모르핀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39119000	기타	0	0	
2939190000	기타	0	0	
2939200000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	0	
2939491000	놀에페드린	0	0	
2939499000	기타	0	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00	기타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2939690000	기타	0	0	
2939910000	코카인 · 에크코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 · 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0	0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	0	
2939992000	아레코린	0	0	
2939993000	피페린	0	0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	0	
2939999000	기타	0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0	
2940001030	키실로오스	6.5	3	
2940001090	기타	6.5	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0	
2940002090	기타	6.5	3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6.5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6.5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6.5	0	
2941109090	기타	6.5	3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209000	기타	6.5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2000	염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9000	기타	6.5	3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5	3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3	
2941509000	기타	6.5	3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 6-데메틸-6-메틸렌-5- 옥시테트라시클린- 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3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3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3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909099	기타	6.5	0	
2942001000	케텐	6.5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0	
2942009090	기타	6.5	0	
3001201000	선(腺) 추출물	0	0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	0	
3001203000	담낭 추출물	0	0	
3001204000	췌장 추출물	0	0	
3001205000	위장 추출물	0	0	
3001209000	기타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300190109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001902010	웅담	0	0	
3001902090	기타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3001909090	기타	0	0	
300210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2102010	헤모글로빈	0	0	
3002102020	글로불린(globulin)	0	0	
300210300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 ase)	0	0	
3002109010	면역혈청	0	0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0	0	
3002109090	기타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3002309000	기타	0	0	
3002901000	사람의 피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2903010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2903020	리신(ricin)	8	0	
3002903090	기타	0	0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0	0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3002909000	기타	0	0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3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8	3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8	0	
30032090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3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3000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3	
3003396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3399000	기타	8	3	
3003401000	항암제	8	3	
3003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3409120	키닌제제	8	0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3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3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3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3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3409900	기타	8	3	
3003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및 항암제	8	3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3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3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0	
3003909400	녹용제제	8	0	
3003909500	인삼제제	8	0	
3003909600	로열젤리 제제	8	0	
3003909900	기타	8	0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2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및 항암제	8	0	
3004209100	클로람 페니콜제제	8	3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	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3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0	
3004209900	기타	8	0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3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3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3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3000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	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4399000	기타	8	3	
3004401000	항암제	8	3	
3004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4409120	키닌제제	8	0	
3004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4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4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4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4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4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4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3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4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4409900	기타	8	0	
3004501000	비타민 A 제제	8	3	
3004502010	비타민 B1 제제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004502090	기타	8	3	
3004503000	비타민 C 제제	8	3	
3004504000	비타민 D 제제	8	0	
3004505000	비타민 E 제제	8	3	
3004506000	비타민 H 제제	8	3	
3004507000	비타민 K 제제	8	3	
3004509000	기타	8	0	
3004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및 항암제	8	0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3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3	
3004909300	녹용제제	8	0	
3004909400	인삼제제	8	3	
3004909500	로열젤리 제제	8	0	
3004909900	기타	8	0	
3005101000	반창고	0	0	
3005109000	기타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3005902000	거즈	0	0	
3005903000	붕대	0	0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	0	
3005909000	기타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0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0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8	0	
3006105090	기타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00	제 2937 호의 호르몬,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 (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0	0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gel) 조제품	6.5	3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0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3006921090	기타	0	0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	0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6922032	리신(ricin)	8	0	
3006922090	기타	0	0	
3006923000	제 3003 호 또는 제 3004 호의 것	8	0	
3006924000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것	0	0	
3006925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101001010	구아노(guano)	6.5	0	
3101001090	기타	6.5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0	
3101003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102109000	기타	6.5	0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겍염	6.5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 한다)	6.5	0	
3102501000	천연의 것	6.5	0	
3102509000	기타	6.5	0	
3102600000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겍염과 혼합물	6.5	0	
3102800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겍염	6.5	0	
3102909000	기타	6.5	0	
3103100000	과인산석회	6.5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 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6.5	0	
3103903000	그 밖의 인산석회	6.5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0	
3103909000	기타	6.5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2 이하인 것	1	0	
3104309000	기타	6.5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100 분의 30 이하인 것			
3104901090	기타	6.5	0	
3104909000	기타	1	0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제(tablet)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0	
3105200000	3 대 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0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590000	기타	6.5	0	
3105600000	2 대 비료요소인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0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909000	기타	6.5	0	
3201100000	케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6.5	0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5	0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20	미로보란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30	수마크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90	기타	6.5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6.5	0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6.5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0	
3202109000	기타	6.5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0	
3202909000	기타	6.5	0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6.5	0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6.5	0	
3203001920	백단향(白檀香)	6.5	0	
3203001930	엽록소	6.5	0	
3203001990	기타	6.5	0	
3203002010	코치니엘(cochineal)	6.5	0	
3203002020	커미즈(kermes)	6.5	0	
3203002030	세피아(sepia)	6.5	0	
3203002090	기타	6.5	0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4	0	
3204119000	기타	8	0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3000	황화염료 및 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9000	기타	8	0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6.5	0	
3204901000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	6.5	0	
3204909000	기타	6.5	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0	
3205009000	기타	6.5	0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	6.5	0	
3206190000	기타	6.5	0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11000	군청	6.5	0	
3206419000	기타	6.5	0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6.5	0	
3206429000	기타	6.5	0	
3206491000	아연회	6.5	0	
3206492000	광물성 블랙	6.5	0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6.5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6.5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99000	기타	6.5	0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0	
320710000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0	
3207202000	슬립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207209000	기타	6.5	0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6.5	0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6.5	0	
3207309000	기타	6.5	0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208101010	에나멜	6.5	0	
3208101090	기타	6.5	0	
320810200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201011	에나멜	6.5	0	
3208201019	기타	6.5	0	
32082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6.5	0	
32082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0	
3208901019	기타	6.5	0	
3208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0	
3208909019	기타	6.5	0	
3208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9101011	에나멜	6.5	0	
3209101019	기타	6.5	3	
32091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0	
3209901019	기타	6.5	0	
3209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9011	에나멜	6.5	0	
3209909019	기타	6.5	0	
3209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10001011	에나멜	6.5	0	
3210001019	기타	6.5	0	
3210001091	에나멜	6.5	0	
3210001099	기타	6.5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vernish)	6.5	0	
3210002020	락·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	6.5	0	
3210002030	역청질·피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	6.5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ernish)	6.5	0	
3210003010	디스탬퍼(distemper)	6.5	0	
3210003090	기타	6.5	0	
3211000000	조제드라이어	6.5	0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6.5	0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6.5	0	
3212909000	기타	6.5	0	
3213101000	유성 물감	6.5	0	
3213102000	수성 물감	6.5	0	
3213109000	기타	6.5	0	
3213901000	유성 물감	6.5	0	
3213902000	수성 물감	6.5	0	
3213909000	기타	6.5	0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0	
3214101090	기타	6.5	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0	
3214109000	기타	6.5	0	
3214900000	기타	6.5	0	
3215110000	흑색	6.5	0	
3215190000	기타	6.5	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0	
3215904010	유성	6.5	0	
3215904020	수성	6.5	0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0	
3215906010	유성	6.5	0	
3215906020	수성	6.5	0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9000	기타	6.5	0	
3301120000	오렌지유	5	5	
3301130000	레몬유	5	5	
3301190000	기타	5	5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5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5	
3301291000	바닐라유	5	5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5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5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5	
3301299000	기타	5	5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8	7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7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8	7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8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8	7	
3301904200	감초로 만든 것	8	7	
3301904300	홉(hop)으로 만든 것	30	7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8	7	
3301904510	백삼으로 만든 것	20	15	
3301904520	홍삼으로 만든 것	754.3	15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20	15	
3301904600	캐슈너트 쉼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8	3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8	3	
3301904800	기타	8	3	
3302101000	식품공업용	6.5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0	0	
3302102019	기타	8	0	
3302102090	기타	6.5	0	
3302900000	기타	6.5	5	
3303001000	향수	6.5	0	
3303002000	화장수	6.5	0	
3304101000	립스틱	6.5	0	
3304109000	기타	6.5	0	
3304201000	아이섀도	6.5	3	
3304209000	기타	6.5	0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3	
3304309000	기타	6.5	0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6.5	0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6.5	0	
3304919000	기타	6.5	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3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0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0	
3304999000	기타	6.5	0	
3305100000	샴푸	6.5	0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용 제품류			
3305300000	헤어래커(hair lacquer)	6.5	3	
3305901000	헤어린스	6.5	3	
3305902000	헤어크림	6.5	0	
3305909000	기타	6.5	0	
3306100000	치약	6.5	0	
3306201011	70 텍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8	0	
3306201019	기타	8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	8	0	
3306209000	기타	8	3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5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5	
3307101000	애프터 세이빙로션	6.5	5	
3307109000	기타	6.5	0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6.5	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0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6.5	0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6.5	0	
3307490000	기타	6.5	0	
3307901000	탈모제	6.5	5	
3307902000	향낭	6.5	3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6.5	0	
3307909000	기타	6.5	0	
3401111000	약용비누	6.5	0	
3401119000	기타	6.5	0	
3401191010	세탁비누	6.5	0	
3401191090	기타	6.5	0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6.5	0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0	
3402110000	음이온성	8	0	
3402120000	양이온성	8	0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402139000	기타	8	0	
3402190000	기타	8	0	
3402201000	조제 세제	6.5	0	
3402202000	조제 청정제	6.5	0	
3402209000	기타	6.5	0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6.5	0	
3402902000	조제 세제	6.5	0	
3402903000	조제 청정제	6.5	3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9000	기타	6.5	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192000	볼트 또는 너트 방출제	6.5	0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6.5	0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6.5	0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199000	기타	6.5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9000	기타	6.5	0	
34039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999000	기타	6.5	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의 것	6.5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0	
3404901020	오팔왁스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0	
3404901090	기타	6.5	3	
3404902000	조제 왁스	6.5	0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5	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0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90	기타	6.5	0	
3405909000	기타	6.5	0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6.5	0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6.5	5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6.5	0	
3501101000	커피 크림 제조용	8	7	
3501109000	기타	20	7	
3501901110	커피 크림 제조용	8	7	
3501901190	기타	20	7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	7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0	18	
3502110000	건조한 것	8	10	
3502190000	기타	8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5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8	5	
3502909000	기타	8	5	
3503001010	젤라틴	8	7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5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8	3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8	3	
3504001010	펩톤(peptone)	8	10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8	3	
3504002010	케라틴	8	3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3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3	
3504002090	기타	8	3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8	0	
3505101000	덱스트린	8	7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10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10	
3505104010	식품용	385.7	10	
3505104090	기타	385.7	10	
3505105010	식품용	385.7	10	
3505105090	기타	385.7	10	
3505109010	식품용	385.7	10	
3505109090	기타	385.7	10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1.2	10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1.2	10	
3505209000	기타	201.2	10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9000	기타	6.5	0	
3506910000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6.5	0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6.5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6.5	0	
3506999000	기타	6.5	0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6.5	3	
3507901010	트립신	6.5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0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0	
3507901040	리파제	6.5	0	
3507901090	기타	6.5	0	
3507902000	펍신	6.5	0	
3507903000	맥아효소	6.5	0	
3507904010	파파인	6.5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0	
3507904030	피신	6.5	0	
3507906010	아밀라제	6.5	0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0	
3507907000	펙틱효소	6.5	0	
3507908000	시토크롬 시(C) 산화효소	6.5	0	
3507909000	기타	6.5	0	
3601001000	흑색화약	6.5	0	
3601002000	무연화약	6.5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0	
3603001000	도화선	6.5	0	
3603002000	도폭선	6.5	0	
3603003000	뇌관	6.5	0	
3603004000	점화기	6.5	0	
3603005000	전기뇌관	6.5	0	
3604100000	불꽃제품	6.5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0	
3604909000	기타	6.5	0	
3605001000	황린(黃磷) 성냥	6.5	0	
3605009000	기타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6.5	0	
3606901010	메타 연료	6.5	0	
3606901020	헥사민	6.5	0	
3606901030	고체 알코올	6.5	0	
3606901090	기타	6.5	0	
3606902010	라이터 돌	6.5	0	
3606902090	기타	6.5	0	
3606909010	라이터 돌	6.5	0	
3606909090	기타	6.5	0	
3701100000	엑스선용	6.5	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1309100	인쇄제판용	6.5	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309910	천문용	6.5	0	
370130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3	0	
3701309999	기타	6.5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1919100	인쇄제판용	6.5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919910	천문용	6.5	0	
370191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919990	기타	6.5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3	0	
3701999100	인쇄제판용	6.5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999910	천문용	6.5	0	
3701999920	항공촬영용	6.5	0	
3701999990	기타	6.5	0	
3702100000	엑스선용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702311110	네거티브	6.5	0	
3702311120	포지티브	6.5	0	
3702311210	네거티브	6.5	0	
3702311220	포지티브	6.5	0	
3702311910	네거티브	6.5	0	
3702311920	포지티브	6.5	0	
37023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1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3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19090	기타	6.5	0	
3702321110	네거티브	6.5	0	
3702321120	포지티브	6.5	0	
3702321210	네거티브	6.5	0	
3702321220	포지티브	6.5	0	
3702321910	네거티브	6.5	0	
3702321920	포지티브	6.5	0	
37023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3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2329090	기타	6.5	0	
3702391110	네거티브	6.5	0	
3702391120	포지티브	6.5	0	
3702391210	네거티브	6.5	0	
3702391220	포지티브	6.5	0	
3702391910	네거티브	6.5	0	
3702391920	포지티브	6.5	0	
370239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9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39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399090	기타	6.5	0	
3702411010	네거티브	6.5	0	
3702411020	포지티브	6.5	0	
37024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70241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19090	기타	6.5	0	
3702421010	네거티브	6.5	0	
3702421020	포지티브	6.5	0	
37024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29090	기타	6.5	0	
3702431010	네거티브	6.5	0	
3702431020	포지티브	6.5	0	
370243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3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3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39090	기타	6.5	0	
3702441010	네거티브	6.5	0	
3702441020	포지티브	6.5	0	
370244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4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4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49090	기타	6.5	0	
3702511010	네거티브	6.5	0	
3702511020	포지티브	6.5	0	
37025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1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19090	기타	6.5	0	
3702521010	네거티브	6.5	0	
3702521020	포지티브	6.5	0	
37025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2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2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29090	기타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7025300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 한다)	6.5	0	
3702541010	네거티브	6.5	0	
3702541020	포지티브	6.5	0	
370254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4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49090	기타	6.5	0	
3702551010	네거티브	6.5	0	
3702551020	포지티브	6.5	0	
370255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5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5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59090	기타	6.5	0	
3702561010	네거티브	6.5	0	
3702561020	포지티브	6.5	0	
370256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6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56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569090	기타	6.5	0	
3702911010	네거티브	6.5	0	
3702911020	포지티브	6.5	0	
37029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1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1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19090	기타	6.5	0	
3702931010	네거티브	6.5	0	
3702931020	포지티브	6.5	0	
370293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3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39010	광전녹음용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70293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39090	기타	6.5	0	
3702941010	네거티브	6.5	0	
3702941020	포지티브	6.5	0	
370294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4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49090	기타	6.5	0	
3702951010	네거티브	6.5	0	
3702951020	포지티브	6.5	0	
370295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5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59010	광전녹음용	6.5	0	
370295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959090	기타	6.5	0	
3703101010	엑스선용	6.5	0	
3703101020	심전계용	6.5	0	
3703101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1040	기록용	6.5	0	
3703101090	기타	6.5	0	
3703109010	엑스선용	6.5	0	
3703109020	심전계용	6.5	0	
3703109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9040	기록용	6.5	0	
3703109090	기타	6.5	0	
3703201000	엑스선용	6.5	0	
3703202000	심전계용	6.5	0	
37032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204000	기록용	6.5	0	
3703209000	기타	6.5	0	
3703901000	엑스선용	6.5	0	
3703902000	심전계용	6.5	0	
37039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904000	기록용	6.5	0	
3703909000	기타	6.5	0	
3704001110	뉴스용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3704001190	기타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	0	
3704001900	기타	0	0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6.5	0	
370510100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6.5	0	
3705109000	기타	0	0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	3	0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	0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	0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	0	
3705903000	마이크로필름	0	0	
3705909010	학술연구용	0	0	
3705909020	천문용	0	0	
3705909030	항공촬영용	0	0	
3705909090	기타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6.5% 또는 195 원/m	0	
3706102000	뉴스용	6.5% 또는 4 원/m	0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6.5% 또는 26 원/m	0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 원/m	0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 원/m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품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6.5% 또는 26 원/m	0	
3706105010	네거티브	6.5% 또는 1,092 원/m	0	
3706105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 원/m	3	
3706106010	네거티브	6.5% 또는 1,560 원/m	0	
3706106020	포지티브	6.5% 또는 260 원/m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6.5% 또는 9 원/m	0	
3706902000	뉴스용	6.5% 또는 5 원/m	0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6.5% 또는 26 원/m	0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 원/m	0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 원/m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품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6.5% 또는 26 원/m	3	
3706905010	네거티브	6.5% 또는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5 원/m		
3706905020	포지티브	6.5% 또는 8 원/m	0	
3706906010	네거티브	6.5% 또는 1,092 원/m	0	
3706906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 원/m	0	
3707100000	감광유제	6.5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7901090	기타	6.5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6.5	0	
3707902910	엑스선용	6.5	0	
3707902920	인쇄제판용	6.5	0	
3707902990	기타	6.5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6.5	0	
3707903910	엑스선용	6.5	0	
3707903920	인쇄제판용	6.5	0	
3707903990	기타	6.5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6.5	0	
3707909200	조색제	6.5	0	
3707909300	세정제	6.5	0	
3707909400	섬광재료	6.5	0	
3707909900	기타	6.5	0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4	0	
3801109000	기타	6.5	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5	0	
3801900000	기타	6.5	0	
3802100000	활성탄	6.5	0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0	
3802901020	활성토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02901090	기타	6.5	0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6.5	0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6.5	0	
3804009000	기타	6.5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0	
3805900000	기타	6.5	0	
3806101000	로진(rosin)	6.5	7	
3806102000	수지산	6.5	0	
3806201000	로진염	6.5	0	
3806202000	수지산염	6.5	0	
3806209000	기타	6.5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6.5	0	
3806902000	런검(gum)	6.5	0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6.5	0	
3806909000	기타	6.5	0	
3807001000	목(木)타르·목(木)타르유 및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6.5	0	
3807002000	목(木)나프타	6.5	0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6.5	0	
3807009010	목초액	6.5	7	
3807009090	기타	6.5	0	
38085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509000	기타	6.5	3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3808919000	기타	6.5	0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929000	기타	6.5	0	
3808931000	제초제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0	
3808940000	소독제	6.5	0	
3808991000	살서제(쥐약)	6.5	0	
3808999000	기타	6.5	0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10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6.5	0	
3810109000	기타	6.5	0	
3810901000	납불임·땀질이나 용접용의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6.5	0	
3810909000	기타	6.5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1190000	기타	6.5	0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5	0	
3811290000	기타	5	0	
3811900000	기타	6.5	0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2000	디티오키아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3000	티우람 술파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5000	머캅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DM)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9000	기타	6.5	0	
3812200000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0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1230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6.5	0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6.5	0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6.5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과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0	
3814001020	초산메틸·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6.5	0	
3814001090	기타	6.5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6.5	0	
3814002190	기타	6.5	0	
3814002900	기타	6.5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6.5	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6.5	0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0	
3815129000	기타	6.5	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6.5	0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0	
3815199000	기타	6.5	0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0	
3815909000	기타	6.5	0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0	
3816009000	기타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	0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6.5	0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6.5	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6.5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나 식물·인간 또는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6.5	0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3822001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1019	기타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0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3	
3822001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9	기타	8	0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22002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2019	기타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0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0	
382200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99	기타	8	0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 퍼센트인 것	1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 퍼센트인 것	2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 퍼센트인 것	3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 퍼센트인 것	4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 퍼센트인 것	5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 퍼센트인 것	5.4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 퍼센트인 것	6.5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 퍼센트인 것	7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 퍼센트인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 퍼센트인 것	1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 퍼센트인 것	2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 퍼센트인 것	27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 퍼센트인 것	3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 퍼센트인 것	36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 퍼센트인 것	4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 퍼센트인 것	50	0	
3822003058	소호 제 3706.10.1000 호, 제 3706.10.5020 호 및 제 3706.90.6020 호의 것	6.5% 또는 182 원/m	0	
3822003059	소호 제 3706.10.2000 호 및 제 3706.90.2000 호의 것	6.5% 또는 4 원/m	0	
3822003060	소호 제 3706.10.3010 호, 제 3706.10.4000 호, 제 3706.90.3010 호 및 제 3706.90.4000 호의 것	6.5% 또는 26 원/m	0	
3822003061	소호 제 3706.10.3020 호 및 제 3706.90.3020 호의 것	6.5% 또는 468 원/m	0	
3822003062	소호 제 3706.10.3030 호 및 제 3706.90.3030 호의 것	6.5% 또는 78 원/m	0	
3822003063	소호 제 3706.10.5010 호 및 제 3706.90.6010 호의 것	6.5% 또는 1,092 원/ m	0	
3822003064	소호 제 3706.10.6010 호의 것	6.5% 또는 1,560 원/ m	0	
3822003065	소호 제 3706.10.6020 호의 것	6.5% 또는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260 원/m		
3822003066	소호 제 3706.90.1000 호 및 제 3706.90.5020 호의 것	6.5% 또는 8 원/m	0	
3822003067	소호 제 3706.90.5010 호의 것	6.5% 또는 25 원/m	0	
3823110000	스테아르산	8	0	
3823120000	올레인산	8	0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8	0	
3823191000	팔미틴산	8	0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0	
3823199000	기타	8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5	0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23709090	기타	5	0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5	0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82440000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6.5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0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3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6.5	0	
3824719000	기타	6.5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3	
3824790000	기타	6.5	3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0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5	0	
382490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6.5	0	
3824902200	탄소저항 조제품이나 세라믹솔리드 저항 조제품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249024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3	
3824902490	기타	6.5	0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40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249035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 또는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9	기타	6.5	0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382490393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로 주로 구성된 화학품의 그 밖의 혼합물	6.5	0	
3824903990	기타	6.5	0	
382490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6.5	0	
3824904200	이온교환체	6.5	0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6.5	0	
3824904400	바니시(va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6.5	0	
3824905100	잉크제거제	6.5	0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6.5	0	
3824905300	수정액	6.5	0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0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5	
3824906300	소다석회	6.5	0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6.5	0	
382490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6.5	0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0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6.5	0	
3824907200	염화파라핀	6.5	0	
3824907300	소포제	6.5	0	
3824907400	발포제	6.5	0	
3824907500	조제 탄산칼슘	6.5	0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6.5	0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0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록사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24908090	기타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 31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24909020	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다이소시아네이트(크루 드 엠디아이)	6.5	0	
3824909030	추잉껌 베이스	6.5	0	
382490905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6.5	0	
3824909090	기타	6.5	0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0	
3825301000	제 3005 호의 것	0	0	
3825302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825303000	소호 제 4015.11 호의 것	8	0	
3825304000	소호 제 9018.3 호의 것	8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490000	기타	6.5	0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6.5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690000	기타	6.5	0	
3825900000	기타	6.5	0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0	
3901109000	기타	6.5	0	
3901201000	펄프의 것	6.5	0	
3901209000	기타	6.5	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1900000	기타	6.5	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0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2900000	기타	6.5	0	
3903110000	발포성	6.5	0	
3903190000	기타	6.5	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 공중합체(ABS)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0	
3903909000	기타	6.5	0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0	
3904220000	가소화한 것	6.5	0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0	
3904690000	기타	6.5	0	
3904900000	기타	6.5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190000	기타	6.5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290000	기타	6.5	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6.5	0	
3905990000	기타	6.5	0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0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0	
3906909000	기타	8	0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0	
3907209000	기타	6.5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907309000	기타	6.5	0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0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0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0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999000	기타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0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0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6.5	0	
3908900000	기타	6.5	0	
3909101000	요소수지	6.5	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0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0	
3909300000	그 밖의 아미노수지	6.5	0	
3909400000	페놀수지	6.5	0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0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0	
3910009090	기타	6.5	0	
3911101000	석유수지	8	0	
3911102000	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8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0	
3911901000	폴리술파이드	6.5	0	
3911902000	폴리술폰	6.5	0	
3911903000	푸란수지	6.5	0	
3911909000	기타	6.5	0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5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0	
3912319000	기타	6.5	3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3	
3912399000	기타	6.5	0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6.5	0	
3912909000	기타	6.5	3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13109000	기타	6.5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0	
3913902010	염화고무	6.5	0	
3913902020	염산고무	6.5	0	
3913902030	산화고무	6.5	0	
3913902040	환화고무	6.5	0	
3913902090	기타	6.5	0	
3913909010	텍스트란	6.5	0	
3913909090	기타	6.5	0	
3914001000	양이온성	6.5	0	
3914009000	기타	6.5	0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 및 박(箔) 상태의 것	6.5	0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 및 호스 상태의 것	6.5	0	
3915109000	기타	6.5	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6.5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3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3	
3915909000	기타	6.5	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6909000	기타	6.5	0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6.5	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6.5	0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7299000	기타	6.5	3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19000	기타	6.5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3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29000	기타	6.5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39000	기타	6.5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99000	기타	6.5	0	
3917400000	연결구류	6.5	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5	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8109000	기타	6.5	0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6.5	0	
3919900000	기타	6.5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430000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0	
3920490000	기타	6.5	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590000	기타	6.5	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로 만든 것	6.5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0	
3920799000	기타	6.5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0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0991000	항공기용	6.5	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0999090	기타	6.5	0	
392111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12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0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1191090	기타	6.5	0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1192090	기타	6.5	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3090	기타	6.5	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1194090	기타	6.5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21195090	기타	6.5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0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199090	기타	6.5	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4010	경질의 것	6.5	0	
3921904020	연질의 것	6.5	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5090	기타	6.5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1906090	기타	6.5	0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907090	기타	6.5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0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3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0	
3921909090	기타	6.5	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0	
3922102000	세면대	6.5	0	
3922103000	설거지통	6.5	0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6.5	0	
3922901000	비데	6.5	0	
3922909000	기타	6.5	0	
392310000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23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923300000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400000	스풀(spool) · 콕(cop) · 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500000	뚜껑 · 마개 · 캡과 그 밖의 마개류	6.5	3	
3923900000	기타	6.5	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0	
3924902000	탁상보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6.5	0	
3924909000	기타	6.5	0	
3925100000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9252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5	0	
392530000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6.5	0	
3925900000	기타	6.5	0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6.5	0	
3926102000	바인더 및 앨범	6.5	0	
3926109000	기타	6.5	0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0	
3926300000	가구 ·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0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6.5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0	
3926902000	부채 및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0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6.5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926905000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6.5	3	
3926909000	기타	6.5	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0	
4001211000	알 · 에스 · 에스 1 엑스	0	0	
4001212000	알 · 에스 · 에스 1 호	0	0	
4001213000	알 · 에스 · 에스 2 호	0	0	
4001214000	알 · 에스 · 에스 3 호	0	0	
4001215000	알 · 에스 · 에스 4 호	0	0	
4001216000	알 · 에스 · 에스 5 호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00	기타	0	0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2	0	
4001309000	기타	2	0	
4002110000	라텍스	8	0	
4002190000	기타	8	0	
4002201000	라텍스	8	0	
4002209000	기타	8	0	
4002311000	라텍스	5	0	
4002319000	기타	5	0	
4002391000	라텍스	5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0	
4002410000	라텍스	8	0	
4002490000	기타	8	0	
4002510000	라텍스	8	0	
4002590000	기타	8	0	
4002601000	라텍스	8	0	
4002609000	기타	8	0	
4002701000	라텍스	8	0	
4002709000	기타	8	0	
4002801000	라텍스	8	0	
4002809000	기타	8	0	
4002910000	라텍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0	
4002993000	티오폴라스트(TM)	8	0	
4002999000	기타	8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 ing) 및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3	0	
400510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0	
4005109000	기타	8	0	
400520000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4005910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0	
4005999000	기타	8	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0	
4006901000	고무막대(rod)	8	0	
4006902000	고무관	8	0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8	0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 및 와셔	8	0	
4006905000	고무실	8	0	
4006909000	기타	8	0	
4007001000	고무실	8	0	
4007002000	고무끈	8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19000	기타	8	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9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0082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19000	기타	8	0	
40082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99000	기타	8	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9000	기타	8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훔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훔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90000	기타	8	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8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8	0	
4011109000	기타	8	0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4011201090	기타	8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3	
4011202090	기타	8	0	
4011209000	기타	8	0	
4011300000	항공기용	5	0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8	0	
4011500000	자전거용	8	0	
401161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01162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16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4011690000	기타	8	0	
401192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8	0	
40119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194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4011990000	기타	8	3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212000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8	0	
4012130000	항공기용	5	0	
4012190000	기타	8	0	
4012201000	항공기용	5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22090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8	0	
4012209090	기타	8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0	
4012901030	타이어 트래드	5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0	
4012909030	타이어 트래드	8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012909090	기타	8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310200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8	0	
4013200000	자전거용	8	0	
4013901000	항공기용	5	0	
4013909010	모터싸이클 또는 모터스쿠터용	8	0	
4013909020	산업용 또는 농경용	8	0	
4013909090	기타	8	0	
4014100000	콘돔	8	0	
4014901000	젓꼭지	8	3	
4014909000	기타	8	0	
4015110000	외과용	8	0	
4015190000	기타	8	0	
4015901000	잠수복	8	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3	
4015909000	기타	8	0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8	0	
4016910000	바닥 깔개와 매트	8	0	
4016920000	지우개	8	0	
4016930000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8	0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0	
4016952000	베개	8	0	
4016953000	쿠션	8	0	
4016959000	기타	8	0	
4016991010	기구 · 비행선 · 비행기계류 · 글라이더 · 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	0	
4016991090	기타	8	0	
4016992000	고무밴드	8	0	
4016993000	병마개	8	0	
4016999000	기타	8	0	
4017001000	경질 고무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1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1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1	0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1	0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1	0	
4101501019	기타	1	0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1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1	0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1	0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1	0	
4101501029	기타	1	0	
4101501090	기타	1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1901011	송아지의 원피	1	0	
4101901019	기타	1	0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1	0	
4101901099	기타	1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	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1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1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한정한다)			
4103201010	뱀의 원피	1	0	
4103201020	도마뱀의 원피	1	0	
4103201030	악어의 원피	1	0	
4103201090	기타	1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1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1	0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1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1	0	
4103901090	기타	1	0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3	0	
4103902090	기타	5	0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4190000	기타	5	0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4490000	기타	5	0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5	0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그레인(full grain)	5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7190000	기타	5	0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그레인(full grain)	5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7990000	기타	5	0	
411200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0	
4113100000	산양의 가죽	5	0	
4113200000	돼지의 가죽	5	0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5	0	
4113900000	기타	5	0	
4114100000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0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패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3	0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8	0	
4201009020	고삐줄	8	0	
4201009030	끈	8	0	
4201009040	재갈	8	0	
4201009090	기타	8	0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50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90	기타	8	0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121090	기타	8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199000	기타	8	0	
4202211010	뱀의 원피	8	0	
4202211020	도마뱀의 원피	8	0	
4202211030	악어의 원피	8	0	
4202211040	장어류의 원피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202211050	캥거루의 원피	8	3	
4202211090	기타	8	0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221090	기타	8	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299000	기타	8	0	
4202311010	뱀의 원피	8	0	
4202311020	도마뱀의 원피	8	0	
4202311030	악어의 원피	8	0	
4202311040	장어류의 원피	8	0	
4202311050	캥거루의 원피	8	0	
4202311090	기타	8	0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321090	기타	8	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399000	기타	8	0	
4202911010	뱀의 원피	8	0	
4202911020	도마뱀의 원피	8	0	
4202911030	악어의 원피	8	0	
4202911040	장어류의 원피	8	0	
4202911050	캥거루의 원피	8	0	
4202911090	기타	8	0	
42029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3	
4202921090	기타	8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8	3	
420299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203101010	코트류	13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1050	조끼류	13	0	
4203101060	바지류	13	0	
4203101070	스커트류	13	0	
4203101080	오버롤류	13	0	
4203101090	기타	13	0	
4203102010	코트류	13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2050	조끼류	13	0	
4203102060	바지류	13	0	
4203102070	스커트류	13	0	
4203102080	오버롤류	13	0	
4203102090	기타	13	0	
4203103010	코트류	13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3050	조끼류	13	0	
4203103060	바지류	13	0	
4203103070	스커트류	13	0	
4203103080	오버롤류	13	0	
4203103090	기타	13	0	
4203109010	코트류	13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9050	조끼류	13	0	
4203109060	바지류	13	0	
4203109070	스커트류	13	0	
4203109080	오버롤류	13	0	
4203109090	기타	13	0	
4203211000	야구장갑	13	0	
4203212000	골프장갑	13	0	
4203213000	스키장갑	13	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0	
4203215000	배팅장갑	13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0	
4203219000	기타	13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0	
4203299000	기타	13	0	
4203301010	뱀의 원피	13	0	
4203301020	도마뱀의 원피	13	0	
4203301030	악어의 원피	13	0	
4203301040	장어류의 원피	13	0	
4203301090	기타	13	0	
4203309000	기타	13	0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3	0	
4205001110	벨트	8	0	
4205001190	기타	8	0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8	0	
4205002110	벨트	8	0	
4205002190	기타	8	0	
42050029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8	0	
4206001000	캣거트(catgut)	8	0	
4206009000	기타	8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3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3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3	
4301801000	친칠라의 것	3	3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3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3	3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3	
4301805000	토끼의 것	3	3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3	
4301809000	기타	3	3	
4301900000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3	
4302110000	밍크의 것	5	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193000	여우의 것	5	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0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5	0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5	3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3	
4302199010	면양의 것	5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 · 인도 · 중국 · 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2199090	기타	5	0	
4302201000	밍크의 것	5	0	
4302202000	토끼의 것	5	0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205000	여우의 것	5	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0	
4302209010	오파섬(opossum)의 것	5	0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5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0	
4302209090	기타	5	0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한정한다)			
4303101100	밍크의 것	16	0	
4303101200	토끼의 것	16	5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5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1600	여우의 것	16	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0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16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1990	기타	16	0	
4303102100	밍크의 것	16	0	
4303102200	토끼의 것	16	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2600	여우의 것	16	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2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0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16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2990	기타	16	0	
4303900000	기타	16	0	
4304001000	인조모피	8	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0	
4401100000	땃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2	3	
4401210000	침엽수류	2	3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	0	
4401229000	기타	2	3	
4401301000	목재 펠릿(pellet)	2	3	
4401309000	기타	2	3	
4402101000	성형 목탄	2	3	
4402109000	기타	2	3	
4402901000	성형 목탄	2	3	
4402909000	기타	2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	0	
4403102000	활엽수류	0	0	
4403109000	침엽수류	0	0	
4403201000	삼나무	0	0	
4403202010	더글러스퍼	0	0	
4403202020	헴록(Hemlock)	0	0	
4403203000	적송	0	0	
4403204000	전나무	0	0	
4403205000	낙엽송	0	0	
4403207000	가문비나무	0	0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4403209000	기타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0	0	
4403492010	티크(Teak)	0	0	
4403492020	케루잉	0	0	
4403492030	카폴	0	0	
4403492040	제루통	0	0	
4403492090	기타	0	0	
4403493000	오꾸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사펠리(Sapelli) · 시뵘(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코레(Makoré) 및 이로코(Iroko)	0	0	
4403494000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na) · 이롬바(Ilomba) · 디벤투(Dibétou) · 림바(Limba) 및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아조베(Azobé)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	0	
4403499000	기타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	0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0	0	
4403991010	자단(rosewood)	0	0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4403991050	호두나무	0	0	
4403991090	기타	0	0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	0	
4403993010	사시나무	0	0	
4403993020	포플러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4403993050	자작나무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4403999011	말라스(Malas)	0	0	
4403999012	타운(Taun)	0	0	
4403999019	기타	0	0	
4403999090	기타	0	0	
4404102000	목재의 봉	5	5	
4404109000	기타	5	5	
4404202000	목재의 봉	5	5	
4404209000	기타	5	5	
44050000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5	5	
440610000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5	5	
4406900000	기타	5	5	
4407101000	삼나무	5	7	
4407102000	미송	5	3	
4407103000	적송	5	7	
4407104000	전나무	5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07105000	낙엽송	5	7	
4407107000	가문비나무	5	3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7	
4407109000	기타	5	7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	7	
4407220000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i a) 및 발사(Balsa)	5	7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7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5	7	
4407270000	사펠리(Sapelli)	5	7	
4407280000	이로코(Iroko)	5	7	
4407291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풀(Kapur) · 종콩(Jong 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및 캄파스(Kempas)	5	7	
4407292000	티크(Teak)	5	7	
4407293000	오꾸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시뽀(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꼬레(Makoré) ·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벤투(Dibétou) · 림바(Limba) 및 아조베(Azobé)	5	7	
4407299000	기타	5	7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	7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	7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	7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	7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	7	
4407991010	자단(rosewood)	5	7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	7	
4407991040	호두나무	5	7	
4407991090	기타	5	7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7	
4407993010	사시나무	5	7	
4407993020	포플러	5	7	
4407993040	느릅나무	5	7	
4407993050	자작나무	5	7	
4407993060	피나무	5	7	
4407994000	오동나무	5	7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5	3	
4407999090	기타	5	7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4408109100	합판 제조용	3	0	
4408109200	무늬목	3	5	
4408109910	삼나무	5	5	
4408109920	미송	5	5	
4408109930	적송	5	5	
4408109940	전나무	5	5	
4408109950	낙엽송	5	5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5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5	
4408109990	기타	5	5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08319011	합판 제조용	3	3	
4408319012	무늬목	3	5	
4408319019	기타	5	5	
4408319021	합판 제조용	3	3	
4408319022	무늬목	3	5	
4408319029	기타	5	5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4408399011	합판 제조용	3	3	
4408399012	무늬목	3	5	
4408399019	기타	5	5	
4408399021	합판 제조용	3	3	
4408399022	무늬목	3	5	
4408399029	기타	5	5	
4408399031	합판 제조용	3	3	
4408399032	무늬목	3	5	
4408399039	기타	5	5	
4408399041	합판 제조용	3	3	
4408399042	무늬목	3	5	
4408399049	기타	5	5	
4408399051	합판 제조용	3	3	
4408399052	무늬목	3	5	
4408399059	기타	5	5	
4408399091	합판 제조용	3	3	
4408399092	무늬목	3	5	
4408399099	기타	5	5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5	
4408909150	합판 제조용	3	3	
4408909160	무늬목	3	5	
4408909191	자단(rosewood)	5	5	
4408909192	흑단(ebony wood)	5	5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5	
4408909194	호두나무	5	5	
4408909195	참나무	5	5	
4408909199	기타	5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08909210	합판 제조용	3	3	
4408909220	무늬목	3	5	
4408909290	기타	5	5	
4408909370	합판 제조용	3	3	
4408909380	무늬목	3	5	
4408909391	사시나무	5	5	
4408909392	포플러	5	5	
4408909393	단풍나무	5	5	
4408909394	느릅나무	5	5	
4408909395	자작나무	5	5	
4408909396	피나무	5	5	
4408909410	합판 제조용	3	3	
4408909420	무늬목	3	5	
4408909490	기타	5	5	
4408909912	합판 제조용	3	3	
4408909913	무늬목	3	5	
4408909914	바보엔(baboen)	5	5	
4408909919	기타	5	5	
4408909991	합판 제조용	3	3	
4408909992	무늬목	3	5	
4408909999	기타	5	5	
4409100000	침엽수류	8	5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12	
4409290000	기타	8	12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E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19000	기타	8	10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5	
4410129000	기타	8	15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10191090	기타	8	15	
4410199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5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5	
4410199090	기타	8	15	
4410900000	기타	8	15	
44111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29000	기타	8	10	
44111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39000	기타	8	10	
44111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142010	마루판	8	15	
4411142090	기타	8	10	
4411149000	기타	8	10	
44119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922010	마루판	8	15	
4411922090	기타	8	15	
4411929000	기타	8	15	
44119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2	
4411932010	마루판	8	15	
4411932090	기타	8	15	
4411939000	기타	8	15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15	
4411949000	기타	8	15	
441210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1210102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2	
4412102000	마루판	8	12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2	
4412109090	기타	8	12	
441231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1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1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14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1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20	
441231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441231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2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2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2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24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2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20	
441232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2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9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91090	기타	10	12	
4412399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2	
4412399090	기타	10	10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8	12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8	12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8	12	
44129910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991019	기타	8	12	
441299102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991029	기타	8	12	
441299103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991039	기타	8	12	
4412991041	마루판[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2	
4412991042	마루판(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2	
4412991043	기타[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12	
4412991049	기타	8	12	
4412992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992090	기타	8	12	
4412993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10	12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4412993090	기타	8	12	
44129991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20	
4412999119	기타	8	12	
441299919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0	
4412999199	기타	8	12	
44129992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20	
4412999219	기타	8	12	
441299929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999299	기타	8	12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10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1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10	
4415200000	팔릿(pallet)·박스팔릿(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칼러(pallet collar)	8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tub) 및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8	10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 신발의 나무로 만든 골	8	10	
441810000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8	10	
4418200000	문 · 문틀 및 문지방	8	10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8	10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8	10	
4418600000	기둥과 들보	8	10	
441871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0	
4418719000	기타	8	10	
441872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0	
4418729000	기타	8	10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0	
4418799000	기타	8	10	
4418901000	셀룰러우드패널	8	10	
4418909000	기타	8	10	
4419001000	대접(공기)	8	10	
4419002010	대나무로 만든 것	8	10	
4419002090	기타	8	10	
4419009000	기타	8	10	
4420101000	작은 조각상	8	10	
4420109000	기타	8	10	
4420901000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8	10	
4420902010	담배상자	8	10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442090203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0	
4420902090	기타	8	10	
4420909010	담배용 상자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42090902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0	
4420909090	기타	8	10	
4421100000	옷걸이	8	10	
4421901010	보빈	8	10	
4421901090	기타	8	10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못	8	10	
4421903000	이쑤시개	8	10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10	
4421905000	부채 및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살과 자루(살과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10	
4421909000	기타	8	10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0	
4501900000	기타	8	10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8	10	
4503100000	마개	8	10	
4503900000	기타	8	10	
4504100000	블록·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8	10	
4504900000	기타	8	10	
4601211000	매트류	8	0	
4601212000	발	8	0	
4601221000	매트류	8	0	
4601222000	발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601291000	매트류	8	0	
4601292000	발	8	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29000	기타	8	0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49000	기타	8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8	0	
4601999000	기타	8	0	
4602111000	바구니	8	10	
4602112000	쟁반, 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	10	
4602119000	기타	8	10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10	
4602191000	골풀제품	8	0	
4602199000	기타	8	0	
4602900000	기타	8	0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4703110000	침엽수류	0	0	
4703190000	활엽수류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4704110000	침엽수류	0	0	
4704190000	활엽수류	0	0	
4704210000	침엽수류	0	0	
4704290000	활엽수류	0	0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1000	기계펄프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0	
4802200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0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	0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109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9090	기타	0	0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1020	복사용지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51040	팬시지	0	0	
4802551090	기타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9090	기타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1020	복사용지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61040	팬시지	0	0	
4802561090	기타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9090	기타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1020	복사용지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71040	팬시지	0	0	
4802571090	기타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9090	기타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1020	팬시지	0	0	
480258109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2090	기타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9090	기타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1020	복사용지	0	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11040	팬시지	0	0	
4802611090	기타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9090	기타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1020	복사용지	0	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21040	팬시지	0	0	
4802621090	기타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9090	기타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1020	복사용지	0	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91040	팬시지	0	0	
4802691090	기타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909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030010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것에 한한다)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0	
4803009000	기타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190000	기타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290000	기타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19000	기타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99000	기타	0	0	
48044110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1090	기타	0	0	
48044190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9090	기타	0	0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42103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1090	기타	0	0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9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0442903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9090	기타	0	0	
480449100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99000	기타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 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52300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529000	기타	0	0	
4804590000	기타	0	0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0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0	
4805190000	기타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49000	기타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59000	기타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5919090	기타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29000	기타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05939000	기타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	0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0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0	
4806409000	기타	0	0	
480700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 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4808200000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300000	그 밖의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900000	기타	0	0	
4809201000	한 겹의 것	0	0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4809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의 것	0	0	
4809902090	기타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09909000	기타	0	0	
481013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4810139000	기타	0	0	
481014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4810149000	기타	0	0	
481019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10199000	기타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	0	
4810290000	기타	0	0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 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1200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19000	기타	0	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 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2200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29000	기타	0	0	
4810390000	기타	0	0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0	0	
4810921090	기타	0	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	0	
4810929000	기타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4810999000	기타	0	0	
4811101000	루팡지	0	0	
4811109000	기타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0	
4811490000	기타	0	0	
481151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65 그램 이하인 것	0	0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11519019	기타	0	0	
4811519090	기타	0	0	
4811590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11600000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 (stearin) · 기름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0	0	
4811901010	패션, 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0	0	
4811901090	기타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4811902090	기타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	0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0	
4813200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0	
4813900000	기타	0	0	
4814100000	인그레인지	0	0	
4814201000	벽지	0	0	
4814202000	링크라스타	0	0	
4814209000	기타	0	0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	0	
4814901090	기타	0	0	
4814909000	기타	0	0	
4816201000	한 겹의 것	0	0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4816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	0	
4816902090	기타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4816909000	기타	0	0	
4817100000	봉투	0	0	
4817200000	봉함엽서 · 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 및 필기첩(안에 종으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월	0	0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	0	
481840100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0	0	
4818409000	기타	0	0	
4818500000	의류 및 의류부속품	0	0	
4818900000	기타	0	0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4819300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0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	0	
4819509000	기타	0	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4820200000	연습장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 및 서류철 표지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0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0	
4820900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4821900000	기타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	0	
4822900000	기타	0	0	
48232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 및 다이알	0	0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823690000	기타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 또는 프레스한 제품	0	0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	0	
4823901090	기타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19	기타	0	0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29	기타	0	0	
4823903090	기타	0	0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	0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9019	기타	0	0	
4823909090	기타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4901109000	기타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4901919000	기타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4901999000	기타	0	0	
4902101010	신문	0	0	
4902101090	기타	0	0	
4902109000	기타	0	0	
4902901010	잡지	0	0	
490290109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4902909010	잡지	0	0	
4902909090	기타	0	0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0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4905919000	기타	0	0	
4905990000	기타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4906002000	도안	0	0	
4906009000	기타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4907009000	기타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c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	0	
4908909000	기타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4910009000	기타	0	0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4911919000	기타	0	0	
4911990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 또는 5,276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0	
5002001010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10	
5002001020	20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0	
5002001030	25.56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0	
5002001040	28.89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0	
5002001050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 원 /kg, 양자 중 고액 (율)	10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3	3	
5002009000	기타	8	3	
5003001100	누에고치 웨이스트	2	0	
5003001200	폴섬	2	0	
5003001300	비수	2	0	
5003001400	생피저	2	0	
5003001900	기타	2	0	
5003009100	페니	2	0	
5003009200	견노일(부렛)	2	0	
5003009900	기타	2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8	0	
5005001000	견수방사	8	0	
5005002000	견방사	8	0	
5005003000	견방주사	8	0	
5006001000	견사	8	0	
5006002000	견수방사	8	0	
5006003000	견방사	8	0	
5006004000	견방주사	8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8	0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13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	0	
5007202020	사틴	13	0	
5007202030	크렘 데신(crepe de chine)	13	0	
5007202090	기타	13	0	
5007209000	기타	13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9000	기타	13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5101190000	기타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5101290000	기타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00	기타	0	0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	0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0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104000000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	0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5105291000	순모울톱	0	0	
5105292000	혼방울톱	0	0	
5105293000	조사	0	0	
5105299000	기타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00	기타	0	0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8	0	
5106109000	기타	8	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9000	기타	8	0	
5107101000	순모의 것	8	0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8	0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8	0	
5109101000	양모사	8	0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0	
5109901000	양모사	8	0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8	0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1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1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1900000	기타	13	0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2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2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2900000	기타	13	0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201001000	실면(實綿)	0	0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이상 25.4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 밀리미터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이상 28.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 밀리미터 이상 34.9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0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5202990000	기타	0	0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0	
5204190000	기타	8	0	
5204200000	소매용	8	0	
5205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19000	기타	8	0	
52051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4	0	
5205121090	기타	8	0	
5205129000	기타	8	0	
5205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39000	기타	8	0	
5205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49000	기타	8	0	
5205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5205159000	기타	8	0	
5205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219000	기타	8	3	
5205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229000	기타	8	3	
5205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239000	기타	8	3	
5205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249000	기타	8	3	
52052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269000	기타	8	3	
52052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279000	기타	8	3	
52052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289000	기타	8	3	
5205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19000	기타	8	0	
52053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4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205321090	기타	8	0	
5205329000	기타	8	0	
5205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39000	기타	8	0	
5205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49000	기타	8	0	
5205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59000	기타	8	0	
5205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419000	기타	8	3	
5205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429000	기타	8	3	
5205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439000	기타	8	3	
5205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449000	기타	8	3	
52054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469000	기타	8	3	
52054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5479000	기타	8	3	
52054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5205489000	기타	8	3	
5206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119000	기타	8	0	
52061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29000	기타	8	0	
5206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39000	기타	8	0	
5206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49000	기타	8	0	
5206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59000	기타	8	0	
5206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219000	기타	8	3	
5206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229000	기타	8	3	
5206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239000	기타	8	3	
5206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249000	기타	8	3	
52062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5206259000	기타	8	3	
5206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19000	기타	8	0	
52063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29000	기타	8	0	
5206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39000	기타	8	0	
5206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49000	기타	8	0	
5206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59000	기타	8	0	
5206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419000	기타	8	3	
5206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429000	기타	8	3	
5206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439000	기타	8	3	
5206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3	
5206449000	기타	8	3	
52064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5206459000	기타	8	3	
52071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109000	기타	8	0	
52079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909000	기타	8	0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1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1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2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2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3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포함한다]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4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5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599000	기타	10	0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2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 物)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420000	데님(denim)	10	0	
5209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1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199000	기타	10	0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2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299000	기타	10	0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4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499000	기타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200000	표백한 것	10	0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420000	데님(denim)	10	0	
5211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0	
5212120000	표백한 것	10	0	
5212130000	염색한 것	1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212150000	날염한 것	1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0	
5212220000	표백한 것	10	0	
5212230000	염색한 것	1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212250000	날염한 것	10	0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3	
5301290000	기타	2	3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2	3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2	3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3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인 것은 제외한다)	2	3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2	3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2	3	
5303101000	황마	2	0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靸皮)섬유	2	0	
5303901010	황마	2	0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靸皮)섬유	2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靸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5001010	생 것	2	0	
5305001090	기타	2	0	
5305002010	생 것	2	0	
5305002090	기타	2	0	
5305003010	생 것	2	0	
5305003090	기타	2	0	
5305009010	생 것	2	0	
5305009090	기타	2	0	
5306101000	순아마사	8	0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0	
5306201000	순아마사	8	0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0	
5307101000	황마사	8	0	
5307109000	기타	8	0	
5307201000	황마사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307209000	기타	8	0	
5308100000	코이어(coir)사	8	0	
5308200000	대마사	8	0	
5308901000	라미(ramie)사	8	0	
5308909000	기타	8	0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190000	기타	2	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290000	기타	2	0	
5310101000	황마직물	8	0	
5310109000	기타	8	0	
5310901000	황마직물	8	0	
5310909000	기타	8	0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8	0	
5311002000	대마의 것	8	0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8	0	
5311009000	기타	8	0	
540110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1109000	기타	8	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401209000	기타	8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0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12	어망사	8	0	
5402191019	기타	8	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22	어망사	8	0	
5402191029	기타	8	0	
5402191090	기타	8	0	
5402199000	기타	8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40231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31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311090	기타	8	0	
5402319000	기타	8	0	
540232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32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321090	기타	8	0	
5402329000	기타	8	0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339000	기타	8	0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390000	기타	8	0	
5402440000	탄성사	8	0	
540245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45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451090	기타	8	0	
5402459000	기타	8	0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69000	기타	8	0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79000	기타	8	0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499000	기타	8	0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599000	기타	8	0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269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19000	기타	2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29000	기타	2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39000	기타	8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99000	기타	8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419000	기타	2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29000	기타	8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99000	기타	8	0	
5404110000	탄성사	8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419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4199000	기타	8	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8	0	
5404909000	기타	8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0	
5405009000	기타	8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0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8	0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0	
5407300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8	0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407420000	염색한 것	8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440000	날염한 것	8	0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520000	염색한 것	8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540000	날염한 것	8	0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612000	염색한 것	8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614000	날염한 것	8	0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692000	염색한 것	8	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694000	날염한 것	8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19000	기타	8	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29000	기타	8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39000	기타	8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49000	기타	8	0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19000	기타	8	0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29000	기타	8	0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39000	기타	8	0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49000	기타	8	0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19000	기타	8	0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29000	기타	8	0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39000	기타	8	0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49000	기타	8	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0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8220000	염색한 것	8	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8240000	날염한 것	8	0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8320000	염색한 것	8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408340000	날염한 것	8	0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0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1900000	기타	8	0	
55020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7.5	0	
550200201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0	
550200202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0	
5502009000	기타	7.5	0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19000	기타	8	0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99000	기타	8	0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503209090	기타	8	0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3301090	기타	8	0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3302090	기타	8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3900000	기타	8	0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2	0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2	0	
5504109000	기타	2	0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4	0	
5504909000	기타	8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0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0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506109000	기타	8	0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209000	기타	8	0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6301090	기타	8	0	
5506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8	0	
5506302090	기타	8	0	
5506900000	기타	8	0	
55070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8	0	
5507001090	기타	8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7009000	기타	8	0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8109000	기타	8	0	
5508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8209000	기타	8	0	
5509111000	강력사	8	3	
5509119000	기타	8	3	
5509121000	강력사	8	3	
5509129000	기타	8	3	
5509211000	강력사	8	3	
5509219000	기타	8	3	
5509221000	강력사	8	3	
5509229000	기타	8	3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3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3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3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3	
5509410000	단사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3	
550951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3	
550952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3	
550953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8	3	
5509590000	기타	8	3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3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3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3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3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3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3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3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3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3	
5509919000	기타	8	3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3	
5509929000	기타	8	3	
5509990000	기타	8	3	
551011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3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3	
5510119000	기타	8	3	
551012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3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3	
5510129000	기타	8	3	
5510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3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3	
5510209000	기타	8	3	
55103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3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3	
5510309000	기타	8	3	
55109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3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510909000	기타	8	3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11109000	기타	8	0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11209000	기타	8	0	
55113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1309000	기타	8	0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2191000	염색한 것	1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512193000	날염한 것	1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0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2290000	기타	10	0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19000	기타	10	0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99000	기타	1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199000	기타	1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3239000	기타	10	0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299000	기타	1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399000	기타	1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499000	기타	1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4199000	기타	1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299000	기타	1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499000	기타	1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19000	기타	1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29000	기타	1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39000	기타	1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99000	기타	1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19000	기타	1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29000	기타	1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99000	기타	1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919000	기타	1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999000	기타	10	0	
551611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19000	기타	10	0	
551612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29000	기타	10	0	
551613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39000	기타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51614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49000	기타	10	0	
551621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19000	기타	10	0	
551622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29000	기타	10	0	
551623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39000	기타	10	0	
551624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49000	기타	10	0	
551631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19000	기타	10	0	
551632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29000	기타	10	0	
551633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39000	기타	10	0	
551634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49000	기타	10	0	
551641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19000	기타	10	0	
551642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29000	기타	10	0	
551643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39000	기타	10	0	
551644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516449000	기타	10	0	
551691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19000	기타	10	0	
551692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29000	기타	10	0	
551693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39000	기타	10	0	
551694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0	0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49000	기타	10	0	
5601100000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8	0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601290000	기타	8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8	0	
5601309000	기타	8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8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8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8	0	
5602219000	기타	8	0	
56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5602900000	기타	8	0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19000	기타	8	0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29000	기타	8	0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3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49000	기타	8	0	
56039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3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4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1000	모조 켓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또는 도포한 것)	8	0	
5604909000	기타	8	0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8	0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8	0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8	0	
5606009000	기타	8	0	
5607210000	포장용 끈	10	0	
5607290000	기타	10	0	
5607410000	포장용 끈	10	0	
5607490000	기타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790100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10	0	
5607909000	기타	10	0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8119000	기타	10	0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8199000	기타	10	0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5608909000	기타	10	0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0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609009000	기타	8	0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100000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10	0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32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4100000	타일(tile) (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704900000	기타	10	0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0	
5801101000	파일(pile)직물	13	0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0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240000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 직물	13	0	
58012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0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340000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 직물	13	0	
58013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802190000	기타	8	0	
58022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0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8	0	
580300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8	0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5804109000	기타	13	0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04299000	기타	13	0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3	0	
58050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5001090	기타	8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8	0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06109000	기타	8	0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39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0	
580639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8	0	
5807101000	레이블(label)	8	0	
5807109000	기타	8	0	
5807901000	레이블(label)	8	0	
5807909000	기타	8	0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8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8	0	
5808909000	기타	8	0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8	0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8	0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11009000	기타	8	0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0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8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0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0	
5902900000	기타	8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0	
5903900000	기타	10	0	
5904100000	리놀륨	8	0	
5904900000	기타	8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8	0	
5906100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	0	
5906990000	기타	8	0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	0	
5907002000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0	
5907009000	기타	8	0	
5908001000	심지	8	0	
5908009000	기타	8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8	0	
5911109000	기타	8	0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0	
59113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8	0	
59113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8	0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0	
5911900000	기타	8	0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109000	기타	10	0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6002900000	기타	10	0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003900000	기타	1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6004900000	기타	1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220000	염색한 것	1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240000	날염한 것	10	0	
6005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320000	염색한 것	10	0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340000	날염한 것	1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420000	염색한 것	1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440000	날염한 것	10	0	
6005900000	기타	10	0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220000	염색한 것	1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240000	날염한 것	10	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320000	염색한 것	10	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340000	날염한 것	1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420000	염색한 것	1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440000	날염한 것	10	0	
6006900000	기타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3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3	
6104199000	기타	13	3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3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3	
6104499000	기타	13	3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3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3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3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5909000	기타	13	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106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6909000	기타	13	3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3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3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7999000	기타	13	0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199000	기타	13	0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8999000	기타	13	0	
6109101000	티셔츠	13	0	
6109109000	기타	13	0	
6109901010	티셔츠	13	0	
6109901090	기타	13	3	
6109902010	티셔츠	13	3	
6109902090	기타	13	0	
6109903010	티셔츠	13	0	
6109903090	기타	13	0	
6109909010	티셔츠	13	0	
6109909090	기타	13	0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13	0	
6110190000	기타	13	0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0909000	기타	13	0	
6111201000	의류	13	3	
6111202000	부속품	13	0	
6111301000	의류	13	3	
6111302000	부속품	13	0	
6111901000	의류	13	0	
6111902000	부속품	13	0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209000	기타	13	0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3001000	제 5903 호의 것	13	0	
6113002000	제 5906 호의 것	13	0	
6113003000	제 5907 호의 것	13	0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3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4909000	기타	13	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0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3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309000	기타	13	0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8	0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0	
6116929000	기타	8	0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3	
6117109000	기타	13	0	
6117801000	백타이류	13	3	
6117809000	기타	13	0	
6117900000	부분품	13	0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299000	기타	13	0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3429000	기타	13	0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3	
6204199000	기타	13	3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299000	기타	13	3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399000	기타	13	0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3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499000	기타	13	3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3	
6204599000	기타	13	0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0	
6204629000	기타	13	0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3	
6204699000	기타	13	3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05909000	기타	13	0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3	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3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199000	기타	13	0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3	
6207999000	기타	13	3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199000	기타	13	3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08999000	기타	13	3	
6209201000	의류	13	0	
6209202000	부속품	13	0	
6209301000	의류	13	0	
6209302000	부속품	13	0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9901090	기타	13	0	
6209902000	부속품	13	0	
6210101000	제 5602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102000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119000	기타	13	3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3	
6211129000	기타	13	0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209000	기타	13	0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3	
6211329000	기타	13	0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211399000	기타	13	0	
6211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3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0	
6211429000	기타	13	0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2109000	기타	13	0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3	
6212209000	기타	13	0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13	0	
6212900000	기타	13	0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0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8	3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0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3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6001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0	
6216009000	기타	8	0	
6217100000	부속품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217900000	부분품	13	0	
6301100000	전기모포	10	0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3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109000	기타	13	0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3	0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3199000	기타	13	3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3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3	0	
6304190000	기타	13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3	3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510000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로 만든 것	8	0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0	
6305390000	기타	8	0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306300000	돗	13	0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69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999000	기타	13	0	
6307100000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0	
630720000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10	0	
6307901000	신발류 끈	10	0	
6307902000	보자기	10	3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10	0	
6307909000	기타	10	0	
630800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0	
6310100000	선별한 것	8	0	
6310900000	기타	8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8	0	
6401921000	스키부츠	8	0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29090	기타	8	0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91090	기타	8	0	
6401999000	기타	8	0	
6402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	0	
6402190000	기타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2911000	방한화	13	0	
640291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19000	기타	13	3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0	
640299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99000	기타	13	0	
6403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	0	
6403190000	기타	13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511000	드레스화	13	0	
6403519000	기타	13	0	
6403591000	드레스화	13	0	
6403599000	기타	13	0	
6403911000	드레스화	13	0	
6403912000	등산화	13	0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1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19000	기타	13	0	
6403991000	드레스화	13	0	
6403992000	등산화	13	0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9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403999000	기타	13	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4191000	실내화	13	0	
6404199000	기타	13	0	
6404201000	실내화	13	0	
6404209000	기타	13	0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3	0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0	
6405900000	기타	13	0	
6406101000	갑피	8	0	
6406102000	부분품	8	0	
6406201000	바깥바닥	8	0	
6406202000	뒷굽	8	0	
6406910000	목재로 만든 것	8	0	
640699100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8	0	
6406992000	힐 쿠션	8	0	
6406993000	각반	8	0	
6406994000	레깅	8	0	
6406999000	기타	8	0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 (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8	0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 (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6505100000	헤어네트	8	0	
6505901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50590109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0	
6505902010	운동모	8	0	
6505902020	베레모	8	0	
6505902090	기타	8	0	
6505909000	기타	8	0	
6506100000	안전모자	8	0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8	0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0	
6506999000	기타	8	0	
65070000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및 턱끈	8	0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3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3	0	
6601991000	지팡이 겸용 우산	13	0	
6601992000	양산	13	0	
6601999000	기타	13	0	
6602001000	지팡이	8	0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8	0	
6602003000	채찍 · 승마용 채찍	8	0	
6602009000	기타	8	0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0	
6603900000	기타	13	0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 · 깃털의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와 깃촉(quill)은 제외한다]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8	0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8	0	
6702909000	기타	8	0	
6703001010	세척 · 정돈한 것	8	0	
6703001090	기타	8	0	
6703009000	기타	8	0	
6704110000	전체가발	8	0	
6704191000	부분가발	8	0	
6704192000	가수염	8	0	
6704193000	가눈썹	8	0	
6704194000	가속눈썹	8	0	
6704199000	기타	8	0	
6704201000	전체가발	8	0	
6704202000	부분가발	8	0	
6704203000	가수염	8	0	
6704204000	가눈썹	8	0	
6704205000	가속눈썹	8	0	
6704209000	기타	8	0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6801000000	포석 · 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8	0	
680210000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및 가루	8	0	
6802211000	대리석	8	0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0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802230000	화강암	8	7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0	
6802299000	기타	8	7	
6802911000	대리석	8	0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0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0	
6802930000	화강암	8	7	
6802990000	그 밖의 돌	8	7	
6803001000	벼루	8	7	
6803009000	기타	8	7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밀링(milling)용 · 그라인딩(g 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0	
6804210000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5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8	0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8	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8	0	
6806102000	암면(rock wool)	8	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0	
6806109000	기타	8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8	0	
6806202000	팽창점토	8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806209000	기타	8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0	
6806909000	기타	8	0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8	0	
6807900000	기타	8	0	
68080000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 [식물성 섬유 · 짚 또는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0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3	
6809190000	기타	8	3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8	0	
6810111000	블록	8	0	
6810112000	벽돌	8	0	
6810191000	타일	8	0	
6810192000	판석	8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0	
6810199000	기타	8	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0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8	0	
6810992000	파일	8	0	
6810993000	전신주	8	0	
6810994000	철도 침목	8	0	
6810995000	관	8	0	
6810999000	기타	8	0	
6811401010	지붕 · 천장 ·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1090	기타	8	0	
6811402010	지붕 · 천장 ·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20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811403000	관 · 관의 연결구류	8	0	
6811409010	지붕 · 천장 ·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9090	기타	8	0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8	0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0	
6811830000	관 · 관의 연결구류	8	0	
6811890000	그 밖의 제품	8	0	
6812801000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8	0	
6812802000	종이 · 표지용 판지 및 펄트(felt)	8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8	0	
6812809000	기타	8	0	
6812910000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8	0	
6812920000	종이 · 표지용 판지 및 펄트(felt)	8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8	0	
6812990000	기타	8	0	
6813201010	자동차용	8	0	
6813201090	기타	8	0	
6813202010	자동차용	8	0	
6813202090	기타	8	0	
6813209010	자동차용	8	0	
6813209090	기타	8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8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899000	기타	8	0	
6814100000	판 · 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814900000	기타	8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0	
6815102000	탄소섬유	8	0	
6815109000	기타	8	0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8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0	
6815990000	기타	8	5	
6901001000	벽돌	8	0	
6901002000	블록	8	0	
6901003000	타일	8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0	
6901009090	기타	8	0	
6902100000	마그네슘 ·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0	
6902200000	알루미나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8	0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902909000	기타	8	0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8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3	0	
6903102090	기타	8	0	
6903103000	반응그릇	8	0	
6903104000	머플	8	0	
6903105000	노즐	8	0	
6903106000	플러그(plug)	8	0	
6903107000	관(管)	8	0	
6903108000	막대(bar, rod)	8	0	
6903109000	기타	8	0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903202000	도가니	8	0	
6903203000	반응그릇	8	0	
6903204000	머플	8	0	
6903205000	노즐	8	0	
6903206000	플러그(plug)	8	0	
6903207000	관(管)	8	0	
6903208000	막대(bar, rod)	8	0	
6903209000	기타	8	0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8	0	
6903909020	도가니	8	0	
6903909030	반응그릇	8	0	
6903909040	머플	8	0	
6903909050	노즐	8	0	
6903909060	플러그(plug)	8	0	
6903909070	관(管)	8	0	
6903909080	막대(bar, rod)	8	0	
6903909090	기타	8	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0	
6904900000	기타	8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0	
6905901000	굴뚝통·굴뚝갓 및 굴뚝용 내장재	8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0	
6905909000	기타	8	0	
6906001000	관(管)·도관(導管) 및 홀통	8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0	
69071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7109000	기타	8	3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7909000	기타	8	3	
69081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8109000	기타	8	3	
6908901000	자기제의 것	8	3	
6908909000	기타	8	3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3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6909190000	기타	8	3	
6909900000	기타	8	3	
6910101000	세면대	8	3	
6910102000	목욕통	8	3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8	3	
6910104000	소변기	8	3	
6910109000	기타	8	3	
6910900000	기타	8	3	
691110100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	3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8	3	
6911109000	기타	8	3	
6911901000	가정용품	8	3	
6911902000	화장용품	8	3	
6911909000	기타	8	3	
691200101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	3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8	3	
6912001090	기타	8	3	
6912002000	가정용품	8	3	
6912003000	화장용품	8	3	
6912009000	기타	8	3	
69131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및 흉상	8	3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8	3	
6913109090	기타	8	3	
69139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및 흉상	8	3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8	3	
6913909090	기타	8	3	
6914101000	화분	8	3	
6914109000	기타	8	3	
6914901000	화분	8	3	
6914909000	기타	8	3	
7001001000	괴(塊)	5	0	
7001002000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깨진 유리	3	0	
7002100000	구(球)	8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2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319000	기타	8	0	
70023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0	
7002390000	기타	8	0	
700312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19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8	0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8	0	
700420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700420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490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1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1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1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1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102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2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2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2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109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005109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9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109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21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701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7020	두께가 10 밀리미터 초과하고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521703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1091	맑은 유리	8	3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3	
7005291099	기타	8	3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2091	맑은 유리	8	3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3	
7005292099	기타	8	3	
7005293010	맑은 유리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3090	기타	8	3	
7005294010	맑은 유리	8	3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4090	기타	8	3	
7005295010	맑은 유리	8	3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5090	기타	8	3	
7005296010	맑은 유리	8	3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6090	기타	8	3	
7005297010	맑은 유리	8	3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7090	기타	8	3	
7005298010	맑은 유리	8	3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8090	기타	8	3	
7005299010	맑은 유리	8	3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3	
7005299090	기타	8	3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8	3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9000	기타	8	0	
700711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711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719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3	
700719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3	
7007211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3	
7007212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007291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3	
7007292000	총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3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8	3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	3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8	3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3	
7010100000	앰플	8	0	
7010200000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0	
7010900000	기타	8	0	
7011100000	전등용	8	0	
7011201000	천연색용	8	0	
7011209000	기타	8	0	
7011900000	기타	8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280000	기타	8	0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370000	기타	8	0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4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8	0	
7013490000	기타	8	0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990000	기타	8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8	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0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8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0	
7015901000	선글라스용	8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0159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8	0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8	0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8	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8	0	
7016909090	기타	8	0	
7017100000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8	0	
701720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0	
7017900000	기타	8	0	
7018101000	비드(bead)	8	0	
7018102000	모조 진주	8	0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8	0	
7018104000	모조 산호	8	0	
7018109000	기타	8	0	
7018200000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0	
7018909000	기타	8	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019120000	로빙(roving)	8	0	
7019190000	기타	8	0	
7019310000	매트(mat)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8	0	
7019390000	기타	8	0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8	0	
701951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7019520000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019590000	기타	8	0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8	0	
7019909000	기타	8	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3	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20001019	기타	8	0	
7020001090	기타	8	0	
7020009000	기타	8	0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102000	가공한 것	8	0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220000	가공한 것	8	0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1	0	
71022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	1	0	
7102290000	기타	5	0	
71023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	1	0	
7102390000	기타	5	0	
710310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1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103911000	공업용	5	0	
7103919010	루비	5	0	
7103919020	사파이어	5	0	
7103919030	에메랄드	5	0	
7103991000	공업용	5	0	
7103999010	오팔	5	0	
7103999020	비취	5	0	
7103999030	옥수(玉髓)	5	0	
7103999040	수정	5	0	
7103999090	기타	5	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0	
7104209000	기타	5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1020	인조수정	5	0	
7104901090	기타	5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9090	기타	5	0	
7105101000	천연의 것	5	0	
7105102000	합성한 것	5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0	
7105909000	기타	5	0	
7106100000	가루	3	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106919000	기타	3	0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6922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3	0	
7106923000	선	3	0	
7106929000	기타	3	0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7002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3	0	
7107003000	선	3	0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3	0	
7107009000	기타	3	0	
7108110000	가루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108121000	럼프(lump) · 빌릿(billet) 및 알갱이	3	0	
7108129000	기타	3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3	0	
7108131090	기타	3	0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8139020	판 · 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3	0	
7108139090	기타	3	0	
7108200000	화폐용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190000	기타	3	0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290000	기타	3	0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390000	기타	3	0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490000	기타	3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19000	기타	3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29000	기타	3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 ing) 및 스크랩(scrap)의 것	6.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112999000	기타	3	0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9000	기타	8	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0	
7113209000	기타	8	0	
7114111000	식탁용	8	0	
7114112000	화장실용	8	0	
7114113000	사무실용 및 책상용	8	0	
7114114000	깍연용	8	0	
7114119000	기타	8	0	
7114191000	식탁용	8	0	
7114192000	화장실용	8	0	
7114193000	사무실용 및 책상용	8	0	
7114194000	깍연용	8	0	
7114199000	기타	8	0	
7114201000	식탁용	8	0	
7114202000	화장실용	8	0	
7114203000	사무실용 및 책상용	8	0	
7114204000	깍연용	8	0	
7114209000	기타	8	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115901010	백금 도가니	8	0	
7115901090	기타	8	0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90	기타	8	0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8	0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8	0	
7116201000	공업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116209010	신변장식용	8	0	
7116209090	기타	8	0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8	0	
7117191000	목걸이	8	0	
7117192000	팔찌	8	0	
7117193000	귀걸이	8	0	
7117194000	브로치	8	0	
7117195000	반지	8	0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0	
7117199000	기타	8	0	
7117900000	기타	8	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1000	금화	0	0	
7118902000	은화	0	0	
7118909000	기타	0	0	
7201101000	주물용	0	0	
7201102000	제강용	0	0	
7201109000	기타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01501000	합금선철	2	0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2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5	0	
7202190000	기타	5	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3	0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상인 것	3	0	
7202299000	기타	3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3	0	
7202490000	기타	3	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silico-chromium)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3	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3	0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3	0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3	0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3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7202999000	기타	3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00	기타	1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00	기타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410000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filing) · 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변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7204490000	기타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7205101000	샷(shot)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05102000	그릿(grit)	5	0	
7205109000	기타	5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5	0	
7205290000	기타	5	0	
7206100000	잉곳(ingot)	0	0	
7206900000	기타	0	0	
7207111000	블룸(bloom)	0	0	
7207112000	빌릿(billet)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07190000	기타	0	0	
7207201000	블룸(bloom)	0	0	
7207202000	빌릿(billet)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7207204000	시트바(sheet bar)	0	0	
7207209000	기타	0	0	
7208101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08109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59000	기타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69000	기타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79000	기타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69000	기타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79000	기타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89000	기타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이상인 것			
7208399000	기타	0	0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19000	기타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29000	기타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39000	기타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49000	기타	0	0	
7208900000	기타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59000	기타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69000	기타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79000	기타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89000	기타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59000	기타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69000	기타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09279000	기타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89000	기타	0	0	
7209900000	기타	0	0	
721011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012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309000	기타	0	0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1090	기타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9090	기타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690000	기타	0	0	
721070000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0	0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9000	기타	0	0	
7211130000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 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49000	기타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99000	기타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39000	기타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99000	기타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909000	기타	0	0	
7212101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2102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209000	기타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1090	기타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9090	기타	0	0	
721240000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0	0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9000	기타	0	0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0	
72132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11090	기타	0	0	
7213919000	기타	0	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91090	기타	0	0	
7213999000	기타	0	0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	0	
7214201000	철근	0	0	
7214209000	기타	0	0	
72143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4910000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0	
7214999000	기타	0	0	
7215100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900000	기타	0	0	
7216101000	유(U)형강	0	0	
7216102000	아이(I)형강	0	0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	0	
7216210000	엘(L)형강	0	0	
7216220000	티(T)형강	0	0	
7216310000	유(U)형강	0	0	
7216320000	아이(I)형강	0	0	
7216333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6334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이상 6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16335000	높이가 6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6401000	엘(L)형강	0	0	
7216402000	티(T)형강	0	0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7216690000	기타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0	
7216990000	기타	0	0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9000	기타	0	0	
7217900000	기타	0	0	
7218101000	잉곳(ingot)	0	0	
7218109000	기타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18919000	기타	0	0	
7218991000	블룸(bloom)	0	0	
7218992000	빌릿(billet)	0	0	
7218999000	기타	0	0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11090	기타	0	0	
7219119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21090	기타	0	0	
7219129000	기타	0	0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31090	기타	0	0	
7219139000	기타	0	0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141090	기타	0	0	
7219149000	기타	0	0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211090	기타	0	0	
7219219000	기타	0	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221090	기타	0	0	
7219229000	기타	0	0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231090	기타	0	0	
7219239000	기타	0	0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19241090	기타	0	0	
7219249000	기타	0	0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11090	기타	0	0	
7219319000	기타	0	0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21090	기타	0	0	
7219329000	기타	0	0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31090	기타	0	0	
7219339000	기타	0	0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41090	기타	0	0	
7219349000	기타	0	0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351090	기타	0	0	
7219359000	기타	0	0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19901090	기타	0	0	
7219909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111090	기타	0	0	
7220119000	기타	0	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121090	기타	0	0	
7220129000	기타	0	0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201090	기타	0	0	
7220209000	기타	0	0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7220901090	기타	0	0	
7220909000	기타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00	기타	0	0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300000	그 밖의 봉	0	0	
7222400000	형강(形鋼)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0	
7224101000	잉곳(ingot)	0	0	
7224109000	기타	0	0	
7224901000	블룸(bloom)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24902000	빌릿(billet)	0	0	
7224903000	슬래브	0	0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	0	
7224909000	기타	0	0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5190000	기타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309090	기타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409090	기타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509000	기타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19090	기타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19	기타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99	기타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99000	기타	0	0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6190000	기타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6910000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 마이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26999000	기타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7227909000	기타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0	
722830000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840000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8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8600000	그 밖의 봉	0	0	
7228700000	형강(形鋼)	0	0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1090	기타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2090	기타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9090	기타	0	0	
7301101000	유(U)형	0	0	
7301109000	기타	0	0	
7301201000	유(U)형강	0	0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	0	
7301203000	아이(I)형강	0	0	
7301209000	기타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302101090	기타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2090	기타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3090	기타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4090	기타	0	0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0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0	
7302900000	기타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8	0	
7303001090	기타	8	0	
7303002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304190000	기타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0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4290000	기타	0	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390000	기타	0	0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490000	기타	0	0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590000	기타	0	0	
7304900000	기타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 초과하고 1,422.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5190000	기타	0	0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0	
7305319000	기타	0	0	
7305390000	기타	0	0	
7305900000	기타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190000	기타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7306212000	튜브	0	0	
7306291000	케이싱	0	0	
7306292000	튜브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1090	기타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2090	기타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306611090	기타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91090	기타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901000	이중관(double wall) 강관	0	0	
7306909000	기타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0	
7307190000	기타	8	3	
7307210000	플랜지(flange)	8	3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 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7307229000	기타	8	3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0	
7307290000	기타	8	0	
7307910000	플랜지(flange)	8	0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7307929000	기타	8	0	
73079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8	0	
7307999000	기타	8	0	
7308100000	다리wa 교량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8	0	
73083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7308400000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또는 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	0	
7308901000	수문	0	0	
7308909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8	0	
7310210000	납땀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1001000	용적이 30 리터 이하인 것	8	3	
7311002000	용적이 30 리터 초과하고 100 리터 이하인 것	8	3	
7311003000	용적이 1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또는 제품으로 만든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또는 제품으로 만든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또는 제품으로 만든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또는 제품으로 만든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有刺銑)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31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390000	기타	0	0	
731441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00	기타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0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8	3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8	0	
7315190000	부분품	8	0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8	0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8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7315890000	기타	8	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7316001000	닢	8	0	
7316002000	부분품	8	0	
731700101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19	기타	0	0	
7317001021	도금·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29	기타	0	0	
7317002000	압정	0	0	
7317003000	제도용이나 사무용 핀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7317005000	스테이플	0	0	
7317009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0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8	0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0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8	0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8	0	
7318152000	볼트(bolt)	8	0	
7318153000	볼트(bolt)와 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7318159000	기타	8	0	
7318160000	너트(nut)	8	0	
7318190000	기타	8	0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3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8	0	
7318230000	리벳(rivet)	8	3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0	
7318290000	기타	8	7	
7319200000	안전핀	8	0	
7319301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0	
7319309000	기타	8	0	
7319901010	수봉침	8	3	
7319901020	수편침	8	3	
7319901090	기타	8	3	
7319909000	기타	8	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3	
7320102000	철도 기관차 및 차량용 판상 스프링	8	0	
7320109000	기타	8	0	
7320201000	자동차용	8	3	
7320202000	충격 흡수용	8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320204000	가구용	8	0	
7320209000	기타	8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0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8	3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1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8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900000	부분품	8	0	
7322111000	방열기	8	0	
7322112000	부분품	8	0	
7322191000	방열기	8	0	
7322192000	부분품	8	3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0	
7322909030	부분품	8	3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8	0	
7323920000	주철(鑄鐵)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8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3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8	0	
7323990000	기타	8	3	
7324101000	설거지통	8	0	
7324102000	세면대	8	0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령제의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8	0	
7324299000	기타	8	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8	0	
7324908000	기타	8	0	
7324909000	부분품	8	0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0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8	0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8	0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8	0	
7325999000	기타	8	0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6190000	기타	8	0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8	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8	0	
7326909000	기타	8	0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0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5	0	
7403130000	빌릿(billet)	5	0	
7403191000	슬래브	5	0	
7403192000	잉곳(ingot)	5	0	
7403199000	기타	5	0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0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0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5	0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0	
7403299000	기타	5	0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스크랩(scrap)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0	
7406100000	비(非)총상조직인 가루	8	0	
7406201000	총상조직인 가루	8	0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07299000	기타	8	0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408190000	기타	8	0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08299000	기타	8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119000	기타	8	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199000	기타	8	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219000	기타	8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299000	기타	8	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319000	기타	8	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39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401090	기타	8	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402090	기타	8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909000	기타	8	0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0	
7410219000	기타	8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0	
7410229000	기타	8	0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11299000	기타	8	0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	0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3	0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0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 또는 도포한 것	8	0	
7415109000	기타	8	0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 ring washer)를 포함한다]	8	0	
7415290000	기타	8	0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8	0	
7415390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418110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418191000	식탁용품·주방용품	8	0	
7418192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5	0	
7418192090	기타	8	0	
7418199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5	0	
7418199090	기타	8	0	
7418201000	위생용품	8	0	
7418202000	부분품	8	0	
7419101000	체인	8	0	
7419102000	부분품	8	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419991010	클로스(cloth)	8	0	
7419991090	기타	8	0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8	0	
7419999000	기타	8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1090	기타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9090	기타	0	0	
7502101000	음극	3	0	
7502109000	기타	3	0	
7502200000	니켈 합금	3	0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504001000	가루	5	0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0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0	
750610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5	0	
7506102000	박(箔)	5	0	
750620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5	0	
7506202000	박(箔)	5	0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0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8	0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8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0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508909000	기타	8	0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1	0	
7601201000	캐스팅 엘로이(casting alloy)	1	3	
7601202000	빌릿(billet)	3	3	
7601209000	기타	1	3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603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0	
7603201000	가루	8	0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604101000	막대(bar, rod)	8	0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604102090	기타	8	0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604291000	막대(bar, rod)	8	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8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190000	기타	8	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290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6119000	기타	8	0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6919000	기타	8	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119000	기타	8	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199000	기타	8	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209000	기타	8	0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8	0	
76101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7610901000	구조물	8	0	
7610908000	기타	8	0	
7610909000	부분품	8	0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9010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8	0	
7612909020	용적이 1 리터 이상 20 리터 미만인 것	8	0	
7612909030	용적이 20 리터 이상인 것	8	0	
7613001000	압축가스용	8	0	
7613002000	액화가스용	8	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0	
7614900000	기타	8	0	
7615110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61519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0	
7615192000	식탁용품·주방용품	8	0	
7615193000	기타 가정용 물품	8	0	
7615199000	부분품	8	0	
7615201000	위생용품	8	0	
7615202000	부분품	8	0	
7616100000	못·압정·스테인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8	0	
7616991000	보빈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8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8	0	
7616999090	기타	8	0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801109000	기타	3	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3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1	0	
7801992010	납-주석 합금	3	0	
7801992090	기타	3	0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804111000	시트(sheet)와 스트립	8	0	
7804112000	박(箔)	8	0	
7804190000	기타	8	0	
7804201000	가루	8	0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8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806003010	막대(bar, rod)	8	0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8	0	
7806003030	선	8	0	
7806004010	관(管)	8	0	
7806004020	관(管) 연결구류	8	0	
7806009000	기타	8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3	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0	
7901202000	아연-구리 합금	3	0	
7901209000	기타	3	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8	0	
7903901000	가루	8	0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7904001000	막대(bar, rod)	8	0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8	0	
7904003000	선	8	0	
7905001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0	
7905002000	박(箔)	8	0	
7907001000	홀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0	
7907002010	관(管)	8	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8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907009090	기타	8	0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3	0	
8001200000	주석 합금	3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0	
8003001090	기타	8	0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0	
8003002090	기타	8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8007002000	판·쉬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007003010	박(箔)	8	0	
8007003021	가루	8	0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8	0	
8007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 w)·슬리브(sleeve)]	8	0	
8007009000	기타	8	0	
8101100000	가루	3	0	
8101940000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1969000	기타	8	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스크랩(scrap)			
8101991010	막대(bar, rod)	8	0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8	0	
810199103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8	0	
8101991040	박(箔)	8	0	
8101999000	기타	8	0	
8102100000	가루	3	0	
8102940000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2951000	막대(bar, rod)	8	0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8	0	
8102953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8	0	
8102954000	박(箔)	8	0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2969000	기타	8	0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2990000	기타	8	0	
8103201000	괴(塊)	3	0	
8103202000	가루	3	0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3900000	기타	8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3	0	
8104190000	기타	3	0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4301000	줄밥(rasping)·연삭설(tumining) 및 알갱이	8	0	
8104302000	가루	8	0	
8104901000	막대(bar, rod)	8	0	
8104909000	기타	8	0	
8105201000	코발트의 괴(塊)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3	0	
8105203000	가루	3	0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5900000	기타	3	0	
8106001010	비스머드의 괴(塊)	3	0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6001030	가루	3	0	
8106009000	기타	3	0	
8107201000	카드뮴의 괴(塊)	3	0	
8107202000	가루	3	0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7900000	기타	3	0	
8108201000	괴(塊)	3	0	
8108202000	가루	3	0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0	
8108902000	관(管)	8	0	
8108909000	기타	8	0	
8109201000	괴(塊)	3	0	
8109202000	가루	3	0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9901010	관(管)	0	0	
810990102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0	0	
8109901030	봉	0	0	
8109901090	기타	0	0	
8109909000	기타	3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3	0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0900000	기타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0	
8112120000	괴(塊), 가루	3	0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190000	기타	3	0	
8112210000	괴(塊), 가루	3	0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290000	기타	3	0	
8112510000	괴(塊), 가루	3	0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590000	기타	3	0	
8112921000	게르마늄	3	0	
8112922000	바나듐	3	0	
8112923000	갈륨	3	0	
8112924000	하프늄	3	0	
8112925000	인듐	3	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27000	레늄	3	0	
8112929000	기타	3	0	
8112991000	게르마늄	3	0	
8112992000	바나듐	3	0	
8112993000	갈륨	3	0	
8112994000	하프늄	3	0	
8112995000	인듐	3	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97000	레늄	3	0	
8112999000	기타	3	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0	
8201100000	가래와 삽	8	3	
8201200000	포크	8	0	
8201300000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및 쇠스랑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20140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0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0	
8201901000	낫	8	0	
8201902000	초절기(草切機)	8	0	
8201903000	제재(製材)용 썰기	8	0	
8201909000	기타	8	0	
8202101000	목재용	8	0	
8202102000	금속용	8	0	
8202109000	기타	8	0	
8202200000	띠톱의 날	8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0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을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3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	0	
8202392090	기타	8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3	
8202399000	부분품	8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0	
8202911000	쇠톱의 날	8	0	
8202919000	기타	8	0	
8202990000	기타	8	3	
8203101000	톱날용	8	0	
8203109000	기타	8	3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8	5	
8203202000	집게	8	0	
8203203000	핀셋	8	0	
8203204000	못뽑기	8	0	
82032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3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8	0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8	0	
8203403000	천공펀치	8	5	
8203409000	기타	8	0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8	0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8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205101000	드릴링용	8	3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0	
8205103000	태핑(tapping)용	8	0	
8205109000	기타	8	0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8	0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3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8	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8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	0	
8205592000	땀인두	8	0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8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0	
8205596000	미장용과 도장용 공구	8	3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8	5	
8205599000	기타	8	0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8	0	
8205701000	바이스(vice)	8	0	
8205702000	클램프(clamp)	8	0	
8205709000	기타	8	3	
8205801000	모루	8	3	
8205802000	가반식 화덕	8	0	
8205803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8	3	
8205809000	기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205900000	위 소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8	0	
820600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	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3	
8207199000	부분품	8	0	
8207201000	인발(引拔)용	8	0	
8207202000	압출용	8	0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8	0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8	0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8	0	
8207309000	기타	8	0	
8207401000	태핑(tapping)용	8	0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0	
8207409000	기타	8	0	
8207501010	고속도강의 것	8	0	
8207501090	기타	8	5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8	0	
8207509000	기타	8	5	
8207601000	리머(reamer)	8	3	
8207602000	랩(lap)	8	0	
8207603000	브로치(broach)	8	0	
8207609000	기타	8	3	
8207701000	기어커터	8	0	
8207702000	밀링커터	8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8	0	
8207704000	로터리파일	8	3	
8207709000	기타	8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0	
8207809000	기타	8	3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3	
8207909000	기타	8	0	
8208100000	금속 가공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208200000	목재 가공용	8	0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0	
8208400000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8	0	
8208900000	기타	8	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8	5	
8209001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8209001090	기타	8	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3	
8209002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8209002090	기타	8	3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8	0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8	0	
8210003000	비터(beater) 및 믹서	8	0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8	0	
8210005000	오프너·코르크 및 실러	8	0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0	
8210009000	부분품	8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0	
8211940000	칼날	8	0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8	0	
8212100000	면도기	8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	0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8	0	
8213002010	재단용 가위	8	0	
8213002020	이발용 가위	8	0	
8213002090	기타	8	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0	
8213004000	가위날	8	0	
82130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214101000	연필깎이	8	0	
8214109000	기타	8	0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0	
8214901000	이발기	8	0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8	0	
8214909000	기타	8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8	0	
8215911000	스푼	8	0	
8215912000	포크	8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15000	각종 집게	8	0	
8215919000	기타	8	0	
8215991000	스푼	8	0	
8215992000	포크	8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95000	각종 집게	8	0	
8215999000	기타	8	0	
8301100000	자물쇠	8	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0	
8301401090	기타	8	0	
8301409000	기타	8	0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0	
8301600000	부분품	8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302100000	경첩	8	0	
8302200000	카스터(caster)	8	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8302411000	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	0	
8302419000	기타	8	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0	
8302499000	기타	8	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8303001000	금고	8	0	
8303009000	기타	8	0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 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0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	0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0	
8306100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0	
8306290000	기타	8	0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	0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8308101000	훅(hook)	8	0	
8308102000	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8	0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	0	
8308901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	8	0	
8308902000	버클(buckle)과 버클(buckle)걸쇠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spangle)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 코르크(crown cork)	8	0	
8309901000	캔뚜껑(E.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 (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8	0	
8311309090	기타	8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체(카트리지)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	3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3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	0	
8403101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유류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2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석탄을 사용하는 것	8	0	
8403103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가스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9000	기타	8	3	
8403900000	부분품	8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8	0	
8404102000	과열기	8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8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8	0	
8404109000	기타	8	3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	0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8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8	0	
8404909000	기타	8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3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8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3	
8405109000	기타	8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0	
8405909000	기타	8	0	
8406103000	출력이 2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06109000	기타	5	0	
8406811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초과하고 1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2000	출력이 100 메가와트 초과하고 3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8406813000	출력이 30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5	
8406820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0	
8406909000	기타	8	3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0	
8407290000	기타	8	3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19000	기타	8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29000	기타	8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39000	기타	8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49000	기타	8	0	
8407901000	철도차량용	0	0	
8407909000	기타	8	0	
8408101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2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하고 2,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300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8	3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초과하고 4,000 시시 이하인 것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 시시 초과하고 10,000 시시 이하인 것	8	5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	5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	0	
8408901090	기타	5	0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0	
8408909021	출력이 400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이하 1,800 인 것으로 한정한다]	4	0	
8408909029	기타	8	0	
8408909030	제 8429 호용 내연기관	8	0	
8408909090	기타	8	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5	0	
8409911000	제 87 류의 차량용	8	0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8	0	
8409919000	기타	8	3	
8409991000	철도차량용	5	0	
8409992000	제 87 류의 차량용	8	3	
840999301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2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하고 2,0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3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9010	발전용	8	7	
8409999090	기타	8	0	
8410111000	수력터빈	0	0	
8410119000	기타	8	7	
84101200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1090	기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9090	기타	8	0	
8411111000	항공기용	3	0	
8411119010	선박용	8	0	
8411119090	기타	8	0	
8411121000	항공기용	3	0	
8411129010	선박용	8	0	
8411129090	기타	8	0	
8411211000	항공기용	3	0	
8411219010	선박용	8	0	
8411219090	기타	8	0	
8411221000	항공기용	3	0	
8411229010	선박용	8	0	
8411229090	기타	8	0	
8411811000	항공기용	3	0	
8411819010	선박용	8	0	
8411819090	기타	8	0	
8411821000	항공기용	3	0	
8411829010	선박용	8	0	
8411829090	기타	8	3	
8411911000	항공기용	3	0	
8411919000	기타	8	0	
8411991000	항공기용	3	0	
8411999000	기타	8	0	
84121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	5	0	
8412101090	기타	5	0	
8412109000	기타	8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0	
8412219000	기타	8	0	
8412290000	기타	8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0	
8412390000	기타	8	0	
8412800000	기타	8	3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0	
8412901090	기타	5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84129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	0	
8413190000	기타	8	7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13301000	항공기용	8	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8	0	
8413303000	선박용	8	0	
8413304000	제 87 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8	0	
8413309000	기타	8	5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509010	플런저펌프	8	3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5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0	
8413509090	기타	8	5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609010	기어펌프	8	0	
8413609020	베인펌프	8	0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0	
8413609090	기타	8	5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709010	터빈펌프	8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0	
8413709090	기타	8	3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5	
8413819000	기타	8	0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3	
84139110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 펌프의 것	8	3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3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3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3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8	3	
8413919000	기타	8	0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14101000	항공기용	8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3} 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0	
8414109090	기타	8	0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3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3	
8414511000	항공기용	8	0	
8414519000	기타	8	0	
8414591000	항공기용	8	0	
8414599000	기타	8	0	
8414601000	항공기용	8	0	
8414609000	기타	8	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3	
8414809110	항공기용	8	3	
8414809190	기타	8	3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5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이상 373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3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3	
8414809900	기타	8	3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0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8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8	0	
8414909090	기타	8	0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	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 (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	7	
8415900000	부분품	8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3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초과하고 1,5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6201000	노용 버너로서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8	3	
8416202000	노용 버너로서 기체연료용	8	7	
8416209000	기타	8	7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7	
8416909000	기타	8	7	
8417101010	철광석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17101090	기타	8	0	
8417102010	철강용	8	0	
8417102090	기타	8	3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	0	
8417801010	시멘트용	8	0	
8417801020	유리용	8	0	
8417801030	도자기용	8	0	
8417801090	기타	8	3	
8417802000	이화학용	8	3	
8417809000	기타	8	3	
8417900000	부분품	8	0	
8418101010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20	용량이 200 리터 초과하고 4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30	용량이 4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18109000	기타	8	0	
8418211000	용량이 2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2000	용량이 200 리터 이상 4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3000	용량이 4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	0	
8418299000	기타	8	0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3	
8418501000	쇼케이스	8	0	
8418509000	기타	8	0	
84186100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3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3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0	
8418692030	냉수기	8	0	
84186920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18693000	열펌프	8	0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0	
8418999000	기타	8	0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8	0	
8419190000	기타	8	3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0	0	
8419310000	농산물용	8	0	
8419320000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 또는 판지용	8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퍼드라이어	3	0	
8419399000	기타	8	7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8	3	
8419501000	항공기용	8	0	
8419509000	기타	8	0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8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	8	0	
8419899010	가열기	8	0	
8419899020	냉각기	8	3	
8419899030	증발기	8	0	
8419899040	응축기	8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8	0	
8419899060	고온항온기 또는 저온항온기	8	3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0	
8419899090	기타	8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의 것	8	0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8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19909040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0	
8419909090	기타	8	0	
8420101000	제지용	8	3	
8420102000	직물용	8	0	
8420103000	가죽용	8	0	
8420104000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8	3	
8420109000	기타	8	0	
8420910000	실린더	8	3	
8420990000	기타	8	3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0	
8421191000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	8	3	
8421192000	식품공업용	8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8	0	
8421199000	기타	8	0	
8421211000	가정형	8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8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3	0	
8421219090	기타	8	3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	0	
842123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3	
8421232000	항공기용	8	0	
8421239000	기타	8	0	
8421291000	낙농용	8	0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	8	0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294000	항공기용	8	0	
8421299000	기타	8	0	
842131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3	
8421312000	항공기용	8	0	
8421319000	기타	8	3	
8421391000	가정형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21392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8	0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8	3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399030	항공기용	8	0	
8421399090	기타	8	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3	
8421991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8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것	8	3	
8421999020	정수기 필터	8	0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	0	0	
8421999090	기타	8	7	
8422110000	가정형	8	0	
8422190000	기타	8	0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	0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0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 또는 봉지용 기계	8	3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채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8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0	
8422309000	기타	8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3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0	
8422409090	기타	8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0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8	7	
8422909000	기타	8	7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8	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 또는 피드웨어(feed weigher)	8	0	
8423209000	기타	8	0	
8423300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8	0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2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0	
8423899000	기타	8	0	
8423901010	정확도 등급을 가진 분동	8	0	
8423901090	기타	8	0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8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3	
8424201000	스프레이건	8	0	
8424202010	로봇형	8	3	
8424202090	기타	8	3	
8424209000	기타	8	3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8	3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0	
8424309000	기타	8	3	
842481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8	3	
8424812000	그 밖의 방제기	8	3	
8424819000	기타	8	3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899000	기타	8	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0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8	7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909090	기타	8	0	
8425111010	체인블록	0	0	
842511109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25112010	체인블록	0	0	
8425112090	기타	0	0	
8425190000	기타	0	0	
8425311000	광구용 와인딩 기어, 원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5319000	기타	0	0	
8425391000	광구용 와인딩 기어, 원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5399000	기타	0	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0	
8426190000	기타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842649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	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0	
8426499000	기타	0	0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26999000	기타	0	0	
8427101000	카운트 밸런스식의 것	8	7	
8427102000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것	8	3	
8427109000	기타	8	3	
8427201010	적재중량이 3 톤 이하인 것	8	5	
8427201020	적재중량이 3 톤을 초과하는 것	8	3	
8427209000	기타	8	3	
8427901000	수동식 펠릿(pallet) 트럭	8	0	
8427909000	기타	8	0	
8428101000	리프트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0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	0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미만인 것	0	0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이상인 것	0	0	
8428332000	컨베이어	0	0	
8428390000	기타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0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나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8428909000	기타	0	0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	0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	0	
8429190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0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0	0	
8429401000	탐핑머신(tamping machine)	0	0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	0	
8429511010	로더	0	0	
8429511020	백호우 로더	0	0	
8429511030	스키드스티어 로더	0	0	
8429511090	기타	0	0	
8429519000	기타	0	0	
8429521010	휠 타입	0	0	
8429521020	무한궤도식	0	0	
8429521090	기타	0	0	
8429529000	기타	0	0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shovel)	0	0	
8429599000	기타	0	0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	0	
8430390000	기타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8430499000	기타	0	0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0	
8430610000	탐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0	
8430690000	기타	0	0	
8431100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0	0	
8431200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8	0	
8431310000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8431390000	기타	0	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excavator)의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31419000	기타	0	0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0	
8431430000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	0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	0	
8431499000	기타	0	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8432299000	기타	0	0	
8432301000	파종기	0	0	
8432302000	식부기(植付機)	0	0	
8432303000	이식기	0	0	
8432309000	기타	0	0	
8432401000	퇴비 살포기	0	0	
8432402000	비료 살포기	0	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8432909000	기타	0	0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33190000	기타	0	0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 (cutter bar)를 포함한다]	0	0	
8433300000	그 밖의 건조제조용 기계	0	0	
8433400000	짚이나 건조 결속기[픽업(pick- 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	0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8433590000	기타	0	0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8433609090	기타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0	
8433909000	기타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8434209000	기타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8434909000	기타	0	0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8	0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8	0	
8435103000	과실주스 제조용 균질기	8	0	
8435109000	기타	8	3	
8435900000	부분품	8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3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3	
8436109000	기타	8	3	
8436211000	부란기	8	0	
8436219000	기타	8	0	
8436290000	기타	8	0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0	
8436990000	기타	8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0	
8437109000	기타	8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0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 類)의 가공용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용의 것	8	0	
8437909000	기타	8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0	
8438109000	기타	8	0	
843820000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8	3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3	
8438509000	기타	8	3	
843860000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8	3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0	
8438809000	기타	8	0	
8438900000	부분품	8	0	
8439101000	쇄목기	8	0	
8439102000	절단기	8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0	
8439104000	프레스빠데(press-pate)기	8	0	
8439105000	비터(beater)	8	0	
8439109000	기타	8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0	
8439202000	초지기	8	0	
8439209000	기타	8	3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8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	0	
8439309000	기타	8	5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3	
8439990000	기타	8	3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0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0	
8440109000	기타	8	0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0	
8440909000	기타	8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41100000	절단기	8	0	
8441201000	종이백 또는 봉지 제조용 기계	8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0	
8441300000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 · 종이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	0	
8441801000	종이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8	0	
8441809000	기타	8	0	
8441900000	부분품	8	0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	8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8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8	0	
8442304000	사진 식자기	8	3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및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	3	
8442309000	기타	8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0	
8442409000	기타	8	3	
8442500000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8	3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	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0	
8443170000	그라비아(gravure) 인쇄용 기계	8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0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름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	3	
8443199000	기타	8	3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11090	기타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또는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소호 제 8443.31.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3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090	기타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25090	기타	8	3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91090	기타	8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	7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3020	밀착식	8	0	
8443394000	열식 복사기	8	3	
8443399000	기타	8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8	0	
8443911020	접기용, 폴칠용, 천공용 및 지철용의 기계	8	0	
8443911030	연속번호기	8	0	
8443911090	기타	8	0	
8443919000	기타	8	0	
8443991000	소호 제 8443.31.10 호 또는 제 8443.32.10 호의 것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4020	종이공급기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8443994090	기타	0	0	
8443995000	소호 제 8443.31.4000 호, 제 8443.32.5010 호, 제 8443.32.5090 호, 제 8443.39.1010 호 또는 제 8443.39.1090 호의 것	8	0	
8443999000	기타	8	0	
8444001000	인조섬유 방사(紡絲)기	5	3	
8444002000	인조섬유 연신(drawing)기	5	3	
8444003000	인조섬유 텍스처(texture)기	5	0	
8444004000	인조섬유 절단기	5	0	
8444009000	기타	5	0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5	0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5	0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5	0	
8445191000	훈타면기	5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0	
8445193000	조면기	8	0	
8445199000	기타	5	0	
8445201010	정방기	5	3	
8445201090	기타	5	0	
8445202010	정방기	5	0	
8445202090	기타	5	0	
8445203000	견방용	5	0	
8445209000	기타	5	0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5	0	
8445302000	방적사용	5	0	
8445309000	기타	5	0	
8445401000	콘 와인더	5	0	
8445402000	치즈 와인더	5	0	
8445409000	기타	5	0	
8445901000	정경기	8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0	
8445903000	통경기	8	0	
8445904000	연경기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45909000	기타	8	0	
844610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0	
8446211000	면직기	8	0	
8446212000	모직기	8	0	
8446213000	견직기	8	0	
8446219000	기타	8	0	
8446290000	기타	8	0	
8446301010	면직기	8	5	
8446301020	견직기	8	0	
8446301030	타올직기	8	0	
8446301090	기타	8	7	
8446302010	면직기	8	3	
8446302020	견직기	8	0	
8446302030	타올직기	8	0	
8446302090	기타	8	0	
8446303010	면직기	8	0	
8446303020	견직기	8	0	
8446303030	타올직기	8	0	
8446303090	기타	8	0	
8446309010	면직기	8	0	
8446309020	견직기	8	0	
8446309030	타올직기	8	0	
8446309090	기타	8	0	
8447111000	양말편기	8	0	
8447119000	기타	8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8	0	
8447201020	자동 횡(橫) 편직기	8	3	
8447201090	기타	8	0	
8447202010	랏셀기	8	3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0	
8447202090	기타	8	0	
8447209000	기타	8	3	
8447901000	레이스기	8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47902090	기타	8	0	
8447903000	결망기	8	0	
8447909000	기타	8	0	
8448111000	도비(dobby)기	8	3	
8448112000	자카드기	8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0	
8448119000	기타	8	3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 또는 크릴(creel)	8	3	
8448192000	자동정지기	8	0	
8448193000	경사연접기	8	3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5	3	
8448199090	기타	8	3	
8448201000	방사 니플	5	0	
8448209000	기타	5	0	
8448310000	침포	8	0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닛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5	0	
8448329000	기타	8	3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5	0	
8448339010	스핀들	8	0	
8448339020	스피닝링	8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0	
8448391000	경사빔	8	0	
8448399000	기타	8	0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	3	
8448491000	셔틀	8	0	
8448499000	기타	8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0	
8448519000	기타	8	3	
8448590000	기타	8	3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8	0	
84490010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8	0	
8449009000	부분품	8	3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0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50190000	기타	8	3	
845020000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8450900000	부분품	8	0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0	
8451210000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51290000	기타	8	0	
8451301000	스팀 프레스	8	3	
8451309000	기타	8	0	
8451401000	세척기	8	0	
8451402000	표백기	8	0	
8451403000	염색기	8	0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8	0	
8451502000	절단기	8	3	
8451509000	기타	8	3	
8451801000	열처리기	8	0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8	0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8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0	
8451809020	도포기 또는 침투기	8	0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8	0	
8451809040	패딩기	8	0	
8451809090	기타	8	0	
8451901000	드라이클리닝기의 것	8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0	
8451909000	기타	8	0	
8452101010	직진형	8	0	
8452101020	지그재그형	8	0	
8452101030	프리암식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52101090	기타	8	0	
8452102000	수동식	8	3	
8452211000	신발 제조용	8	0	
8452212000	포장대 봉합용	8	0	
8452213000	가족 또는 그 밖의 후물용	8	3	
8452214000	모피용	8	3	
8452219000	기타	8	0	
8452291000	신발 제조용	8	3	
8452292000	포장대 봉합용	8	0	
8452293000	가족 또는 그 밖의 후물용	8	0	
8452294000	모피용	8	0	
8452299000	기타	8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0	
8452400000	재봉기용으로 가구·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8	3	
8452900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8	0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8	0	
8453102000	유피기계	8	0	
8453103000	원피·가족 가공기계	8	0	
8453201000	신발 제조기계	8	0	
8453202000	신발 수선기계	8	0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53900000	부분품	8	0	
8454100000	전로	8	3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8	0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8	0	
8454301090	기타	8	0	
8454309000	기타	8	0	
8454901000	전로의 것	8	0	
8454909000	기타	8	0	
8455100000	관 압연기	8	3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 冷間) 겸용 압연기	8	3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8	3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3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3	
84553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3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109000	기타	8	7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3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0	
8456301090	기타	8	0	
8456309000	기타	8	0	
8456900000	기타	8	3	
8457101000	수직형	8	7	
8457102000	수평형	8	7	
8457103000	문형	8	5	
8457109000	기타	8	5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	3	
84581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190000	기타	8	0	
84589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990000	기타	8	3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	0	
8459210000	수치제어식	8	3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0	
8459299000	기타	8	3	
84593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390000	기타	8	3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8	0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8	3	
8459409000	기타	8	0	
8459510000	수치제어식	8	3	
8459590000	기타	8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19000	기타	8	3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	3	
8459699000	기타	8	0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8	0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8	0	
8460110000	수치제어식	8	0	
8460190000	기타	8	3	
846021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1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13000	무심연삭기	8	3	
846021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3	
8460219000	기타	8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3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0	
8460299000	기타	8	3	
8460310000	수치제어식	8	0	
8460390000	기타	8	3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8	7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	3	
8460900000	기타	8	3	
8461200000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	0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	0	
8461401010	수치제어식	8	3	
8461401090	기타	8	3	
8461402000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8	3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8	0	
8461900000	기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62101000	에어해머	8	0	
8462109000	기타	8	5	
8462210000	수치제어식	8	0	
8462290000	기타	8	0	
8462310000	수치제어식	8	3	
8462390000	기타	8	0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12000	넛칭기(notching machine)	8	3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3	
8462492000	넛칭기(notching machine)	8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하고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하고 1,0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3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초과하고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3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하고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하고 6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 메트릭톤 초과하고 1,5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90	기타	8	0	
846299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63200000	나사 전조기	8	0	
8463300000	선 가공기	8	3	
8463900000	기타	8	5	
8464100000	톱기계	8	5	
8464201000	광학유리용 또는 안경유리용	8	0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8	0	
8464209000	기타	8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9000	기타	8	3	
846510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109000	기타	8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19000	기타	8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29000	기타	8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	8	3	
8465939000	기타	8	3	
846594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49000	기타	8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	8	3	
8465959000	기타	8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69000	기타	8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	8	3	
8465999000	기타	8	3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	0	
8466201000	항공기용	8	5	
8466209000	기타	8	7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66910000	제 8464 호의 기계용	8	3	
8466920000	제 8465 호의 기계용	8	3	
8466930000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8	0	
8466940000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8	0	
8467111000	착암기	8	3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0	
8467113000	그라인더	8	3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0	
8467115000	드릴	8	0	
8467119000	기타	8	3	
8467191000	착암기	8	3	
8467199000	기타	8	3	
8467210000	각종 드릴	8	0	
8467220000	톱	8	0	
8467290000	기타	8	0	
8467810000	체인톱	8	0	
8467891010	소호 제 8430.49 호 또는 제 8479.10 호의 것	0	0	
8467891020	소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또는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67891090	기타	8	3	
8467899000	기타	8	3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0	
8467990000	기타	8	0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8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5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0	
8468209000	기타	8	3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8	0	
8468900000	부분품	8	7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8469001020	자동타자기	8	0	
8469002000	그 밖의 전동식 타자기	8	0	
8469003000	그 밖의 수동식 타자기	8	0	
847010301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7010302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104010	소호 제 8472.90.9000 호의 것	0	0	
8470104090	기타	0	0	
847021100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847021200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290000	기타	0	0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8470909000	기타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9000	기타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90	기타	0	0	
8471499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9000	기타	0	0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8471601090	기타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847160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8471603090	기타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및 롬)	0	0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9	기타	0	0	
8471702090	기타	0	0	
8471709000	기타	0	0	
8471800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8471900000	기타	0	0	
8472100000	등사기	8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0	
8472302000	소인기	8	0	
8472309000	기타	8	3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 및 입금기	0	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8	0	
84729010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72902000	등사용과 인쇄용 자동제판기	8	0	
8472903000	표권 발행기	8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8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8	3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8	0	
8472909000	기타	8	0	
8473101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102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109000	기타	8	0	
8473210000	소호 제 8470.10 호 ·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1000	소호 제 8470.3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3000	소호 제 8470.5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4000	소호 제 8470.9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8473302000	주기관(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8473304010	사운드카드	0	0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	0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	0	
8473304050	통신접속카드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8473304090	기타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 8542 호에 분류되지 않는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8473309090	기타	0	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를 제외한다)용 인쇄회로 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409000	기타	8	0	
8473501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	0	0	
8473509000	기타	0	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0	0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 톤 이하인 것	0	0	
8474209000	기타	0	0	
8474311000	배치 플랜트	0	0	
8474319000	기타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8474329000	기타	0	0	
8474390000	기타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	0	0	
8474809000	기타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	0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8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8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8	0	
8475299000	기타	8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8	0	
8475909000	기타	8	3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8476290000	기타	8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19000	기타	8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93000	담배 자동판매기	8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8	0	
8476899000	기타	8	0	
8476900000	부분품	8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	8	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0	
8477201000	고무 공업용	8	3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3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	0	
8477590000	기타	8	3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77900000	부분품	8	0	
8478100000	기계	8	0	
8478900000	부분품	8	0	
8479101000	모울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	0	
8479102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79109000	기타	0	0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또는 조제용 기계류	8	3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 (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및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	0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	0	
8479501000	소호 제 8479.81 호, 제 8479.82 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40 호, 제 8479.89.9060 호 또는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795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509000	기타	8	3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	8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3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3	0	
8479812090	기타	8	0	
8479813000	권선기	8	0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	0	
8479819000	기타	8	0	
8479821000	혼합기	8	3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8	0	
8479823000	균질기	8	0	
8479824000	교반기	8	0	
8479829000	기타	8	0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79891090	기타	8	0	
8479899010	프레스 또는 압출기	8	0	
847989902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 또는 튜블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8	0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8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3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8	3	
8479899091	제 87 류의 차량용	8	3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11	7	
8479899099	기타	8	0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8	3	
8479901030	제 87 류의 차량용	8	3	
84799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의 것	8	0	
847990903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8	3	
8479909050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또는 교반기의 것	8	0	
8479909060	프레스 또는 압출기의 것	8	0	
8479909070	선박용 또는 어업 기기의 것	8	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90	기타	8	0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8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8	0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8480490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8	0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	0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8480790000	기타	8	0	
8481100000	감압밸브	8	7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5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7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	7	
8481400000	안전밸브	8	7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7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7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8	7	
8481801090	기타	8	0	
8481802000	탭 · 코크와 트랩	8	5	
8481809000	기타	8	0	
8481901000	액츄에이터	8	5	
8481909000	기타	8	0	
8482101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82102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7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	7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7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7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7	
8482800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5	
8482910000	볼 · 니들 및 롤러	8	7	
8482990000	기타	8	7	
8483101000	항공기용	3	0	
8483109010	제 87 류의 차량용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3109090	기타	8	7	
8483201000	항공기용	3	0	
8483209000	기타	8	3	
8483301000	항공기용	3	0	
8483309000	기타	8	0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3	0	
8483401090	기타	3	0	
8483409010	기어	8	0	
8483409020	기어박스	8	0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3	
8483409041	제 87 류의 차량용	8	3	
8483409049	기타	8	0	
8483409090	기타	8	0	
8483501000	항공기용	8	0	
8483509000	기타	8	0	
8483601000	항공기용	3	0	
8483609000	기타	8	0	
8483901000	항공기용	3	0	
8483909000	기타	8	0	
8484101000	제 87 류의 차량용	8	0	
8484109000	기타	8	0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0	
8484900000	기타	8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8486103010	단결정 보울(boule)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103090	기타	8	3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104019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104029	기타	8	3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9000	기타	8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0	0	
8486202290	기타	8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8486202390	기타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190	기타	8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990	기타	8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0	
8486206090	기타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8110	반도체재료의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2081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208490	기타	8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0	0	
8486209190	기타	0	0	
848620920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0	
8486209390	기타	8	0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0	
8486209900	기타	8	3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863030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863030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6303041	건식식각기	8	0	
8486303049	기타	8	3	
8486304010	연마기 또는 광택기	8	0	
8486304090	기타	8	0	
8486305010	도포기	8	0	
8486305020	도포 및 현상기	8	0	
8486305031	물리적 방식의 것	8	0	
8486305032	화학적 방식의 것	8	0	
8486305039	기타	8	0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 또는 액정 디스펜서	8	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8	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8	0	
8486306090	기타	8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	0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 · 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	8	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봇트	8	0	
8486309090	기타	8	3	
8486401010	패턴형성기(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나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848640103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또는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8	0	
8486401090	기타	8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및 와이어접착기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8486402039	기타	8	0	
8486402040	납땀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	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계	8	0	
848640207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0	
8486402092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8	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점점(범프)을 형성하는 기기	8	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으로 한정한다)	0	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	0	
8486402099	기타	8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세트, 상자와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6403090	기타	0	0	
8486901010	소호 제 8486.10.1000 호, 제 8486.10.2000 호, 제 8486.10.3010 호, 제 8486.10.3020 호, 제 8486.10.4011 호, 제 8486.10.4021 호, 제 8486.10.5010 호, 제 8486.10.5020 호 또는 제 8486.10.5030 호의 것	0	0	
8486901020	소호 제 8486.10.3090 호, 제 8486.10.4019 호, 제 8486.10.4029 호 또는 제 8486.10.9000 호의 것	8	3	
8486902010	소호 제 8486.20.1000 호, 제 8486.20.2100 호, 제 8486.20.2210 호, 제 8486.20.2310 호, 제 8486.20.2390 호, 제 8486.20.3000 호, 제 8486.20.4000 호, 제 8486.20.5110 호, 제 8486.20.5910 호, 제 8486.20.6010 호, 제 8486.20.6020 호, 제 8486.20.6090 호, 제 8486.20.7000 호, 제 8486.20.8110 호, 제 8486.20.8120 호, 제 8486.20.8410 호, 제 8486.20.8420 호, 제 8486.20.9110 호, 제 8486.20.9120 호, 제 8486.20.9190 호, 제 8486.20.9200 호, 제 8486.20.9310 호, 제 8486.20.9320 호, 제 8486.20.9400 호, 제 8486.20.9500 호 또는 제 8486.20.9600 호의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6902020	소호 제 8486.20.2290 호, 제 8486.20.5190 호, 제 8486.20.5990 호, 제 8486.20.8190 호, 제 8486.20.8490 호, 제 8486.20.9390 호 또는 제 8486.20.9900 호의 것	8	3	
8486903010	소호 제 8486.30.1000 호 또는 제 8486.30.2000 호의 것	0	0	
8486903020	소호 제 8486.30.3010 호, 제 8486.30.3020 호, 제 8486.30.3030 호, 제 8486.30.3041 호, 제 8486.30.3049 호, 제 8486.30.4010 호, 제 8486.30.4090 호, 제 8486.30.6020 호, 제 8486.30.7000 호, 제 8486.30.8000 호, 제 8486.30.9020 호 또는 제 8486.30.9090 호의 것	8	3	
8486903030	소호 제 8486.30.5010 호, 제 8486.30.5020 호, 제 8486.30.5031 호, 제 8486.30.5032 호, 제 8486.30.5039 호, 제 8486.30.6010 호, 제 8486.30.6030 호 또는 제 8486.30.6090 호의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486904010	소호 제 8486.40.1010 호, 제 8486.40.1020 호, 제 8486.40.1030 호, 제 8486.40.2010 호, 제 8486.40.2031 호, 제 8486.40.2070 호, 제 8486.40.2080 호, 제 8486.40.2091 호, 제 8486.40.2094 호, 제 8486.40.2095 호, 제 8486.40.3010 호, 제 8486.40.3090 호, 제 8486.40.4011 호, 제 8486.40.4012 호 또는 제 8486.40.4020 호의 것	0	0	
8486904020	소호 제 8486.40.1040 호, 제 8486.40.1090 호, 제 8486.40.2020 호, 제 8486.40.2039 호, 제 8486.40.2040 호, 제 8486.40.2050 호, 제 8486.40.2061 호, 제 8486.40.2062 호, 제 8486.40.2063 호, 제 8486.40.2092 호, 제 8486.40.2093 호, 제 8486.40.2099 호 또는 제 8486.40.9000 호의 것	8	0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	0	
8487901000	제 87 류의 차량용	8	0	
8487909010	오일 실링	8	0	
8487909090	기타	8	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0	
8501103000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	8	0	
8501201000	출력이 37.5 와트 초과하고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하고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는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것			
850131101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311090	기타	8	0	
850131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2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2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3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3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4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4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40100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하고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3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40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5100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20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1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2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초과하고 1,5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4000	출력이 1,5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6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3100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1639000	기타	8	0	
8501640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021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31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131090	기타	8	0	
8502132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20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3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203090	기타	8	0	
850220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31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39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0239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400000	전기 회전변환기	8	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0	
8503002000	발전기 및 발전세트의 것	8	0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0	
8504101010	전류가 1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1020	전류가 1 암페어 초과하고 20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2000	전류가 20 암페어 초과하고 60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3000	전류가 60 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1901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1902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2901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20	용량이 1,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30	용량이 5,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300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초과하는 것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1901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2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40	용량이 500 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2901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9020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3901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20	용량이 3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4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4901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2,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9030	용량이 2,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1090	기타	8	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19	기타	8	5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99	기타	8	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3090	기타	8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4090	기타	8	0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5090	기타	8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0	
8504409019	기타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9099	기타	8	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1090	기타	8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2090	기타	8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90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04.40 호 · 제 8504.50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 기계와 전기통신용 기계의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04909000	기타	8	0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8	0	
8505119000	기타	8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0	
8505199000	기타	8	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및 브레이크	8	0	
8505901000	전자석	8	0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 · 클램프 · 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8	0	
8505909000	부분품	8	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0	
8506109000	기타	8	0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	0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	0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8	0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8	0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8	0	
8506809000	기타	8	0	
8506900000	부분품	8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	0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	0	
8507300000	니켈 카드뮴 축전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	0	
8507801000	니켈-수소 합금 축전지	8	0	
8507802000	리튬이온 축전지	8	0	
8507803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	0	
8507809000	기타	8	0	
8507901000	격리판	8	0	
8507909000	기타	8	0	
8508110000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면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	0	
8508191000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8508199000	기타	8	0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	0	
8508701000	소호 제 8508.11.0000 호 또는 제 8508.19.1000 호의 것	8	0	
8508702000	소호 제 8508.19.9000 호 또는 제 8508.60.0000 호의 것	8	0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	0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5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0	
8509809000	기타	8	0	
8509900000	부분품	8	0	
8510100000	면도기	8	0	
8510200000	이발기	8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0	
8511101000	항공기용	3	0	
8511109000	기타	8	3	
8511201000	항공기용	3	0	
8511209000	기타	8	3	
8511301000	항공기용	3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11309000	기타	8	3	
8511401000	항공기용	3	0	
8511409000	기타	8	0	
8511501000	항공기용	3	0	
8511509000	기타	8	3	
8511801000	항공기용	3	0	
8511809000	기타	8	3	
8511901000	항공기용	3	0	
8511909000	기타	8	3	
85121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	0	
8512201000	조명용 기구	8	0	
8512202000	시각신호용 기구	8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3	
8512400000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	8	3	
8512900000	부분품	8	0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	0	
8513102000	손전등	8	0	
8513109000	기타	8	3	
8513900000	부분품	8	5	
8514101000	실험실용	8	0	
8514102000	금속공업용	8	0	
8514103000	식품공업용	8	0	
8514109000	기타	8	0	
8514201000	실험실용	8	0	
8514202000	금속공업용	8	0	
8514203000	식품공업용	8	0	
8514209000	기타	8	0	
85143000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	0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409000	기타	8	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909000	기타	8	0	
8515110000	납땀용 인두와 건(gun)	8	0	
8515190000	기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15211010	로봇형	8	0	
8515211090	기타	8	0	
8515212010	로봇형	8	0	
8515212090	기타	8	3	
8515213010	로봇형	8	0	
8515213090	기타	8	0	
8515219010	로봇형	8	0	
8515219090	기타	8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	0	
8515299000	기타	8	0	
8515311010	로봇형	8	0	
8515311090	기타	8	0	
8515319010	로봇형	8	0	
8515319090	기타	8	3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0	
8515399000	기타	8	3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3	
8515802000	전자범용 기기	8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7	
8515809000	기타	8	0	
8515901000	용접기의 것	8	0	
8515909000	기타	8	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3	
8516290000	기타	8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0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8	0	
8516330000	손 건조기	8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	0	
8516601000	전기오븐	8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0	
85166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16710000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8	0	
8516720000	토스터	8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0	
8516799000	기타	8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0	
8516900000	부분품	8	0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1090	기타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2090	기타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3090	기타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4090	기타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9090	기타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8517189000	기타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8517619000	기타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2090	기타	0	0	
8517623110	단국장치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8517623190	기타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8517623290	기타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8517623390	기타	0	0	
8517623410	에이/디(A/D),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디/에이(D/A)변환기			
8517623420	코덱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8517623490	기타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90	기타	0	0	
8517623900	기타	0	0	
8517624010	키-폰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4090	기타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0	
8517626039	기타	0	0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0	0	
8517626090	기타	0	0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8517629000	기타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8	0	
8517691211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무선폭출기	0	0	
8517691219	기타	8	0	
8517691290	기타	8	0	
8517691900	기타	8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8517699000	기타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8517701021	키패드	0	0	
8517701022	케이스	0	0	
8517701029	기타	0	0	
8517701090	기타	0	0	
8517702000	소호 제 8517.61 호의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9	기타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8517703039	기타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0	
8517703049	기타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851770306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소호 제 8517.7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8517703090	기타	0	0	
8517704011	호출용 · 경보용 또는 페이지징용의 휴대용 수신 기기의 것	0	0	
8517704019	기타	8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8517704090	기타	8	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109000	기타	8	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 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299000	기타	8	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8518309000	기타	8	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8	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8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18.10.1000 호 · 제 8518.29.100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909000	기타	8	0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0	
8519309000	기타	8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2210	자동차용	8	5	
8519812220	휴대용(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8	0	
8519812290	기타	8	0	
8519812310	자동차용	8	0	
8519812320	휴대용	8	0	
85198123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19812900	기타	8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14111	자동차용	8	3	
8519814112	휴대용	8	0	
8519814119	기타	8	0	
8519814190	기타	8	0	
8519814210	자동차용	8	0	
8519814220	휴대용	8	0	
8519814290	기타	8	0	
8519814310	릴형	8	0	
8519814390	기타	8	0	
8519815010	릴형	8	0	
8519815020	디스크형	8	0	
8519815030	카세트형	8	0	
8519815090	기타	8	0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	8	0	
8519891090	기타	8	3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21101000	폭이 12.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521102000	폭이 12.7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8521901000	디스크형	8	0	
85219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0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8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8	0	
8522901090	기타	8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8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2909090	기타	8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523291110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20	폭이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30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	0	
8523291290	기타	0	0	
8523291900	기타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19	기타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29	기타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39	기타	0	0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19	기타	8	0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8	3	
8523292229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13.0% 또는 34 원/분 (표준속도)	0	
8523292239	기타	8	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919	기타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992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2999	기타	8	0	
85234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40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02119	기타	0	0	
85234021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	0	
8523402131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02139	기타	8	0	
852340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02919	기타	0	0	
852340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402992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8523402999	기타	8	0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12190	기타	0	0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1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12990	기타	8	0	
8523521000	카드로서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	0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8	0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92190	기타	0	0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9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92990	기타	8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0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802290	기타	0	0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802920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802990	기타	8	0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8	3	
8525502000	텔레비전용	8	0	
8525509000	기타	8	0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	0	0	
8525609000	기타	0	0	
8525801010	녹화기용	8	0	
8525801020	모니터용	8	0	
8525801090	기타	8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8525802090	기타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8526101000	항공기용	8	0	
8526109000	기타	8	0	
8526911010	항공기용	8	3	
8526911090	기타	8	0	
8526912010	항공기용	8	0	
8526912090	기타	8	0	
8526913010	항공기용	8	0	
8526913020	자동차용	8	0	
8526913090	기타	8	0	
8526914000	로란 리시버	8	0	
8526919010	항공기용	8	0	
8526919020	자동차용	8	0	
8526919090	기타	8	0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	0	
8527131000	카세트형	8	0	
8527132000	디스크형	8	0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139000	기타	8	0	
8527190000	기타	8	0	
8527211000	카세트형	8	0	
8527212000	디스크형	8	0	
852721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3	
8527219000	기타	8	3	
8527290000	기타	8	0	
8527911010	카세트형	8	0	
8527911020	디스크형	8	0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911090	기타	8	0	
8527919000	기타	8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	0	
8527990000	기타	8	0	
85284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4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491090	기타	8	0	
85284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492090	기타	8	0	
8528511000	액정모니터	0	0	
8528519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285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591090	기타	8	0	
85285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28592090	기타	8	0	
85286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28690000	기타	8	0	
8528711010	천연색	8	0	
8528711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8	3	
8528712010	수직해상도 720 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8	0	
8528712090	기타	8	0	
8528719010	천연색	8	5	
8528719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8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9000	기타	8	0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5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이상 45.72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0	
8528739000	기타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8	0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용	8	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8	0	
8529109290	기타	8	0	
8529109300	무선전화용 및 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0	
8529109900	기타	8	0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의 것	8	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8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8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8	0	
8529909610	천연색 튜너	8	3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8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8	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8	0	
8529909649	기타	8	0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8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또는 디지털 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8529909920	소호 제 8528.51 호 · 제 8528.41.0 000 호 또는 제 8528.61.0000 호의 것	0	0	
8529909990	기타	8	0	
8530101010	지상장치용	8	0	
8530101090	기타	8	0	
8530109000	기타	8	0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8	0	
8530900000	부분품	8	0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0	
8531105000	사이렌	8	0	
8531109000	그 밖의 음향 또는 신호기기	8	0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	0	
8531201090	기타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8	0	
8531801090	기타	8	0	
8531809000	기타	8	0	
8531901000	소호 제 8531.10 호의 것	8	0	
8531902000	소호 제 8531.20 호의 것	0	0	
8531909000	기타	8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 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00	탄탈륨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단층)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다층)	0	0	
8532250000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	0	0	
8532290000	기타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8532309000	기타	0	0	
8532901000	축전기로서 고정식의 것	0	0	
8532902000	축전기로서 가변식의 것	0	0	
8532909000	기타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 으로 한정한다)	0	0	
8533211000	칩형	0	0	
8533219000	기타	0	0	
8533291000	칩형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33299000	기타	0	0	
85333100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00	기타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8533402000	써머스터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8533409000	기타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8533909000	기타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및 축전지]이 형성된 것	0	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8534009000	기타	0	0	
8535100000	퓨즈	8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40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	0	
8535901000	커패터	8	0	
8535902000	전기 터미널	8	0	
8535909000	기타	8	0	
8536101000	관형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36109000	기타	8	0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0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8	0	
85364100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8	0	
8536490000	기타	8	0	
8536501000	회전형	8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	8	0	
8536503000	마이크로형	8	0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8	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전류가 11 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90	기타	8	0	
8536610000	램프홀더	8	0	
8536691000	동축케이블 및 인쇄회로용의 것	0	0	
8536699000	기타	8	0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8	0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703090	기타	8	0	
8536901000	접속함	0	0	
853690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9090	기타	8	0	
8537101000	배전반	8	0	
8537102000	자동제어반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37109000	기타	8	0	
8537201000	배전반	8	0	
8537202000	자동제어반	8	0	
8537209000	기타	8	0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	0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0	
8538904000	자동제어반의 것	8	0	
8538909000	기타	8	0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	0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0	
8539221000	백열램프	8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0	
8539223000	빔 램프	8	0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8	3	
8539229000	기타	8	0	
8539290000	기타	8	0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0	
8539321000	수은램프	8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0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8	3	
8539391000	냉음극 형광램프	8	0	
8539399000	기타	8	0	
8539410000	아크 램프	8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8539491090	기타	8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3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0	
85399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40110000	천연색	8	0	
854012000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8	0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8	0	
8540209000	기타	8	0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405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정한다)	8	0	
8540601000	천연색	8	0	
8540609000	기타	8	0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8	0	
8540720000	속도변조관(klystron)	8	0	
8540790000	기타	8	0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8	0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8	0	
8540892000	방전관	8	0	
8540893000	디지트론	8	0	
8540899000	기타	8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0	
8540912000	전자총	8	0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0	
8540919000	기타	8	0	
8540990000	기타	8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109000	기타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19000	기타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99000	기타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웨이퍼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	0	
8541303000	다이액(diac)	0	0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8541402090	기타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 · 포토다이오드 ·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	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8541409090	기타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8541509000	기타	0	0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0	
8541609000	기타	0	0	
8541901000	리드프레임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8541909000	기타	0	0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21010	디램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8542321090	기타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901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1090	기타	0	0	
8542902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2090	기타	0	0	
8542903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3090	기타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8	0	
854330000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8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장장치	8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0	
8543702020	전기식 미용기기	8	0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0	
8543702090	기타	8	0	
854370300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	0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0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	0	
8543709090	기타	8	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0	0	
8543909019	기타	0	0	
854390902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 (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43909090	기타	8	0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0	
8544119000	기타	8	0	
8544190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도체	8	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	0	
8544421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1090	기타	8	0	
8544422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2090	기타	8	0	
8544429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9090	기타	8	0	
8544491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1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1090	기타	8	0	
8544492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2090	기타	8	0	
8544499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9090	기타	8	0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1090	기타	8	0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2090	기타	8	0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3090	기타	8	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00	노(爐)용	5	0	
8545190000	기타	5	0	
8545200000	브러시	8	0	
8545901000	탄소봉	8	0	
8545909000	기타	8	0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초과하고 1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 킬로볼트 초과하고 1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 킬로볼트 초과하고 3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8	0	
8546909000	기타	8	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0	
8547900000	기타	8	0	
8548101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8548102000	소호 제 7204.21 호, 제 7204.29 호, 제 7204.30 호 또는 제 7204.49 호의 것	0	0	
8548103000	소호 제 7404.00 호의 것	0	0	
8548104010	소호 제 7503.00 호의 것	0	0	
8548104020	소호 제 7902.00 호의 것	0	0	
8548105000	소호 제 7802.00 호의 것	0	0	
8548106010	소호 제 8107.30 호의 것	3	0	
8548106020	소호 제 8111.00 호의 것	3	0	
8548107000	소호 제 8506.10 호, 제 8506.30 호, 제 8506.40 호, 제 8506.50 호, 제 8506.60 호 또는 제 8506.80 호의 것	8	0	
8548109000	기타	8	0	
8548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9000	기타	8	0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8602900000	기타	0	0	
8603101000	객차	5	0	
8603102000	화차	5	0	
8603901000	객차	5	0	
8603902000	화차	5	0	
8604001000	공작차(workshop)	5	0	
8604002000	기중기차(crane)	5	0	
8604003000	검사차	5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0	
8604009000	기타	5	0	
8605001010	침대차	5	0	
8605001090	기타	5	0	
8605002000	수하물차	5	0	
8605003000	우편차	5	0	
8605004000	병원차	5	0	
8605009000	기타	5	0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1000	단열용 또는 냉장용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9000	기타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606990000	기타	0	0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0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0	
8607191000	차축	5	0	
8607192000	차륜	5	0	
8607193000	윤축(輪軸)	5	0	
8607199000	기타	5	3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607290000	기타	5	3	
8607301000	훅(hook)	5	0	
8607302000	연결장치	5	3	
8607303000	완충장치	5	3	
8607309000	기타	5	3	
8607910000	기관차용	5	0	
8607990000	기타	5	3	
8608001000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	8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 · 안전 또는 교통 관제용 기기	8	5	
8608009000	부분품	8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	0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	0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	0	
8609009000	기타	0	0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8	0	
8701201000	신차	8	0	
8701202000	중고차	8	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01010	신차	8	0	
8701901020	중고차	8	0	
8701909110	50 마력 미만인 것	0	0	
8701909190	기타	0	0	
8701909900	기타	8	0	
8702101010	신차	10	0	
8702101020	중고차	10	0	
8702102010	신차	10	0	
8702102020	중고차	10	0	
8702103010	신차	10	0	
8702103020	중고차	10	0	
8702901010	신차	10	0	
8702901020	중고차	10	0	
8702902010	신차	10	0	
8702902020	중고차	10	0	
8702903010	신차	10	0	
8702903020	중고차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703101000	설상주행용	8	0	
8703102000	골프용차	8	0	
8703109000	기타	8	0	
8703217000	신차	8	0	
8703218000	중고차	8	0	
8703227000	신차	8	0	
8703228000	중고차	8	0	
8703231010	신차	8	0	
8703231020	중고차	8	0	
8703239010	신차	8	0	
8703239020	중고차	8	0	
8703241010	신차	8	0	
8703241020	중고차	8	0	
8703249010	신차	8	0	
8703249020	중고차	8	0	
8703317000	신차	8	0	
8703318000	중고차	8	0	
8703321010	신차	8	0	
8703321020	중고차	8	0	
8703329010	신차	8	0	
8703329020	중고차	8	0	
8703337000	신차	8	0	
8703338000	중고차	8	0	
8703907000	전기자동차	8	0	
8703909000	기타	8	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704211010	신차	10	0	
8704211020	중고차	10	0	
8704219010	냉동차 및 냉장차	10	0	
8704219020	탱크차	10	0	
8704219090	기타	10	0	
8704221011	신차	10	0	
8704221012	중고차	10	0	
8704221091	신차	10	0	
8704221092	중고차	10	0	
8704229010	냉동차 및 냉장차	10	0	
8704229020	탱크차	1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704229090	기타	10	0	
8704231010	신차	10	0	
8704231020	중고차	10	0	
8704239010	냉동차 및 냉장차	10	0	
8704239020	탱크차	10	0	
8704239090	기타	10	0	
8704311010	신차	10	0	
8704311020	중고차	10	0	
8704319010	냉동차 및 냉장차	10	0	
8704319020	탱크차	10	0	
8704319090	기타	10	0	
8704321010	신차	10	0	
8704321020	중고차	10	0	
8704329010	냉동차 및 냉장차	10	0	
8704329020	탱크차	10	0	
8704329090	기타	10	0	
8704901010	신차	10	0	
8704901020	중고차	10	0	
8704909010	냉동차 및 냉장차	10	0	
8704909020	탱크차	10	0	
8704909090	기타	10	0	
870510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8	0	
870510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8	0	
8705109000	기타	8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	0	
8705300000	소방차	8	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0	
8705901090	기타	8	0	
8705909010	구난차	8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0	
870590907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스노블로어(snow-blower)			
8705909090	기타	8	0	
8706001010	소호 제 8701.20 호 또는 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6001090	기타	8	0	
8706002000	제 8702 호의 것	8	0	
8706003000	제 8703 호의 것	8	0	
8706004000	제 8704 호의 것	8	0	
8706005000	제 8705 호의 것	8	0	
8707100000	제 8703 호의 차량용	8	0	
8707901010	소호 제 8701.20 호 또는 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7901090	기타	8	0	
8707902000	제 8702 호의 것	8	0	
8707903000	제 8704 호의 것	8	0	
8707904000	제 8705 호의 것	8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3	
8708210000	안전벨트	8	3	
8708290000	기타	8	3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3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3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3	
8708309000	기타	8	3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	3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	3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3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8	3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	3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8	3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8	3	
8708951000	에어백	8	3	
8708959000	기타	8	3	
8708991010	제 8701 호의 것	8	0	
8708991020	제 8702 호의 것	8	0	
8708991030	제 8703 호의 것	8	0	
8708991040	제 8704 호의 것	8	0	
8708991050	제 8705 호의 것	8	0	
8708999000	기타	8	0	
8709110000	전기식	8	0	
8709190000	기타	8	0	
8709900000	부분품	8	3	
8710001000	전차	0	0	
8710002000	그 밖의 자주식 장갑차량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102000	모페드	8	0	
8711103000	사이드카	8	0	
8711109000	기타	8	0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202000	사이드카	8	0	
8711209000	기타	8	0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302000	사이드카	8	0	
8711309000	기타	8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402000	사이드카	8	0	
8711409000	기타	8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502000	사이드카	8	0	
8711509000	기타	8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902000	사이드카	8	0	
8711909000	기타	8	0	
8712001000	경기용 자전거	8	0	
8712009010	화물운반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0	
8712009090	기타	8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00	기타	0	0	
8714110000	안장	8	0	
8714190000	기타	8	0	
8714200000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0	0	
8714911000	프레임	8	0	
8714912000	포크	8	0	
8714919000	그 밖의 부분품	8	0	
8714921000	휠 림	8	0	
8714922000	스포크	8	0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8	0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8	0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	8	0	
8714942000	그 밖의 브레이크	8	0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50000	안장	8	0	
8714961000	페달	8	0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8	0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90000	기타	8	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8	0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716390000	기타	8	0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801000	손수레	8	0	
8716802000	우마차	8	0	
8716803000	썰매	8	0	
8716809000	기타	8	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0	
8716909000	기타	8	0	
8801001010	글라이더	0	0	
8801001020	행글라이더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0	
8801009090	기타	0	0	
8802111000	군용	0	0	
8802119000	기타	0	0	
8802121000	군용	0	0	
8802129000	기타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209000	기타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309000	기타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409000	기타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8802601090	기타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0	0	
8803100000	프로펠러 및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1000	비행기의 것	0	0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0	0	
88039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의 것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0	0	
8803909000	기타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8804002000	로토슈트(rotachute)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8804009020	로토슈트(rotachute)의 것	0	0	
8805101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101090	기타	5	0	
8805102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102090	기타	5	0	
8805109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109090	기타	5	0	
8805211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211090	기타	5	0	
8805212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212090	기타	5	0	
8805291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291090	기타	5	0	
8805292010	군용 및 경찰용	0	0	
8805292090	기타	5	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0	
8901200000	탱커(tanker)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902001030	목조선	0	0	
8902001090	기타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	0	
8902002090	기타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	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8	0	
8903999000	기타	8	0	
8904001000	예인선	5	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5	0	
8904009000	기타	5	0	
8905100000	준설선	5	0	
8905201000	시추대	5	0	
8905202000	작업대	5	0	
8905209000	기타	5	0	
8905901000	조명선	5	0	
8905902000	소방선	5	0	
8905903000	기중기선	5	0	
8905904000	발전선	5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0	
8905906000	공작선	5	0	
8905907000	시추선	5	0	
8905908000	부선거(舢舨渠)	5	0	
8905909000	기타	5	0	
8906100000	군함	0	0	
8906900000	기타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5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 890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907902000	탱크	5	0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5	0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5	0	
8907905000	부표	5	0	
8907906000	수로부표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8907909000	기타	5	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8908009000	기타	0	0	
9001101000	광섬유	8	0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0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시트(sheet)와 판	8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0	
9001401000	시력 교정용	8	3	
9001409000	기타	8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	8	0	
9001509000	기타	8	0	
9001901000	프리즘	8	3	
9001902000	반사경	8	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8	0	
9001909000	기타	8	0	
9002111000	사진기용	8	0	
9002119010	촬영기 및 비디오카메라용	8	0	
9002119020	영사기용	8	3	
9002119090	기타	8	0	
9002191000	현미경용	8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8	3	
9002199000	기타	8	3	
9002201000	사진기용	8	3	
9002209000	기타	8	0	
9002901000	사진기용	8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02909090	기타	8	0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3199000	기타	8	0	
9003900000	부분품	8	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109000	기타	8	0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1090	기타	8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9090	기타	8	0	
9005100000	쌍안경	8	3	
9005801000	단안경	8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	0	
9005802030	자오의 · 적도의 · 천정의와 경위의	8	0	
9005802090	기타	8	0	
9005809000	기타	8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3	
9006100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8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3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0	
9006409000	기타	8	0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19000	기타	8	0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2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0	
9006529090	기타	8	0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0	
900653902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8	0	
9006539090	기타	8	0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9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품용으로 한정한다)			
9006599090	기타	8	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3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9006699000	기타	8	0	
9006910000	카메라용	8	0	
9006990000	기타	8	3	
9007110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 또는 두께 8 밀리미터의 필름용	8	0	
9007191000	폭이 3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0	
9007199000	기타	8	0	
9007201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0	
9007209010	폭이 2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0	
9007209020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	8	0	
9007910000	카메라용	8	0	
9007920000	영사기용	8	0	
9008100000	환등기	8	0	
9008200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품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8	0	
9008300000	그 밖의 투영기	8	0	
9008401000	인쇄제판 조정용의 것	8	0	
9008402000	마이크로필름용	8	0	
9008409000	기타	8	3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0101000	인쇄 제판용	8	3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	8	3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0109090	기타	8	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9010509000	기타	8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10901010	소호 제 9010.50.1000 호의 것	0	0	
9010901090	기타	0	0	
9010909000	기타	8	3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109000	기타	8	3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201090	기타	8	0	
9011209000	기타	8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8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8	0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8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8	0	
9011805000	비교 현미경	8	0	
9011809000	기타	8	0	
9011901000	소호 제 9011.10.1000 호, 제 9011.20.1010 호의 것	0	0	
9011909000	기타	8	3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12101090	기타	8	0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8	0	
9012901000	소호 제 9012.10.1010 호의 것	0	0	
9012909000	기타	8	0	
901310000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8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8	3	
9013801110	광전자식 시계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	8	0	
9013801140	모니터용	8	0	
9013801190	기타	8	0	
9013801910	광전자식 시계용	8	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	8	0	
9013801990	기타	8	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0	
9013803000	도어아이	8	0	
9013809000	기타	8	0	
9013901000	소호 제 9013.80.1120 호, 제 9013.80.1920 호의 것	0	0	
9013909000	기타	8	0	
9014101010	항공기용	8	0	
9014101090	기타	8	0	
9014102010	항공기용	8	0	
9014102090	기타	8	0	
9014109000	기타	8	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8	5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8	0	
9014901000	항공기용	8	0	
9014909000	기타	8	0	
9015100000	거리측정기	8	0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 距儀)	8	0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8	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8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	8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	8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	8	0	
9015804000	수리 계측용	8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	8	0	
9015809000	기타	8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6001000	직시식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16002000	전자식	8	0	
9016008000	기타	8	0	
9016009000	부분품 또는 부속품	8	0	
9017101000	플로터	0	0	
9017109000	기타	8	0	
9017201010	플로터	0	0	
9017201090	기타	8	0	
9017202010	플로터	0	0	
9017202090	기타	8	0	
9017203000	계산용구	8	0	
9017209000	기타	8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8	0	
9017309000	기타	8	0	
9017801000	눈금이 든 공은 자와 줄자	8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809090	기타	8	3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9017909090	기타	8	0	
9018111000	심전계	8	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8	0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8	0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8	0	
9018191000	뇌파계	8	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8	0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8	0	
9018198000	기타	8	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8	3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0	
9018321000	주사침	8	0	
9018322000	봉합침	8	0	
9018329000	기타	8	0	
9018391000	수혈세트 또는 수액세트	8	3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8	5	
9018398000	기타	8	5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3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491000	치과용 버(bur)	8	5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0	
9018498000	기타	8	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501000	안과용 기기	8	3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0	
9018909010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8	0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8	0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	
9018909040	인공신장기	8	0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8	0	
9018909060	수의과용 기기	8	0	
9018909080	기타	8	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9019208000	기타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0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8	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0	
9021210000	의치	0	0	
9021290000	기타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9021390000	기타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901000	스크루·스테인플·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9021908000	기타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	5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8	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8	0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8	5	
9022141090	기타	8	0	
9022142000	수의과용	8	0	
90221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	8	0	
9022192000	공업용	8	0	
9022199000	기타	8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8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8	0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8	0	
9022211090	기타	8	0	
9022212000	수의과용	8	0	
90222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22292000	공업용	8	0	
9022299000	기타	8	0	
9022300000	엑스선관	8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0	
9022901090	기타	8	0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8	0	
9023009000	기타	8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8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8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8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8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8	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 또는 와이어의 접착력 또는 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8	0	
9024109000	기타	8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8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8	0	
9024801090	기타	8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8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8	0	
9024809090	기타	8	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9024909000	기타	8	0	
9025111000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온도계	0	0	
9025119000	기타	8	0	
9025191000	온도계	8	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8	0	
9025192090	기타	8	5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0	
9025802010	수은 기압계	8	0	
9025802090	기타	8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0	
9025803020	모발 습도계	8	0	
9025803090	기타	8	0	
9025809000	기타	8	0	
9025901100	온도센서	8	0	
9025901200	습도센서	8	0	
9025901900	기타센서	8	0	
9025909000	기타	8	0	
9026101000	유량계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9026109000	기타	0	0	
9026201110	액체형	0	0	
9026201120	금속형	0	0	
9026201190	기타	0	0	
9026201900	기타	0	0	
9026209000	기타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9026809000	기타	0	0	
9026901100	레벨센서	0	0	
9026901200	유량 또는 유속센서	0	0	
9026901300	압력센서	0	0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를 제외한다)	0	0	
9026901900	기타센서	0	0	
9026909000	기타	0	0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8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27503000	비색계	0	0	
9027504000	조도계	0	0	
9027509000	기타	0	0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	0	0	
9027802010	피 · 에이치(PH) 미터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9027802050	노출계	8	0	
9027802090	기타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8	0	
9027909110	가스센서	8	0	
9027909121	분진센서	0	0	
9027909122	매연센서	8	0	
9027909130	열량센서	0	0	
9027909190	기타	0	0	
9027909910	반도체 제조용	0	0	
9027909991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8	0	
9027909999	기타	0	0	
9028101010	디지털식	8	0	
9028101090	기타	8	0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201010	디지털식	8	0	
9028201090	기타	8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301010	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것	8	0	
9028301020	전류가 50 암페어 미만인 것	8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8	0	
9029102000	생산량계	8	0	
9029103000	택시미터	8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0	
9029105000	기계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	8	0	
9029109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29201010	시계식	8	0	
9029201090	기타	8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8	0	
9029901100	속도센서	8	0	
9029901200	회전센서	8	0	
9029901900	기타센서	8	0	
9029909000	기타	8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1090	기타	8	0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2090	기타	8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0	
9030331000	전압계	8	0	
9030332000	전류계	8	0	
9030333000	회로계	8	0	
9030334000	저항계	8	0	
9030335000	검류계	8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39000	기타	8	0	
9030391000	전압계	8	0	
9030392000	전류계	8	0	
9030393000	회로계	8	0	
9030394000	저항계	8	0	
9030395000	검류계	8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99000	기타	8	0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	0	0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0	0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0	0	
9030404000	잡음전압계(psophometer)	0	0	
9030409000	기타	0	0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0	
9030890000	기타	8	0	
9030901100	전자기센서	8	0	
9030901200	방사선센서	8	0	
9030901900	기타센서	8	0	
9030909010	소호 제 9030.82 호의 것(소호 제 9030.90 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0	0	
9030909090	기타	8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8	0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8	0	
9031411000	포시미터	0	0	
9031419000	기타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나 앵글게이지	8	0	
9031493000	포시미터	8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31494090	기타	8	0	
903149901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0	0	
9031499090	기타	8	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8	0	
9031802000	로드셀	8	0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8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8	0	
9031809030	면적계	8	3	
9031809040	구면계	8	0	
9031809050	방직용 섬유 재료 검사장치	8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8	0	
9031809070	흙 · 균열 등 측정기	8	0	
9031809080	동력시험기	8	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	0	
9031809099	기타	8	0	
90319011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119	그 밖의 것	0	0	
903190119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03190129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292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901299	기타	8	0	
90319019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919	그 밖의 것	0	0	
9031901990	기타	8	0	
90319090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9019	그 밖의 것	0	0	
9031909090	기타	8	0	
9032101010	냉장고용	8	0	
9032101020	항공기용	5	0	
9032101090	기타	8	0	
9032102000	고정식	8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8	0	
9032811010	항공기용	5	0	
9032811090	기타	8	0	
9032812010	항공기용	5	3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32812099	기타	8	0	
9032819010	항공기용	5	0	
9032819090	기타	8	0	
9032891010	항공기용	5	0	
9032891090	기타	8	0	
9032892010	항공기용	5	0	
9032892090	기타	8	0	
9032893010	항공기용	5	0	
9032893090	기타	8	0	
9032899010	항공기용	5	0	
9032899090	기타	8	0	
9032901000	항공기용	5	0	
9032909000	기타	8	0	
90330000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9000	기타	8	0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01290000	기타	8	0	
9101910000	전기구동식	8	0	
9101990000	기타	8	3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1901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3	
9102119090	기타	8	0	
910212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02129010	시각장애인용	8	0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29090	기타	8	0	
9102191000	батери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02199010	시각장애인용	8	3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99090	기타	8	0	
9102211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219000	기타	8	0	
9102291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102299000	기타	8	0	
9102911000	스톱워치	8	0	
9102912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91901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02919090	기타	8	0	
9102991000	스톱워치	8	0	
9102992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999000	기타	8	0	
9103101000	여행용 시계	8	0	
9103109000	기타	8	0	
9103901000	여행용 시계	8	0	
9103909000	기타	8	0	
9104001000	자동차용	8	3	
9104002000	항공기용	8	0	
9104004000	선박용	8	0	
9104009000	기타	8	0	
91051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190000	기타	8	0	
91052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290000	기타	8	0	
91059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990000	기타	8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8	0	
9106901000	순찰시계	8	0	
9106902000	타이머	8	0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8	0	
9106909000	기타	8	3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8	0	
9107009000	기타	8	3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0	
9108190000	기타	5	0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5	0	
9108900000	기타	5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109110000	자명종 시계의 것	8	0	
9109190000	기타	8	3	
9109900000	기타	8	0	
911011100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3	
911011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19000	기타	8	5	
911012100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1012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29000	기타	8	0	
911019100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10192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10199000	기타	8	0	
911090100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	8	0	
9110909000	기타	8	0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3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8	0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909000	기타	8	0	
9112200000	케이스	8	0	
9112900000	부분품	8	0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113902000	가죽이나 콤팩트렌더로 만든 것	8	0	
9113909000	기타	8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3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114200000	시계용 보석	8	3	
9114300000	문자판	8	3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8	0	
9114900000	기타	8	0	
9201101000	자동식	8	0	
9201109000	기타	8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0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8	0	
9201909000	기타	8	0	
9202101000	바이올린	8	0	
9202102000	첼로	8	0	
9202109000	기타	8	0	
9202901000	기타	8	0	
9202902000	하프	8	0	
9202903000	만도린	8	0	
9202904000	밴조(banjo)	8	0	
9202909000	기타	8	0	
9205101000	트럼펫	8	0	
9205102000	트럼본	8	0	
9205109000	기타	8	0	
9205901010	플루트	8	0	
9205901020	클라리넷	8	0	
9205901030	색소폰	8	0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8	0	
9205901090	기타	8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0	
9205902020	리드 오르간	8	0	
9205902090	기타	8	0	
9205903010	아코디언	8	0	
9205903020	멜로디카	8	0	
9205903090	기타	8	0	
9205904000	하모니카	8	0	
9205909000	기타	8	0	
9206001000	북	8	0	
9206002000	목금	8	0	
9206003000	심벌	8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0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206006000	탬버린	8	0	
9206009000	기타	8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0	
9207103000	피아노	8	0	
9207109000	기타	8	0	
9207901000	기타	8	0	
9207902000	아코디언	8	0	
9207903000	리듬박스	8	0	
9207909000	기타	8	0	
9208100000	뮤지컬박스	8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8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8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8	0	
9208904000	뮤지컬소(musical saw)	8	0	
9208909000	기타	8	0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8	0	
9209309000	기타	8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200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400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8	0	
9209992000	박절기(metronom) · 소리굽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8	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8	0	
9209999000	기타	8	0	
9301110000	자주식	0	0	
9301190000	기타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301902030	완전 자동	0	0	
9301902090	기타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9301904010	완전 자동 피스톨(pistol)	0	0	
9301904090	기타	0	0	
9301909000	기타	0	0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	0	
9302001021	반자동	0	0	
9302001029	기타	0	0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1090	기타	0	0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9302009029	기타	0	0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9090	기타	0	0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8	0	
9303201011	펌프작동	8	0	
9303201012	반자동	8	0	
9303201019	기타	8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8	0	
9303201090	기타	8	0	
9303209011	펌프작동	8	0	
9303209012	반자동	8	0	
9303209019	기타	8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8	0	
9303209090	기타	8	0	
9303301010	단발	8	0	
9303301020	반자동	8	0	
9303301090	기타	8	0	
9303309010	단발	8	0	
9303309020	반자동	8	0	
9303309090	기타	8	0	
9303900000	기타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304001000	공기총	8	0	
9304009000	기타	8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101030	총열	0	0	
930510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및 가스완충기	0	0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101070	개머리판 · 손잡이 및 플레이트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0	
9305101090	기타	0	0	
9305109010	격발장치	8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109030	총열	8	0	
9305109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및 가스완충기	8	0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0	
9305109070	개머리판 · 손잡이 및 플레이트	8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0	
9305109090	기타	8	0	
9305210000	산탄총의 총열	8	0	
9305291000	격발장치	8	0	
930529200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293000	라이플 총열	8	0	
930529400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및 가스완충기	8	0	
930529500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29600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0	
930529700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0	
9305298000	브리치(breech) · 노리쇠와 노리쇠집	8	0	
9305299000	기타	8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911030	총열	0	0	
930591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및 가스완충기	0	0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80	브리치(breech) · 노리쇠와 노리쇠집	0	0	
9305911090	기타	0	0	
9305919000	기타	0	0	
9305990000	기타	8	0	
9306210000	탄약	0	0	
9306290000	기타	0	0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0	
9306309000	기타	0	0	
9306900000	기타	0	0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	0	
9401200000	차량용 의자	8	3	
9401302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309000	기타	0	0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409000	기타	0	0	
94015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9000	기타	0	0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19000	기타	0	0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99000	기타	0	0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19000	기타	0	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401799000	기타	0	0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0	0	
9401809000	기타	0	0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0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401909000	기타	8	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	0	
9402101090	기타	0	0	
9402109010	이발용 또는 미용실용 의자	0	0	
9402109090	기타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9402908000	기타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0	
9403201000	침대	0	0	
9403209000	기타	0	0	
9403301000	책상	0	0	
9403309000	기타	0	0	
9403401000	식탁	8	0	
9403409000	기타	8	0	
9403501000	침대	0	0	
9403509000	기타	0	0	
9403601010	문갑	0	0	
9403601020	화장대	0	0	
9403601030	장롱	0	0	
9403601090	기타	0	0	
9403609010	문갑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9403609030	장롱	0	0	
9403609090	기타	0	0	
9403701000	보행기	0	0	
9403709000	기타	0	0	
94038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3890000	기타	0	0	
9403900000	부분품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8	3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8	0	
9404900000	기타	8	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109000	기타	8	0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209000	기타	8	0	
94053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309000	기타	8	0	
9405401000	방폭형	8	0	
9405402000	투광형	8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0	
9405409000	기타	8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0	
9405602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3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3	
9405609000	기타	8	3	
940591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19000	기타	8	0	
940592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29000	기타	8	3	
940599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99000	기타	8	0	
9406001000	목재로 만든 것	8	12	
9406009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2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3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0	
9406009090	기타	8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503001300	페달차	0	0	
9503001400	인형용 차	0	0	
9503001800	기타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3002110	직물로 만든 것	8	0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	0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2160	목재로 만든 것	0	0	
9503002190	기타	8	0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0	
9503002990	기타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9503003190	부속품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소호 제 9503.00.31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3411	직물로 만든 것	8	0	
9503003419	기타	8	0	
9503003491	직물로 만든 것	8	0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	0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	0	
9503003499	기타	8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0	
9503003600	퍼즐	0	0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503003911	풍선 · 완구용 공 · 연과 이와 유사한 것	8	0	
9503003919	기타	8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 9503.00.3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4100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9504209000	기타	0	0	
950430000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0	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0	
9504901010	핀 테이블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9504901040	레인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9504901090	기타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	0	
9504909010	비디오 게임용구의 것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90	기타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0	
9505900000	기타	8	0	
9506110000	스키	8	0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506190000	기타	8	0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8	0	
9506290000	기타	8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0	
9506320000	골프공	8	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0	
9506399000	기타	8	0	
9506401000	탁구대	8	0	
9506402000	탁구라켓	8	0	
9506403000	탁구공	8	0	
9506409000	기타	8	0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0	
9506599000	기타	8	0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8	0	
9506621000	축구공	8	0	
9506622000	농구공	8	0	
9506623000	배구공	8	0	
9506624000	핸드볼공	8	0	
9506625000	미식축구공	8	0	
9506629000	기타	8	0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8	0	
9506692000	야구공	8	0	
9506699000	기타	8	0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3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0	
9506990000	기타	8	0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8	0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8	0	
9507109000	기타	8	0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507300000	낚시 릴	8	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8	0	
9507909000	기타	8	0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8	0	
9508900000	기타	8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8	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	0	
9601901090	기타	8	0	
9601902000	뿔로 된 것	8	0	
9601903000	뼈로 된 것	8	0	
9601904000	산호로 만든 것	8	0	
9601909010	진주 양식용 핵	0	0	
9601909090	기타	8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8	0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 · 호박 · 해포석 · 응결한 호박과 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0	
9602009090	기타	8	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 인지에 상관없다)	8	0	
9603210000	치솔[덴탈플레이트(dental- 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0	
9603290000	기타	8	0	
9603300000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8	0	
9603400000	페인트용 · 디스탬퍼(distemp- er)용 · 바니시(ve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3900000	기타	8	0	
9604000000	수동식 채와 어레미	8	0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8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8	0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0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0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8	0	
9606299000	기타	8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기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8	0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607199000	기타	8	0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607209000	기타	8	0	
9608100000	볼펜	8	0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608310000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8	0	
9608391000	만년필	8	0	
9608399000	기타	8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8	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0	
9608402090	기타	8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0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8911000	펜촉	8	0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8	0	
9608991000	부분품	8	0	
9608999000	기타	8	0	
9609101000	연필	8	0	
9609102000	색연필	8	0	
9609103000	크레용	8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9901000	크레용 및 오일파스텔	8	0	
9609902000	파스텔	8	0	
9609903010	필기용	8	0	
9609903090	기타	8	0	
9609909000	기타	8	0	
9610001000	석판	8	0	
9610002000	흑판	8	0	
9610009000	기타	8	0	
9611001000	스탬프	8	0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8	0	
9611009000	기타	8	0	
9612101000	타자기용	8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	0	
9612109000	기타	8	0	
9612200000	잉크 패드	8	0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13800000	그 밖의 라이터	8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0	
9613909000	기타	8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8	0	
9614009000	기타	8	0	
9615111000	빗	8	0	
9615119000	기타	8	0	
9615191000	빗	8	0	
9615199000	기타	8	0	
9615901000	머리핀	8	0	
9615909000	기타	8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8	0	
9616200000	화장용 분침과 패드	8	0	
9617001000	보온병	8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0	
9617008000	기타	8	0	
9617009000	부분품	8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0	
9618002000	자동 인형	8	0	
9618009000	기타	8	0	
9701101000	회화	0	0	
9701102000	데생	0	0	
9701103000	파스텔	0	0	
9701900000	기타	0	0	
9702001000	판화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9703001000	조각	0	0	
9703002000	조상(彫像)	0	0	
9704001000	우표	0	0	
9704009000	기타	0	0	

HSK 2009	품목명	기본세율	양허유형	세이프가드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9706009000	기타	0	0	

[¹] 뉴질랜드에서 관세항목 0507.90.1110 으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은 양허유형 E 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처리된다. 다만, 건조/가공처리된 것은 양허유형 15 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다.

[²] 뉴질랜드에서 관세항목 0701.90.0000 으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은 양허유형 E 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처리된다. 다만, 신선하거나 냉장한 칩용 감자는 양허유형 S-1 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 양허표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 및 버새									
0101.10.00	- 번식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2	살아 있는 소									
0102.10.00	- 번식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00	- 번식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103.91.00	--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3.92.00	--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00	- 면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4.20.00	- 산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00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5.12.00	-- 칠면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105.94.00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5.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 포유동물									
0106.11.00	-- 영장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6.12.0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 (바다소목의 포유동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6.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조류									
0106.31.00	-- 맹금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6.32.00	-- 앵무류[파렛류(parrots)·패러키투류 (parakeets)·금강앵무류 및 유허앵무류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6.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1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1.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1.30.00	- 뼈 없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2.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2.30.00	- 뼈 없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3.12.00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3.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냉동한 것									
0203.21.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3.22.00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3.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4	면양 또는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21.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4.22.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4.23.00	-- 뼈 없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204.3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41.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4.42.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4.43.00	-- 뼈 없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4.50.00	- 산양의 고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5										
0205.00.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식용 설육(屠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0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00	-- 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6.22.00	-- 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6.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6.30.0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00	-- 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6.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6.80.0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6.90.0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屠 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00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12.00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13.00	-- 절단육과 설육(屠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14	-- 절단육과 설육(屠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4.10	---- 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14.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칠면조의 것									
0207.24.00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25.00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26.00	-- 절단육과 설육(屠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27	-- 절단육과 설육(屠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27.10	---- 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27.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오리·거위 또는 기니아새의 것									
0207.32.00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33.00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34.00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35.0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36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36.10	---- 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7.36.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屠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00	- 토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8.30.00	- 영장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8.40.0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 (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8.50.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09										
0209.00.00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 (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	육과 식용 설육(屠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屠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돼지고기									
0210.11.00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12.00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20.00	- 쇠고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00	-- 영장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92.0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93.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99	-- 기타									
0210.99.10	--- 머튼 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99.20	--- 가금류의 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210.99.3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3류 어류 및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0.00	- 관상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활어									
0301.91.00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1.92.00	-- 뱀장어(앵굴라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1.93.00	-- 잉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1.94.00	-- 참다랑어(터너스 터너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1.95.00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1.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연어과(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11.00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12.00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웅코링쿠스 키수츠 (Oncorhynchus kisutch)·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넙치류(플루로벡티대과·바디대과· 사이노글로시대과·솔레이대과·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2.21.00	-- 넙치[레인하르트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22.00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23.00	-- 서대(솔레라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31.00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32.00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33.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34.00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35.00	-- 참다랑어(터너스 터너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36.00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302.4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5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어류(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61.0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날라(사르디날라종), 브리스링이나 스프렛 스프랴투스 스프랴투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2.00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Melanogrammus aeglefin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3.00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4.00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5.00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6.00	-- 뱀장어(앵글라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7.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8.00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9	-- 기타									
0302.69.01	--- 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9.11	--- 머리와 내장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6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2.70.00	- 간과 어란(魚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태평양연어(웅코링쿠스 넬카,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웅코링쿠스 게타, 웅코링쿠스 차비차, 웅코링쿠스 키수츠, 웅코링쿠스 마소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11.00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연어류(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21.00	-- 송어(살모 트루타 · 웅코링쿠스 미키스 · 웅코링쿠스 클라키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 웅코링쿠스 길래 · 웅코링쿠스 아파케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22.00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 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킵탈미대(Sc ophthal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31.00	--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32.00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33.00	-- 서대(솔레아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츄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41.00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42.00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43.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44.00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45.00	-- 참다랑어(터너스 터너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46.00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와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51.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303.52.00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와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303.61.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62.00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어류(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0303.71.0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날라[사르디날라(Sardinella)종], 브리슬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2.00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3.00	-- 경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4.00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5.00	-- 굴상어와 그 밖의 상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6.00	-- 뱀장어(앵겔라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7.00	-- 농어(디센트라쿠스 라브락스 · 디센트라쿠스 펀크타투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8.00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9	-- 기타									
0303.79.01	---- 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9.11	---- 머리와 내장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7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3.80.00	- 간과 어란(魚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썬것에 상관없이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304.11.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4.12.00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냉동한 필레									
0304.21.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4.22.00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4.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304.91.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4.92.00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4.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10.00	-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20.00	- 어류의 간과 어란(魚卵)(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30.00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훈제한 어류(필레를 포함한다)									
0305.41.00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게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42.00	-- 정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건조한 어류(염장했는지에 상관없이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00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305.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및 염수장한 어류									
0305.61.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62.00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Gadus macrocephal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63.00	-- 멸치(엔그로리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5.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냉동한 것									
0306.11.00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12.00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13.00	-- 새우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14.00	-- 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19.00	--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냉동하지 않은 것									
0306.2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0306.21.02	---- 전체, 조리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1.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2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306.22.02	---- 전체, 조리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2.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3	-- 새우류									
0306.23.02	---- 전체, 조리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3.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4	-- 게									
0306.24.02	---- 전체, 조리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4.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9	--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29.02	---- 전체, 조리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6.29.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10.00	- 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가리비과의 조개[팩텐(Pecten) · 클라미스 (Chlamys) 또는 프라코팩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00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홍합(미털루스종 · 페르나종)									
0307.31.00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갑오징어(세피아 오파시날리스 · 로시아 마크로소마 · 세피올라종)와 오징어 (옴아스트레페스종 · 로리고종 · 노토도타루스종 · 세피오투디스종)									
0307.41.00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문어(옥토퍼스종)									
0307.51.00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60.0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갑각류를 제외한 수생 무척추 동물의 고운가루 · 거친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 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00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99	-- 기타									
0307.99.01	---- 연체동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307.99.11	---- 냉동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307.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0401.10.01	-- 신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1.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1.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0401.20.01	-- 신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1.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1.3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는 것									
0401.30.01	-- 신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1.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00	-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21.0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2.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402.91.0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3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 · 과실 ·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00	- 요구르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3.90	- 기타									
0403.90.01	-- 농축하거나 감미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403.90.11	--- 액체나 반고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3.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0404.10.0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90	- 기타									
0404.90.01	-- 농축하거나 감미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농축하거나 감미한 것									
0404.90.11	--- 액체나 반고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4.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00	- 버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0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치즈[유장치즈와 커드(curd)를 포함한다]									
0406.20.0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치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한다)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페니실리움 로우크포르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0406.90.00	- 그 밖의 치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7										
0407.00.00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알의 노른자위									
0408.11.00	-- 건조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408.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408.91.00	-- 건조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8.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09										
0409.00.00	천연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4.10										
0410.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 류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2	돼지털·멧돼지털, 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00	-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4										
0504.00.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및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및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00	- 충전재용 깃털, 솜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6	뿔과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00	- 골소(骨素)와 뿔[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손톱·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10.0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08										
0508.00.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질(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크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뿔(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10										
0510.00.00	웅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벳(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 1 류나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00	- 소의 정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511.91.00	--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511.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 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0601.1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1.2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 및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00	-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2.20.0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2.30.0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2.40.0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									
0603.11.00	-- 장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3.12.00	-- 카네이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3.13.00	-- 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3.14.00	-- 국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3.90	- 기타									
0603.90.01	-- 건조하거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3.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풀·이끼 및 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10	- 이끼와 지의(地衣)									
0604.10.01	-- 신선한 것·건조하거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4.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604.91.00	-- 신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4.99	-- 기타									
0604.99.01	--- 건조하거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604.9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00	-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2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 양파와 쪽파									
0703.10.01	-- 양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3.10.09	-- 쪽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3.20.00	- 마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3.90.0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00	-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상추									
0705.11.00	-- 결구(結球) 상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치커리(chicory)									
0705.21.00	-- 위트루우프치커리(시커리엄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6	당근·순무·셀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00	- 당근과 순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7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8.20.00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8.90.0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40.00	- 셀러리(celery)[셀러리랙(celeriac)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60.00	-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70.00	- 시금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90	- 기타									
0709.90.01	-- 스위트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90.09	-- 올리브와 케이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09.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00	- 감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0.22.00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0.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0.30.00	- 시금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0.40.00	- 스위트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0.80.00	- 그 밖의 채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00	- 올리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1.40.00	- 오이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0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1.5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1.90.00	-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또는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00	- 양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0712.31.0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32.00	--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33.00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39	-- 기타									
0712.39.11	--- 송로(松露)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3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90	-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01	-- 옥수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90.09	-- 허브(혼합물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2.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713.10.01	-- 포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1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20	-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0713.20.01	-- 포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2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0713.31.00	-- 녹두[비그나 영고(鵲)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鵲)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32.00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33.00	--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40.00	- 렌즈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713.50.00	- 장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와 말먹이용의 장두(비시아 파바변종 에쿠나 및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4	매니옥(manioc) · 험뿌리 · 샬렘(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및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 ·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 매니옥(manioc) [카사바(cassava)]									
0714.10.10	-- 조리와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4.1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4.20	- 고구마									
0714.20.10	-- 조리와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4.2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4.90	- 기타									
0714.90.10	-- 조리와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714.9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 엘른의 껍질									
08.01	코코넛 · 브라질너트 및 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코코넛									
0801.11.00	-- 말린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브라질너트									
0801.21.00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1.22.00	-- 껍데기를 벗긴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00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1.32.00	-- 껍데기를 벗긴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아몬드									
0802.11.00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12.00	-- 껍데기를 벗긴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 [코리루스(Corylus)종]									
0802.21.00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22.00	-- 껍데기를 벗긴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호두									
0802.31.00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32.00	-- 껍데기를 벗긴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40.00	- 밤(카스타네아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50.00	- 피스타치오(pistachi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60.00	-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3										
0803.00.00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및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00	- 대추야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4.20.00	- 무화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4.30.00	- 파인애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4.40.00	- 아보카도(avocad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4.50.00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및 망고스틴(mangostee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00	- 오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5.20.00	- 만다린(mandarins) [탄제린(tangerines) 및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 윌킹(wilkin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5.50.00	- 레몬(시트리스 리몬, 시트리스 리머눔)과 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0806.10.00	- 신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6.20.00	- 건조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00	-- 수박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7.20.0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00	- 사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8.20.00	- 배와 마르멜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00	- 살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9.20.00	- 체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9.30.00	-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09.40.00	- 자두와 슬로(slo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00	- 초본류 딸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0.40.0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0.50.00	- 키위프루트(kiwifrui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0.60.00	- 두리안(duria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 초본류 딸기									
0811.10.0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1.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1.2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및 구즈베리(gooseberry)									
0811.20.0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1.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1.90	- 기타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0811.90.01	--- 패션프루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1.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0811.90.11	--- 패션프루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1.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00	- 체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2.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00	- 살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3.20.00	- 프룬(prun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3.30.00	- 사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3.40.00	- 그 밖의 과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3.50.0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4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4.00.01	- 레몬 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814.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9 류 커피·차·마테(maté)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겉껍지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1.12.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1.22.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901.90	- 기타									
0901.90.10	--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1.90.90	--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0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2.20.0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2.3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2.40.0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3										
0903.00.00	마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후추									
0904.1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4.12.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4.20	-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건조, 분쇄 또는 파쇄한 것)									
0904.2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4.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5										
0905.00.00	바닐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00	-- 계피[신나모뎀 제이니아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6.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6.2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7										
0907.00	정향(丁香)(과실·꽃 및 꽃대로 한정한다)									
0907.0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7.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 및 소두구(小荳蔻)									
0908.10	- 육두구(肉荳蔻)									
0908.1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8.10.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0908.20	- 메이스(mace)									
0908.2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8.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8.30	- 소두구(小荳蔻)									
0908.3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8.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riander)·커민(cumin) 또는 캐러웨이(caraway)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10	-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0909.1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20	- 코리앤더(corriander)의 씨									
0909.2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30	- 커민(cumin)의 씨									
0909.3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40	- 캐러웨이(caraway)의 씨									
0909.4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50	-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5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09.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0910.10	- 생강									
0910.10.02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20.00	- 사프란(saffro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30	- 심황[강황(薑黃)]									
0910.30.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향신료									
0910.91	--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0910.91.0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9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99	-- 기타									
0910.99.10	---- 카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99.15	---- 기타(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0910.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1.10.00	- 듀럼종 밀(Durum whea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2	호밀									
1002.00.00	호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3	보리									
1003.00.00	보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4	귀리									
1004.00.00	귀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5	옥수수									
1005.10.00	-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6	쌀									
1006.10.00	- 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6.20.00	- 현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6.30.00	-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6.40.00	- 깨미(broken ric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7	수수									
1007.00.00	수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8	메밀·밀리트(millet) 및 카나리시드(canary seed), 그 밖의 곡물									
1008.10.00	- 메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8.20.00	- 밀리트(mille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8.30.00	- 카나리시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008.90.00	- 그 밖의 곡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1.00.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10.00	- 호밀가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2.20.00	- 옥수수가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2.90	- 기타									
1102.90.01	-- 쌀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2.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00	-- 밀가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13.00	-- 옥수수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103.19.01	--- 보리와 메슬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19.05	--- 귀리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1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20	- 펠릿(pellet)									
1103.20.01	-- 밀가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20.05	--- 보리, 옥수수, 메슬린, 귀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3.20.0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깎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00	-- 귀리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4.19.00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깎은 것)									
1104.22.00	-- 귀리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4.23.00	-- 옥수수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4.29.00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4.30.0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1105.10.00	-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5.20.00	-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 또는 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또는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1106.10.0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6.20.00	- 사고(sago) 또는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6.30.00	- 제 8 류 물품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7	맥아(芽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00	- 볶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7.20.00	- 볶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8	전분, 이눌린(inulin)									
	- 전분									
1108.11.00	-- 밀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8.12.00	-- 옥수수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8.13.00	-- 감자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8.14.0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8.19	-- 그 밖의 전분									
1108.19.01	---- 헛뿌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8.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8.20.00	- 이눌린(inuli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1.09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곡물·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 식물, 원료 사료용 식물									
12.01										
1201.00.00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또는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10.00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2.20.00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3										
1203.00.00	코프라(copr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4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0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6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20.00	- 목화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7.40.00	- 참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7.50.00	- 겨자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1207.91.00	-- 양귀비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7.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나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00	- 대두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孢子)									
1209.10.00	- 사탕무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00	-- 루우산(알팔파)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22.00	-- 클로버(트리폴리움종)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23.00	-- 페스큐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24.00	--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25.00	-- 라이그래스(로오리엄 멀티폴로럼 랭, 로오리엄 페레네 엘)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30.0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1209.91.00	-- 채소 종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09.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폴린(lupulin)									
1210.10.0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1210.20	-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1210.20.01	--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0.20.09	-- 루플린(lupulin)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1	주로 향료용 · 의료용 또는 살충용 · 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00	- 인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1.30.00	- 코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1.40.00	- 양귀비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1.90.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20.00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1212.91.00	-- 사탕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3										
1213.00	곡물의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3.00.01	- 동물사료용으로서 잘게 부수거나 펠릿 모양의 곡물의 껍질과 겹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3.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4	스워드(swede) · 망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0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21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3 류 락(lac), 검 · 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락(lac), 천연 검 · 수지 · 검 수지 및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00	- 아라비아 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닌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및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00	-- 아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2.12.00	-- 감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2.13.00	-- 홉(hop)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2.20.00	- 펙틴질 · 펙티닌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00	-- 한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2.32.00	--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30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 ·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껍질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00	- 대나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401.20.00	- 등나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4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00	- 면(綿) 린터(lint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4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5 류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 식물성 납(蠟)									
15.01										
1501.00.00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2										
1502.00.00	소 · 염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3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및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 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3.00.01	- 올레오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3.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0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4.2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1504.20.01	-- 분획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4.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4.3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504.30.01	-- 분획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4.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5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505.00.01	-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5.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6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0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00	- 버진(virgi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0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0										
151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또는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00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또는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00	-- 조유(粗油)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1513.19	-- 기타									
1513.19.01	--- 분획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3.19.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또는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1514.91.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4.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5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야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00	-- 조유(粗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5.3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5.5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6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0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6.2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516.20.01	-- 리에스테르화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6.20.09	-- 수소첨가 기름(엑스 특성을 갖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6.2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7	마가린,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그 밖의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유지를 제외한다)									
1517.10.00	- 마가린(엑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1517.90	- 기타									
1517.90.01	-- 식용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형조제품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7.90.09	-- 액상 마가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식용의 혼합물									
1517.90.11	--- 코코넛 오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7.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8										
1518.0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00.01	- 동식물성 유지(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18.00.09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20										
1520.0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1520.00.1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20.00.90	-- 글리세롤 수와 글리세롤 폐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및 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1521.10.00	- 식물성 납(蠟)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21.90	- 기타									
1521.90.01	--- 밀랍(蜜蠟)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21.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5.22										
1522.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6류 육류·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1601.00.00	소시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 균질화한 조제품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10.01	---- 식물성 또는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식육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10.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2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1602.20.01	--- 푸아그라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0105 호의 가금류의 것									
1602.31.00	--- 칠면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32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밀폐용기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32.10	---- 식물성이나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식육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32.2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32.90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39	-- 기타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39.01	---- 식물성이나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식육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3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39.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돼지의 것									
1602.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41.01	---- 식물성이나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1.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42.01	---- 식물성이나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2.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49.01	---- 식물성이나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식육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49.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50	- 소의 것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50.01	---- 식물성이나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식육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5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50.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1602.90.01	-- 피 조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1602.90.11	---- 식물성이나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식육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2.90.2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3										
1603.00	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1603.00.01	- 설육,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3.00.09	-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및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응물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00	-- 연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2.00	-- 청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3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 및 브리스링(brisling) 또는 스프랫(sprat)									
	--- 캔이나 병으로 밀폐한 것 (술, 오일이나 소스 첨가여부에 상관없다)									
1604.13.01	---- 정어리 및 브리스링(brisl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3.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3.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4	--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 종)									
1604.14.01	--- 캔이나 병으로 밀폐한 것 (술, 오일이나 소스 첨가여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4.0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5	-- 고등어									
1604.15.01	--- 캔이나 병으로 밀폐한 것 (술, 오일이나 소스 첨가여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5.0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6	-- 멸치									
1604.16.01	--- 캔이나 병으로 밀폐한 것 (술, 오일이나 소스 첨가여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6.0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9	-- 기타									
	--- 캔이나 병으로 밀폐한 것 (술, 오일이나 소스 첨가여부에 상관없다)									
1604.19.01	---- 정어리, 청어 무리의 잔 물고기, 꽁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19.1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소시지, 페이스트, 조제밀과 같은 어류조제품 및 그와 유사한 물품									
1604.20.01	---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캔이나 병으로 밀폐한 것(술, 오일이나 소스 첨가여부에 상관없다)									
1604.20.11	---- 청어, 정어리, 어린청어, 청어 무리의 잔 물고기, 꽁치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20.19	---- 연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2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20.3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4.30.0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 게									
	-- 소시지, 페이스트, 조제밀과 같은 어류조제품 및 그와 유사한 물품									
1605.10.01	---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20	- 새우류									
	-- 소시지, 페이스트, 조제밀과 같은 어류조제품 및 그와 유사한 물품									
1605.20.01	---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2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30	- 바닷가재									
	-- 소시지, 페이스트, 조제밀과 같은 어류조제품 및 그와 유사한 물품									
1605.30.01	---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3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40	- 그 밖의 갑각류									
	-- 소시지, 페이스트, 조제밀과 같은 어류조제품 및 그와 유사한 물품									
1605.40.01	---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4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4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90	- 기타									
	-- 연체동물									
	--- 소시지, 페이스트, 조제밀과 같은 어류조제품 및 그와 유사한 물품									
1605.90.01	---- 페이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밀폐 캔이나 병으로 보존처리한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1605.90.21	---- 식물성 또는 그 밖의 식품 물질과 조합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9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605.90.39	--- 그 밖의 방법으로 포장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1.00	-- 사탕수수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1.12.00	-- 사탕무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1701.91.00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1.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 糖)·액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 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00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 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3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4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60.0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1702.90.01	-- 유아용 조제식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90.09	-- 인조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90.11	-- 캐러멜당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2.9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4	설탕과자(백색 조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0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704.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2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 껍질 및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0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3.20.0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4										
1804.00.00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5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품									
1806.10.00	-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1806.20.00	-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 또는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00	-- 속을 채운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6.32.00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806.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901.10.01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1.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1.20	-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901.20.01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1.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1.90	- 기타									
1901.90.01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1.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00	-- 새의 알을 넣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2.20.0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1902.30.01	-- 그 밖의 식품 물질의 조합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2.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2.40.00	- 쿠스쿠스(couscous)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3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날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날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1904.10.01	-- 초콜릿이나 코코아로 도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4.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4.20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1904.20.10	-- 초콜릿이나 코코아로 도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4.20.50	-- 무슬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4.2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4.30.00	- 불거 밀(bulgur whea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4.90	- 기타									
1904.90.01	-- 초콜릿으로 도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190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00	- 귀리빵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5.20.0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5.30	- 스위트 비스킷, 와플 및 웨이퍼									
1905.31.00	-- 스위트 비스킷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5.32.00	-- 와플과 웨이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5.40.00	-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5.90	- 기타									
1905.90.01	-- 성찬용 웨이퍼, 유월절 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1905.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00	- 오이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1.90	- 기타									
2001.90.01	-- 그 밖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1.90.09	--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0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2.90	- 기타									
2002.90.01	-- 주스·퓨레와 농축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2.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3.20.00	- 송로(松露)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3.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00	- 감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4.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4.90.01	-- 스위트콘·포도나무잎·양(고구마)·호프 줄기 및 팜 하트(야자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00	- 균질화한 채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20.00	- 감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2005.51.00	-- 껍데기를 벗긴 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5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6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70.00	- 올리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00	-- 죽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99	-- 기타									
2005.99.01	--- 케이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5.99.09	---- 그 밖의 종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6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00.10	- 과일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채소									
2006.00.2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6.00.30	-- 올리브와 케이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6.00.4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6.00.50	-- 완두콩(피섬 새티범)과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6.00.7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6.0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및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00	- 균질화한 조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007.91.00	-- 감귤류의 과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7.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품에 적합한 식품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견과류·당공 및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00	-- 당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08.19.01	---- 캐슈너트(cashew nu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1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20	- 파인애플									
2008.20.0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30	- 감귤류의 과실									
2008.30.0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40	- 배									
2008.40.0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50	- 살구									
2008.50.0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60	- 체리									
2008.60.0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6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70	-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2008.70.0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7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80	- 초본류 딸기									
2008.80.0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8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00	-- 팜 하트(palm hear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92	-- 혼합물									
2008.92.01	---- 과실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9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99	-- 기타									
2008.99.01	---- 줄기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과실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008.99.11	----- 조리 및 냉동 보존처리된 것(설탕이 첨가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008.99.21	----- 프룬(prun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99.25	----- 사과·자두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99.31	----- 그 밖의 베리 과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8.99.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오렌지주스									
2009.11	-- 냉동한 것									
	--- 벌크 용기의 것									
2009.11.0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11.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는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벌크 용기의 것									
2009.12.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12.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2.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9	-- 기타									
	--- 벌크 용기의 것									
2009.19.12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9.1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19.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1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 벌크 용기의 것									
2009.21.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2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21.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2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29	-- 기타									
	--- 벌크 용기의 것									
2009.29.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2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29.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2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모든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 라임의 것									
	---- 벌크 용기의 것									
2009.31.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31.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벌크 용기의 것									
2009.31.3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1.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31.4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1.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9	-- 기타									
	--- 라임의 것									
	---- 벌크 용기의 것									
2009.39.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39.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벌크 용기의 것									
2009.39.3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9.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39.4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39.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파인애플주스									
2009.41.00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50	- 토마토주스									
	--- 벌크 용기의 것									
2009.50.0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50.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5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 벌크 용기의 것									
2009.61.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6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61.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2009.6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69	-- 기타									
	---- 벌크 용기의 것									
2009.69.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6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69.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6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사과주스									
2009.71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 벌크 용기의 것									
2009.71.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7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71.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7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79	-- 기타									
	---- 벌크 용기의 것									
2009.79.3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79.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79.4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79.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80	- 그 밖의 모든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벌크 용기의 것									
2009.80.0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009.80.11	---- 패션프루트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8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80.2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과일주스									
2009.80.31	----- 패션프루트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80.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80.49	----- 야채주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90	- 혼합 주스									
	-- 벌크 용기의 것									
2009.90.0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의 것									
2009.90.11	---- 설탕을 첨가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009.90.21	----- 과실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009.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 · 차 또는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 · 차 또는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및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및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00	--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1.12	--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2.10	---- 커피 페이스트(볶은 커피 분쇄물에 식물성 지방과 때로는 그 밖의 성분과 혼합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1.12.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및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20.01	-- 차 · 밀크 분말 및 설탕의 혼합물로 구성된 조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1.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1.30.00	- 볶은 치커리(chicory) 및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00	- 활성 효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2.20	- 불활성 효모,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102.20.01	-- 불활성 효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에 한정한다)									
2102.20.11	---- 조류(algae)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2.2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2.3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00	- 간장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3.20.0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3.30	-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30.01	--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3.30.09	-- 조제한 겨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3.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4	수프 및 브로드(broth)와 수프 및 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 수프 및 브로드(broth)와 수프 및 브로드(broth)용 조제품									
2104.10.01	--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4.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4.20.0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2105.00.10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코올을 함유한 것									
2105.00.11	-- 100 분의 1.15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00.21	--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00.29	--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00.31	--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9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00.39	-- 100 분의 9 를 초과하고 100 분의 14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00.42	--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0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5.00.5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2106.10.01	-- 텍스처화한 식물성 단백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	- 기타									
2106.90.10	-- 사카린으로 구성된 정제(tablets)와 감미용 식료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혼합 알코올 조제품(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06.90.20	---- 100 분의 1.1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2106.90.3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2106.90.4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4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9 이하인 것									
2106.90.5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5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9 를 초과하고 100 분의 14 이하인 것									
2106.90.6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6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2106.90.7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7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106.90.8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8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코올을 함유한 빙과류 혼합물									
2106.90.91	--- 100 분의 1.15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92	---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93	---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6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94	---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9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95	--- 100 분의 9 를 초과하고 100 분의 14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98	---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97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106.90.9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제 22 류 음료·주류 및 식초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얼음과 눈									
2201.10	- 광천수와 탄산수									
2201.10.01	-- 금속 용기에 넣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1.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1.90	- 기타									
2201.90.01	-- 금속 용기에 넣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1.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202.10.01	-- 금속 용기에 넣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2.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2.90	- 기타									
2202.90.01	-- 금속 용기에 넣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2.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3										
2203.00	맥주									
2203.00.02	- 100 분의 1.1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3.00.12	-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3.00.22	-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4.3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3.00.31	- 100 분의 4.3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3.00.39	- 100 분의 5 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2204.10.01	-- 삼페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4.10.1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4.10.1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포도주,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1.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4.21.13	----- 100 분의 14 를 초과하는 것(주정을 첨가하거나 주정을 함유한 물질로 강화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4.21.1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4.29	-- 기타									
2204.29.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4.29.13	----- 100 분의 14 를 초과하는 것(주정을 첨가하거나 주정을 함유한 물질로 강화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4.29.1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4.30.00	- 그 밖의 포도즙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베르무트									
2205.10.0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5.10.12	----- 100 분의 14 를 초과하는 것(주정을 첨가하거나 주정을 함유한 물질로 강화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5.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5.10.2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5.10.33	----- 100 분의 14 를 초과하는 것(주정을 첨가하거나 주정을 함유한 물질로 강화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5.10.3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5.90	- 기타									
	-- 베르무트									
2205.90.0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5.90.12	----- 100 분의 14 를 초과하는 것(주정을 첨가하거나 주정을 함유한 물질로 강화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5.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205.90.2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5.90.33	---- 100 분의 14 를 초과하는 것(주정을 첨가하거나 주정을 함유한 물질로 강화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5.90.3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 과실주와 채소주									
	-- 100 분의 14 이하인 것									
2206.00.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2206.00.1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1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6.00.2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2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6.00.32	-- 100 분의 1.1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2206.00.33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3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2206.00.43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4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6 를 초과하고 100 분의 9 이하인 것									
2206.00.53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5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9 를 초과하고 100 분의 14 이하인 것									
2206.00.6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6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2206.00.7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7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6.00.8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6.00.8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및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정류한 주정									
2207.10.1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종류의 물품									
2207.10.2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1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2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20.01	-- 에틸 알코올이나 중성 주정(뉴질랜드 관세청장이 승인한 제조법에 따라 변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변성 에틸 알코올(에틸 에테르, 벤조올이나 승인된 석유제품과 혼합된 것으로 각 비율은 뉴질랜드 관세청장이 승인할 수 있으며, 조건도 뉴질랜드 관세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									
2207.20.12	---- 허가된 제조 영역에서 생산을 위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7.20.18	----- 항공 휘발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7.20.23	----- 자동차 휘발유와 엔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20.27	----- 디젤·바이오디젤 또는 그 밖의 물질과 엔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20.32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방법으로 혼합한 변성 에틸알코올(엔진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07.20.33	--- 허가된 제조 영역에서 생산을 위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7.20.35	----- 자동차 휘발유와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20.3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그 밖의 종류의 물품									
2207.20.41	--- 허가된 제조 영역에서 생산을 위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7.20.4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액체비중계로 확인될 수 있는 알코올 용량									
	---- 브랜드									
	----- 알코올 1 리터당 관세평가금액이 미화 22 달러 미만인 것									
2208.20.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20.04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20.06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2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20.1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2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20.2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2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30	- 위스키류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액체비중계로 확인될 수 있는 알코올 용량									
	---- 알코올 1 리터당 관세평가금액이 미화 22 달러 미만인 것									
2208.30.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30.04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30.06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3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30.1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3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4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액체비중계로 확인될 수 있는 알코올 용량									
	---- 알코올 1 리터당 관세평가금액이 미화 22 달러 미만인 것									
2208.40.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40.04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40.06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4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40.1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4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50	- 진(gin)과 제네바(geneva)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액체비중계로 확인될 수 있는 알코올 용량									
	---- 알코올 1 리터당 관세평가금액이 미화 22 달러 미만인 것									
2208.50.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50.04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50.06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리터당 50 센트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50.08	---- 기타	리터당 50 센트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50.1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5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60	- 보드카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액체비중계로 확인될 수 있는 알코올 용량									
	---- 알코올 1 리터당 관세평가금액이 미화 22 달러 미만인 것									
2208.60.1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6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60.2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리터당 50 센트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60.29	---- 기타	리터당 50 센트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208.60.9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60.9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알(cordial)									
2208.70.10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70.20	--- 100 분의 1.1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70.30	---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70.40	---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70.50	---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9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70.60	--- 100 분의 9 를 초과하고 100 분의 14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70.71	---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70.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	- 기타									
	-- 비터스(Bitters)									
2208.90.0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90.06	---- 100 분의 23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주정과 알코올 음료[알코올의 용량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액체비중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									
2208.90.42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4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90.53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208.90.58	---- 100 분의 1.1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62	----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68	----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72	----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9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78	---- 100 분의 9 를 초과하고 100 분의 14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85	----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8.90.9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2.09										
2209.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 또는 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지박									
2301.10.0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수지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1.20.0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의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이 곡물 또는 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또는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0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2.30.00	- 밀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2.40.0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2.50.0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갸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3.20.00	- 비트펄프(beet-pulp), 버갸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3.30.0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4										
2304.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5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305.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0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6.20.0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6.30.0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0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6.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6.50.0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6.60.0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7										
2307.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8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309.10.01	-- 개 비스킷과 이와 유사한 비스킷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9.10.09	-- 고양이나 개의 조제식품(밀폐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9.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9.90	- 기타									
2309.90.01	-- 개 비스킷과 이와 유사한 비스킷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9.90.09	-- 양과 소가 핥아 먹는 소금덩이(lick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309.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의 제조용의 것									
2401.10.01	--- 시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10.09	--- 담배, 궐련, 코 담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10.19	-- 그 밖의 용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의 제조용의 것									
2401.20.01	--- 시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20.09	--- 담배, 궐련, 코 담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20.19	-- 그 밖의 용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30	- 담배 부산물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의 제조용의 것									
2401.30.01	--- 시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30.09	--- 담배, 궐련, 코 담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1.30.19	-- 그 밖의 용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 및 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00	- 시가(cigar)·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2.20	-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402.20.10	-- 천개비당 실제 담배 함유량이 0.8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2.20.90	-- 천개비당 실제 담배 함유량이 0.8 킬로그램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2.90	- 기타									
2402.90.01	-- 시가·셔루트 및 시가릴로(담배대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궐련(담배대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402.90.12	--- 천개비당 1.1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2.90.18	--- 천개비당 1.1 킬로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및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2403.10	-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0.10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3.1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403.91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2403.91.10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3.91.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3.99	--- 기타									
2403.99.02	--- 코 담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3.99.09	---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3.99.11	--- 흡연용 혼합물(담배대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403.99.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 및 시멘트									
25.01										
2501.00.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및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체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바닷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2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3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4	천연 흑연									
2504.10.0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00	- 규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 규암[흙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00	- 석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6.20.00	- 규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7										
2507.00.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矽線石)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아스 어스(dinas earth)									
2508.10.00	- 벤토나이트(bentoni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8.30.00	- 내화(耐火)점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8.40.00	- 그 밖의 점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8.50.0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矽線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8.60.00	- 멀라이트(mulli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8.70.00	-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아스 어스(dinas earth)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09										
2509.00.00	초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0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0.20.00	- 잘게 부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0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1.20.0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2										
2512.00.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00	- 부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3.20.0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4										
2514.00.00	슬레이트[흙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겔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00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5.12.00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5.20.00	-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석고(alabast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화강암									
2516.11.00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6.12.00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6.20.00	- 사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6.90.00	-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 및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10.0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7.20.0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7.30.00	- 타르 머캐덤(tar macada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 및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00	-- 대리석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7.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0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8.20.0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8.30.1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1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00	- 석고, 무수(無水)석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0.20.00	- 플라스터(plast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1										
2521.00.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및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00	- 생석회(生石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522.20.00	- 소석회(消石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2.30.00	- 수경성(水硬性) 석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알루미늄(aluminous) 시멘트 · 슬래그(slag) 시멘트 · 슈퍼설파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0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00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3.30.00	- 알루미늄(aluminous) 시멘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3.90.0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4	석면									
2524.10.00	- 청(靑)석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5	운모(또는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									
2525.10.0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5.20.00	- 운모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5.30.00	- 운모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활석									
2526.10.00	-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6.20.00	- 부수거나 가루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8	천연 봉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봉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봉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봉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8.10.00	- 천연 봉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00	- 장석(長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형석(螢石)									
2529.21.00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9.22.00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29.30.0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10.0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30.20.00	- 키퍼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53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6 류 광(鑛) · 슬래그(slag) 및 회(灰)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00	-- 응결시키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1.12.00	-- 응결시킨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1.20.0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2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3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4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5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6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7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8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09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26.10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1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2.20.00	-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00	- 배소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4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00	- 은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8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19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0	슬래그(slag), 회(灰) 및 잔재물(금속 · 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00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0.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00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0.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0.30.0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0.4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0.60.0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620.91.00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0.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靑灰)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62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7 류 광물성 연료 · 광물유(礦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青)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00	-- 무연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1.12.00	-- 유연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1.19.00	-- 그 밖의 석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1.20.0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0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2.20.00	- 응결시킨 갈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3										
2703.00.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4										
2704.00.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 · 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7.05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6										
2706.00.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의 물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00	- 벤조올(벤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7.20.00	- 톨루올(톨루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7.30.00	- 크실렌(크실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7.40.00	- 나프탈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7.50.00	- 그 밖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707.91.00	-- 크레오소트(creosote)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7.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00	- 피치(pitch)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8.20.0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09										
2709.00.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1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710.11.11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	-- 기타									
2710.19.01	---- 석유[부분정제한 것으로 톱트크루드(topped crude)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자동차 휘발유									
	----- 선박 벌크 또는 5 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2710.19.05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710.19.09	----- 항공 휘발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710.19.13	----- 리서치 옥탄가 넘버(ON) 95 미만인 것(일반 등급) (에틸 알코올과 혼합한 것으로, 엔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15	----- 리서치 옥탄가 넘버(ON) 95 이상인 것(프리미엄 등급) (에틸 알코올과 혼합한 것으로, 엔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21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에 넣은 것									
2710.19.23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710.19.25	----- 리서치 옥탄가 넘버(ON) 95 미만인 것(일반 등급) (에틸 알코올과 혼합한 것으로, 엔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27	----- 리서치 옥탄가 넘버(ON) 95 이상인 것(프리미엄 등급) (에틸 알코올과 혼합한 것으로, 엔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등유(제트 연료 타입의 등유를 포함한다) 제트 연료 타입의 연료, 백유									
	---- 선박 벌크 또는 5 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2710.19.41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710.19.45	----- 제트 연료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47	----- 등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49	----- 백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용기에 넣은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2710.19.51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710.19.53	----- 제트 연료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55	----- 등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59	----- 백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증류물 연료									
2710.19.61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자동차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였는지 상관없다)									
2710.19.62	----- 자동차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64	----- 자동차 디젤(자동차 휘발유와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66	----- 자동차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선박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였는지 상관없다)									
2710.19.68	----- 선박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70	----- 선박 디젤(자동차 휘발유와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72	----- 선박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74	----- 등유와 디젤을 혼합한 것(가정 난방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76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증류									
2710.19.77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7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조제윤활제									
2710.19.80	---- 그리스와 그 밖의 고체 윤활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조제품									
2710.19.82	----- 선박 벌크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용기에 넣은 것									
2710.19.83	----- 5리터 이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8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89	---- 혼합 알킬렌(불포화비환식 및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혼합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91	---- 변압기와 차단기 오일 및 의약품에 적합한 특수 오일(장관이 승인하고 장관이 규정한 조건에 따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다른 종류									
2710.19.93	---- 유압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710.19.95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19.9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00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0.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 탄화수소									
	- 액화한 것									
2711.11.00	-- 천연가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1.12.00	-- 프로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1.13.00	-- 부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1.14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및 부타디엔									
2711.14.01	---- 프로필렌과 부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1.14.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가스 상태인 것									
2711.21.00	-- 천연가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2	석유젤리 ·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00	- 석유젤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2.20.0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3	석유코크스 · 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 석유코크스									
2713.11.00	--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713.12.00	-- 하소(煨燒)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3.20.00	- 석유역청(瀝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3.90.0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4	천연의 역청(瀝靑) 및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00	-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5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2715.00.01	- 매스틱 조제품(모래나 석면과 같은 광물질이 혼합된 매스틱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도로 표면 조제품									
2715.00.11	-- 컷백(역청질과 오일이 혼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5.0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715.0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8 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2801.10.00	- 염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1.20.00	- 요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1.30.00	- 플루오르, 브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2										
2802.00.00	승화황(昇華黃) 또는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3										
2803.00.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00	- 수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희가스(rare gas)									
2804.21.00	-- 아르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30.00	- 질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40.00	- 산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50.00	- 불소, 텔루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규소									
2804.61.00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70.00	- 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80.00	- 비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4.90.00	- 셀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5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 (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00	- - 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5.12.00	- - 칼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5.19.00	-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5.30.0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5.40.00	- 수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6.10.00	- 염화수소(염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6.20.00	- 클로로황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7										
2807.00.00	황산, 발연황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8										
2808.00.00	질산, 황질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00	- 오산화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09.20.00	- 인산과 폴리인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0										
2810.00.00	불소의 산화물, 불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그 밖의 무기산									
2811.11.00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00	-- 이산화탄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1.22.00	-- 이산화규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81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00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3	비(非)금속의 황화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2813.10.00	- 이황화탄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00	- 무수(無水)암모니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4.20.00	- 암모니아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00	-- 고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5.12.00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5.20.0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5.30.0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6	수산화마그네슘 및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1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6.40.0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7										
2817.00.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0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8.20.0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8.30.00	- 수산화알루미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00	- 삼산화크로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1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0	산화망간									
2820.10.00	- 이산화망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1	산화철 및 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 ₂ O ₃)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00	- 산화철과 수산화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1.20.00	- 어스컬러(earth colou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2										
2822.00.00	산화코발트 및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3										
2823.00.00	산화티타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4	산화납·연단(鉛丹) 및 오렌지납									
2824.10.0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그 밖의 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10.00	-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20.0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30.0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40.0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50.0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60.0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70.0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80.00	- 산화안티모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 플루오르화물									
2826.12.00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6.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6.3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 晶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및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 및 산화요드화물									
2827.10.00	- 염화암모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20.00	- 염화칼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염화물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2827.31.00	-- 마그네슘 염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32.00	-- 알루미늄 염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35.00	-- 니켈 염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41.00	-- 구리염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00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7.60.0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 염									
2828.10.0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8.90	- 기타									
2828.90.01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8.90.09	--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염·염소산염 및 하이포아브롬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 염소산염									
2829.11.00	-- 염소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2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00	- 황화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1	아이티온산염과 솔폭실산염									
2831.10.00	- 염소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2	아황산염, 티오황산염									
2832.10.00	- 아황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2.20.00	- 그 밖의 아황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2.30.00	- 티오황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황산나트륨									
2833.11.00	-- 황산이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황산염									
2833.21.00	-- 황산마그네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22.00	-- 황산알루미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24.00	-- 황산니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25.00	-- 황산구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27.00	-- 황산바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30.00	- 명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3.40.0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4	아질산염, 질산염									
2834.10.00	- 아질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질산염									
2834.21.00	-- 질산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4.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 산염) 및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인산염									
2835.22.00	-- 인산알루미늄이나 인산이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5.24.00	-- 인산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5.25.00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5.26.00	-- 그 밖의 인산칼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삼암모늄									
	--- 기타									
	- 폴리인산염									
2835.31.00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5.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 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00	- 탄산이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6.3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6.40.00	- 탄산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6.50.00	- 탄산칼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2836.60.00	- 탄산바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836.91.00	-- 탄산리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6.92.00	--- 탄산스트론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6.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7	시안화물 · 산화시안화물 및 시안착염									
	-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00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7.20.00	- 시안착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9	규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규산나트륨									
2839.11.00	-- 메타규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3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00	-- 무수물(無水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0.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0.20.00	- 그 밖의 붕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0.3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00	- 중크롬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1.50.0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2841.61.00	-- 과망간산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1.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1.70.00	- 몰리브덴산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1.80.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ama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0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amalgam)									
2843.10.00	- 콜로이드 귀금속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은 화합물									
2843.21.00	-- 질산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3.30.00	- 금 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3.90.00	- 그 밖의 화합물과 amalga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4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00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4.20.00	-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4.30.00	-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4.40.00	-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 · 제 2844.20 호 또는 제 2844.30 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4.5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0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2846.10.00	- 세륨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7										
2847.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대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8										
2848.00.00	인화물(磷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9	탄화물(炭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00	- 탄화칼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9.20.00	- 탄화규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4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0										
2850.00.0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2										
2852.00	무기 또는 유기 수산화물(아말감은 제외한다)									
	- 사진용의 수은 화학조제품 · 사진용의 수은 단일 물질									
2852.00.01	-- 석광재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2.00.05	-- 기타(광광유제는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수은의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									
	-- 뒷판을 보강한 것									
2852.00.09	--- 롤이나 판 형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2.00.11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2.00.13	-- 플라스틱으로 뒷판을 보강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2.00.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2.0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8.53										
2853.00.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중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29 류 유기화합물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0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00	-- 에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1.22.00	-- 프로펜(프로필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1.23.00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1.24.00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	환식탄화수소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2902.11.00	-- 시클로헥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20.00	- 벤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30.00	- 톨루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크실렌									
2902.41.00	-- 오르토-크실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42.00	-- 메타-크실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43.00	-- 파라-크실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44.00	-- 혼합크실렌이성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50.00	- 스티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60.00	- 에틸벤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70.00	- 큐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90	- 기타									
2902.90.01	-- 나프탈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2.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00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12.00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13.00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14.00	-- 사염화탄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15.00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00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22.00	-- 삼염화에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23.00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 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체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2903.31.00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41.00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42.00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43.00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3)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44.00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르메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45.00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불소와 염소만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46.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47.00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51.00	-- 1,2,3,4,5,6-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52.00	-- 알드린(ISO) · 클로르데인(ISO)과 헵타클로르(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61.00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 디클로로벤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62.00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 · 디 · 티(ISO) [클로페노탄(INN), 1,1,1- 트리클로로-2,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3.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00	-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4.20.00	-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 1 가알코올									
2905.11	-- 메탄올(메틸알코올)									
	--- 레이싱 연료용으로 신고할 때									
2905.11.01	---- 허가된 제조 영역내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2.00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 (이소프로필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3.00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4.00	-- 그 밖의 부탄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6.00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7.00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 (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00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2 가알코올									
2905.31.00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32.00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00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 (트리메틸올프로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42.00	-- 펜타에리트리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3.00	-- 만니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44.00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45.00	-- 글리세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00	-- 에스클로비놀(IN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5.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906.11.00	-- 엔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6.12.00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6.13.00	-- 스테롤과 이노시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6.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향족(芳香族)									
2906.21.00	-- 벤질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6.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	페놀, 페놀알코올									
	- 1 가페놀									
2907.11.00	-- 페놀(석탄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12.00	-- 크레졸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13.00	-- 옥틸페놀 · 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15.00	-- 나프톨과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다가페놀, 페놀알코올									
2907.21.00	-- 레소르시놀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22.00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23.00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7.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2908.11.00	-- 펜타클로로페놀(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8.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908.91.00	-- 디노셉(ISO)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8.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 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00	-- 디에틸에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2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30.0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00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43.00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44.00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50.0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09.60.0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0	3 원고리의 에폭사이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0.2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0.3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히드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0.40.00	- 디엘드린(ISO, IN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1										
2911.00.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00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12.00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00	-- 벤즈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30.00	- 알데히드-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의 알데히드									
2912.41.00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42.00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5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2.6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3										
2913.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	케톤 및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00	-- 아세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12.00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13.00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1.00	-- 장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22.00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23.00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00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40.0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50.0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의 케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퀴논									
2914.61.00	-- 안트라퀴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4.70.00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 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00	-- 포름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12.00	-- 포름산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13.00	-- 포름산의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00	-- 초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24.00	-- 무수(無水)초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초산에스테르									
2915.31.00	-- 초산에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32.00	-- 초산비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33.00	-- 초산노르말부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36.00	-- 초산디노셉(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40.0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50.0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60.00	- 부탄산·펜탄산·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70.00	- 팔미트산·스테아르산·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6.11.00	-- 아크릴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12.00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13.00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14.00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15.00	-- 올레산 · 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20.00	- 포화지방산 · 불포화지방산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 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6.31.00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32.00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34.00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35.00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36.00	-- 비나파크릴(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6.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	폴리카르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 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 폴리카르복시산 ·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11.00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12.00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13.00	-- 아젤라산 · 세바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14.00	-- 무수말레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20.00	- 포화지방산 · 불포화지방산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 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 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7.32.00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33.00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34.00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35.00	-- 무수프탈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36.00	-- 테레프탈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37.00	-- 테레프탈산디메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7.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 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8.11.00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12.00	-- 타르타르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13.00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14.00	-- 시트르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15.00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16.00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18.00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의 무수물 (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8.21.00	-- 살리실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22.00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23.00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30.00	-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918.91.00	-- 2,4,5-티(ISO)(2,4,5-트리클로로 페녹시아세트산) · 그 염과 에스테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99	- 기타									
2918.99.01	-- 2-메틸-4-클로로 페녹시아세트 산 · 2,4- 디클로로 페녹시아세트 산 · 2-메틸-4-클로로 페녹시아세트 산 · 2,4-디클로로 페녹시부트릭 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8.9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00	- 트리산(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1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 (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00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 파라티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0.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	아민관능화합물									
	-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00	--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00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22.00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30.00	- 포화지환식아민 · 불포화지환식아민 또는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00	-- 아닐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42.00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43.00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44.00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45.00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 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46.00	--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그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4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1.00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para-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1.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00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12.00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13.00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14.00	-- 덱스트로프로폭시렌(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1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미노나프톨과 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그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그들의 염									
2922.21.00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 (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00	-- 암페프라론(INN) ·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2922.41.00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42.00	-- 글루탐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43.00	-- 안트라닐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44.00	-- 틸리딘(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2.50.00	-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00	- 콜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3.20.0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00	-- 메프로바메이트(IN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4.12.00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포미돈(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00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4.23.00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4.24.00	-- 에치나메이트(IN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4.2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00	-- 사카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5.12.00	-- 구루테치미드(IN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5.1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00	-- 클로로디메포름(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00	- 아크릴로니트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6.2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아나디아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6.30.0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6.90.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7										
2927.00.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8										
2928.00.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00	- 이소시아네이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2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00	- 티오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카르바메이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0.30.00	- 티우람모도솔파이드 · 티우람디솔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솔파이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0.40.00	- 메티오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0.50.00	-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1										
2931.00.00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00	-- 테트라히드로푸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12.00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13.00	-- 푸르푸릴 알코올 및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락톤									
2932.21.00	-- 쿠마린 · 메틸쿠마린 및 에틸쿠마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29.00	-- 그 밖의 락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932.91.00	-- 이소사프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92.00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93.00	-- 피페로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94.00	-- 사프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95.00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2.9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00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00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00	-- 피리딘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32.00	-- 피페리딘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33.00	-- 알펜타닐(INN) · 아날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A) · 펜사이크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그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3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00	-- 레보파놀(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00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53.00	--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싸이크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석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날비탈(INN), 그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54.00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55.00	--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파론(INN) · 메타파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5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00	-- 멜라민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2933.69	-- 기타									
2933.69.01	---- 트라이메틸렌트라이나이트라민(헥소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6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락탐									
2933.71.00	-- 6-핵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72.00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79.10	-- 그 밖의 락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91.00	--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라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티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노르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그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3.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00	-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4.20.0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4.30.0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934.91.00	-- 아미노락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스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날((INN)), 그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4.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5										
2935.00.00	솔폰아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00	--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2.00	--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3.00	--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4.00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5.00	--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6.00	--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7.00	-- 비타민 C 와 그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8.00	-- 비타민 E 와 그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29.00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6.90.0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및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00	-- 소마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12.00	-- 인슐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00	--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 (데히드로코르티손) 및 프레드니손론 (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22.10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23.00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2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카테콜아민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31.00	-- 에피네프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40.00	- 아미노산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5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2938.1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00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헤로인,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핀(INN), 모르핀, 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핀(INN), 풀코딘(INN), 테바콘(INN)과 테바인, 그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20.00	-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30.00	- 카페인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00	-- 에페드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42.00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2939.43.00	-- 캐틴(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4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테오피린 및 아미노피린(테오피린- 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00	-- 페네틸린(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00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62.00	-- 엘고타민(INN)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63.00	-- 리세르그산과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2939.91.00	-- 코카인 · 에크코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 · 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39.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0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및 당에스테르와 그들의 염(제 2937 호 · 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1	항생물질									
2941.10.0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1.2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1.30.0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1.4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1.50.0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29.42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0 류 의약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해파린과 그 염, 치료용 ·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0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2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및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변성된 면역물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00	- 면역혈청 및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변성된 면역물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2.20.00	-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2.30.00	- 백신(동물의약품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 · 제 3005 호 · 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20	-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3.2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3.31.00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39	-- 기타									
3003.39.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3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40	-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3.4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4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003.90	- 기타									
3003.9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3.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1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20	-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4.2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31.00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3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3004.32.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3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39	-- 기타									
3004.39.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3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40	-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호르몬, 제 2937 호의 그 밖의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4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4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50	-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5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5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90	- 기타									
3004.90.01	-- 동물의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004.90.11	---- 유기 요법용 선과 제 3001 호의 그 밖의 상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4.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약품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0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5.90	- 기타									
3005.90.01	-- 면(플이나 펠리트 형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5.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와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 및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3006.10.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05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이축연신된 것									
3006.10.07	----- 인쇄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11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006.10.13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이나 아크릴 중합체의 것									
3006.10.15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006.10.17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영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06.10.21	----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23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2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3006.10.2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인쇄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31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3006.10.33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인쇄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3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37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006.10.39	---- 발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41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3006.10.43	----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폴리아미드의 것·아미노수지의 것 또는 페놀수지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006.10.45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47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플루오르 중합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 및 스트림									
3006.10.51	---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된 것(영화비닐의 중합체의 것이나 재생셀룰로오스의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53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형태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3006.10.59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61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006.10.63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65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면이나 인조 섬유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3006.10.67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형태로 이 호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6.10.69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71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3006.10.73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경편직 직물류[거룬(gall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면이나 인조섬유제의 것은 제외하며, 이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06.10.75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10.7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3006.10.8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20.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30.0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4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3006.40.01	-- 치과용 시멘트 및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40.09	-- 뼈 형성용 시멘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50.00	- 구금상자와 구금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60.00	- 호르몬, 제 2937 호의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006.7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기타									
3006.91.00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006.92.00	-- 폐(廢)의료용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1 류 비료									
31.01										
3101.00.00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0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검염과 혼합물									
3102.21.00	-- 황산암모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3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4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50.00	- 질산나트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60.00	-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검염과 혼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80.00	-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2.90.0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 또는 이 호의 물품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10.00	- 과인산석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00	- 염화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4.30.00	- 황산칼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골넛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0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골넛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5.20.00	- 비료의 3 대 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5.3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5.4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비료의 2 대 요소인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51.00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5.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5.60.00	- 비료의 2 대 요소인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1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2 류 유연용 또는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3201.10.00	- 케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1.20.0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2	합성 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00	- 합성 유기유연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2.90	- 기타									
3202.90.01	.. 크롬염을 기본재료로 한 유연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2.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3										
3203.00.00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에 한정한다), 형광증백제 또는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물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00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12.00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13.00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14.00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15.00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16.00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17.00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19.00	--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소호 제 3204.19 호까지의 두개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20.0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5										
3205.00.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6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제 3203 호 · 제 3204 호 또는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00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총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6.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6.20.0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00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6.42.00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6.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6.50.0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7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00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7.20.00	-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7.30.0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7.40.0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 ·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10.01	--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페인트와 에나멜									
3208.10.11	--- 펄(Pearl) 에센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바니시와 래커									
3208.10.21	--- 치과용 캐비티 라이너와 실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1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2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20.01	--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페인트와 에나멜									
3208.20.11	--- 펄(pearl) 에센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20.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바니시와 래커									
3208.20.21	--- 치과용 캐비티 라이너와 실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2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208.90	- 기타									
3208.90.01	--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페인트와 에나멜									
3208.90.11	---- 펄(pearl) 에센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바니시와 래커									
3208.90.21	--- 치과용 캐비티 라이너와 실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8.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9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페인트와 에나멜									
3209.10.01	--- 펄(pearl) 에센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9.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9.10.19	-- 바니시와 래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9.90	- 기타									
	-- 페인트와 에나멜									
3209.90.01	--- 펄(pearl) 에센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9.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09.90.19	-- 바니시와 래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0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 · 래커(lacquer) 및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01	- 디스템퍼(distemp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0.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1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용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00	- 스탬프용 박(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3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 · 색조 수정용 · 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 [동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00	- 세트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3214.10.01	-- 초자용의 퍼티 · 나무 충전제 · 플라스틱 우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4.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4.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 인쇄용 잉크									
3215.11.00	-- 흑색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5.1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215.90	- 기타									
3215.90.01	-- 만년필 리필용 카트리지 잉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15.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 ·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앰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00	-- 오렌지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13.00	-- 레몬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00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25.00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30.00	- 레지노이드(resinoi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90	- 기타									
	--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1.90.01	---- 요리 또는 향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1.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 음료 제조용의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알코올 용액을 포함한다)									
3302.10.10	----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302.10.20	-----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 1.15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1.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5 이하인 것									
3302.10.3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10.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3302.10.4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10.4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9 이하인 것									
3302.10.5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10.5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9 를 초과하고 100 분의 14 이하인 것									
3302.10.6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10.6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14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3302.10.7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10.7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302.10.8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10.8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1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3										
3303.00	향수와 화장수									
3303.00.01	- 향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3.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하며, 썬스크린 또는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1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4.20.00	- 눈화장용 제품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4.30.00	-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3304.91.00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4.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00	- 샴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5.20.0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5.30.00	- 헤어 래커(hair lacquer)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5.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 치약									
3306.10.01	-- 의치 청결용 정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6.2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3306.20.10	--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텍스처드 사(단사당 50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6.2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6.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항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 면도용 제품류									
3307.10.01	-- 면도 전과 후 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7.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7.20.0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7.30.0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00	-- 아가바티와 그 밖의 분향(焚香)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7.4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7.90	- 기타									
3307.90.01	-- 동물용 화장용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307.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 및 부직포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 및 부직포									
3401.11.00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401.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1.20.0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1.30.00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및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질은 제외한다)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00	-- 음이온성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2.12.00	-- 양이온성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2.13.00	-- 비이온성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2.20.00	- 소매용 조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2.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 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작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00	-- 방작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3.19	-- 기타									
3403.19.01	--- 그리스와 그 밖의 고체 윤활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403.19.11	---- 5 리터 이상의 용량의 용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3.1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403.91.00	-- 방작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3.99	-- 기타									
3403.99.01	--- 그리스와 그 밖의 고체 윤활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403.99.11	---- 5 리터 이상의 용량의 용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3.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 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 (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5.20.00	- 목재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5.3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5.40.00	- 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그 밖의 연마 조제품과 치아 광택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5.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6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4.07										
3407.0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호소									
35.01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00	- 카세인(casei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물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00	-- 건조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2.20.00	- 알크알부민(물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3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 (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는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503.00.01	-- 배양재로 특별히 제조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3.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3.00.11	- 아이징글라스(isinglas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3.00.19	-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4										
3504.00.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름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0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5.20.00	- 글루(glu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0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506.91.00	--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나 고무를 기재로 한 접착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6.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3507.10.01	-- 가황한 것(착색하거나 단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7.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50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3601.00.00	화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2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3										
3603.00.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4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 불꽃제품									
3604.10.01	-- 줄로 엮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4.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4.90	- 기타									
3604.90.01	-- 선박용 로켓과 그 밖의 해상 불꽃 신호 화공품과 이와 유사한 제품, 유사한 카트리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5										
3605.00.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6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 제 27 류의 뉴질랜드 주 제 1 호에 정의한 자동차 휘발유									
3606.10.0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의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6.1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6.90	- 기타									
3606.90.01	-- 페로세륨 및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도 가능하다)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606.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 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펙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00	- 엑스선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1.2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701.3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3701.30.01	-- 감광성 폴리에스테르 필름(디아조 공정에 의해 개발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1.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701.91.00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1.99	-- 기타									
3701.99.01	--- 감광성 폴리에스테르 필름(디아조 공정에 의해 개발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1.9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 또는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00	- 엑스선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702.31.00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32.00	-- 기타[할로겐화는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3702.41.00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42.00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을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43.00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44.00	--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51.00	--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52.00	--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53.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54.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55.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56.00	--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702.91.10	--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93.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94.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2.95.00	--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3	사진 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00	- 롤상의 것(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3.2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4										
3704.00.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10.00	- 오프셋 복사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5.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00	-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00	- 감광유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7.90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707.90.01	-- 석광재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707.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00	- 인조흑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1.2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3801.20.01	-- 오일에 서스펜션(Suspensions)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1.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1.3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1.90	- 기타									
3801.90.01	-- 금속 작업자의 표면 경화와 케이스 경화 조제품, 금속 흑연질이나 그 밖의 등급의 탄소 블록·판·바(bar)와 이와 유사한 반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1.90.09	-- 흑연(페이스트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사품, 수탄(獸 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00	- 활성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3										
3803.00.00	물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4										
3804.00	목재펠트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물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4.00.01	- 아황산염 폐액 농축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4.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00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6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00	- 로진(rosin)과 수지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6.20.0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 또는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6.30	- 에스테르 검(ester gum)									
3806.3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모달 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6.30.09	-- 액체와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과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6.30.19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7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 (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 제 및 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50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3808.50.01	-- 살충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50.09	-- 살균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초제·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3808.50.29	---- 제초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50.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50.49	-- 소독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50.5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808.91	-- 살충제									
3808.91.01	---- 유기인을 함유한 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808.91.09	---- 압력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808.9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92.00	-- 살균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93	-- 제초제 ·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 제초제									
3808.93.01	---- 트리아진 화합물을 함유한 것(페놀관능의 카르복시산, 염, 에스테르 및 그들 에스테르의 염(2-메틸-4-클로로 페녹시아세트 산, 2,4-디클로로 페녹시아세트 산, 2-메틸-4-클로로 페녹시부트릭 산, 2,4-디클로로 페녹시부트릭 산 및 이와 유사한 것·염과 그들의 에스테르를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9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93.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94.00	-- 소독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8.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 또는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및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질과 조제품(섬유산업 · 제지산업 · 가죽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00	- 전문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809.91	--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3809.91.01	--- 염색 캐리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9.9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9.92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3809.92.01	--- 염색 캐리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9.9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9.93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3809.93.01	--- 염색 캐리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09.9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뿔용 또는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 · 뿔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0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뿔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1	안티녹(anti-knock)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 안티녹(anti-knock)제									
3811.11.00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윤활유 첨가제									
3811.21.00	--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2.20.00	-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2.30.00	-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3										
3813.00.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4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또는 바니시(vanish) 제거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5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및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00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5.12.00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5.90	- 기타									
3815.90.01	-- 화합물 촉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5.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6										
3816.00.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8.17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나 제 2902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8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19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0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1										
3821.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2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 3002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 중이로 뒷편을 보강한 것									
3822.00.10	-- 롤이나 판 모양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2.00.2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2.00.50	- 플라스틱으로 뒷편을 보강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2.0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00	-- 스테아르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3.12.00	-- 올레인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3.13.00	-- 톨유(tall oil) 지방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3.19	-- 기타									
3823.19.10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3.1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3.70.0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30.00	-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40.00	-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5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60.0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00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이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2.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3.00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4.00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이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5.00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6.00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7.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8.00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 [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7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81.00	-- 옥시란을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82.00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83.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	- 기타									
3824.90.10	-- 사진 제판법 판화와 포토 리소그래피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20	-- 사카린과 그 밖의 합성 감미료(정제나 그 밖의 분배 형태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메탄올(메틸알코올)(에틸 에테르, 벤젠이나 승인된 석유 제품을 첨가한 것으로, 각 비율이 자동차 또는 항공기 피스톤 엔진의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한 것)									
3824.90.2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에서 추가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824.90.25	----- 항공 휘발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30	-- 가용성 도자기류 소성 검사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40	-- 퓨젤유, 이온 교환체, 목재용 난연 조제품, 금속작업자의 표면 강화와 케이스 경화 조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50	-- 혼합가스(액화한 것이나 압축한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60	-- 무기혼합용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70	-- 암모니아 가스액과 석탄가스 정제 공정에 사용된 산화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85	-- 추잉검 베이스(치클검이나 그 밖의 천연검을 함유한 것으로 비율은 상관없다) · 치과 도자기 분말 · 전극 페이스트(크림 또는 액체) · 잉크 제거제 및 스텐실 수정 바니시(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에틸 알코올(그 밖의 물질 및 엔진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과 혼합한 것으로, 제 2207 호나 제 2710 호와 혼합한 것을 제외한다)									
3824.90.87	---- 자동차 연료와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89	---- 그 밖의 물질과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에틸 알코올(뉴질랜드 관세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비율과 조건에 따라 에틸 에테르, 벤조올이나 승인된 석유 생산품과 혼합된 것으로, 제 2207 호나 제 2710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3824.90.91	---- 허가된 제조 영역내의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824.90.92	----- 항공 휘발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824.90.93	----- 자동차 휘발유와 엔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94	----- 디젤, 바이오 디젤 또는 그 밖의 물질과 엔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9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바이오 디젤(그 밖의 물질 혼합여부는 상관없다)									
3824.90.96	---- 바이오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97	---- 바이오 디젤(자동차 휘발유와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98	---- 바이오 디젤(그 밖의 물질과 혼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4.90.9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00	- 생활폐기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5.20.00	- 하수 찌꺼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5.30.00	- 감염성 폐기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폐유기용제									
3825.41.00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5.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5.50.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3825.61.00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5.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82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901.1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1.2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1.3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3901.30.01	-- 액체와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 및 서스펜션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1.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00	- 폴리프로필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2.20.00	- 폴리이소부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2.3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스티렌									
3903.11.00	-- 발포성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3.20.0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3.3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3.90	- 기타									
3903.90.01	-- 액체와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 및 서스펜션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3.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00	- 폴리(염화비닐)(그 밖의 모든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00	-- 가소화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4.22.00	-- 가소화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4.30.0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4.40.0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4.50.0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00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4.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초산비닐)									
3905.12.00	-- 물에 분산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00	-- 물에 분산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5.30.0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05.91.00	-- 공중합체(共重合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5.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3906.10.01	-- 액체와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 및 서스펜션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6.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6.90	- 기타									
3906.90.01	-- 액체와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 및 서스펜션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6.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3907.1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 램프 · 가루 (모달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 · 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907.2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30	- 에폭시수지									
3907.3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40	- 폴리카보네이트									
3907.4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50	- 알키드수지									
3907.5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6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6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70	- 폴리(락트산)									
3907.7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7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	-- 불포화의 것									
3907.91.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9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99	-- 기타									
3907.99.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7.9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3908.1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8.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8.90	- 기타									
3908.9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8.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3909.1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20	- 멜라민수지									
3909.2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30	- 그 밖의 아미노수지									
3909.3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40	- 페놀수지									
3909.4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50	- 폴리우레탄									
3909.5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 (모딜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09.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39.10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 덩괴 · 가루 (모넨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 · 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0.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1	석유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술폰파이드 · 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그 밖의 물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00	-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1.90	- 기타									
3911.90.01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 덩괴 · 가루 (모넨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 · 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1.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초산셀룰로오스									
3912.11.00	-- 가소화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2.12.00	-- 가소화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2.20.0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00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00	- 알긴산, 그 염 및 에스테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4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패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									
3915.10.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5.20.0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5.3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5.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막대(rod, stick) 및 형재(形材)(플라스틱의 것으로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916.10.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6.2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6.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	플라스틱의 관 ·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3917.1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3917.10.01	-- 경화단백질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10.09	--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경질(硬質)의 관 · 파이프 및 호스									
3917.21.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22.0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23.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29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3917.29.01	---- 경화단백질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17.29.11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29.19	----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29.29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관 · 파이프 및 호스									
3917.31.00	-- 연질(軟質)의 관 · 파이프 및 호스 [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32	--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7.32.02	---- 소시지케이싱(인쇄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32.0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33.00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917.39	-- 기타									
3917.39.02	--- 소시지케이싱(인쇄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39.0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7.40.00	- 연결구류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 영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마루 깔개									
3918.10.01	--- 밀짚 깔개(셀룰라 플라스틱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8.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8.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8.90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 마루 깔개									
3918.90.01	--- 밀짚 깔개(셀룰라 플라스틱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8.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18.90.11	--- 가공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18.90.21	----- 셀프접착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18.90.31	-----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8.90.39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테이프 · 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919.10.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인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919.10.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919.90	- 기타									
3919.90.01	-- 시트로 강화한 적층 섬유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19.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3920.10.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10.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920.2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이축연신된 것									
3920.20.02	--- 인쇄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20.0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20.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920.20.2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920.3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30.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30.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30.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영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00	--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49	-- 기타									
3920.49.1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49.15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49.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51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3920.51.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51.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51.2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3920.59	-- 기타									
3920.59.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59.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59.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1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3920.61.01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인쇄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2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3920.62.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2.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인쇄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3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3.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3.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3.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9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9.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9.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69.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00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73.00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79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9.01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7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3920.91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3920.91.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1.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1.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2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3920.92.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2.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2.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3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3920.93.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3.09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3.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4.00	-- 페놀수지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9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3920.99.0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3920.99.11	---- 플루오르 중합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9.19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0.99.3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및 스트립									
	- 셀룰러									
3921.11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1.11.01	---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12.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13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3921.13.01	---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13.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14.00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19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3921.19.01	---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1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90	- 기타									
3921.90.01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21.90.11	--- 시트로 강화한 적층 섬유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1.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욕목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기 · 비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00	- 욕목통 · 샤워통 · 설거지통 및 세면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2.20.0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2.90	- 기타									
3922.90.01	-- 소변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2.9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또는 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마개류									
3923.10	-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용량이 5 리터 이하인 것									
3923.10.01	--- 중첩 가능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10.09	--- 중첩 가능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용량이 5 리터를 초과하는 것									
3923.10.11	--- 중첩 가능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10.19	--- 중첩 가능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3923.21.01	---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백(날염하거나 손잡이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23.21.15	----- 인쇄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21.28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29	-- 그 밖의 플라스틱의 것									
3923.29.01	---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백(날염하거나 손잡이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3923.29.15	----- 인쇄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29.2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30.00	-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40.00	- 스폴(spool) · 콕(cop) · 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50.00	-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90	- 기타									
3923.90.01	-- 접을 수 있는 튜브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90.05	-- 칠리 빈(chilly bins)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용량이 5 리터 이하인 것									
3923.90.12	----- 중첩이 가능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90.18	----- 중첩이 가능하지 않은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용량이 5 리터를 초과하는 것									
3923.90.22	----- 중첩이 가능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3.90.28	----- 중첩이 가능하지 않은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924.10.01	-- 젓가락, 날붙이류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4.1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4.90	- 기타									
3924.90.01	-- 화장용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4.90.09	-- 그 밖의 가정용 물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00	- 저장기 · 탱크 · 배트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5.20.0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5.30	-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3925.30.01	-- 블라인드(베니션 블라인드는 제외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5.3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5.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그 밖의 물품의 제품									
3926.1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3926.10.10	-- 전자 스텔실, 지우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1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20	-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한다)									
3926.20.01	-- 브레이스 · 벨벳 · 가터 · 벨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3926.20.11	-- 장갑, 방어리장갑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20.23	-- 코트와 자켓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3926.20.32	-- 긴 바지와 레깅스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3926.20.42	-- 조합의류(바지/자켓 타입의 한조각)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3926.20.55	-- 어깨패드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20.62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30.00	-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4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3926.40.01	-- 나이론 피규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4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	- 기타									
3926.90.01	-- 타포린·천막과 캠핑 용품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3926.90.09	-- 와셔·가스킷·조인트·실(seals)과 이와 유사한 포장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11	-- 실험실·위생과 제약에 사용되는 것(논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19	-- 튜브와 막대(뉘싯대 제조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21	-- 동물·새나 어류 식별용의 클립·태그·반지와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29	-- 인공 눈(사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제외한다), 비드(장착하지도 않고, 세트나 줄에 끼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스텝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31	-- 피임기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39	-- 코바늘, 자수고리, 골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41	-- 해머, 소프트페이스(softfaced) 해머용 타격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49	-- 인형 소생 튜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51	-- 비 기계적 팬과 핸드 스크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61	-- 형제와 직사각형 모양의 물품(단순한 표면 가공 이상으로 처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926.90.6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 percha)·구아울(q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0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 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00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1.22.00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1.29	-- 기타									
4001.29.01	---- 축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001.29.11	----- 배합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1.2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1.3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 percha)·구아울(q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4001.30.01	-- 배합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1.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00	-- 라텍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19	-- 기타									
4002.19.01	---- 판·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1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20	- 부타디엔 고무(BR)									
4002.20.01	-- 판·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할로-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이나 BIIR)									
4002.31	--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002.31.01	---- 판·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3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39	-- 기타									
4002.39.01	---- 판·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3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00	-- 라텍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49	-- 기타									
4002.49.01	---- 판·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4002.4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00	-- 라텍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59	--- 기타									
4002.59.01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5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60	- 이소프렌 고무(IR)									
4002.60.01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6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7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002.70.01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7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80	-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002.80.01	-- 합성 고무의 라텍스가 결합된 천연고무의 라텍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8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002.91.00	-- 라텍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99	-- 기타									
4002.99.01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2.9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3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 ·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4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패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 ·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005.10.01	-- 용액과 분산액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5.10.09	-- 발라타, 구타페르카와 팩티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005.10.11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5.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5.20.00	-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5.91.00	-- 판 · 시트와 스트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5.99	-- 기타									
4005.99.01	---- 천연고무(라텍스를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5.9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 · 관 및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 및 링]									
4006.10	-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벌-백									
4006.10.01	-- 천연 고무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6.90	- 기타									
4006.90.01	-- 관(管)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6.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7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	고무로 만든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막대(rod) 및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 판 · 시트와 스트립									
	---- 플로어링(Flooring)									
4008.11.01	----- 매트(직사각형의 것으로 조각을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11.09	----- 고무제의 밀갈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1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1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셀룰러 고무 이외의 것으로 만든 것									
4008.21	-- 판 · 시트와 스트립									
	---- 플로어링(Flooring)									
4008.21.01	----- 매트(직사각형의 것으로 조각을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2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2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8.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	고무로 만든 관 · 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1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유압 브레이크 호스									
4009.12.11	---- 자동차용 브레이크 호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12.14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1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된 것									
4009.21.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2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유압 브레이크 호스									
4009.22.11	---- 자동차용 브레이크 호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22.14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2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된 것									
4009.31.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3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유압 브레이크 호스									
4009.32.11	---- 자동차용 브레이크 호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32.14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3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된 것									
4009.41.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4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유압 브레이크 호스									
4009.42.11	---- 자동차용 브레이크 호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42.14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09.4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transmission)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00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12.00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31.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32.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33.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34.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35.00	-- 엔드리스 싱크로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36.00	-- 엔드리스 싱크로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39	-- 기타									
4010.39.11	--- 벨트와 벨팅(기계적 또는 전기적 기능의 타이밍을 위한 톱니바퀴, 이가 있는 것 또는 달리 개조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0.3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011.10.01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20	-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4011.20.03	--- 내부 림 지름이 49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20.0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011.20.12	--- 내부 림 지름이 49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2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4011.30.00	- 항공기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40.00	- 모터사이클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50.00	- 자전거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헤링본(herring-bone)" 또는 유사한 트레드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4011.61.00	--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62.00	--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63.00	--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69	-- 기타									
	--- 상업용 경차의 것									
4011.69.11	----- 내부 림 지름이 508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69.16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6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011.92.00	--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93.00	--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94.00	--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99	-- 기타									
	--- 상업용 경차의 것									
4011.99.11	----- 내부 림 지름이 508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99.14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1.9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 또는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및 타이어 플랩(flap)									
	- 재생타이어									
4012.11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012.11.11	---- 내부 림 지름이 508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1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12.00	--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13.00	-- 항공기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19	-- 기타									
	--- 상업용 경차의 것									
4012.19.11	---- 내부 림 지름이 508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1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19.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20	- 중고 공기타이어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또는 상업용 경차의 것									
4012.20.01	---- 내부 림 지름이 508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2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3.20.00	- 자전거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 또는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 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00	- 콘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4.90	- 기타									
4014.90.01	-- 뜨거운 물주머니(Hot-water bottle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4.90.09	-- 젓꼭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4.90.11	-- 착용가능한 소변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4.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 장갑, 방어리장갑									
4015.11.00	-- 외과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5.19	-- 기타									
4015.19.01	---- 가정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5.1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5.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4016.10.01	-- 주형한 고무매트와 조각을 절단하여 만든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016.91	-- 바닥 깔개와 매트									
4016.91.01	--- 주형한 고무매트와 조각을 절단하여 만든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2.00	-- 지우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3.00	--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4.00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5.00	-- 그 밖의 팽창성 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	-- 기타									
4016.99.01	--- 고무밴드, 낱파와 그 밖의 스탬프 형태의 것, 페이스트 도포기 및 그 밖의 문구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09	--- 착유기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11	--- 제 8607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19	--- 제 8608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에 속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 완성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									
4016.99.22	----- 제 8703 호의 승용차용,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총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25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용 및 제 8701 호의 로드 트랙터 및 총중량이 3,500 킬로그램 초과 10,500 킬로그램 이하인 제 8704 호의 차량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29	-----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그 밖의 차량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016.99.31	-----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8709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4016.99.41	----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4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51	--- 제 8710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59	--- 제 8711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61	--- 제 8712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69	--- 제 8713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71	--- 제 8715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79	--- 제 8716 호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부품이 설계된 자동차(운송수단)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4016.99.81	--- 제 8801 호부터 제 8805 호까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6.99.9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7										
4017.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것으로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그 제품									
4017.00.01	-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모양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017.00.09	- 경질고무의 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 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00	-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 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 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1.50.00	- 전신 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4101.90.0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및 벨리(belly)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0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털을 제거한 것									
4102.21.00	-- 산처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00	- 파충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3.30.00	- 돼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4.11.10	---- 소가죽 (식물성 유연처리 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11.15	---- 소가죽(그 밖의 유연처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1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19	-- 기타									
4104.19.11	---- 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1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건조 상태의 것(크리스트)									
4104.4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4.41.11	---- 유연처리 또는 재유연처리한 것[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104.41.15	----- 마속동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41.19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49	-- 기타									
4104.49.11	---- 유연처리 또는 재유연처리한 것[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104.49.15	----- 마속동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4.49.19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5.30.00	- 건조 상태의 것(크리스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산양의 원피									
4106.21.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6.22.00	-- 건조 상태의 것(크리스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돼지의 것									
4106.31.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6.32.00	-- 건조 상태의 것(크리스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6.40.00	- 파충류의 원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106.91.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6.92.00	-- 건조 상태의 것(크리스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 (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전신 가죽									
4107.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107.11.11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1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1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7.12.11	--- 마속동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12.19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19	-- 기타									
4107.19.11	--- 마속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19.19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107.91.11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9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9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07.92.11	--- 마속동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92.19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99	-- 기타									
4107.99.11	--- 마속동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07.99.19	--- 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2										
4112.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 (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 (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00	- 산양의 가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3.20.00	- 돼지의 가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3.30.00	- 파충류의 가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4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패이턴트 레더 (patent leather)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00	-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4.20	-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20.11	-- 패이턴트 레더와 모조 패이턴트 레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4.20.19	--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5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성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00	-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성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115.20.00	-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 이그젝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 ·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 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 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 이그젝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00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또는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12.00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핸드백(엘벙에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00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또는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22.00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또는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4202.31.01	---- 안경케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3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3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32.01	---- 안경케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3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202.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또는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4202.91.01	---- 카메라 커버 또는 케이스, 악기용 케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9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92.01	---- 카메라 커버 또는 케이스, 악기용 케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9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2.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 의류									
4203.10.03	-- 코트, 웨이스트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스웨이드 양가죽 또는 스웨이드 어린 양가죽이나 사슴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슴가죽으로 만든 스커트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4203.10.1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장갑, 병어리장갑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203.21.01	---- 패드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203.21.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203.29.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203.30	- 벨트와 띠									
4203.30.03	-- 벨트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3.30.09	-- 띠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203.4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203.40.01	-- 손목보호대(소호 제 9113.90 호의 시계줄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3.4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2.05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205.00.01	- 버클·걸쇠·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것 (가죽커버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기계용류나 기계적 기기 또는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이나 콤팩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제품									
4205.00.09	-- 기계용 벨트 및 벨팅, 개스킷(gaskets) · 와셔(washer) · 조인트링(jointings) · 실(seal)과 이와 유사한 패킹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5.00.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5.0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2.06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또는 건(膽)의 제품									
4206.00.01	- 캣거트(catgu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206.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3 류 모피 및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 · 제 4102 호 또는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0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1.3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 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1.60.0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1.80.0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1.90.0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4302.11.00	-- 밍크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2.19	-- 기타									
4302.19.01	--- 소, 마속동물, 염소, 산양, 면양과 어린양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2.19.05	--- 토끼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2.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2.20.0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2.3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302.30.01	-- 판, 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2.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3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303.10.01	-- 장갑, 방머리장갑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303.1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4303.90	- 기타									
4303.90.01	-- 동력구동형 스프링용의 연마된 캡 또는 모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3.90.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3.04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304.00.01	- 동력구동형 스프링용의 연마된 캡 또는 모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4.00.09	- 장갑, 방머리장갑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304.0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뿔나무 · 브리케트(briquette)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401.10.00	- 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00	-- 칩입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4401.22.00	-- 활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1.30.00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2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3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쓴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0.00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3.20.00	-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41.00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кау(Meranti Bakau)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3.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403.91.00	--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3.92.00	--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3.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갬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뾰족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휜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00	- 침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4.20.00	- 활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5										
4405.00.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6	계도용 침목									
4406.10.00	- 주악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갬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	- 침엽수류									
	-- 연필향 나무(이스턴 레드 시더)·람버티아나 잣나무·스트로브 잣나무·몬티콜라 잣나무									
4407.10.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세콰이아 섬페르비렌스(레드우드)									
4407.10.2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2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미송(더글러스 퍼, 오레곤 파인)									
4407.10.4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4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5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삼나무(웨스턴 레드 시더)									
4407.10.6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6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7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종류									
4407.10.8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8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10.9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7.21	--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4407.21.12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1.25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1.9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2	--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 및 발사(Balsa)									
4407.22.12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2.25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2.9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5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кау(Meranti Bakau)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4407.25.10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5.20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5.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6	--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 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4407.26.10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6.20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6.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7	-- 사펠리(Sapelli)									
4407.27.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7.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7.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8	-- 이로코(Iroko)									
4407.28.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8.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8.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9	-- 기타									
	--- 대패질한 것									
4407.29.10	----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폴 (Kapur) · 티크(Teak) · 종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및 캄파스(Kempa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9.25	---- 오쿠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사펠리(Sapelli) · 시뽀(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 jou d'Afrique) · 마코레(Makoré) · 이로코(Iroko) ·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 mba) · 디벤투우(Dibétou) · 림바(Limba) 및 아조베(Azob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9.3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9.40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2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407.91	-- 참나무(코르스종)의 것									
4407.91.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1.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2	--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407.92.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2.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2.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3	--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4407.93.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3.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3.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4	--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4407.94.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4.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4.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5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4407.95.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5.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5.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9	-- 기타									
	--- 물푸레나무 · 히커리(hickory) · 가래나무 (호두나무) 종									
4407.99.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9.0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유칼립투스 종									
4407.99.2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9.2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9.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407.99.4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9.49	---- 연마하거나 핑거조인트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7.99.5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및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 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 침엽수류									
4408.10.0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8.3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 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4408.31.10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31.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39	--- 기타									
4408.39.10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39.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90	- 기타									
	-- 그 밖의 열대산 견목재									
4408.90.02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90.0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물푸레나무 · 히커리(hickory) · 가래나무 (호두나무) 종, 오크									
4408.90.1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408.90.21	---- 대패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8.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 · 홈가공 · 은축이음 가공 · 경사이음가공 · 브이형이음가공 · 구슬형가공 · 주형가공 · 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 침엽수류									
4409.10.01	-- 드른 우드(drawn woo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9.10.09	-- 주형가공한 목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9.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활엽수류									
4409.21	-- 대나무로 만든 것									
4409.21.01	---- 드른 우드(drawn woo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9.21.09	---- 주형가공한 목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09.2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9.29	-- 기타									
4409.29.01	---- 드른 우드(drawn woo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09.29.09	---- 주형가공한 목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09.2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목재로 만든 것									
4410.11.0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0.12.00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0.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0.90.2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411.12.01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12.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13	--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411.13.01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13.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14	--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411.14.01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14.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4411.92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411.92.01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가공 하지 않은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92.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93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인 것									
4411.93.01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가공 하지 않은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93.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94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4411.94.01	---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가공 하지 않은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1.94.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412.10.01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시트만으로 구성된 합판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10.29	-- 기타(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10.4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 적어도 한 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1.01	---- 적어도 한 쪽 외면의 플라이가 다음의 열대산 목재인 것: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화이트라왕(White Lauan)·시뽀(Sipo)·림바(Limba)·오구메(Okoumé)·오베체(Obeche)·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사펠리(Sapelli) 또는 마호가니(Mahogany) [스웨테니아(Swietenia) 중]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31.09	---- 적어도 한 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인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3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32.01	---- 바보엔(baboen)의 것[자단(紫檀)(Palissandre du Bresil or Bois de Rose femelle)에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32.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3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4412.94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및 배튼보드(battenboard)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94.01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4.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4.19	----- 기타(적어도 한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 기타									
4412.94.25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4.2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 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94.35	----- 최소 한 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4412.94.39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4.45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4.49	---- 기타(적어도 한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4412.94.55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4.5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9	-- 기타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									
	---- 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99.01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9.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9.19	---- 기타(적어도 한 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4412.99.25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9.2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99.35	----- 최소 한 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4412.99.39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9.45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9.49	---- 기타(적어도 한 개의 층이 파티클보드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4412.99.55	-----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2.99.5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3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4										
4414.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 (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틀드럼, 나무로 만든 팻릿(pallet), 박스팻릿(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팻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틀드럼									
4415.10.01	-- 반환용 빈 컨테이너로서 세관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5.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5.20	- 팻릿(pallet) · 박스팻릿(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팻릿칼러(pallet collar)									
4415.20.10	-- 팻릿, 박스팻릿과 그 밖의 깔판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5.2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6										
4416.00.00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브(tub) 및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7										
4417.00	나무로 만든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 신발의 나무로 만든 굽									
4417.00.01	- 공구와 공구의 몸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공구의 손잡이									
4417.00.11	-- 비, 모프, 랭이, 쇠스랑과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7.0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7.00.21	- 브러시 손잡이, 브러시와 비의 몸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7.00.29	- 신발의 목재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 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0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20.00	- 문 · 문틀 및 문지방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18.4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50.00	- 지붕을 이는 판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60.00	- 기둥과 들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00	-- 모자이크 마루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72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8.72.01	--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7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79	- 기타									
4418.79.01	--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7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8.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9										
4419.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19.00.01	- 스푼과 포크 · 모든 종류의 목제 트레이와 팬시 대접(공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19.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20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1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420.10.01	-- 비드(장착되지 않고 세트나 실에 꿰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4420.10.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4420.90	- 기타									
4420.90.01	--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20.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00	- 옷걸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21.90	- 기타									
4421.90.01	-- 스폴·콕·보빈·릴과 이와 유사한 것 (선반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21.90.09	-- 노와 패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21.90.11	--부채 및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손뜨개용 바늘, 접합용 부목, 신발용의 못과 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421.90.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또는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0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2										
4502.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00	- 마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00	- 블록·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 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5.90	- 기타									
4504.90.01	-- 와셔(washer)·개스킷(gaskets)·조인팅 (jointings)·실(seal)과 이와 유사한 패킹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4.90.11	-- 테이블 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504.9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 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00	-- 대나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1.22.00	-- 등나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601.92.00	-- 대나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1.93.00	-- 등나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1.94.00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1.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 (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	-- 대나무로 만든 것									
4602.11.01	--- 바닥 깔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12	-- 등나무로 만든 것									
4602.12.01	--- 바닥 깔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1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19	-- 기타									
4602.19.01	--- 수세미제품, 바닥 깔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90	- 기타									
4602.90.01	-- 바닥 깔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602.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4701.00.00	기계목재펄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2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00	-- 침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3.19.00	-- 활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00	-- 침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3.29.00	-- 활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00	-- 침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4.19.00	-- 활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00	-- 침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4.29.00	-- 활엽수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5										
4705.00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0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6.20.0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6.30.0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706.91.00	-- 기계펄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6.92.00	-- 화학펄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6.93.00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10.0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7.2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만들어진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7.3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707.90.0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8.01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1.00.11	- 신문용지(화학기계공정에 의한 필수 섬유 중량이 1 채굴미터당 57 그램을 초과하거나 65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1.0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및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 (手製紙)와 판지									
4802.10	-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11	-- 사이즈와 형태를 불문한 모든 수제의 지, 데클레팅 형태의 모든 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10.15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림상이나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20.00	-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40.00	- 벽지용 원지(原紙)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 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4802.54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4802.54.11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이나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4.19	----- 그 밖의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크라프트지와 판지									
4802.54.21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이나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4.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02.54.31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이나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4.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5	-- 롤상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802.55.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02.55.14	----- 크라프트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5.1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5.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6	-- 시트상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802.56.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6.13	---- 프린트·압형 또는 천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6.21	---- 크라프트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6.25	---- 오토클레이브 시험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6.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7	--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이나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4802.57.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02.57.15	----- 크라프트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멀티 플라이 지와 판지									
4802.57.19	----- 라이너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7.21	----- 오토클레이브 시험지(테이프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7.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8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이나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은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4802.58.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02.58.15	----- 크라프트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멀티 플라이 지와 판지									
4802.58.21	----- 라이너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8.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8.35	----- 오토클레이브 시험지(테이프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58.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 기계공정에 따른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 롤 모양인 것									
4802.61.11	---- 신문용지(제 4801 호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1.13	---- 크라프트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1.15	---- 인쇄용 및 필기용 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1.17	---- 라이너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2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4802.62.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2.15	--- 라이너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2.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9	--- 기타									
4802.69.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9.15	--- 라이너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2.6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3										
4803.00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울룩불룩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표면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또는 인쇄한 것]에 상관없이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3.00.01	- 티슈지(Tissue paper)(1 제곱미터당 총량이 22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03.00.11	-- 주름지거나 구겨진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3.00.19	-- 울룩불룩한 것 또는 구멍을 뚫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3.00.21	-- 표면착색,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3.00.29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3.00.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00	-- 표백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00	-- 표백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총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 표백하지 않은 것									
4804.31.01	--- 함침가공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3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3.39	-- 기타									
4804.39.01	--- 함침가공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3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총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4804.41	-- 표백하지 않은 것									
4804.41.01	--- 함침가공 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4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42.00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총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00	-- 표백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52.00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4.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11	---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83 그램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11.19	---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83 그램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12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805.12.11	---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50 그램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12.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4805.24.00	--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25	--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805.25.11	--- 1 제곱미터당 총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25.19	--- 1 제곱미터당 총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30.00	- 아황산포장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40.00	- 여과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50.00	- 펄트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기타									
4805.91.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92.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5.93.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 및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00	- 황산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6.20.00	- 내지지(耐脂紙)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6.30.0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6.40.0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7										
4807.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룩불룩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0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8.20	- 지대용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룩불룩한지(embossed) 또는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808.20.01	-- 압형 또는 천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8.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8.30	- 그 밖의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룩불룩한지(embossed) 또는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808.30.01	-- 압형 또는 천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8.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8.90	- 기타									
4808.90.01	-- 압형 또는 천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8.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 또는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00	- 셀프복사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9.90	- 기타									
4809.90.01	-- 전사지(인쇄용과 필기용 중이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09.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필기용 및 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 지와 판지(기계공정이나 반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 롤 모양인 것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4810.13.11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13.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13.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14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4810.14.11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시트(shee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14.13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14.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810.22.11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 및 다이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22.13	---- 오토그래프 시한지(테이프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22.15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22.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22.29	--- 그 밖의 지와 판지로서 필기용·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29	-- 기타									
4810.29.0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2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00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며,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32.00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며,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00	-- 두 겹 이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0.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 또는 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00	-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접착지와 판지									
4811.41	-- 셀프접착지									
4811.41.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1.4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1.49	-- 기타									
4811.49.1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11.49.21	---- 인쇄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1.49.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00	-- 표백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1.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1.60.0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 또는 침투한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1.90.0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2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3	결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0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3.2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813.20.01	-- 결련지나 결련 제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3.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3.90	- 기타									
4813.90.01	-- 결련지나 결련제조용인 롤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3.90.09	--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3.90.11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절단되지 않은 롤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3.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4.10.00	- "인그레인(ingrain)" 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4.2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814.20.01	-- 접합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4814.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00	- 셀프복사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6.90	- 기타									
	-- 폭이 15 센티미터 초과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4816.90.01	--- 인쇄용 및 필기용 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16.90.11	----- 전사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6.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816.90.21	--- 전사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6.9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합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00	- 봉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7.20.00	- 봉합엽서·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7.30.00	-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손수건·크렌싱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 냅킨·탐폰(tampon)·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제지용 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4818.10.00	- 화장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20.00	-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30.00	-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40	- 위생 타월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4818.40.02	-- 위생 타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40.05	-- 탐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4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50.00	- 의류와 의류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9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포장대와 그 밖의 포장용기, 지 또는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0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9.20.0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9.30.00	-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9.4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9.50.0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19.60.0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첩·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0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첩·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0.20.00	- 연습장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0.30.0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0.40.0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0.50.0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0.90	- 기타									
4820.90.01	-- 예술가용 블록형태의 기름종이와 도화용 종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0.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종류를 불문하고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00	- 인쇄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482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2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콕(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0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 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00	- 여과지와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40.0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 및 다이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00	-- 대나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70.0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 또는 프레싱한 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90	- 기타									
4823.90.01	-- 자동전기절연 판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90.09	-- 자카드 부속품용의 천공카드와 이와 유사한 것, 스탬프 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90.11	-- 의류용 패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823.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 製)문서·타자문서 및 도면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0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901.91.00	-- 사전 및 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1.99	-- 기타									
4901.99.01	---- 뉴질랜드 안내책자나 이들의 부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1.9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00	-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3										
4903.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4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10.00	- 지구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905.91.00	-- 책자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5.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6										
4906.00.00	설계도와 도면[건축용·공학용·공업용· 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및 카본복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7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7.00.01	- 우표, 지폐, 해외 신용기관에서 발급된 여행자수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7.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908.1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908.10.01	-- 오토모티브 디칼커매니어(automotive decalcomania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8.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8.90	- 기타									
4908.90.01	-- 오토모티브 디칼커매니어(automotive decalcomania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8.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09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4909.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0										
4910.00.00	캘린더(종류를 불문하고 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911.10.01	-- 상업 카달로그·가격목록과 컬러카드(해외에서 인쇄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가)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관련된 것									
	(나) 물품이 대표되는 회사 또는 개인의 그 국가에서의 이름과 해외주소를 표시한 것, 그리고									
	(다) 뉴질랜드에 사업을 설립한 회사 또는 개인이 그 물품의 판매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은 것									
4911.10.09	-- 상업 카달로그·가격목록과 컬러카드·그 밖의 종류의 것, 회람·프로그램·인쇄 포스터와 그 밖의 광고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1.10.11	-- 뉴질랜드 이외의 여행 안내용으로 제작된 브로셔·포스터 및 리플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1.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4911.91.00	-- 서화·디자인 및 사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1.99	-- 기타									
4911.99.01	--- 영화·콘서트·극장·철도와 그 밖의 티켓, 창용 투명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1.99.09	--- 지·판지 또는 그 밖의 재료에 인쇄된 광고전단(showcar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1.99.11	--- 크리스마스 카드와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4911.99.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0 류 견									
50.01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2										
5002.00.00	생사(곤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3										
5003.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및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4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5										
5005.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6										
5006.00.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00	- 견 노일(noil)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7.20.0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007.90.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00	-- 깎은 양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00	-- 깎은 양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1.30.00	- 탄화처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00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2.20.00	- 동물의 거친 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1.03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3.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3.30.0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4										
5104.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면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00	- 카드(card)한 양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울통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00	-- 코움(comb)한 양모(단면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동물의 부드러운 털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00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5.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5.40.00	- 동물의 거친 털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06.10.01	-- 바닥 깔개 제조용의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10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6.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106.20.01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바닥 깔개 제조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6.2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107.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00	- 카드(card)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8.20.00	- 코움(comb)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09.90.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0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 [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110.00.01	- 소매용 마모사나 조수모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0.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1	직물 [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111.11.02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1.11.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1.19.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1.2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1.20.02	-- 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1.20.0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1.3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1.30.02	-- 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1.30.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1.90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111.90.02	-- 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1.90.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112.11.02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2.11.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2.2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2.20.02	-- 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2.20.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2.3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2.30.02	-- 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2.30.0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2.90	- 기타									
5112.90.02	-- 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112.90.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1.13										
5113.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2 류 면									
52.01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0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202.91.00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3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0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4.20.00	- 소매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로 한정한다]									
5205.11.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12.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13.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14.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15.00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22.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23.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24.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205.26.00	--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27.00	--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28.00	-- 83.33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3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3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3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3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4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4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4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4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46.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47.00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5.48.00	--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12.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13.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14.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15.00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22.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23.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24.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25.00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3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3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5206.3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3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4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4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4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6.4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0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12.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13.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1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표백한 것									
5208.21.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22.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23.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2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염색한 것									
5208.31.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32.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33.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3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서로 다른 색으로 된 것									
5208.41.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42.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43.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4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날염한 것									
5208.51.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52.00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8.5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1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1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표백한 것									
5209.2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2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2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염색한 것									
5209.3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209.3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3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42.00	-- 데님(deni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43.00	--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4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날염한 것									
5209.5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5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09.5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0.1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표백한 것									
5210.2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0.2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염색한 것									
5210.3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0.3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0.3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0.4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날염한 것									
5210.5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0.5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1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1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20.00	-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염색한 것									
5211.3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3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3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42.00	-- 데님(deni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43.00	--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4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날염한 것									
5211.51.00	-- 평직물(平織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52.00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1.5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	그 밖의 면직물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00	-- 표백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12.00	--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13.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14.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15.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초과인 것									
5212.21.00	-- 표백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22.00	--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23.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24.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212.25.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0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00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1.30.00	-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0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적용 인피(靱皮)섬유[아마·대마 및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00	- 황마와 그 밖의 방적용 인피(靱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5										
5305.00.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 및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6	아마사									
5306.10.00	- 단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6.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적용 인피(靱皮)섬유사									
5307.10.00	- 단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7.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 종이실(paper yarn)									
5308.10.00	- 코이어(coir)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8.20.00	- 대마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9	아마직물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09.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5310.10.00	- 표백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1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3.11										
5311.00.00	그 밖의 식물성 방적용 섬유의 직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00	- 합성필라멘트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1.20.0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11.00	-- 아라미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2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텍스처드사									
5402.31.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32.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33.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34.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402.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사(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사(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00	--- 탄성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45.00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46.00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47.00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48.00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사(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52.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בל사]									
5402.61.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62.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2.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실(단사)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3.31.01	--- 텍스처드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3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3.32.01	--- 텍스처드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3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403.33.01	--- 텍스처드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3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403.39.01	--- 텍스처드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3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בל사]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5403.41.01	--- 텍스처드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4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403.42.01	--- 텍스처드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4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403.49.01	--- 텍스처드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3.4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모노필라멘트									
5404.11.00	-- 탄성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4.12.00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5										
5405.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6										
5406.00.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0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5407.2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5407.20.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30	-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5407.30.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4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4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4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5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5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5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5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00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69	-- 기타									
5407.69.10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6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7.71.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7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72	-- 염색한 것									
5407.72.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7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7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7.73.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7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74	-- 인쇄한 것									
5407.74.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74.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8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7.81.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8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82	-- 염색한 것									
5407.82.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8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8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7.83.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8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84	-- 날염한 것									
5407.84.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84.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									
5407.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407.91.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9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92	-- 염색한 것									
5407.92.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9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407.93.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9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7.94	-- 날염한 것									
5407.94.01	---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섬유 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407.94.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408.2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8.2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8.2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									
5408.3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8.3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8.3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408.3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1.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1.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1.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1.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2										
5502.0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00	-- 아라미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3.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3.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3.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00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실의 웨이스트 및 가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00	- 합성섬유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5.2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6.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6.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7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8.2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00	-- 단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12.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00	-- 단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22.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 섬유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00	-- 단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32.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사(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00	-- 단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42.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52.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53.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5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509.62.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6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실									
5509.91.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509.92.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09.9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00	-- 단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0.12.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0.2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510.3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0.90.00	- 그 밖의 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1.2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1.3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 섬유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512.9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섬유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12.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13.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1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염색한 것									
5513.21.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23.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2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서로 다른 색으로 된 것									
5513.31.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3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날염한 것									
5513.41.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3.4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섬유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12.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1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염색한 것									
5514.21.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22.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23.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2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30.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날염한 것									
5514.41.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42.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43.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4.49.00	-- 그 밖의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12.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13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15.13.11	---- 타이어코드 직물 · 이불감(tickings)과 직물(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13.2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51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22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15.22.11	---- 타이어코드 직물 · 이불감(tickings)과 직물(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22.2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51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									
5515.91.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99	-- 기타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515.99.01	---- 타이어코드 직물 · 이불감(tickings)과 직물(양모나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3 미만인 것으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5.99.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515.9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1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1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1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사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516.2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2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2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2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3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3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3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4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4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4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516.4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516.9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92.00	-- 염색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9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516.94.00	-- 날염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6 류 워딩(wadding)·펠트(felt) 및 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5601.10	- 워싱 타월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5601.10.02	-- 워싱 타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1.10.05	-- 탐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1.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워딩(wadding),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00	-- 면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1.2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1.30.0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및 밀네프(mill ne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응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10.00	- 니들loom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602.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2.90.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응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603.12.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603.13.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603.14.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5603.91.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3.92.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3.93.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3.94.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및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0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604.90	- 기타									
	--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또는 도포한 것)									
5604.90.01	--- 모조 캣거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604.90.09	---- 가황하지 않은 강력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4.9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4.9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5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침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6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01	-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6.0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및 케이블[여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사이잘(sisal)이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01	-- 포장용 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7.29.01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01	-- 포장용 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7.49.01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607.5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5607.50.01	-- 포장용 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7.50.11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7.90	- 기타									
5607.90.01	-- 포장용 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7.90.11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갈[끈·배의 밧줄(cordage) 또는 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및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00	-- 제품으로 된 어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8.1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8.90	- 기타									
5608.90.01	-- 어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608.9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6.09										
5609.00.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1.10.01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파일 직물의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1.10.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 (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00	-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 (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2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갈개									
5702.20.01	-- 매트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20.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2.31.01	--- 파일직물에서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31.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3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3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01	---- 파일직물에서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41.09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5702.41.11	---- 파일직물에서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41.1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4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02.42.01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42.09	--- 테리타올자 및 이와 유사한 직물의 욕실용 매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42.19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5702.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2.49.01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49.09	--- 테리타올자 및 이와 유사한 직물의 욕실용 매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49.19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5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2.50.01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50.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50.19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50.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01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91.09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702.91.11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91.1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2.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02.92.01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92.09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2.99.01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2.99.09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703.10.01	---- 파일직물에서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3.10.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703.10.11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파일 직물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5703.10.1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5703.2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703.20.01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3.20.09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5703.30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3.30.01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3.30.09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5703.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703.90.01	--- 절단·조립이나 주형한 카펫(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703.90.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00	- 타일(표면적이 최대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704.90	- 기타									
5704.90.01	-- 조각형태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704.9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7.05										
5705.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 및 셔닐(chenille)직물(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면으로 만든 것									
5801.21.00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22.00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23.00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24.00	--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25.00	-- 절단된 경파일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26.00	-- 셔닐(chenille)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00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32.00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33.00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34.00	-- 절단되지 않은 경파일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35.00	-- 절단된 경파일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36.00	-- 셔닐(chenille)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1.9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 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11.00	-- 표백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2.2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2.30	- 터프트(tuft)한 직물									
5802.30.01	-- 방직용섬유나 부직포를 기본재료로 한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802.30.15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기본재료로 한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802.30.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802.30.3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8.03										
5803.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4	뿔(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 · 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 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00	- 뿔(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4.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4.30.0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5										
5805.00.00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6	세폭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록)									
5806.1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및 셔닐 (chenille)직물									
5806.10.02	-- 타월지와 테리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6.1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806.2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806.20.01	-- 탄성섬유를 함유한 직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5806.2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									
5806.31.00	-- 면으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806.3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6.3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806.40.00	-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직물(불덕)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또는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00	- 직조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7.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 · 품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5808.10.01	-- 외과 봉합용의 비흡수성 실로 만든 브레이드, 살균한 혈류 차단용 테이프(umbilical tap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8.1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808.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09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의 금속드리아사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또는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자수천									
5810.91.00	-- 면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10.9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10.9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11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5811.00.01	- 견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811.0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제 59 류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0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2.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3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00	- 폴리(염화비닐)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3.20.00	- 폴리우레탄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3.90	- 기타									
5903.90.01	-- 재단용의 가용성 인터라이닝(interlining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3.9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4	리놀륨,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00	- 리놀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4.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5										
5905.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5906.10.00	-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5906.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906.91.01	---- 탄성이 있는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906.91.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6.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7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7.00.01	- 건섬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907.00.11	-- 전기절연한 테이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7.00.19	-- 타자기용과 이와 유사한 리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7.0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7.00.39	-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8										
5908.00.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더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삼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09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관 모양의 물품(그 밖의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909.00.01	- 커플링이나 그 밖의 장치가 부착된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909.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10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5911.10.0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및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 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방)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 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11.20.0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11.32.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11.4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5911.90	- 기타									
5911.90.01	-- 공업용 섬유 필터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5911.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 "롱파일(long pile)" 편물									
6001.10.01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001.1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001.10.25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1.10.35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10.45	----- 면으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10.5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 면으로 만든 것									
6001.21.0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6001.21.09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21.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001.22.0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22.09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22.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2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001.29.0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29.09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001.29.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1.29.2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001.91	-- 면으로 만든 것									
6001.91.0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91.09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91.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001.92.0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92.09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92.2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001.9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001.99.0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99.09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1.99.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1.99.2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002.4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2.4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2.90	- 기타									
6002.9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002.90.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2.90.2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2.90.25	--- 면으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2.90.2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003.1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3.1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3.20	- 면으로 만든 것									
6003.2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3.2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3.30	- 합성섬유의 것									
6003.3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3.3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3.4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6003.4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3.4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3.90	- 기타									
6003.9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3.9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004.1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4.10.17	-- 양모나 섬유모로 만든 것, 면으로 만든 것,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004.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4.90	- 기타									
6004.9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4.90.13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4.90.15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4.90.17	--- 면으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4.9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0.05	경편직 직물류(거론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면으로 만든 것									
6005.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5.21.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21.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5.22	-- 염색한 것									
6005.22.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22.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005.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005.23.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23.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5.24	-- 날염한 것									
6005.24.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24.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합성섬유의 것									
6005.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5.31.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31.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32	-- 염색한 것									
6005.32.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32.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005.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005.33.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33.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005.34	-- 날염한 것									
6005.34.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34.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재생·반(半)합성 섬유류의 것									
6005.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5.41.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41.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5.42	-- 염색한 것									
6005.42.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42.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5.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005.43.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43.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5.44	-- 날염한 것									
6005.44.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5.44.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5.90	- 기타									
6005.90.15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005.90.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5.90.2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006.1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1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면으로 만든 것									
6006.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6.21.11	--- 욕류 포장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1.15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1.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22	-- 염색한 것									
6006.22.11	--- 욕류 포장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2.15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006.23.11	--- 욕류 포장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3.15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3.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24	-- 날염한 것									
6006.24.11	--- 욕류 포장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4.15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24.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합성섬유의 것									
6006.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6.31.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31.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32	-- 염색한 것									
6006.32.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3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006.33.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6006.33.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34	-- 날염한 것									
6006.34.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34.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재생·반(半)합성 섬유 의 것									
6006.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6006.41.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41.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42	-- 염색한 것									
6006.42.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4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6006.43.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43.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44	-- 날염한 것									
6006.44.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44.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006.90	- 기타									
6006.90.11	--- 스티치 본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006.9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 면으로 만든 것									
6101.20.02	-- 오버코트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1.20.22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1.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1.30.02	-- 오버코트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1.30.2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1.9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2	여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2.10.02	-- 오버코트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2.10.22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2.20	- 면으로 만든 것									
6102.20.02	-- 오버코트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2.20.2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2.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2.30.02	-- 오버코트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2.30.2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2.9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3.10.00	- 슈트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양상블(ensemble)									
6103.22.00	-- 면으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3.23.00	-- 합성섬유의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3.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3.3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3.33.02	-- 합성섬유의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3.3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103.4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3.42	-- 면으로 만든 것									
6103.42.02	--- 긴바지,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3.42.12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3.43	-- 합성섬유의 것									
6103.43.02	--- 긴바지,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3.43.18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6103.4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103.49.02	--- 긴바지,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3.49.12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4	여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슈트									
6104.13.02	-- 합성섬유의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1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앙상블(ensemble)									
6104.2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23.02	-- 합성섬유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2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3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3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4.3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드레스									
6104.4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4.4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4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4.44.02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4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4.5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4.5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4.5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104.6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4.6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4.6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4.6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10	- 면으로 만든 것									
6105.1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5.1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5.2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5.2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5.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105.9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5.9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6	여성용이나 소년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 면으로 만든 것									
6106.10.02	-- 블라우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6.10.1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6.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6.20.02	-- 블라우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6.20.1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6.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106.90.02	-- 블라우스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6.90.12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7.12.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7.1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7.2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7.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07.9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7.9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 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108.11.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8.1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2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8.22.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8.2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8.32.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8.3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08.9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8.92.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8.9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09	티셔츠 · 싱글릿(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 면으로 만든 것									
	-- 티셔츠									
6109.1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9.1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9.10.2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9.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티셔츠									
6109.9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9.9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09.90.2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0	저지(jersey) · 풀오버(pullover) · 카디건(cardigan) ·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02	-- 양모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0.12.02	-- 캐시미어 산양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0.19.02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10.20.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0.30.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0.90.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1	유아용 의류와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 면으로 만든 것									
6111.20.01	-- 양말, 발목 양말과 이와 유사한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20.05	-- 넙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20.22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30	- 합성섬유의 것									
6111.30.01	-- 양말, 발목 양말과 이와 유사한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30.05	-- 넙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30.22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111.90.01	-- 양말, 발목 양말과 이와 유사한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90.05	-- 넙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1.90.22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와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트랙슈트									
6112.1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2.12.02	-- 합성섬유의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2.1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12.20.00	- 스키슈트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02	-- 합성섬유의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12.3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2.4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3										
6113.00.00	의류(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4.30.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4.90.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즈(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6115.10.01	-- 팬티호스와 타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115.10.05	---- 탄성 스타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전길이 스타킹									
6115.10.09	----- 전부 또는 일부가 인조섬유제인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15.10.15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15.10.19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5.10.59	---- 여성용과 소년용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남성용과 소년용									
6115.10.69	---- 반양말과 쓰리쿼터 양말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115.10.7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즈 (tights)									
6115.21.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22.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5.3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115.30.01	-- 탄성 스타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전길이 스타킹									
6115.30.09	---- 전부 또는 일부가 인조섬유제인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30.19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30.2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5.94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5.94.01	----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5.94.09	----- 여성용과 소년용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남성용과 소년용									
6115.94.19	----- 반양말과 쓰리쿼터 양말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94.29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95	-- 면으로 만든 것									
6115.95.01	----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5.95.09	----- 여성용과 소년용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남성용과 소년용									
6115.95.19	----- 반양말과 쓰리쿼터 양말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5.95.29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96	-- 합성섬유의 것									
6115.96.01	----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5.96.09	----- 여성용과 소년용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남성용과 소년용									
6115.96.19	----- 반양말과 쓰리쿼터 양말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5.96.29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9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115.99.02	----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5.99.12	----- 여성용과 소년용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남성용과 소년용									
6115.99.21	----- 반양말과 쓰리쿼터 양말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5.99.29	----- 기타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한다)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116.10.10	-- 장갑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6.10.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116.10.9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6.9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116.92.00	-- 면으로 만든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116.93.00	-- 합성섬유의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116.9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61.17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00	-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117.80	- 그 밖의 부속품									
6117.80.02	-- 벙커이류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117.80.05	-- 고무처리한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117.80.15	-- 탄성처리한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117.8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117.90.00	- 부분품	부품이 설계된 가공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가공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제 62 류 의류와 의류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 (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1.1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1.13.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1.1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201.9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1.9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1.93.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1.9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2	여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 (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2.12.00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2.1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2.1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202.9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2.9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2.93.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2.9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6203.1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12.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1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앙상블(ensemble)									
6203.2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3.23.02	-- 합성섬유의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3.2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3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3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3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203.41.02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4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4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3.4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62.04	여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령복은 제외한다)									
	- 슈트									
6204.1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12.00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13.00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1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양상블(ensemble)									
6204.2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4.22.00	-- 면으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4.23.00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3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3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3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드레스									
6204.4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42.00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43.00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44.0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4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5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53.02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5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204.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4.61.02	--- 긴바지, 짧은 바지, 반바지 및 청바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4.61.1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4.62	-- 면으로 만든 것									
6204.62.02	--- 긴바지, 짧은 바지, 반바지 및 청바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62.1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4.63	-- 합성섬유의 것									
6204.63.02	--- 긴바지, 짧은 바지, 반바지 및 청바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63.1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4.6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204.69.02	--- 긴바지, 짧은 바지, 반바지 및 청바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4.69.19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 면으로 만든 것									
6205.2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5.2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5.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5.3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5.3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5.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205.90.02	-- 가슴둘레가 81 센티미터 이하 사이즈의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5.90.12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6	여성용이나 소년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 블라우스									
6206.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206.10.02	-- 블라우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6.10.12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6.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6.20.02	-- 블라우스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6.20.08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6.30	- 면으로 만든 것									
6206.30.02	-- 블라우스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6.30.1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6.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6.40.02	-- 블라우스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6.40.1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6.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206.90.02	-- 블라우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6.90.1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 마·욕육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7.1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7.22.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7.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207.91	-- 면으로 만든 것									
6207.91.02	---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7.91.12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7.9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207.99.02	---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7.99.18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8	여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8.1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8.22.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8.29.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208.91	-- 면으로 만든 것									
6208.91.01	---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8.91.12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8.92.01	---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8.92.12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08.9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208.99.01	---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8.99.12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9	유아용 의류와 의류부속품									
6209.20	- 면으로 만든 것									
6209.20.01	-- 넵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9.20.09	-- 기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9.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9.30.01	-- 넵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9.30.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09.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209.90.01	-- 넵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09.90.09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0	의류(제 5602 호 · 제 5603 호 · 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02	-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0.20.0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0.30.0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0.40.0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0.50.02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1	트랙슈트 · 스키슈트 및 수영복, 그 밖의 의류									
	- 수영복									
6211.11.02	-- 남성용이나 소년용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1.12.00	-- 여성용이나 소년용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1.20.00	- 스키슈트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02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1.33.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1.3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여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4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1.42.00	-- 면으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1.4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1.4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 · 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02	- 브래지어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2.20.02	- 거들과 팬티거들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2.30.02	- 코르슬렛(corselette)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2.90	- 기타									
6212.90.02	-- 그 밖의 제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이 호에 속하는 제품의 부분품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212.90.11	--- 어깨 끈(제품으로 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2.90.18	--- 기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3	손수건									
6213.20.00	- 면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3.9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4	shawl(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4.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4.30.00	- 합성섬유의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4.40.0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4.9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2.15	넥타이류									
6215.10.02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5.20.0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5.90.02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2.16										
6216.00.00	장갑, 방어리장갑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00	- 부속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217.90.00	- 부분품	부품이 설계된 가공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가공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로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방직용 섬유제품, 남아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00	- 전기모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 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301.20.02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301.20.05	--- 면적이 1 제곱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1.20.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1.3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6301.30.02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301.30.05	--- 면적이 1 제곱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1.30.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1.40	-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01.40.02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301.40.05	--- 면적이 1 제곱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1.40.08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1.9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6301.90.02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301.90.05	--- 면적이 1 제곱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1.90.08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table linen) · 토일렛린넨(toilet linen) 및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10.0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 면으로 만든 것									
6302.21.01	--- 부착된 시트, 주름장식된 배개보, 야기침대 커버, 이불커버, 매트리스 커버, 깃털이불 케이스 및 퀼트 케이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21.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2.22.01	--- 부착된 시트, 주름장식된 배개보, 야기침대 커버, 이불커버, 매트리스 커버, 깃털이불 케이스 및 퀼트 케이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22.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2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302.29.01	--- 부착된 시트, 주름장식된 배개보, 야기침대 커버, 이불커버, 매트리스 커버, 깃털이불 케이스 및 퀼트 케이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29.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 면으로 만든 것									
6302.31.01	--- 부착된 시트, 주름장식된 배개보, 야기침대 커버, 이불커버, 매트리스 커버, 깃털이불 케이스 및 퀼트 케이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31.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2.32.01	--- 부착된 시트, 주름장식된 배개보, 야기침대 커버, 이불커버, 매트리스 커버, 깃털이불 케이스 및 퀼트 케이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32.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3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302.39.01	--- 부착된 시트, 주름장식된 배개보, 야기침대 커버, 이불커버, 매트리스 커버, 깃털이불 케이스 및 퀼트 케이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39.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2.40.0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00	-- 면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2.5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2.5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2.60.0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 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302.91.00	-- 면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2.9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2.9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및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303.12.00	-- 합성섬유의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3.1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기타									
6303.91	-- 면으로 만든 것									
6303.91.01	--- 커튼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3.91.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3.92	-- 합성섬유의 것									
6303.92.01	--- 커튼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3.92.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3.9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303.99.01	--- 커튼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3.99.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침대덮개									
6304.11.00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4.19.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304.91.00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4.92.00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4.9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4.9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 皮)섬유로 만든 것									
6305.10.01	-- 양모용 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20	- 면으로 만든 것									
6305.20.01	-- 양모용 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5.32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305.32.10	--- 양모용 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32.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33	--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05.33.10	--- 양모용 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33.9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5.39	-- 기타									
6305.39.10	--- 양모용 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39.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6305.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305.90.01	-- 양모용 펙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5.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과 차일, 텐트, 돛[보트용 ·세일보드(sailboard)용 또는 랜드크래프트 (landcraft)용], 캠프용품									
	- 방수포(tarpaulin)·차양과 차일									
6306.12.00	-- 합성섬유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6.1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텐트									
6306.22.00	-- 합성섬유의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6.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6.30.00	- 돛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6.40.00	- 공기 매트리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306.91	-- 면으로 만든 것									
6306.91.01	---- 압축공기식 배개와 쿠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6.91.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6.9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6306.99.01	---- 압축공기식 배개와 쿠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6.99.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									
6307.10.00	- 마루닥이포·점사닥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7.20.00	-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7.90	- 기타									
	-- 깃발, 페넌트와 배너									
6307.90.01	---- 국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7.9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307.90.11	-- 위생타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7.90.19	-- 치즈포와 덮개, 손목보호대, 이중결합하거나 연결한 원단상의 자수포, 우산용 루프와 밴드, 웨더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7.90.21	-- 루프보호대와 발목보호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7.90.28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3.08										
6308.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9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6309.00.01	- 의류	킬로그램당 2.34 달러	2	킬로그램당 1.0 달러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9.00.11	- 신발류	킬로그램당 2.34 달러	3	킬로그램당 1.0 달러	킬로그램당 1.0 달러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09.0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10	넙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 배의 밧줄(cordage)·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 (scrap)과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00	- 선별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31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4 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 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그링(plug 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 고무장화									
6401.10.02	---- 고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1.10.04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1.10.06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1.10.08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신발									
6401.10.11	---- 성인 사이즈 4 이하인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1.10.19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그 밖의 신발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 고무장화									
6401.92.02	----- 고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1.92.04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1.92.06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1.92.09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1.92.1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1.92.2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1.92.29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1.99	-- 기타									
6401.99.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1.99.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1.99.1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00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19	-- 기타									
6402.19.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19.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19.1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2.20	- 신발류[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6402.20.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20.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20.1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신발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6402.91.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91.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91.1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2.99	-- 기타									
6402.99.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99.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2.99.19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00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19	-- 기타									
6403.19.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19.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3.19.19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20.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20.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3.20.19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6403.40.0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3.40.0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6403.51.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51.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51.19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59	-- 기타									
6403.59.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59.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59.1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신발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6403.91.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91.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3.91.1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3.99	-- 기타									
6403.99.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99.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3.99.19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6404.11.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사이즈									
	----- 캔버스 갑피와 고무바닥을 가진 것									
6404.11.12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4.11.15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4.11.2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4.11.2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4.19	-- 기타									
6404.19.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사이즈									
	----- 캔버스 갑피와 고무바닥을 가진 것									
6404.19.12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4.19.15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4.19.2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4.19.29	----- 그 밖의 사이즈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20.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4.20.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4.20.1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5	그 밖의 신발									
6405.1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6405.10.01	-- 스키부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5.10.1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5.10.2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5.10.29	---- 그 밖의 사이즈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5.2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405.20.0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5.20.1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5.20.19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5.90	- 기타									
6405.90.01	-- 스키부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5.90.11	---- 어린이 사이즈 0 부터 사이즈 9 1/2 까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5.90.21	---- 어린이 사이즈 10 부터 성인 사이즈 4 까지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405.90.29	---- 그 밖의 사이즈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힐쿠션(heel cushi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0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406.20.0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406.91.00	-- 목재로 만든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406.9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신발류 부분품									
6406.99.02	----- 철강제 토캡과 스테인리스 안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6.99.05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406.9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레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5.02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5.04										
6504.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5.10.00	- 헤어네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505.90.00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 안전모자									
6506.10.01	-- 소방관용 헬멧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506.10.09	-- 기타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기타									
6506.91.00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506.99.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2.5%	5	10.0%	7.5%	5.0%	2.5%	무세	무세	무세
65.07										
6507.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청과 턱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0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601.91.00	-- 대가 접첩식(折疊式)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601.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6.02										
6602.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지팡이·시트스틱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02.00.01	-- 목동용의 크루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602.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602.00.19	- 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 및 부속품									
6603.20.0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6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7 류 조제 깃털 및 솜털과 깃털 또는 솜털로 만든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6701.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깃털의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 [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와 깃촉(quill)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7.02	인조 꽃·잎 및 과일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 또는 과일로 만든 제품									
6702.1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702.9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7.03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 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7.04	가발·가수염·눈썹과 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00	-- 전체가발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704.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704.20.0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704.9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8 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6801.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8.02	가공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과 가루									
6802.10.0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과 가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00	-- 대리석 · 트라버틴(travertine) 및 석화석고(alabaster)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23.00	-- 화강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29.00	-- 그 밖의 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02.91	-- 대리석 · 트라버틴(travertine) 및 석화석고(alabaster)									
6802.91.01	--- 칼붙이용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9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92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6802.92.01	--- 칼붙이용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9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93	-- 화강암									
6802.93.01	--- 칼붙이용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93.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99	-- 그 밖의 돌									
6802.99.01	--- 칼붙이용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2.9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3										
6803.00.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4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 · 버리기용 · 광택용 · 정형용 또는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에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0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밀링(milling)용 · 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00	--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4.22.00	-- 그 밖의 연마재료를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체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4.23.00	-- 천연석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4.30.00	- 수지석(手砥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5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 또는 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805.10.01	-- 손톱줄(연마재료를 도포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05.10.11	--- 치과용 스트립, 밴드와 디스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5.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5.2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805.20.01	-- 손톱줄(연마재료를 도포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05.20.11	--- 치과용 스트립, 밴드와 디스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5.2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5.3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805.30.01	-- 손톱줄(연마재료를 도포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05.30.11	--- 치과용 스트립, 밴드와 디스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5.3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 또는 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00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6.20.00	-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6.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00	- 롤 모양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7.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8										
6808.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 또는 목재의 대꺾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00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6809.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09.90.00	- 그 밖의 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또는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00	-- 건축용 블록과 벽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0.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제품									
6810.91.00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0.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6811.40.01	-- 관(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1.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00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1.82.00	--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1.83	- 관과 관의 연결구류									
6811.83.01	-- 관(管)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1.83.09	-- 관(管) 연결구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1.89.00	- 그 밖의 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 또는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00	- 청석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12.91.00	--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2.92.00	-- 종이·표지용 판지 및 펄트(fel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2.93.00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 석면을 함유한 것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6813.20.01	--- 원단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13.20.09	---- 구멍을 뚫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813.2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13.20.29	---- 원단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고리모양의 클러치 페이싱(고정용이나 장착용 구멍이 있는지 상관없다)									
6813.20.39	----- 구멍을 뚫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3.2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13.20.59	----- 구멍을 뚫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3.20.6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6813.81.01	---- 원단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13.81.09	----- 구멍을 뚫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3.8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3.89	-- 기타									
6813.89.01	---- 원단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고리 모양의 클러치 페이싱(고정용이나 장착용 구멍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6813.89.09	----- 구멍을 뚫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3.8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6813.89.29	----- 구멍을 뚫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3.89.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 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00	-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탄소성유·탄소성유의 제품 및 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00	-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5.20.00	- 이탄(泥炭)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제품									
6815.91.00	--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815.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6901.00.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아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00	-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2.20.00	- 알루미늄·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2.90	- 기타									
6902.90.01	-- 벽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2.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 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 또는 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0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3.20.00	- 알루미늄(AI2O3) 또는 알루미늄과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3.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 서포트타일(support tile) 또는 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00	- 건축용 벽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4.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00	- 기와(지붕타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5.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6										
6906.00.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홀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7.1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 인자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6907.10.01	-- 모자이크 타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7.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7.90.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8.1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 인자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6908.10.01	-- 모자이크 타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8.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8.90.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과 이와 유사한 제품									
	-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00	-- 자기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9.12.00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09.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 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00	- 자기제의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910.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911.10.01	-- 식탁용품과 조리기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6911.10.09	-- 그 밖의 주방용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1.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2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6912.00.01	- 식탁용품과 조리기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2.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 자기제의 것									
6913.10.01	-- 장착되거나 세트 또는 실에 꿰지 않은 비드, 신발 장식용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3.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3.90	- 기타									
6913.90.01	-- 장착되거나 세트 또는 실에 꿰지 않은 비드, 신발 장식용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3.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 자기제의 것									
6914.10.01	-- 칼붙이의 손잡이, 가스난로와 스토브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4.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4.90	- 기타									
6914.90.01	-- 칼붙이의 손잡이, 가스난로와 스토브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691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7001.00.00	깨진 유리 및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과(塊)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 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00	- 구(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2.20.00	- 막대(rod)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관(管)									
7002.31.00	-- 석영유리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2.32.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는 것									
7003.12.10	--- 무반사층을 갖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3.12.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3.20.0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3.30.00	- 프로파일(profil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 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 유리[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는 것]									
7004.20.10	-- 무반사층을 갖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4.2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4.90.00	- 그 밖의 유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 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10	-- 무반사층을 갖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5.1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00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5.30.00	- 망입(網入) 유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6										
7006.00.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점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차량·항공기·우주선이나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 자동차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7007.11.02	----- 제 8703 호의 승용자동차용 및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11.03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용 및 제 8701 호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와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11.05	-----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1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점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 자동차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 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7007.21.02	----- 제 8703 호의 승용자동차용 및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12.5%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21.03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용 및 제 8701 호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와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21.05	-----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2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2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7.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8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 외장형의 것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7009.10.02	---- 제 8703 호의 승용자동차용 및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9.10.03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용 및 제 8701 호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와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9.10.05	----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9.1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9.1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009.91.00	-- 틀이 붙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09.92.00	-- 틀이 붙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 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00	- 앰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20.0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90	- 기타									
	-- 용량이 1 리터를 초과하는 것									
7010.90.11	--- 보존병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9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용량이 0.33 리터를 초과하고 1 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010.90.21	--- 보존병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010.90.25	---- 용량이 500 밀리리터 미만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90.2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용량이 0.15 리터를 초과하고 0.33 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010.90.31	--- 보존병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010.90.35	---- 용량이 200 밀리리터 미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90.37	---- 용량이 200 밀리리터 이상이나 250 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90.38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용량이 0.15 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010.90.41	--- 보존병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0.90.4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00	- 전등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1.20.00	- 음극선관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 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 유리 도자제의 것									
7013.10.01	-- 컵·받침과 플레이트(세트로 된 것인지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굵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00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28.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00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37.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이나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00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42.00	-- 선팅창계수가 섬세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49	-- 기타									
7013.49.01	---- 컵 · 받침과 플레이트(세트로 된 것인지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4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00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3.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4										
7014.00.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 · 구부린 것 · 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 · 슬래브 · 벽돌 · 스퀘어(square) · 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 · 패널(panel) · 플레이트(plate) · 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0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6.90	- 기타									
7016.90.01	--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6.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7	실험실용 · 위생용 또는 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00	- 석영유리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7.20.00	- 선팅창계수가 섬세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및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7018.10.01	-- 비드(모조 진주는 제외하며, 장작되거나 세트 또는 실로 꿰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환자 식별 비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8.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8.20.00	- 지름이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8.90	- 기타									
7018.90.01	-- 의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8.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 슬리버(silver) · 로빙(roving) · 실 및 단연사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019.11.00	-- 단연사(길이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12.00	-- 로빙(rov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얇은 시트(sheet)(보일) · 웹(web) · 매트(mat) · 매트리스(mattress) · 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31.00	-- 매트(ma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32.00	-- 얇은 시트(sheet)(보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40	- 로빙(roving) 직물									
7019.40.10	-- 카펫 연결용 테이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40.20	--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40.30	-- 제 58 류의 주 제 5 호에 규정된 세폭직물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불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40.50	-- 직물로 보강된 것으로 총량이 1 제곱미터당 300 그램과 1,000 그램 사이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4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물									
7019.51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7019.51.10	--- 카펫 연결용 테이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1.20	---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1.30	--- 제 58 류의 주 제 5 호에 규정된 세폭직물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불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1.50	--- 직물로 보강된 것으로 총량이 1 제곱미터당 300 그램과 1,000 그램 사이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1.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2	--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총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9.52.10	--- 카펫 연결용 테이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2.20	---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2.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9	-- 기타									
7019.59.10	--- 카펫 연결용 테이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9.20	---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9.50	--- 직물로 보강된 것으로 총량이 1 제곱미터당 300 그램과 1,000 그램 사이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5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90	- 기타									
	-- 그 밖의 직물									
7019.90.02	---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90.08	--- 보강된 스크림(scri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90.17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19.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20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00.01	- 게이시 유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20.00.09	- 어망용 플로트유리, 몰드 플라스틱용으로 적합한 몰드, 칼붙이의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20.00.15	- 진공 플라스크 또는 그 밖의 진공용기의 내부유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020.00.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제 71 류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 · 장착 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1.10	- 천연진주									
7101.10.10	--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으로 등급을 매긴 진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1.1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양식진주									
7101.21.00	-- 가공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1.22	-- 가공한 것									
7101.22.10	---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으로 등급을 매긴 진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1.22.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 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00	- 선별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공업용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7102.21.00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00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이 실로 켜진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7103.10.0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00	--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3.99	-- 기타									
7103.99.01	--- 그린스톤·아마조나이트·보웨나이트·클로로멜라나이트·비취와 연옥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3.9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4	합성 또는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이 실로 켜진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7104.10.00	- 압전기용 석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4.20.0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이나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00	- 다이아몬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00	-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106.91.00	-- 가공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6.92.00	-- 반가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7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非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00	--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8.12.00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8.13.00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8.20.00	- 화폐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09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非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플라티늄(platinum)									
7110.11.00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0.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팔라듐(palladium)									
7110.21.00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0.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로듐(rhodium)									
7110.31.00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0.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 및 루테튬(ruthenium)									
7110.41.00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0.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1										
7111.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非金屬)·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0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기타									
7112.91.00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2.92.00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01	---- 쥘련·시가·임당배와 임당배 파이프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그린스톤과 결합된 제품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3.11.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113.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9.01	---- 쥘련·시가·임당배와 임당배 파이프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그린스톤과 결합된 제품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3.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7113.20.01	-- 쥘련·시가·임당배와 임당배 파이프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그린스톤과 결합된 제품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3.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01	---- 보석·시가와 쥘련 박스로서 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이나 재구성한 것)으로 구성되거나 결합한 것(그린스톤과 결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칼·포크 및 스푼과 이들의 부분품(그린스톤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4.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4.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9.01	---- 보석·시가와 쥘련 박스로서 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이나 재구성한 것)으로 구성되거나 결합한 것(그린스톤과 결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칼·포크 및 스푼과 이들의 부분품(그린스톤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4.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7114.20.01	---- 보석·시가와 쥘련 박스로서 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이나 재구성한 것)으로 구성되거나 결합한 것(그린스톤과 결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칼·포크 및 스푼과 이들의 부분품(그린스톤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4.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0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글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5.90	- 기타									
7115.90.01	-- 기술용이나 실험실용의 레토트·접시 및 그 밖의 기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5.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0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6.2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7116.20.01	-- 운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에 꿰어놓은 등급을 매긴 진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116.20.11	---- 장착되지 않은 카메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6.20.19	---- 칼붙이의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6.2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00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7.1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117.90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7117.90.01	-- 커퍼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117.90.11	---- 신발용 장신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7.9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8	주화									
7118.10.0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11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72 류 철강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 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1.2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1.50.00	-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	합금철(ferro-alloy)									
	- 페로망간									
7202.11.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00	--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30.0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50.0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60.00	- 페로니켈(ferro-nickel)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70.00	- 페로몰리브덴(ferro-molybdenu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80.0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02.91.00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92.00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93.00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최저 순도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 [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0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21.00	-- 스테인리스강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4.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4.3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00	-- 선삭(旋削)·셰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과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4.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4.5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00	- 알갱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가루									
7205.21.00	-- 합금강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00	- 잉곳(ingo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207.11.00	-- 황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7.12.00	-- 그 밖의 황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7.2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0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00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26.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27.00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00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37.00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38.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39.00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4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7208.40.10	-- 폭이 1.95 미터를 초과하고 두께도 4.7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4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08.51.10	----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25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하며, 최소인장강도가 355 메가파스칼이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08.51.50	----- 폭이 1.95 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51.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08.52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7208.52.10	----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25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하며, 최소인장강도가 355 메가파스칼이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08.52.50	----- 폭이 1.95 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52.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08.53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7208.53.10	----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25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하며, 최소인장강도가 355 메가파스칼이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53.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08.54.00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90	- 기타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7208.90.02	---- 폭이 1.95 미터를 초과하고 두께도 4.7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90.0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8.90.09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16.00	--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17.00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18.00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26.00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27.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28.00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0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12.00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20.0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두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0.30.1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30.2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30.30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30.4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3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00	-- 물결 모양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49	-- 기타									
	--- 두께가 1.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0.49.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49.11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4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49.2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49.31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49.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10	---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서 종량으로 알루미늄이 100분의 95 이상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61.20	---- 가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61.30	----- 코일상의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0.61.9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69	-- 기타									
7210.69.10	---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서 종량으로 알루미늄이 100분의 95 이상 함유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69.20	---- 가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69.3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69.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7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7210.70.01	-- 가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70.11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7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90	- 기타									
7210.90.01	-- 가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0.90.11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0.90.1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00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211.14	--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1.14.1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14.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19	-- 기타									
7211.19.1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19.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7211.23.10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1.23.2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23.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29	-- 기타									
7211.29.10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1.29.2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29.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90	- 기타									
7211.90.01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1.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2.10.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2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2.20.10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두께가 1.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2.20.20	---- 코일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20.3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2.20.40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2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3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2.30.01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두께가 1.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12.30.1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3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2.30.2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3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40	- 패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212.40.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2.40.11	---- 가공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4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5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212.50.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5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5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60	- 클래드(clad)한 것									
	-- 폭이 50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212.60.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6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2.6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롤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7213.10.10	-- 횡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이나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3.10.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3.20	- 꺾삭강(快削鋼)의 것									
7213.20.10	-- 횡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이나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3.2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213.91	-- 황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7213.91.10	--- 황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이나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3.91.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3.99	-- 기타									
7213.99.10	-- 황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이나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3.99.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00	- 단조(鍛造)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또는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7214.20.10	-- 황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이나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4.20.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4.30	- 쾌삭강(快削鋼)의 것									
7214.30.10	-- 황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이나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4.3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4.91.00	--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4.99	-- 기타									
7214.99.10	--- 황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이나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4.99.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00	-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5.50	-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5.50.10	-- 황단면의 모양이 "플랫서클" 또는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5.50.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7215.50.30	---- 직경 13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레이트드 와이어(straightened wir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5.5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5.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10.01	-- 유(U)형강 76 밀리미터 x 38 밀리미터 x 6.7 킬로그램/미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엘(L) 또는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 엘(L)형강									
7216.21.01	--- 등변각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2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22.00	-- 티(T)형강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유(U)·아이(I) 또는 에이치(H)형강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 유(U)형강									
7216.31.01	--- 102 밀리미터 x 51 밀리미터 x 10.4 킬로그램/제곱미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3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32.00	-- 아이(I)형강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33.00	-- 에이치(H)형강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40	- 엘(L) 또는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7216.40.01	-- 엘(L)형강의 등변각의 것, 두께가 5밀리미터에서 13밀리미터인 것으로, 80밀리미터 x 80밀리미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4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50.0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00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6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6.91.00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6.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0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7.2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7.20.10	-- 탄소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7.20.9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217.30.00	-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7.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18.91.00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8.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00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12.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13.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14.00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00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22.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23.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24.00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32.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33.00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34.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35.00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1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0.12.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0.2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0.90	- 기타									
7220.90.01	-- 폭이 50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0.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1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222.20.0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2.30.00	- 그 밖의 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2.40.00	- 형강(形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3										
7223.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 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7225.11.10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11.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19	-- 기타									
7225.19.10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1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3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고속도강의 것									
7225.30.01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3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4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고속도강의 것									
7225.40.01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4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4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고속도강의 것									
7225.50.01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5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5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25.91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25.91.10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91.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92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25.92.10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92.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99	-- 기타									
7225.99.10	---- 아연을 도금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5.9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7226.11.10	---- 아연을 도금하거나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11.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19	-- 기타									
7226.19.10	---- 아연을 도금하거나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1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20	- 고속도강의 것									
7226.20.01	-- 아연을 도금하거나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2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226.91.00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92.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99	-- 기타									
7226.99.01	---- 아연을 도금하거나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6.99.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00	- 고속도강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7.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00	- 고속도강의 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8.20.00	- 실리코망간강의 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228.30.00	-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 (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8.40.00	-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8.50.00	-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 (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8.60.00	- 그 밖의 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8.70.00	- 형강(形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8.80.00	- 중공(中空)드릴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22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철강으로 만든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00	- 널말뚝(sheet pil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1.20.00	- 형강(形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 · 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침목(크로스 타이) · 이음매판(fish-plate) · 좌철(座鐵) · 좌철(座鐵)뺀기 · 밑판(sole plate) (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 · 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00	- 레일(rail)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2.30.0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2.4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3										
7303.0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 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00	-- 스테인리스강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 튜빙 및 드릴파이프									
7304.22.00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23.00	-- 그 밖의 드릴파이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24.00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7304.31.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3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39	-- 기타									
7304.39.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3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7304.41.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4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49	-- 기타									
7304.49.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4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7304.51.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5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59	-- 기타									
7304.59.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5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4.90	- 기타									
7304.90.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7304.90.09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00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12.00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305.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2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7305.31.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31.09	--- 강으로 만든 고압 수력전기 도관으로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3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39	-- 기타									
7305.39.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39.09	--- 강으로 만든 고압 수력전기 도관으로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3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90	- 기타									
7305.90.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90.09	-- 강으로 만든 고압 수력전기 도관으로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5.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 또는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00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1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00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30.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30.09	--- 강으로 만든 고압 수력전기 도관으로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3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4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40.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40.09	--- 강으로 만든 고압 수력전기 도관으로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4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5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6.50.01	--- 보일러 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50.09	--- 강으로 만든 고압 수력전기 도관으로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5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306.61.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69.00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6.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0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 플랜지(flange)									
7307.21.0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2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22.00	--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23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7307.23.0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2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307.29	--- 기타									
7307.29.01	--- 나사로 고정시킨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나사로 고정시키지 않은 것									
7307.29.1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2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307.91	-- 플랜지(flange)									
7307.91.01	--- 나사로 고정시킨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91.09	--- 나사로 고정시키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92.00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93.00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99	-- 기타									
7307.99.01	--- 나사로 고정시킨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7.99.09	--- 나사로 고정시키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00	- 다리와 교량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8.20.00	- 탑과 격자주(格子柱)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8.30.0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8.40.00	-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또는 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8.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09										
7309.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 ·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00	-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 납땜이나 크리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7310.21.01	---- 용적이 30 리터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0.2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0.29	-- 기타									
7310.29.01	--- 용적이 30 리터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0.2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1										
7311.00.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00	- 연선(stranded wire) · 로프 및 케이블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312.90.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73.13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銃), 철강으로 만든 대 또는 평선을 끈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끈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3.00.01	- 유자선(有刺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13.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및 울타리, 철강으로 만든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00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4.14.00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4.1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14.20.00	- 그릴 · 망 및 울타리[점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그 밖의 그릴·망 및 울타리(점점을 융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0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4.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7314.4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314.41.01	--- 6각형 모양의 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4.41.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14.42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314.42.01	--- 6각형 모양의 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4.42.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14.49	-- 기타									
7314.49.01	--- 6각형 모양의 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4.49.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14.50.0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 롤러체인(roller chain)									
7315.11.01	--- 전동 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12	-- 그 밖의 체인									
7315.12.01	---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12.09	--- 전동 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1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19	-- 부분품									
7315.19.01	---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체인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19.09	--- 전동 체인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1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20.00	- 스킨체인(skid chain)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체인									
7315.81	-- 스티드링크(stud-link)									
7315.81.01	--- 전동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8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82	-- 기타(융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7315.82.01	---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82.09	--- 전동 체인, 컨베이어 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8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89	-- 기타									
7315.89.01	---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89.09	--- 전동 체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8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90	- 그 밖의 부분품									
7315.90.01	--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체인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90.09	-- 전동 체인의 것, 융접한 링크의 것으로서 컨베이어 체인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5.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6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달과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7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 못, 후크 못, 물결모양 못									
7317.00.01	-- 신발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스커션 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7.00.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스테이플									
7317.00.11	-- 절연처리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7.00.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17.0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00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12.00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13.00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14.00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7318.15.01	--- 스크루 스티드와 스티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15.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7318.16.00	-- 너트(nu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19	-- 기타									
7318.19.01	---- 나선가공한 스파이크와 신발용 스테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00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22.00	-- 그 밖의 와셔(washer)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23.00	-- 리벳(rive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24.00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8.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동톱 · 수편집 · 뿔바늘 · 코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20.00	- 안전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9.30.00	- 그 밖의 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1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 적층 하부구조(undercarriage) 스프링 (쇠괴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7320.10.02	---- 제 8703 호의 승용자동차용과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10.03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용 및 제 8701 호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와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10.05	----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1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10.19	-- 그 밖의 자동차 스프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10.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20	- 나선용 스프링									
	-- 코일상의 서스펜션과 시트 스프링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7320.20.02	---- 제 8703 호의 승용자동차용,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20.03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용 및 제 8701 호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와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20.05	----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그 밖의 차량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20.19	-- 그 밖의 자동차용 스프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2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90	- 기타									
	-- 코일상의 서스펜션과 시트 스프링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7320.90.02	---- 제 8703 호의 승용자동차용,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90.03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용 및 제 8701 호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와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90.05	----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9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90.19	-- 그 밖의 자동차용 스프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0.90.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 레인지(range) · 화상(火床) · 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외 그 밖의 연료 겸용									
	---- 가정용 가스연료 조리용 스토브와 레인지									
7321.11.02	---- 실외 가스연료용 조리용 스토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11.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1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7321.12.00	-- 액체연료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1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7321.19.01	---- 고체 연료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구									
7321.81.00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82.00	-- 액체연료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8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7321.89.01	---- 고체 연료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8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90	- 부분품									
7321.90.01	-- 가정용 가스연료 조리용 스토브와 레인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1.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철강으로 만든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00	-- 주철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2.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0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323.91.00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3.92.00	-- 주철(鑄鐵)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3.93.00	-- 스테인리스강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3.94.00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3.9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0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4.21.00	-- 목욕통[주철로 만든 것(법령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4.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4.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7325.10.01	-- 조상의 철 주물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5.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325.91.00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5.99	-- 기타									
7325.99.01	---- 조상의 강 주물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5.99.09	---- 토끼 닳과 그 밖의 양날 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5.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00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6.19	-- 기타									
7326.19.01	---- 조상의 단조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6.19.11	---- 올리브용의 기동, 스탠다드와 드롭퍼와 그들의 부속품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26.1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6.20	-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7326.20.01	-- 동물용의 코걸이, 동물·새 또는 어류의 식별을 위한 클립·태그·고리와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326.20.11	---- 야생동물용 닳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6.20.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326.90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326.90.01	-- 분재버너, 용량 측정구(가정용은 제외한다), 사진과 용접포트(solder pots)와 함께 사용되는 주물의 주형코어용 도가니, 록볼트 슬리브와 시스템, 영화 필름용 스폴·릴과 이와 유사한 지지구, 그 밖의 스폴·릴·보빈·콤팩트·코어와 이와 유사한 지지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326.90.0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7401.00.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2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									
7403.11.00	-- 음극과 음극의 형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3.12.00	-- 와이어바(wire-ba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3.13.00	-- 빌렛(bille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3.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구리합금									
7403.21.00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3.22.00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3.29.00	--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4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5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00	- 비(非)충상조작인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6.20.00	- 충상조작인 가루, 플레이크(flak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봉									
7407.10.01	---- 와이어로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7.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7.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7.21.01	---- 봉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7.2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7.29	-- 기타									
7407.29.01	---- 봉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7.2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8	구리의 선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8.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00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8.22.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8.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9	구리의 판(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00	-- 코일 모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00	-- 코일 모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9.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00	-- 코일 모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9.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9.40.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09.90.00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0.12.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뒷면을 붙인 것									
7410.21.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7410.22.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1.10.01	-- 공칭 외경이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1.10.09	-- 공칭 내경이 90 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1.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00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1.22.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1.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2.20.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3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어스 스트랩									
7413.00.01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3.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3.0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01	-- 신발용으로 특별히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5.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00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00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5.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418.11.00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8.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8.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00	- 체인과 그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419.91.00	--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9.99	-- 기타									
7419.99.01	--- 동물용의 코걸이, 동물·새 또는 어류의 식별을 위한 클립·태그·고리와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9.99.09	--- 핀(안전핀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9.99.17	--- 구리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 및 망,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메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9.99.21	--- 구리로 만든 스프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9.99.25	--- 가정용의 비전기식 조리 또는 난방기기와 그 부분품(제 7418 호의 것을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419.9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 및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00	- 니켈의 매트(ma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1.20.0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5.02	니켈의 과(塊)									
7502.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2.20.00	- 니켈 합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3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4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5.12.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선									
7505.21.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5.22.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6	니켈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및 막(箔)									
7506.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6.20.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 관(管)									
7507.11.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7.12.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7.20.00	- 관(管) 연결구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508.10.0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및 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5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과(塊)									
7601.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7601.10.01	-- 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1.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1.20	- 알루미늄 합금									
7601.20.01	-- 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1.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2										
7602.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00	-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3.20.00	- 충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00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604.29	-- 기타									
7604.29.01	--- 봉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4.2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5	알루미늄의 선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5.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5.21.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5.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6	알루미늄의 판 · 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6.11.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6.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6.1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6.12.01	--- 가공한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7606.1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606.9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6.91.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6.9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6.9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6.92.01	--- 가공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6.9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 · 판지 ·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00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607.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7.20.00	- 뒷면을 붙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8.2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09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0.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1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 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 가스 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2.90	- 기타									
7612.90.01	-- 저장탱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2.90.09	-- 반환용 빈 컨테이너로서 세관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612.90.11	--- 용적이 1 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2.90.19	--- 용적이 1 리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3										
7613.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 가스 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00	- 철강섬으로 되어 있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4.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615.11.00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5.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5.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 못·압정·스테인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7616.10.01	-- 리벳(rivet),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616.91.00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6.99	-- 기타									
7616.99.10	--- 손 뜨개질용 바늘과 편, 코바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6.99.20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거즈·클로드·그릴·망·보강된 직물과 이와 유사한 재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6.99.3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6.99.40	---- 선박, 보트와 그 밖의 선박용의 부착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616.99.50	---- 동물용의 코걸이, 동물·새 또는 어류의 식별을 위한 클립·태그·고리와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7616.99.9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괴(塊)									
7801.10.00	- 정제한 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7801.91.00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총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1.99	-- 기타									
7801.99.01	--- 땀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1.9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2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7804.11	-- 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804.11.01	--- 박(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4.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4.19	-- 기타									
7804.19.01	--- 박(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4.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4.20.0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6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납의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7806.00.01	-- 땀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6.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6.00.19	- 납의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806.0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괴(塊)									
	-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00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1.12.00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1.20.00	- 아연 합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2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3	아연의더스트(dust)·가루 및 플레이크(flake)									
7903.10.00	- 아연 더스트(dus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4										
7904.00.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5										
7905.00.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907.00.01	- 아연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7907.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괴(塊)									
8001.10.0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001.20.00	- 주석 합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0.02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0.03										
8003.00.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07.00.01	- 주석의 판·시트(sheet)와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007.00.09	- 주석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 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주석가루와 플레이크(flak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007.00.19	- 주석의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007.0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 세멧(cermet), 이들의 제품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00	-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101.94.00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1.96.00	-- 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1.97.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1.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00	-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102.94.00	--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2.95.00	--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2.96.00	-- 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2.97.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0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3.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마그네슘의 괴(塊)									
8104.11.00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4.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4.30.0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출발(rasping) · 연삭설(turning) 및 알갱이,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0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5.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6										
8106.00.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0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7.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0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8.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0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9.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0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0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0.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1										
8111.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칼럼븀) · 레늄 및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베릴륨									
8112.12.00	--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2.13.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11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크롬									
8112.21.00	--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2.22.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탈륨									
8112.51.00	-- 괴(塊),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2.52.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2.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112.92.00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2.99.1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1.13										
8113.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2 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볼이·스핀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공구									
8201.10	- 가래와 삽									
8201.10.01	-- 단조한 강체의 가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20.00	- 포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30	- 곡괭이·픽스(picks)·괭이와 쇠스랑									
8201.30.01	-- 괭이와 쇠스랑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40.0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50.00	-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60.0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9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8201.90.01	-- 컬티베이터(중경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1.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 수동식 톱									
8202.10.01	-- 장작이나 펄프우드용 톱의 튜브라(tubular) 프레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2.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2.20.00	- 띠톱의 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00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2.39.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2.40.00	- 체인톱의 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톱날									
8202.91.00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2.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3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3.20.0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3.30.0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3.40.00	-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랩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00	-- 조절할 수 없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4.12.00	-- 조절할 수 있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4.2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 (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0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20.0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30.00	- 목재 가공용 대패·끌·동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40.0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00	-- 가정용 공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59	---									
8205.59.01	---- 오일 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59.09	---- 와이어 스트레이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59.11	---- 그리스 건(grease gun)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59.19	---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60.00	- 블로램프(blow lamp)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7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8205.70.01	-- 지(G) 클램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7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80.00	- 모루, 휴대용 단조기, 손이나 페달로 작동하는 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 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90	- 앞의 둘 이상 소호 물품의 세트									
8205.90.01	-- 소호 제 8205.40 호의 물품을 포함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90.09	-- 소호 제 8205.51 호의 물품을 포함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5.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6										
8206.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 (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 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밀링 (milling)용·터닝(turning)용 또는 스크루드라이빙 (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00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19.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20.0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30.00	-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또는 펀칭(punching)용 공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40.0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50.0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6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70.00	- 밀링(milling)용 공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80.00	- 터닝(turning)용 공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7.90.0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00	- 금속 가공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8.20.00	- 목재 가공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8.30.0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8.40.00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8.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09										
8209.00.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0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	칼(흔이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211.91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1.91.01	--- 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211.91.11	----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2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211.92.01	--- 양봉가용칼, 정원사용의 전지용칼, 아마절단용 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2.09	--- 정육점용과 도축용 칼, 주방용 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2.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211.92.21	----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211.92.31	----- 제 8211.92.01 호의 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2.39	----- 제 8211.92.09 호의 칼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2.4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3.00	--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4	-- 칼날									
8211.94.01	--- 정육점용과 도축용 칼, 주방과 식탁용 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4.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1.95.00	-- 비금속제의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00	- 면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2.20.0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2.90.00	- 그 밖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3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00	-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4.20.0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4.90	- 기타									
8214.90.01	-- 정육점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5.2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215.91.01	--- 제품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215.91.11	----- 손잡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5.9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5.99	-- 기타									
8215.99.01	--- 제품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215.99.11	----- 손잡이, 스푼·포크와 버터칼용 블랭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215.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3 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 또는 전기작동식),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00	- 자물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1.20.00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1.30.0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1.40.00	- 그 밖의 자물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1.50.0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1.60	- 부분품									
8301.60.01	-- 소호 제 8301.50 호의 물품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1.6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1.7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 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 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 (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 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 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00	- 경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302.20.00	- 카스터(caster)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30.01	-- 시트 리클라이너 메커니즘(seat recliner mechanisms)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00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42.00	-- 기타(가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49	-- 기타									
8302.49.01	---- 스프링 블라인드 롤러와 마구의 장착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4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50.0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2.60.00	- 자동도어 폐지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3										
8303.0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 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4										
8304.0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 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5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 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 (非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 (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10.0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5.20.0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6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306.10.01	-- 사이클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6.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00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6.2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306.30.0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7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00	- 철강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7.90.00	-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8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 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 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00	- 훅(hook)·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8.2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308.20.01	-- 관 리벳, 블라인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8.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8.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308.90.01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물품의 걸쇠가 붙은 프레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8.90.09	-- 버클, 버클걸쇠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8.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9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전(栓)·캡 및 뚜껑 [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 및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술·나선형 마개 ·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0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9.90	- 기타									
8309.90.01	-- 드럼용의 마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9.90.09	-- 그 밖의 전(栓)과 병마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309.90.11	-- 위슬레(muselets), 보존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용의 실(seals)과 밴드(bands)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09.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10										
831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인판·영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 (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0.00.01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인판·영판과 자동차용의 번호판을 제외한 자동차용의 배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10.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11	비금속(非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 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 (非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0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용접봉[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11.20.0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선[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11.30.0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11.90	- 기타									
8311.90.01	-- 비금속(非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311.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00	- 원자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1.2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1.3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체(카트리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1.40.00	- 원자로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 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증기발생보일러									
8402.11.00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 보일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2.12.00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 보일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2.19.00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2.20.0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2.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00	- 보일러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3.90.00	- 부분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00	-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4.20.0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4.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 없다)									
8405.10.0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5.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6	증기터빈									
8406.10.00	- 선박추진용 터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터빈									
8406.81.00	--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6.82.00	--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6.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00	- 항공기용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00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07.31.01	--- 사이클과 트랙터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3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32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8407.32.01	--- 사이클과 트랙터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3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33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하고 1,000 시시 이하인 것									
8407.33.01	--- 사이클과 트랙터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33.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34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407.34.01	--- 사이클과 트랙터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34.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7.90.00	- 그 밖의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 선박추진용 엔진									
8408.10.01	-- 아웃보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8.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8.20	-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8408.20.01	-- 사이클과 트랙터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8.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8.90.00	- 그 밖의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00	- 항공기 엔진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09.91	--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8409.91.01	---- 피스톤·실린더 슬리브·피스톤 링·밸브와 밸브시트 인서트·머플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부분품									
8409.91.11	----- 사이클과 트랙터 엔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차량용 엔진의 것									
8409.91.21	----- 쇼트블록 어셈블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9.91.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9.91.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9.99	-- 기타									
8409.99.01	---- 피스톤·실린더 슬리브·피스톤 링·밸브와 밸브시트 인서트·머플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부분품									
8409.99.11	----- 사이클과 트랙터 엔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차량용 엔진의 것									
8409.99.21	----- 쇼트블록 어셈블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9.99.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09.99.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00	--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0.12.00	--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0.13.00	--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0.9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터보제트									
8411.11.00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1.12.00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터보프로펠러									
8411.21.00	--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1.22.00	--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00	--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1.82.00	--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11.91.00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1.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0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00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29	-- 기타									
8412.29.10	---- 선박 제트 추진용 유닛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2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31.00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8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90	- 부분품									
8412.90.01	-- 수력과 공기압축식 실린더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12.90.09	-- 선박 제트 추진용 유닛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2.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액체엘리베이터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00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20.00	- 수직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8413.30.01	-- 윤활유 펌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40.00	- 콘크리트 펌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50.01	-- 수중 펌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413.60.01	-- 수중 펌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6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8413.70.01	-- 수중 펌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7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펌프									
8413.81.01	----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적합한 수력 스티어링 펌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81.09	---- 수중 펌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8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82.00	-- 액체엘리베이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8413.91.01	----- 윤활유 펌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9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91.11	----- 수중 펌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13.91.21	-----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적합한 수력 스티어링 펌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9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3.92.00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 진공펌프									
8414.10.01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20.0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30.00	- 냉장설비용 압축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40.00	-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팬									
8414.51.00	-- 데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일체형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59	-- 기타									
8414.59.01	---- 차량엔진용의 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5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60.0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80	- 기타									
8414.80.01	-- 압축기 아웃피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압축기									
8414.80.11	---- 가스터빈용 프리-피스톤 발전기, 자동차 장착용 압축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80.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414.8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90	- 부분품									
	-- 압축기 아웃피트의 것									
8414.90.01	----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압축기의 것									
8414.90.11	---- 냉장설비에 사용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90.19	---- 가스터빈용 프리-피스톤 발전기, 자동차 장착용 압축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진공펌프의 것									
8414.90.31	--- 자동차에 적합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90.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팬과 후드의 것									
8414.90.41	--- 차량엔진용 팬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9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4.90.5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기계도 포함한다)									
8415.10.10	-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5.20.0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15.81.00	--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415.82.10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415.83.10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5.90.00	- 부분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 (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0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6.20.0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6.3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6.90.00	- 부분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8417.10.01	-- 공업용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7.10.09	-- 실험실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7.20.0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7.80	- 기타									
8417.80.01	-- 공업용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7.80.09	-- 실험실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7.90	- 부분품									
8417.90.01	-- 공업용 노와 오븐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7.90.09	-- 실험실용 노와 오븐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 (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00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가정형 냉장고									
8418.21.00	-- 압축식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418.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8.30.00	-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8.40.0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8.50.0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사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									
8418.61.00	--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8.6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18.91.00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8.9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4.19	가열·조리·배소(焙 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 조·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장치 [전기가열식인지에 상관없으며(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8419.11.01	--- 가정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419.11.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1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20.00	-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건조기									
8419.31.00	-- 농산물용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32.00	--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또는 판지용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3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40.00	- 증류기나 정류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50.00	- 열교환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60.00	- 기체 액화용 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8419.81.00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89	-- 기타									
8419.89.01	---- 저온살균기와 낙농품 냉각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8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90	- 부분품									
8419.90.01	-- 가정용의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90.09	-- 저온살균기와 낙농품 냉각기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19.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0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20.91.00	-- 실린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0.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00	-- 크림분리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12.00	-- 의류탈수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00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22.00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23.00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00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39	--- 기타									
8421.39.01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용 사이클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3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21.91.00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99	--- 기타									
8421.99.01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사이클론을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1.9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 · 광통 · 상자 · 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합용 · 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 접시세척기									
8422.11.00	-- 가정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2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422.20.01	-- 병과 그 밖의 용기의 세척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30	- 병 · 광통 · 상자 · 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합용 · 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30.01	--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4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8422.40.01	-- 버터 포장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90	- 부분품									
	-- 접시세척기의 것									
8422.90.01	---- 가정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90.11	-- 병과 그 밖의 용기의 세척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90.19	--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2.90.21	-- 버터 포장기계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22.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 또는 검사기 를 포함한다], 각종 저울 추									
8423.10.0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20.0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30.0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23.81.01	---- 공업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8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82	--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23.82.01	---- 공업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8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8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90	- 각종 저울 추, 저울 부품품									
8423.90.01	-- 공업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3.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제트분사기									
8424.10.0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20.0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30.0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구									
8424.81.00	-- 농업용이나 원예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89	-- 기타									
8424.89.01	---- 인쇄용 스프레이 유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89.09	---- 자동차 윈드스크린 와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89.11	---- 밀크 또는 밀크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스프레이 건조설비용의 분무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89.1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90	- 부분품									
8424.90.01	-- 소호 제 8424.10 호의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90.09	-- 소호 제 8424.20 호나 제 8424.30 호의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90.11	-- 인쇄용 스프레이 유닛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90.19	-- 자동차 윈드스크린 와셔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90.21	-- 밀크 또는 밀크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스프레이 건조설비용의 분무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4.90.2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원치(winch)와 캡스틴(capstan), 잭(jack)									
	-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00	-- 전동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원치, 캡스틴									
8425.31.00	-- 전동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잭(jack),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00	-- 차고용 고정식 재강시스템(jacking system)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42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8425.42.01	---- 휴대용 잭(jack)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42.11	---- 트롤리 잭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42.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49	-- 기타									
8425.49.01	---- 휴대용 잭(jack)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49.11	---- 트롤리 잭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5.4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 및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00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6.12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2.01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426.12.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6.1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6.20.0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6.30.00	- 문형이나 정차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00	-- 타이어가 달린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6.4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계									
8426.91.00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6.9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7.20.0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7.90.00	- 그 밖의 작업트럭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 · 취급용 · 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 컨베이어 · 텔레페릭(teleferic)]									
8428.10.00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20.00	- 뉴메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00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32.00	-- 그 밖의 버켓형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33.00	-- 그 밖의 벨트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3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4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60.00	-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8.90.00	- 그 밖의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 (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 램핑머신(tamping machine) 및 로드롤러(road roller)									
	- 불도저(bulldozer)와 앵글도저(angledozer)									
8429.11.00	-- 무한 궤도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20.0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30.00	- 스크래퍼(scrap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40	- 램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8429.40.01	-- 램핑머신(tamp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40.09	-- 로드롤러(road roller)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엑스커베이터(excavator)와 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00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52.00	--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29.5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	그 밖의 이동용 · 정리(整地)용 · 지균(地均)용 · 스크래핑(scraping)용 · 굴착용 · 램핑(tamping) 용 · 콤팩팅(compacting)용 · 채굴용 또는 천공용 기계(토양용 · 광석용 또는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2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 blower)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 자주식(自走式)									
8430.31.01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31.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39	-- 기타									
8430.39.01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3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 자주식(自走式)									
8430.41.01	--- 암석 천공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41.09	--- 착정기(well sinking)와 천공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41.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49	-- 기타									
8430.49.01	--- 암석 천공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49.09	--- 착정기(well sinking)와 천공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430.49.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5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00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69	-- 기타									
8430.69.11	---- 스크래퍼(scrap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0.69.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8431.10.01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10.09	-- 휴대용 책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10.15	-- 트롤리 책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20.00	-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8431.31.01	---- 건물에 영구적 설치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리프트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3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8426 호·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41.00	-- 버킷(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2.00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3	--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 또는 착정용 기계의 부분품									
8431.43.01	---- 암석 천공용 기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3.09	---- 착정기(well sinking)와 천공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3.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9	-- 기타									
8431.49.01	---- 굴착기 부분품(소호 제 8431.41 호의 것은 제외한다)	부품이 설계된 기계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기계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31.49.05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9.09	---- 스크래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9.11	---- 기계추진식의 로드롤러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1.49.19	---- 제 8426 호의 기계의 것	부품이 설계된 기계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기계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31.4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 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00	- 플라우(쟁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 기)·채초기와 호우									
8432.21.00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29	-- 기타									
8432.29.01	---- 그 밖의 하로우(쇄토기), 컬티베이터(중경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2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30	-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8432.30.01	-- 파종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40.00	-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80	- 그 밖의 기계									
8432.80.01	-- 롤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8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90	- 부분품									
	-- 플라우(쟁기)의 것									
8432.90.01	---- 몰드보드 플레이트[굽지 않은 것(unbent)], 패턴에 따라 절단한 강 날판(steel shareplates), 스케이트플레이트(skeith plates), 단순한 플라우 (쟁기)의 자루, 플라우(쟁기)용 디스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하로우(쇄토기), 파종기, 퇴비 살포기나 비료살포기, 롤러, 컬티베이터(중경기)의 것									
8432.90.12	---- 컬티베이터 타인(tines)[코일 타인(coil tines)은 제외한다], 컬티베이터 포인트(팁)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90.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2.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조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00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19	-- 기타									
8433.19.01	---- 수동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2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8433.20.01	-- 진동 절단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30	- 그 밖의 건조제조용 기계									
8433.30.01	-- 스와스 터너(swath turners), 측방반송 레이크(side delivery rakes), 테더(tedder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3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40.00	- 짚이나 건조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수확기, 탈곡기									
8433.51.00	-- 수확·탈곡 겸용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52.00	-- 그 밖의 탈곡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53.00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6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8433.60.01	-- 새의 알 선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6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90	- 부분품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의 것									
8433.90.02	---- 수동식 기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90.0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잔디 깎는 기계의 것									
8433.90.07	---- 진동 절단식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90.0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건조제조용기계의 것									
8433.90.12	---- 스와스 터너, 측방반송레이크, 테더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90.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수확기와 탈곡기의 것									
8433.90.16	---- 짚이나 건조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수확·탈곡 겸용기, 그 밖의 탈곡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90.18	---- 그 밖의 수확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90.21	-- 새의 알 선별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3.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00	- 착유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4.20.00	- 낙농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4.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 (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00	-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5.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0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00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80	- 그 밖의 기계									
8436.80.01	-- 동물용 기계식 클리퍼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80.09	-- 잡초와 관목 깎는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8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36.91.00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99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36.99.01	--- 동물용의 기계식 클리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99.09	--- 잡초와 관목 깎는 기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6.9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8437.10.01	-- 곡물 세정기(분류 또는 선별기능이 없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7.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7.80.00	- 그 밖의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7.90	- 부분품									
8437.90.01	-- 곡물 세정기(분류 또는 선별기능이 없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7.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	식용료의 산업용 조제 또는 제조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0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20.00	-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30.00	- 설탕 제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40.00	- 양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50.0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60.00	- 과일·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80	- 그 밖의 기계									
8438.80.01	-- 아세트화 작용(acetification)을 위한 기계적 기구, 커피콩의 탈피기(실린더형·디스크형 또는 블레이드형), 오렌지 정유 추출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8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90	- 부분품									
8438.90.01	-- 아세트화 작용(acetification)을 위한 기계적 기구, 커피콩의 탈피기(실린더형·디스크형 또는 블레이드형), 오렌지 정유 추출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8.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나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8439.10.01	-- 목재 파쇄기와 스크리닝 유닛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9.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9.2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9.3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39.91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439.91.01	---- 목재 파쇄기와 스크리닝 유닛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9.9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39.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00	-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0.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 절단기									
8441.10.01	-- 재단기, 종이 절단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1.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1.20.00	-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1.30.00	-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1.40.00	-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1.80.00	- 그 밖의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1.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00	- 기계류·장치 및 장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2.40.00	- 위의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2.5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50.01	--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자색을 인쇄하기 위한 새겨넣거나 엇칭한 블록· 플레이트와 실린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42.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8443.11.01	---- 방직용 섬유 · 가죽 · 벽지 · 포장지 · 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2.00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접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3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443.13.01	---- 방직용 섬유 · 가죽 · 벽지 · 포장지 · 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4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국면 인쇄용은 제외한다]									
8443.14.01	---- 방직용 섬유 · 가죽 · 벽지 · 포장지 · 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4.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5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국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443.15.01	---- 방직용 섬유 · 가죽 · 벽지 · 포장지 · 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5.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6	-- 국면인쇄용 기계									
8443.16.01	---- 방직용 섬유 · 가죽 · 벽지 · 포장지 · 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6.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7.00	-- 그라비아(gravure) 인쇄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9	-- 기타									
8443.19.01	---- 방직용 섬유 · 가죽 · 벽지 · 포장지 · 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1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1	-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8443.31.01	---- 공업용 잉크젯 프린터(인쇄 ·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1.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2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8443.32.01	---- 공업용 잉크젯 프린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2.15	--- 그 밖의 프린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2.19	---- 팩시밀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2.29	----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2.39	--- 텔레프린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9	-- 기타									
8443.39.01	---- 공업용 잉크젯 프린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이나 밀착식으로 한정한다)와 열식 복사기의 것									
8443.39.15	-----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사진식 복사기									
8443.39.19	----- 광학기구를 갖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9.25	----- 밀착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9.29	----- 열식 복사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39.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01	---- 인쇄보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91.09	---- 방직용 섬유 · 가죽 · 벽지 · 포장지 · 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43.91.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99	-- 기타									
8443.99.01	--- 인쇄보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99.09	--- 방직용 섬유·가죽·벽지·포장지·리놀륨 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3.99.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4										
8444.00.00	인조섬유의 방사(紡 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 또는 절단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	방직준비기계, 방직기·합사기(合絲機) 또는 연사기(捻絲機)와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 (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방직준비기계									
8445.11.00	-- 카드기(carding machin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12.00	-- 코망기(combing machin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13.00	-- 연조기나 조방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19	-- 기타									
8445.19.01	--- 모 세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1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20.00	- 방직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30.0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捻絲機)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40.0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6	직기(직조기)									
8446.10.00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00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6.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6.30.00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와 짐프사(gimped yarn)·뿔(tulle)·레이스· 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와 터프팅(tufting) 기계									
	- 원형 편기									
8447.11.00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7.12.00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7.20.00	- 횡(橫) 편직기,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8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펀들 및 스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 종광(heald) 및 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00	-- 도비(dobby)기 및 자카드기,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 또는 조립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8.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8.20.00	-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8445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00	-- 침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8.32.00	-- 침포를 제외한 방직준비기계의 것	부품 및 악세서 리가 설계된 기계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 및 악세서 리가 설계된 기계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48.33.00	-- 스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과 링트래블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8.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00	--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8.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제 8447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00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8.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49										
8449.00.00	펠트나 부직포(원단 상태나 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 완전자동 세탁기									
8450.11.01	--- 가정형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12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450.12.01	--- 가정형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12.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19	-- 기타									
8450.19.01	--- 가정형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20.00	-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90	- 부분품									
8450.90.01	-- 가정형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0.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또는 침지(沈漬)용 기계류 [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 · 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갈래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용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00	- 드라이클리닝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건조기									
8451.21	--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1.21.01	--- 가정형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2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30.0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40.00	- 세탁기 · 표백기 또는 염색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50.00	-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80.00	- 그 밖의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90	- 부분품									
8451.90.01	-- 세탁기 · 표백기 및 염색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1.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재봉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및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00	- 가정형 재봉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재봉기									
8452.21.00	-- 자동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2.30.00	- 재봉기용 바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2.40.0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2.90.00	-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또는 가공기계, 원피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 또는 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00	-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또는 가공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3.20.0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3.80.00	- 그 밖의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3.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4	전로 · 레이들(ladle) · 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00	- 전로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454.2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4.30.00	- 주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4.90.00	- 부분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00	- 관 압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압연기									
8455.21.00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경용 압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5.22.00	-- 냉간(冷間) 압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5.30.00	- 압연기용 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5.90.00	- 그 밖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 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스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56.10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10.01	-- 돌·세라믹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재료 가공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10.09	-- 플라스틱 드릴용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2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456.20.01	-- 돌·세라믹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재료 가공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30.0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90	- 기타									
8456.90.01	-- 돌, 세라믹, 콘크리트, 석면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 가공용의 것 또는 유리냉간가공, 전기화학도구 가공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6.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및 멀티스테이션(multi- 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7.2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7.30.0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수평 선반									
8458.1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8.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선반									
8458.9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8.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 ·밀링(milling)·나선가공 또는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0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9.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9.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9.40.00	-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5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9.5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9.6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59.70.00	- 그 밖의 나선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0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 (grind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 또는 광택재로 금속이나 세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소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									
8460.1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60.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소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									
8460.2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0.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0.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0.40.0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0.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1	플레이닝(planing)용 · 셰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00	-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1.30.0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1.40.00	-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1.50.00	- 톱기계나 절단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1.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2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또는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편칭용 또는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00	- 단조기(鍛造機) 또는 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2.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2.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편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00	-- 수치제어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2.4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62.91.00	-- 액압 프레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2.99	-- 기타									
8462.99.01	--- 소결에 의한 금속가루의 주조용 프레스와 금속 스크랩을 베일로 압축하기 위한 프레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2.9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0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 · 관 · 프로파일(profile) · 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3.20.00	- 나사 전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3.30.00	- 선 가공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3.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4	돌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00	- 톱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4.20.00	- 연마기나 광택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 고무 · 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 또는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0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65.91.00	-- 톱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5.92.00	-- 평삭기 · 밀링머신(milling machine) 또는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65.93.00	-- 연삭기 · 샌딩머신(sanding machine) 또는 광택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5.94.00	-- 굽힘기나 조립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5.95.00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5.96.00	--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또는 박피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5.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가공물홀더나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속물을 포함한다], 수지식 공구에 사용 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0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20.00	- 가공용 홀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30.00	-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속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66.91.00	-- 제 8464 호의 기계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92.00	-- 제 8465 호의 기계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93	--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8466.93.01	---- 소호 제 8456.90 호의 전기화학공작기계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93.09	---- 플라스틱 드릴링 공작기계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93.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94	--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8466.94.01	---- 소결에 의한 금속가루의 주조용 프레스와 금속 스크랩을 베일로 압축하기 위한 프레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6.94.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일체형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00	-- 회전방식의 것(회전 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00	-- 각종 드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22.00	-- 톱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공구									
8467.81.00	-- 체인톱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89	-- 기타									
8467.89.10	---- 유압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89.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67.91.00	-- 체인톱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92.00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99	-- 기타									
8467.99.11	---- 전동기를 갖춘 울다리 정리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7.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8	납땜용 · 땀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 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00	- 수지식 취관(吹管)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8.20.0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8.8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8.90	- 부분품									
8468.90.01	--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8.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69										
8469.00.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서머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 수첩, 회계기 · 우편요금계기 · 표권발행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8470.10.1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없이 작동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0.10.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00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0.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0.30.00	- 그 밖의 계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0.50.00	- 금전 등록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7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00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1.49.00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1.50.00	-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1.60.0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1.70.00	- 기억장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1.80.0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 또는 스텔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 또는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00	- 등사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2.30.00	- 우편물의 분류기나 점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합기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2.90	- 기타									
8472.90.01	-- 천공기와 지철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2.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00	-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00	--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3.30.00	-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3.40.00	-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3.50.00	-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나 반죽기(분말 모양 또는 페이스트 모양을 포함한 고체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 또는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0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20.00	- 파쇄기나 분쇄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00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32.00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80	- 그 밖의 기계									
8474.80.01	--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8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90	- 부분품									
8474.90.01	--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0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475.21.00	-- 광성유와 광성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5.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화폐교환기를 포함한다)									
	-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00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6.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계									
8476.81.00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6.8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6.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00	- 사출 성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20.00	- 압출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30.00	- 취입 성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40.0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성형기									
8477.51.00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5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80.00	- 그 밖의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90	- 부분품									
8477.90.01	-- 플라스틱 압출기용 다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90.09	-- 플라스틱 사출과 취입성형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7.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00	-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8.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00	-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20.00	- 동물성이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또는 조제용 기계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30.0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및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40.0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5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60.00	- 증발식 에어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8479.81.00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82.00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8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90	- 부분품									
8479.90.01	-- 수중 취관(blow pipes)의 것, 산소를 분사하여 철강을 태우는 방식으로 바위나 콘크리트의 절단이나 천공용 장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79.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0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20.00	- 주형 베이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30	- 주형 제조용 모형									
8480.30.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00	-- 사출식이나 압축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4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50.00	- 유리 성형용 주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60.0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 사출식이나 압축식									
8480.71.01	--- 플라스틱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7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79	-- 기타									
8480.79.01	--- 플라스틱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0.7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00	- 감압밸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20.0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30.00	- 체크(논리턴)밸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40.00	- 안전밸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80	- 그 밖의 기구									
8481.80.01	-- 자동차용의 탭·코크와 밸브(엔진밸브를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80.09	-- 공기압 타이어와 관용 밸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80.11	-- 자동 차단방식의 석유공급노즐(구리합금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8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90	- 부분품									
8481.90.01	-- 자동차용의 탭·코크와 밸브(엔진밸브를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90.09	-- 공기압 타이어와 관용 밸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90.11	-- 자동 차단방식의 석유공급노즐의 것(구리합금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1.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00	- 볼베어링(ball bear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2.2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 및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2.30.0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2.40.0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2.50.0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2.80.0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482.91.00	-- 볼·니들 및 롤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및 크랭크 (crank)									
8483.10.01	-- 내연기관용 크랭크샤프트와 캠샤프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83.10.11	---- 특정기계나 기기용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83.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2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83.20.01	-- 특정기계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83.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3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83.30.01	-- 특정기계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83.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4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 · 체인 sprocket(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 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특정기계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8483.40.10	---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40.20	--- 기타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83.4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50	-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pulley) [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8483.50.01	-- 폴리블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483.50.11	--- 특정기계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83.5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6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60.01	-- 특정기계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83.6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 sprocket(chain sprocket) 및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 (transmission)용 엘리먼트, 부분품									
8483.90.01	-- 특정기계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계 또는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483.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0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4.20.0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4.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486.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10.0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반도체재료 공작기계용									
8486.10.05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전기 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스마마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온도변화를 포함한 공정을 통하여 반도체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나 기기									
8486.10.11	---- 노와 오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10.1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8486.10.17	---- 기계식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20.0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05	-- 식각·스트리핑이나 세척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분사용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반도체재료 공작기계용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전기 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스마마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									
8486.20.09	----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11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15	---- 굽힘용·접음용·교정용 또는 펼침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19	---- 스테이플·접착이나 다른 조립방법에 의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21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고무나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류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회로의 제조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8486.20.25	---- 취입 성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온도변화를 포함한 공정을 통하여 반도체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나 기기									
8486.20.31	---- 노와 오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3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39	-- 광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41	-- 반도체재료 도판용 이온주입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45	-- 전기용접기기, 금속이나 서멧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8486.20.49	---- 기계식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20.5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8486.30.0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30.05	-- 식각·현상·스트리핑하거나 세척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분사용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재료의 공작기계용									
8486.30.09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전기 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스마마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30.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30.19	-- 공업용 로봇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30.21	-- 사진용 기기와 장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8486.30.25	---- 기계식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30.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	-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8486.40.01	--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05	-- 납땜용·뿔질용 또는 용접용 기기, 금속 또는 서멧의 가열분사식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09	-- 현미경, 회절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11	-- 제도용, 설계용 또는 계산용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고무나 플라스틱 가공기계									
8486.40.15	---- 사출 성형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6.40.21	---- 플라스틱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2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재료의 공작기계용									
8486.40.29	----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스마마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31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 그 밖의 기기									
8486.40.35	---- 기계식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40.3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	- 부분품과 부속품									
8486.90.01	--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와 그 밖의 사진용 기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05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09	-- 제도용·설계용 또는 계산용구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11	--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15	-- 납땜용·땜질용 또는 용접용 기기의 부분품, 금속 또는 서멧의 가열분사식 기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온도변화를 포함한 공정을 통하여 반도체체료를 처리하는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									
8486.90.19	---- 노와 오븐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21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고무나 플라스틱 가공기계의 부분품									
8486.90.25	---- 플라스틱 압출용 다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31	-- 그 밖의 재료의 공작기계용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35	-- 현미경, 회절기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39	-- 시각·현상·스트리핑하거나 세척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분사용기기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전기기기의 부분품									
8486.90.41	---- 입자가속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4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6.9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속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0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7.90	- 기타									
8487.90.01	-- 급유장치, 그리스용 컵, 그리스용 니플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487.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5 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00	-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8501.20.01	-- 373 와트 초과 55 킬로와트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2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8501.31	--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 전동기									
8501.31.01	---- 373 와트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1.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2	--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전동기									
8501.32.01	---- 750 와트 초과 55 킬로와트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2.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2.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3	--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3.01	--- 전동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3.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4	--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1.34.01	--- 전동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34.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4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8501.40.01	-- 373 와트 초과 55 킬로와트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4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501.51.01	--- 373 와트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51.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52	--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52.01	--- 750 와트 초과 55 킬로와트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52.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53.00	--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교류 발전기									
8501.61.00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501.62.00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63.00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1.64.00	--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00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2.12.00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2.13.00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2.20.0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 풍력의 것									
8502.31.10	---- 풍력 발전세트(출력 전압이 10 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2.31.90	---- 풍력 발전세트(출력 전압이 10 킬로와트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2.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2.40.00	- 회전변환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3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동기의 것									
8503.00.01	-- 373 와트 초과 55 킬로와트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3.0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3.0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 방전응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8504.10.01	-- 입력전압의 범위가 240 볼트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1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유입식 변압기									
8504.21.00	--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22.00	--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23.00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그 밖의 변압기									
8504.31	--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4.31.01	---- 입력전압의 범위가 240 볼트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3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32	--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4.32.01	---- 입력전압의 범위가 240 볼트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32.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33.00	--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34.00	--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40	- 정지형 변환기									
8504.40.01	-- 배터리 충전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04.40.11	---- 전자동 정류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40.15	---- 따로 제시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원공급 단위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4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50.00	- 그 밖의 유도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90	- 부분품									
	-- 변압기의 것									
8504.90.01	---- 입력전압의 범위가 240 볼트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정지형 변환기									
8504.90.11	---- 배터리 충전기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04.90.21	----- 전자동 정류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4.90.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 ·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질									
8505.11.00	-- 금속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5.20.0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와 브레이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5.06	일차전지									
8506.10.00	- 이산화망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6.30.0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6.40.0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6.50.00	- 리튬으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6.60.00	- 에어징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6.80.00	- 그 밖의 일차전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6.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8507.10.02	--- 차량용의 것(스테이션 웨건과 경주용차량을 포함한다)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10.0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20.0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30.00	- 니켈-카드뮴 축전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40.00	- 니켈-철 축전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80.00	- 그 밖의 축전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7.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8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00	--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8.19	-- 기타									
8508.19.01	--- 상업 또는 산업 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8.1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8.60.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8.70	- 부분품									
8508.70.01	-- 상업 또는 산업 형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8.7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									
8509.4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509.40.01	-- 식품용 그라인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40.09	--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40.19	-- 식품용 믹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80	- 그 밖의 기구									
8509.80.01	-- 식품용 슬라이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80.09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의 보조용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80.19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8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09.90.00	- 부분품	물품이 설계된 기기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기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5.10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00	- 면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0.20	- 이발기									
8510.20.01	-- 가축용 이발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0.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0.30.00	- 모발제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0.90	- 부분품									
8510.90.01	-- 칼날·절단플레이트와 전기 면도기의 헤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10.90.11	--- 가축용 이발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0.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와 예열 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과 함께 사용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00	- 점화플러그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20.0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30	- 배전기, 점화코일									
8511.30.01	-- 배전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점화코일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511.30.12	---- 제 8703 호 승객 수송용 차량과 제 8704 호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30.13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 차량과 제 8701 호 로드 트랙터 및 제 8704 호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 3,500 킬로그램 초과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30.15	---- 그 밖의 차량의 것(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3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40	- 시동전동기와 경용 시동발전기									
8511.40.01	-- 시동전동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50.00	- 그 밖의 발전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80.00	- 그 밖의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1.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2.20.0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 경적									
8512.30.01	---- 자전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2.3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12.30.21	---- 자전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2.30.2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2.40.0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2.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8513.10.00	- 전등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3.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10.00	-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4.20.0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노(爐)와 오븐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4.30.00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4.40.0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4.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 · 광자빔식 · 초음파식 · 전자빔식 · 자기펄스(magnetic pulse)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 · 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 납땜용의 기기									
8515.11.00	-- 납땜용 인두와 건(gun)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00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2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8515.31.01	---- 플라즈마아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31.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39	-- 기타									
8515.39.01	---- 플라즈마아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3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80	- 그 밖의 기기									
8515.80.01	-- 플라스틱 용접용의 저항용접기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8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90	- 부분품									
8515.90.01	-- 납땜용 인두와 건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90.09	-- 플라즈마아크 용접기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90.11	-- 플라스틱 용접용의 저항용접기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5.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5.16	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제 8545 호의 것을 제외한다)									
8516.1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1.00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29	-- 기타									
8516.29.01	---- 토양가열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2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									
8516.31.00	-- 헤어드라이어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32.00	-- 그 밖의 이용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33.00	-- 손 건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40.00	- 전기다리미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5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60	- 그 밖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스터									
8516.60.01	-- 가정용 난로와 레인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16.60.11	---- 커피 로스팅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6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8516.71.01	---- 커피메이커(드립과 퍼컬레이터 타입의 것을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71.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72.00	-- 토스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79	-- 기타									
8516.79.01	---- 향수와 인센스(incense) 히터, 살충제 분산용 히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79.09	---- 자동 밥솥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79.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80.00	- 전열용 저항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6.90.00	- 부분품	물품이 설계된 기기 또는 장치에 적용 가능한 세율	물품이 설계된 기기 또는 장치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기기는 제외 한다)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00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12.00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18.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 기지국									
8517.61.01	---- 무선 전화 또는 무선 전신 송신용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2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 및 송신용 또는 재생용 기기 [교환기나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517.62.01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2.05	---- 텔레프린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2.09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2.15	---- 그 밖의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무선 전화 또는 무선 전신 송신용 기기									
8517.62.19	----- 무선 마이크로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2.25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2.29	---- 무선 전화 또는 무선 전신 송수신용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2.39	---- 그 밖의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517.69	-- 기타									
8517.69.01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 기장 팩시밀리 수신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9.05	--- 그 밖의 무선 전화, 무선 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6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70	- 부분품									
8517.70.01	-- 자동자료처리기에 연결이 가능한 장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무선 전화 또는 무선 전화 송수신용 기기의 것									
8517.70.15	--- 휴대용 시인밴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7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무선 전화 또는 무선 전화 수신기의 것									
8517.70.25	---기상용 팩시밀리 수신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7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7.70.39	-- 그 밖의 기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0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00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22.00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2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518.30.01	-- 헤드폰 또는 이어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40.00	- 가청주파증폭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50	- 음향증폭세트									
8518.50.01	-- 메가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90	- 부분품									
	-- 헤드폰 · 이어폰과 마이크로폰과 스피커 결합 세트의 것									
8518.90.01	--- 헤드폰 또는 이어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18.90.11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확성기의 것, 전기 가청주파증폭기의 것									
8518.90.21	---- 확성기 유닛(프레임 지름이 65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90.31	---- 메가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8.90.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519.20.01	--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20.09	--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2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30.0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50.00	- 전화응답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8519.81	--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 음성재생용기기(기록용기기를 갖추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8519.81.01	----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포켓-사이즈 카세트 플레이어									
8519.81.09	-----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책 재생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1.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카세트형으로 한정한다)									
8519.81.25	-----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책 재생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19.81.35	-----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1.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음성기록용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9.81.45	---- 닥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1.49	---- 그 밖의 마그네틱 테이프녹음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 차 (발효시)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이후
8519.81.5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9	-- 기타									
8519.89.01	---- 레코드 플레이어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9.09	----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9.15	---- 테이프 구동 기구(재생 또는 확성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9.19	---- 영화용 음성 재생기기(음성 기록기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9.25	---- 영화용 음성 기록기기와 영화용 재기록기기 (음성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19.8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2	제 8519 호부터 제 8521 호까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00	- 픽업 카트리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2.90	- 기타									
8522.90.01	-- 영화용 음성 기록기와 음성 재생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22.90.11	---- 바늘, 사파이어 · 다이아몬드와 루비(장착된 것인지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2.90.19	---- 기타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장치에 작용 가능한 세율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장치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5.23	디스크 · 테이프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기식 매체									
8523.21.00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저장한 카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29	-- 기타									
8523.29.01	---- 마그네틱 테이프(기록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29.09	---- 마그네틱 디스크(기록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29.15	---- 마그네틱 테이프(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으로 한정된 것으로, 기록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마그네틱 테이프(기록된 것)									
8523.29.19	-----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폭이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5 밀리미터 이하의 것:									
8523.29.25	----- 비디오테이프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29.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523.29.35	----- 비디오테이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29.3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29.49	--- 기타(기록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40	- 광학식 매체									
8523.40.01	--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기록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40.09	--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기록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4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반도체 매체									
8523.51.00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52	-- 스마트카드									
8523.52.01	---- 스마트카드로서 한 개만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52.09	---- 스마트카드로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3.8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또는 음성기록기기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 인지에 상관없다),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00	- 송신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5.60.0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5.80.00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및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00	- 레이더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기타									
8526.91.00	-- 항행용 무선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6.92	--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92.01	---- 완구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6.92.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00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7.13.00	--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7.19	-- 기타									
8527.19.01	---- 휴대용 라디오(설치용 라디오를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7.1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00	-- 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7.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27.91.00	-- 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7.92.00	-- 시계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7.9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00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8.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모니터									
8528.51.00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8.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프로젝터(projector)									
8528.61.00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8.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00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제작되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8.72.00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8.73.00	-- 그 밖의, 흑백 또는 그 밖의 단색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에 사용되는 부분품									
	-- 라디오방송 수신기기용으로 제작된 것									
8529.10.01	---- 전기작동식의 자동차용 안테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90	- 기타									
	-- 라디오방송 수신기기의 부분품									
8529.90.01	---- 휴대용 라디오의 것[차량용 라디오·카세트 라디오와 맨틀(mantel) 라디오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90.11	-- 텔레비전방송 수신기기의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529.90.29	---- 송신용과 수신용 기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90.41	----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항행용 무선기기, 레이더와 무선 원격조절 기기의 것									
8529.90.51	---- 완구용의 무선 원격조절 기기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90.5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90.65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의 디스플레이 유닛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29.90.6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0	철도용·케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 또는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 또는 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00	- 철도용이나 케도용 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0.80.00	- 그 밖의 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0.90.00	- 부분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0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1.20.00	- 액정 디스플레이(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1.8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1.90	- 부분품									
8531.90.01	-- 표시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1.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1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00	-- 탄탈륨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22.00	-- 알루미늄 전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23.00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24.00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25.00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30.0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2.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00	- 탄소파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00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8533.31.01	---- 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3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39	-- 기타									
8533.39.01	---- 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용량이 25 와트 미만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3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4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40.01	-- 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4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90	- 부분품									
8533.90.01	-- 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용량이 25 와트 이상의 것으로 권선형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3.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4										
8534.00.00	인쇄회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00	- 퓨즈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자동차단기									
8535.21.00	--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30.0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40.00	-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90	- 기타									
	-- 그 밖의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8535.90.01	--- 시동 전동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전기회로의 접속용 전자기기									
8535.90.11	--- 소켓과 그의 플러그, 와이어와 케이블 커넥터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5.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 퓨즈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536.10.01	-- 회로용으로 800 암페어 이하이면서 전압이 660 볼트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1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20.00	- 자동차단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30.00	-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계전기(繼電器)									
8536.41.00	--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4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50.00	- 그 밖의 개폐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8536.61	-- 램프홀더									
8536.61.01	---- 차량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61.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6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70	--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536.70.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70.09	---- 구리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70.15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6.9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직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00	-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7.20.00	-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	부분품(제 8535 호 · 제 8536 호 또는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00	-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한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90	- 기타									
	--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8538.90.01	---- 전동기용 스타터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전기회로 보호용의 기기									
	---- 퓨즈의 것									
8538.90.11	---- 회로용으로 800 암페어 이하이면서 전압이 660 볼트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9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램프홀더의 것									
8538.90.31	---- 차량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90.3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90.41	--- 소켓과 그의 플러그의 것, 와이어와 케이블 커넥터와 이와 유사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8.9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539.10.01	-- 차량 장착용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1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 램프는 제외한다)									
8539.21.00	-- 텅스텐 할로겐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22.00	--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539.2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00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32.00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00	-- 아크램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49	-- 기타									
8539.49.10	--- 필라멘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49.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90	- 부분품									
8539.90.01	-- 필라멘트(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제외한다) 램프와 형광막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39.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공관 또는 중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활상관(camera tube)]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 선관을 포함한다)									
8540.11.00	-- 천연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12.00	--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20.00	- 텔레비전용 활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및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40.00	- 데이터/그래픽 표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50.00	- 데이터/그래픽 표시관(display tube)으로 흑백 또는 그 밖의 단색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60.00	- 그 밖의 음극선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 · 속도변조관(klystron) · 진행파관(travelling wave tube) · 카시노트론(carcinotron)][그리드(grid)제 어관은 제외한다]									
8540.71.00	-- 자전관(magnetro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72.00	-- 속도변조관(klystron)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7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관									
8540.81.00	-- 수신관이나 증폭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8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8540.91.00	-- 음극선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0.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00	- 다이오드(광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트랜지스터(광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00	--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30.0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및 트라이액(triac)(광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40.00	-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50.0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6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60.01	-- 석영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6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1.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2	전자집적회로									
	- 전자집적회로									
8542.31.00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 회로 · 증폭기 · 클럭(clock) 및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2.32.00	-- 메모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2.33.00	-- 증폭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2.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2.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00	- 입자가속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20.00	- 신호발생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30.00	- 전기도금용 · 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70	- 그 밖의 기기									
8543.70.01	--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장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70.09	-- 고주파증폭기 또는 중간주파증폭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70.15	-- 싱크로나이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70.19	-- 금속탐지기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70.2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543.90	- 부분품									
8543.90.01	-- 입자 가속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90.09	-- 고주파증폭기 또는 중간주파증폭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90.11	-- 싱크로나이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90.19	-- 금속탐지기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90.21	-- 전기 철책(fence) 제거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3.90.25	--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543.9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 구리로 만든 것									
8544.11.01	---- 오직 래커나 에나멜로 절연된 것(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광물질 절연·금속취드(sheathed)한 구리 도체의 전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1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19	-- 기타									
8544.19.01	---- 오직 래커나 에나멜로 절연된 것(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광물질 절연·금속취드(sheathed)한 알루미늄 도체의 전선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1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20.00	-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30	- 전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 차량에 사용되는 것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8544.30.02	----- 사람 수송용의 차량(제 8703 호의 것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차량(제 8704 호의 것에 한정한다)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30.05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의 차량과 제 8701 호의 로드 트럭터 및 제 8704 호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 3,500 킬로그램 초과 10,5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30.08	----- 그 밖의 차량의 것(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3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3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00	-- 접속자가 부착된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4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60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44.60.01	-- 광물질 절연·금속취드(sheathed)한 알루미늄이나 구리 도체의 전선(권선용 전선은 제외한다)과 케이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6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4.70.00	- 광섬유 케이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전극									
8545.11.00	-- 노(爐)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5.20	- 브러시									
8545.20.01	-- 자동차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5.2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00	- 유리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6.20	- 도자제의 것									
8546.20.01	-- 자동차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6.20.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6.90	- 기타									
8546.90.01	-- 자동차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6.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547.10.0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단열 부품이 설계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에 적용 가능한 세율	단열 부품이 설계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547.2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단열 부품이 설계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에 적용 가능한 세율	단열 부품이 설계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547.90	- 기타									
8547.90.01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7.90.09	-- 기타	단열 부품이 설계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에 적용 가능한 세율	단열 부품이 설계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0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54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1.2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炭水車)									
8602.10	- 디젤 전기기관차									
8602.10.01	-- 중량이 46 톤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2.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2.90	- 기타									
8602.90.01	-- 중량이 46 톤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2.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4										
8604.00.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5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0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6.30.00	- 자기 방전식 배관 웨건(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606.91.00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6.92.00	--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606.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보기(bogie) · 비셀보기(bissel-bogie) · 차축 및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00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7.12.00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7.19.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00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7.2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7.30.00	-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607.91.00	-- 기관차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7.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8										
8608.00	철도나 궤도 선로용 장치물, 철도 · 도로 · 내륙 수로 · 주차장 · 항만이나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 · 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이들의 부분품									
8608.00.01	- 전기기계식의 신호 · 안전과 교통관제용의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8.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9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609.00.01	- 세관과 같은 보안기관에 의해 인가된 수출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609.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00	- 보행운전형 트랙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1.20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20.01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1.20.11	---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1.2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1.3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2.90.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00	-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볼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8703.21.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홈으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1.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1.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8703.22.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홈으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2.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2.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8703.23.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홈으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3.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3.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24.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홈으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24.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703.24.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의 것									
8703.31.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홀스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1.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1.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의 것									
8703.32.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홀스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2.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2.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33.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홀스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3.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33.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90	- 기타									
8703.90.10	---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인 모터 홀스로 주거설비(예: 수면실 · 요리실 · 화장실 등)를 특별히 갖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90.30	---- 구급차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3.90.8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	화물자동차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704.10.01	--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 총 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8704.21.10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4.21.50	----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21.8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22	-- 총 중량이 5 톤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8704.22.01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4.22.11	----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22.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23	-- 총 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8704.23.01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23.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 총 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8704.31.10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4.31.50	----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31.8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32	-- 총 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8704.32.01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4.32.11	----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32.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90	- 기타									
8704.90.02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4.90.12	---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4.90.21	----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4.90.2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거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와 기중기차(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및 도로청소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5.10.00	- 기중기차(crane lorry)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5.2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5.30.00	- 소방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705.4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5.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6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에 한정한다)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고 장관이 규정하는 조건 하의 미조립품									
8706.00.01	-- 제 8703 호의 사람 수송용의 차량과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6.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6.00.11	-- 제 8703 호의 사람 수송용의 차량과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6.00.21	-- 제 8702 호와 제 8705 호 차량과 제 8701 호 로드 트랙터 및 제 8704 호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 3,500 킬로그램 초과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6.00.29	-- 그 밖의 차량용의 것(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00	- 제 8703 호의 차량용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7.90.01	-- 제 8701 호 로드 트랙터용의 것으로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7.90.11	-- 제 8704 호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7.90.21	-- 제 8704 호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초과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7.90.29	-- 제 8701 호와 제 8704 호 그 밖의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10,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7.90.31	-- 제 8702 호 차량용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7.90.39	-- 제 8705 호 차량용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10.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 안전벨트									
8708.21.01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 조립, 완성 또는 제조용 구성요소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2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29	-- 기타									
8708.29.01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 조립, 완성 또는 제조용 구성요소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29.1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29.21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29.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30	- 제동장치, 그 부분품									
	--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708.30.01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30.05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30.09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30.15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30.1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40.00	-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708.50.01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 조립, 완성 또는 제조용 구성요소									
8708.70.02	---- 제 8703 호의 사람 수송용의 차량과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708.70.05	--- 제 8702 호, 제 8705 호 차량과 제 8701 호 로드 트럭터 및 제 8704 호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 3,500킬로그램 초과 10,500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70.09	---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 10,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70.11	--- 소호 제 8701.1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7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708.80.01	--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8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91.02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1.08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8708.92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 조립, 완성 또는 제조용 구성요소									
8708.92.02	----- 제 8703 호의 사람 수송용의 차량과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킬로그램 이하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2.05	----- 제 8702 호, 제 8705 호의 차량과 제 8701 호의 로드 트럭터 및 제 8704 호의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 3,500킬로그램 초과 10,500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2.09	----- 그 밖의 차량용의 것으로 10,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92.11	----- 소음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92.21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2.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93.01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3.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4	--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8708.94.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94.11	----- 소호 제 8701.10 호 ·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4.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5.00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	-- 기타									
	--- 새시									
8708.99.01	----- 전기구동식 자동차용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09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 조립, 완성 또는 제조용 구성요소									
8708.99.12	----- 제 8703 호의 사람 수송용의 차량과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이 3,500킬로그램 이하의 것	12.5%	3	8.3%	4.1%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15	----- 제 8702 호, 제 8705 호의 차량과 제 8701 호의 로드 트럭터 및 제 8704 호 차량의 것으로 총 중량 3,500킬로그램 초과 10,500 킬로그램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19	----- 차량용의 것으로 10,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99.22	----- 자동차 컷츠(cuts)(실린더 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자동차용의 것으로, 반드시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완성 자동차용의 것은 아니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25	----- 자동차 컷츠(cuts)(실린더 용량이 1,000 시시 초과인 자동차용의 것으로, 반드시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완성 자동차용의 것은 아니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28	----- 히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29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08.99.31	----- 소호 제 8701.10 호, 제 8701.30 호와 제 8701.90 호의 트랙터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8.99.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 차량									
8709.11.00	-- 전기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9.19	--- 기타									
8709.19.01	---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9.1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9.90	- 부분품									
8709.90.01	--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09.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0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0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1.20.0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1.30.00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1.40.00	-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1.50.00	-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 초과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2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8712.00.01	- 자전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2.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3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3.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8714.11.00	-- 안장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20.00	-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714.91.00	-- 프레임과 포크와 이들의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92.00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93.00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크링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94.00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크링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95.00	-- 안장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96.00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및 이들의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4.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5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2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716.31.01	--- 하중지지부분이 관절형인 것(세미 트레일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31.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39	-- 기타									
8716.39.01	--- 하중지지부분이 관절형인 것(세미 트레일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3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40.0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80	- 그 밖의 차량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8716.80.01	-- 장관에 의해 승인되고 세관과 같은 보안 기관에 의해 인가된 수출용 왜건·트럭이나 바퀴 달린 팔레트(벌크 화물 컨테이너 핸들링 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8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90	- 부분품									
8716.90.01	-- 차축과 차축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716.90.09	-- 기타	부품이 설계된 자동차 (운송 수단) 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자동차 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										
8801.00.00	기구 및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서보비틀(suborbital) 및 우주선 운반로켓									
	- 헬리콥터									
8802.11.0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2.12.0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2.20.0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2.30.0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2.40.00	-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2.6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서보비틀(suborbital) 및 우주선 운반로켓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00	- 프로펠러와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3.20.0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3.30.0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4										
8804.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5	항공기 발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00	- 항공기 발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00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8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 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8901.10.01	-- 공기완충식 선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901.10.11	--- 총 길이 10 미터 미만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10.19	--- 총 길이 10 미터 이상 5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10.2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20.00	- 탱커(tank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30	-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901.30.01	-- 총 길이 5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30.0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8901.90.01	-- 공기완충식 선박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바지선									
8901.90.11	--- 총 길이 7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90.19	--- 총 길이 70 미터 초과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901.90.21	--- 총 길이 10 미터 미만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90.29	--- 총 길이 10 미터 이상 5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1.90.3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2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8902.00.01	- 총 길이 10 미터 미만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2.00.09	- 총 길이 10 미터 이상 5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2.00.1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3	요트 및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8903.91.00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3.92.00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3.9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4										
8904.00	에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s craft)									
8904.00.01	- 총 길이 50 미터 이하의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4.00.0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艇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 준설선									
8905.10.01	-- 총 길이 7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5.10.09	-- 총 길이 70 미터 초과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5.2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905.20.01	-- 총 길이 5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5.20.0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5.90	- 기타									
8905.90.01	-- 총 길이 5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5.90.0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6	그 밖의 선박(군함과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00	- 군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6.90	- 기타									
8906.90.10	-- 총 길이 10 미터 미만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6.90.17	-- 총 길이 10 미터 이상 50 미터 이하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6.90.19	-- 총 길이 50 미터 초과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7.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89.08										
8908.00.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 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9001.10.01	-- 광섬유 케이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1.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1.20.0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1.30.00	- 콘택트렌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1.40.0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1.5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1.90	- 기타									
9001.90.01	-- 사진용 컬러 필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1.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대물렌즈									
9002.11.00	--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용이나 사진 축소기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2.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2.20.00	- 필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2.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데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대외 장착구									
9003.11.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3.19.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3.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4	시력교정용 · 보충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00	- 선글라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4.90	- 기타									
9004.90.01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4.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5	쌍안경 · 단안경 · 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전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00	- 쌍안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5.80.00	- 그 밖의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5.90.0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00	- 인쇄제판용 사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30.00	-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또는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40.00	- 즉석인화 사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사진기									
9006.51.00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52.00	--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53.00	--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5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00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6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00	-- 카메라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6.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거나 재생 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촬영기									
9007.11.00	--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이거나 더블 8 밀리미터 필름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7.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7.20.00	- 프로젝터(projecto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00	-- 카메라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7.92.00	-- 영사기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8	투영기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10.00	- 슬라이드 프로젝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8.20.00	- 마이크로필름 · 마이크로피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8.30.00	- 그 밖의 투영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8.40.00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08.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00	- 홀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0.5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그 밖의 기기,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9010.50.10	-- 필름 측정 기기와 필름 계수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0.50.9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0.60.00	- 영사용 스크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9010.90.01	-- 필름 측정 기기와 필름 계수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0.90.09	-- 영사용 스크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0.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00	- 입체현미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011.20.0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1.80.00	- 그 밖의 현미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1.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0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 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0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3.20.0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3.80.00	- 그 밖의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3.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4.20.0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4.8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4.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 · 수로 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 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00	- 거리측정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5.20.0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5.30.00	- 수준기(水準器)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5.40.00	- 사진측량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5.8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6										
9016.00.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 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	제도용구 · 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 · 축소확대기 · 분도기 · 제도세트 · 계산척 · 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0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20	- 그 밖의 제도용구 · 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9017.20.01	-- 계산용구(계산척 · 계산반과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2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30.00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80	- 그 밖의 기기									
9017.80.11	-- 눈금자(ruler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8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90	- 부분품과 부속품									
9017.90.01	-- 계산용구(계산척 · 계산반과 이와 유사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7.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00	-- 심전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12.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13.00	-- 자기공명 촬영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14.00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20.0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주사기 · 바늘 · 카테터(catheter) · 케늘러(cannula 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9018.31.01	--- 주사기[드랜칭(drenching)]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3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32.00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3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00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018.5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9018.50.01	-- 전기식 의료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5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90	- 그 밖의 기기									
9018.90.02	-- 전기식 의료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8.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 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마사지용 기기									
9019.10.01	--- 진동 마사지 기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9.1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9.10.11	--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9.1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19.20.00	-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0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및 결함이나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0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00	- - 의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1.29.00	-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00	- - 인조관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1.39.00	- -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1.4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1.5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이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이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00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2.13.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2.14.00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2.19.00	-- 그 밖의 용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이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00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2.29.00	-- 그 밖의 용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2.30.00	- 엑스선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2.90.0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3										
9023.00.00	전사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00	- 금속재료 시험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4.8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4.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 (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온도계와 고온계(그 밖의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025.11.00	-- 액체를 넣은 것(직식식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5.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5.8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제 9014 호· 제 9015 호·제 9028 호 또는 제 9032 호의 것을 제외한다)									
9026.10.0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6.20	- 압력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9026.20.01	-- 자동 진공 게이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6.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6.80.00	- 그 밖의 기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6.90.00	- 부분품과 부속품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 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시티 (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0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7.20.0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7.30.00	- 분광계·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7.50.00	-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7.80.00	- 그 밖의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7.90.00	- 마이크로톰(microtome),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00	- 기체용 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8.20.00	- 액체용 계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8.30.00	- 전기용 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8.90.00	- 부분품과 부속품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 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 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00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 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9.20.0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29.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0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2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 (Oscillograph)									
9030.20.01	- 음극선관의 오실로스코프와 음극선관의 오실로그래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20.09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2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00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32.00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9030.33.00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39.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4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수 설계 제작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개인측정계·만곡률계· 잡음전압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9030.82.00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84.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8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0.31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00	- 기계부품 균형시험기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1.20.00	- 테스트벤치(Test bench)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00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1.4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1.80	- 그 밖의 기기									
9031.80.02	-- 로드셀(측정 능력이 150 킬로그램부터 100 톤까지인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1.80.08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1.90.00	- 부분품과 부속품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9032.10.01	-- 냉동기기전용으로 제작된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2.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2.20.0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기기									
9032.81.00	-- 액압식이나 공기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2.8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03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0.33										
9033.00.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 또는 악세서 리가 설계된 물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1.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101.21.00	-- 자동권(自動捲)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1.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101.91.00	-- 전기 작동식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1.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2.12.00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2.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00	-- 자동권(自動捲)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2.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102.91.00	-- 전기 작동식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2.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럭(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00	- 전기 작동식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4										
9104.00.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계기반 클럭(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럭(clock)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5	그 밖의 클럭(clock)									
	- 자명종시계									
9105.11	-- 전기 작동식의 것									
9105.11.10	--- 태양전지에 의해 작동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5.11.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5.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벽시계									
9105.21	-- 전기 작동식의 것									
9105.21.10	--- 태양전지에 의해 작동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5.21.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5.2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105.91	-- 전기 작동식의 것									
9105.91.10	--- 태양전지에 의해 작동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5.91.9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5.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0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 recorder)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7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 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전기 작동식의 것									
9108.11.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8.12.00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8.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8.20.00	- 자동권(自動捲)식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9	클럭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전기 작동식의 것									
9109.11.00	-- 알람시계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9.1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09.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 (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00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110.12.00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0.19.00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0.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1.20.0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1.80.00	- 그 밖의 케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1.90.00	-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2	클럭(clock) 케이스 및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00	- 케이스	케이스 (덮개) 가 설계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덮개(케이스)가 설계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112.90.00	- 부분품	부품이 설계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1.13	휴대용 시계줄·휴대용 시계밴드 및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3.20.0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3.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4.20.00	- 보석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4.30.00	- 문자판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4.40.00	- 지판과 브리지(bridg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114.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1.20.00	- 그랜드 피아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10.00	- 활을 사용하는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5	그 밖의 관악기(예: 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9205.10.00	- 금관악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5.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6										
9206.00.00	타악기[예: 북·독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1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7.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8	유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오르간·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기계식 자명조·유지컬소오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쿨,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00	- 유지컬박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8.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9	악기의 부분품(예: 유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 및 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및 각종 조율관(調律 管)									
9209.30.00	- 악기용 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209.91.00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9.92.00	--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9.94.00	--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209.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제 93 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무기(리볼버 · 피스톨과 제 9307 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및 박격포)									
9301.11.00	- - 자주식(自走式)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1.19.00	-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1.20.0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2										
9302.00.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및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 및 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00	- 총구장전 화기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3.20.00	-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3.30.00	-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3.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4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또는 가스총 · 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4.00.02	- 수중 작살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4.00.18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0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21.00	--- 산탄총의 총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5.29	--- 기타									
9305.29.01	---- 인명 사살용(가축총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5.29.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305.91.00	--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5.99.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과 그 밖의 총포탄 및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 탄약									
	--- 쏘(shot)									
9306.21.01	---- 12 내경(bor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21.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21.11	---- 건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306.21.21	---- 12 내경(bor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21.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29	-- 기타									
	---- 산탄총 탄약의 부분품									
9306.29.01	---- 총알과 납탄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29.09	---- 메탈 컵(metal cups)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29.19	---- 기타	부품이 설계된 카트리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카트리지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306.29.29	--- 공기총 탄환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30	-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 탄약									
	--- 건볼									
9306.30.01	---- .22 구경 림파이어(rimfire), .243 · .303 · .308 [7.62 나토(NATO)] 구경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3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306.30.11	---- .22 구경 림파이어(rimfire)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3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 그 밖의 탄약 부분품									
9306.30.21	--- 총알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30.29	--- 메탈 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6.30.39	--- 기타	부품이 설계된 카드리지 에 적용 가능한 세율	부품이 설계된 카드리지 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306.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3.07										
9307.00.00	검류·청과 이와 유사한 무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경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00	- 항공기용 의자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1.20.00	- 차량용 의자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1.30.00	- 회전 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1.40.00	- 침대 경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00	--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1.5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00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1.69.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71.00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1.79.00	-- 기타	5.0%	5	4.0%	3.0%	2.0%	1.0%	무세	무세	무세
9401.80.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1.90	- 부분품									
9401.90.01	-- 동법 제 14 절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것	12.5%	7	10.7%	8.9%	7.1%	5.3%	3.5%	1.7%	무세
	-- 기타									
9401.90.11	--- 자동차용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1.90.19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과 뒤로 젖힐 및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00	-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2.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9403.10.02	-- 제도용 스탠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3.1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3.20	-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9403.20.10	-- 약보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3.2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3.3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3.40.00	- 주방용 목제가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3.50.00	- 침실용 목제가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3.60.00	- 그 밖의 목제가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3.7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1.00	-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3.89.00	- 기타	5.0%	3	3.3%	1.6%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3.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 및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매트리스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404.21.00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4.29.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4.30.00	- 침낭(sleeping bag)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4.90.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 및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0.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10.11	-- 도자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1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20	-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9405.20.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20.11	-- 도자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2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30.0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9405.40.01	---- 항구 및 공항과 등대용의 것, 선박과 항공기 네비게이션 램프, 광부용 안전 램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40.09	---- 스포트라이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4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405.40.21	---- 스포트라이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405.40.3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40.41	----- 도자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4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9405.50.01	---- 광부용 안전 램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5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50.11	-- 유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50.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50.31	-- 도자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50.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60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0.01	-- 유리로 만든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60.1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60.21	-- 도자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60.2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부분품									
9405.91.00	-- 유리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92.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99	-- 기타									
9405.99.01	---- 도자제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5.9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6										
9406.00	조립식 건축물									
9406.00.01	- 목재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6.00.09	- 철강으로 만든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406.00.1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9503.00.01	- 책과 절단용 그림 시트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3.00.05	- 고무풍선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3.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4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 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9504.10.00	-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4.2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9504.20.01	--당구용 초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4.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4.30.00	- 그 밖의 게임(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여 불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4.40	- 오락용 카드									
9504.40.01	-- 전통 카드세트로 구성된 오락용 카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4.4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4.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5.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육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폴(paddling pool)용품									
	-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00	-- 스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12.00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 (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00	-- 세일보드(sailboard)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29.00	-- 기타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00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32.00	-- 구(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3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40.00	- 탁구용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테니스용·배드민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1.00	--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5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00	-- 론테니스(lawn-tennis) 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62.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69	-- 기타									
9506.69.01	----- 크로켓, 하키, 폴로, 소프트볼, 야구와 스쿼시 공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6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70.00	-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506.91.00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99	-- 기타									
9506.99.01	---- 아이스 액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99.09	---- 크리켓 패드와 정강이 보호대와 그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6.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7	낚시대·낚시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유인 용구(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9507.10.00	- 낚시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7.20	-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9507.20.01	-- 낚시바늘(장착되지 않고, 부착물도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7.2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7.30.00	- 낚시 릴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7.90	- 기타									
9507.90.01	--조류유인용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7.9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흥행장용품,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 용품, 순회극장용의 용품									
9508.10.0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개별 부분품 에 적용 가능한 세율	개별 부분품 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9508.90	- 기타									
9508.90.11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흥행장용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508.90.19	--순회극장용의 용품	개별 부분품 에 적용 가능한 세율	개별 부분품 에 적용 가능한 종료일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부분품	무세
	제 96 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 뼈· 귀갑(龜甲)· 뿔· 가지진 뿔· 산호· 자개 및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0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1.90.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2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 스테아린 (stearin)· 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 (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9602.00.01	- 조화· 인조잎· 인조과실과 단과자, 흉상· 두상· 피겨(figures)· 작은조각품, 모조진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2.0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	비· 브러시(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 한다)· 모프(mop)와 갓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고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 (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0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칫솔· 면도용 브러시· 헤어 브러시· 네일 브러시· 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00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29	-- 기타									
9603.29.01	--- 네일브러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29.09	--- 헤어브러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2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30.00	- 회화용 붓·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40.00	- 페인트용· 디스템퍼(distemper)용· 바니시 (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5.0%	7	4.2%	3.5%	2.8%	2.1%	1.4%	0.7%	무세
9603.5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90	- 기타									
9603.90.01	-- 화기 청소용의 브러쉬와 모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90.09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90.11	-- 파이프 클리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3.9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4										
9604.00	수동식 채와 어레미									
9604.00.01	- 미용용 채, 실험용 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4.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5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6	단추·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스냅파스너 (snap fastener)와 프레스스터드(press- stud)· 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0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스냅파스너 (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단추									
9606.21.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6.22.0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6.29	-- 기타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년차 (발효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9606.29.01	--- 목재나 가죽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6.2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6.30	- 단추의 몰드(mould)와 그 밖의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 단추의 몰드와 그 밖의 단추의 부분품									
9606.30.01	--- 단추의 몰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단추의 부분품									
9606.30.11	----- 금속제, 목재 또는 가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6.30.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단추블랭크									
9606.30.31	---단추 몰드의 블랭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그 밖의 블랭크									
9606.30.41	----- 금속, 목재 또는 가죽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6.30.4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0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갖춘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7.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7.2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02	- 볼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20.02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 (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9608.31.00	-- 드로잉용으로서 인디언 잉크를 갖춘 펜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39	-- 기타									
9608.39.01	---- 만년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39.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40.0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5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60.0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기타									
9608.91.00	--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99	-- 기타									
9608.99.01	---- 철필,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앞의 제품의 부분품									
9608.99.11	---- 심과 만년필 카트리지(볼펜용의 심을 제외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8.99.1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 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609.10.01	-- 연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10.09	-- 크레용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20.0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90	- 기타									
9609.90.01	-- 도화용의 목탄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필기용과 도화용의 초크									
9609.90.11	---- 학교용 초크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9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90.21	-- 재단사용 초크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 크레용과 파스텔									
9609.90.31	---- 양 마킹용의 것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90.3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09.90.4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0										
961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1										

HS 코드 (2007)	품목명	최혜국 세율 (2009.1.1)	양허 유형	1 년차 (발효시)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이후
9611.00.00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 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그러한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상자들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00	- 리본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2.20.00	- 잉크 패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3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ライター(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3.2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3.80	- 그 밖의ライター									
9613.80.11	-- 테이블ライター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3.80.1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3.90.00	- 부분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4										
9614.00.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bowl(pipe bowl)을 포함한다] 및 시가홀더 또는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5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 · 컬링핀(curling pin) · 컬링그립(curling grip) · 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00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5.19.00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5.90	- 기타									
9615.90.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5.90.09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침과 패드									
9616.10.0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6.20.00	- 화장용 분침과 패드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7										
9617.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7.00.01	- 보온병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7.00.09	- 기타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6.18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사용품	5.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97 류 예술품 · 수집품 및 골동품									
97.01	회화 · 데생과 파스텔(전적으로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 4906 호의 데생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00	- 회화 · 데생 및 파스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701.90.00	- 기타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7.02										
9702.00.00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7.03										
9703.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7.04										
9704.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 (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고,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7.05										
9705.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97.06										
9706.00.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0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상품을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보험, 포장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수입 상품 가격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원산지 목적상 단지 시각적 검사만으로는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모되거나 그 상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가생산된 재료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모되는 재료를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신고서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적절한 진술서이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딛사냥, 수렵, 제조, 경작, 추출, 수집, 채집, 포획, 농작,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하는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한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이 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가.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 나. 부속서 3-가에 명시된 세번 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제3.4조), 또는 그 밖의 요건에 합치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 나. 당사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다.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딛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그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 사. 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아.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11부에 따른 그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차.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되거나 수리될 수도 없으며, 부분품 또는 원재료의 처리 또는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상품, 또는
- 카. 이 조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제3.4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방식은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가. 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 (FOB)} - \text{비 원산지재료가치 (VNM)}}{\text{본선인도가격 (FOB)}} \times 100$$

나. 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 (VOM)}}{\text{본선인도가격 (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기초한다.
3.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4.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제3.5조 재료의 가치

1.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는, 재료 수입 시 운임보협료포함가격
 -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가 획득한 재료의 경우는, 거래가격, 또는
 -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간의 관계

가 그 재료에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될 수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의 총합.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다.

2. 원산지 재료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비용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3.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다음 비용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⁴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3.5조제2항가호 및 제3.5조제3항가호의 목적상, “화물운송비”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내륙화물운송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화물운송비를 포함한다.

4. 위에서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평가협정」상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국제 거래에 적용되듯이,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제3.6조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2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고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3.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부터 제14류까지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비되고 그 과정이 단순한⁵ 혼합을 초과하는 과정인 경우에만 제1항이 적용된다.

4.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필요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⁵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특별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기술한다.

- 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필요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분된다.

- 가. 상품 및 재료의 물리적인 분리, 또는
- 나. 수출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

제3.9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정보 설명서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 설명서의 원산지는,

- 가. 그 상품의 일부분으로 고려되고, 그 상품이 세번 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설명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⁶ 그리고,
-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설명서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⁶ 양 당사국은 부속품, 예비 부품, 도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정보설명서가 이것들이 제시된 상품과 같은 송장에서 별도로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제3.10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1조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1.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특혜관세대우

이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적용된다.

제3.13조 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그것이 생산된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2. 이 조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거나 소비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4조 불인정 공정 및 절차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 또는 절차 중 하나 이상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다.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라.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마.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 절단
- 바.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또는
- 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상품을 부품으로 분해하는 것

제3.15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특정상품의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16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2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⁷,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

제3.17조 준수

이 절의 요건의 준수는 적용가능한 경우 제2절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⁷ 유지 및 보충작업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보세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절차

제3.1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산지 상품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
- 나.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 다. 신고 당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 라.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 사본 및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러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마.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신고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신고서, 그리고
- 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증거

제3.19조 원산지의 증명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원산지 신고서는 이 장 부속서 3-다에 첨부된 원산지 규정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약정에 규정된 형식을 따를 수 있다. 이행 약정은 양 당사국 상호간의 결정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바.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 사.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 그리고
 - 아. 제7항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그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4.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5. 각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인지
 -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다.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6. 제5항의 어떠한 규정도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가 다음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나.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명시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동일상품의 복수 수입

8. 제2항에서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원산지 신고서의 서명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9.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효일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를 수락한다.

제3.20조 원산지 신고서 면제

제3.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수입의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 신고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의 그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의 경우

다만, 수입이 제3.18조 및 제3.19조의 원산지 신고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21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서류상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같은 원산지 신고서로 복수의 상품을 신고하는 경우, 열거된 상품 중 하나에 생긴 문제가 그 원산지 신고서에 열거된 나머지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부여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제3.22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고서를 제공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자국의 영역에서 유지한다.

- 1)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내부 부기를 위한 회계에 포함된 것
- 2)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3)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또는
- 4)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 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포함한 그러한 서류를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자국의 영역에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23조 수출에 관한 의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인 원산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잘못되거나 허위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수입자와 수입 및 수출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에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한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그러한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3.24조 원산지 검증

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또는

다.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공무원은 참관자로서 그러한 검증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1항나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고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영어로 전달된다.

3.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아니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1항다호의 목적상,

가. 검증 방문 수행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상품은 검증 과정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또는 비특혜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출될 수 있다. 납부된 이러한 보증금 또는 관세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검증 과정의 결과가 나오면 환불된다.
6. 당사국은 관세행정기관이 동일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이전에 결정했을 경우, 그 상품이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7.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중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결정되는 경우 회복된다.
8.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7항에 따라 서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서면 결정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관세행정기관에 전달된다.
9. 수입 당사국은 검증 과정의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법적 근거 및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어떠한 관련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3.26조 직접 운송 - 준수

제3.16조에서 규정된 직접운송 규정의 준수는 적절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관련된 상업 선적 또는 화물 운송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27조 제3국 송장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두주

1.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및 류의 주를 포함하여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주기적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변환은 제4.14 조제3항나호에 따라 수행된다.
3. 세번 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 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4. 이 부속서 내의 류 주해는, 특정한 제외가 있지 아니하는 한, 해당 류 내의 모든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된다.
5. 다음의 정의는 이 부속서에 적용된다.
 - 가. **부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 나. **류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 다. **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 라.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6. 이 부속서 제3열의 목적상,
 - 가.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3조에 따라 해당 상품이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될 것을 말한다.
 - 나. **2단위 세번 변경기준(CC)**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류 수준에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다. 4단위 세번 변경기준(CTH)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호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라. 6단위 세번 변경기준(CTSH)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소호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마.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35퍼센트 이상 [RVC(35)]일 것이란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RVC(40)]일 것이란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사.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RVC(30/40)]일 것이란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0101.10	번식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0102.10	번식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번식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103.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 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의 것에 한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5.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106.32	앵무류[패럿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2 류	
	육과 식용설육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1.30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30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12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2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	면양 또는 산양의 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3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3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50	산양의 고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500	말 · 당나귀 · 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	식용설육(屑 肉)(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 또는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1	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2	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41	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206.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9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3	절단육 및 설육(屑肉)(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4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5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6	절단육 및 설육(屑肉)(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7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2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3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4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6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 肉)(신선한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	토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208.30	영장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는 제외한다)
0208.4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5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9.00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염장한 것 ·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한 것 · 염수장한 것 · 건조한 것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 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210.11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20	쇠고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1	영장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2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3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제 3 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어류 및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0	관상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1.92	뱀장어(앵굴라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	완전생산기준
0301.94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완전생산기준
0301.95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2.12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 (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 [살모 살라 (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2.22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3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2.35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2.3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4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2.5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2.61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 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 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2.6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2.6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2.6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2.65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66	뱀장어(앵귌라종)	완전생산기준
0302.6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2.68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6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7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웅코링쿠스 넬카)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3.2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3.22	대서양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4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완전생산기준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3.45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완전생산기준
0303.52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완전생산기준
0303.6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3.6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3.71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완전생산기준
0303.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3.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3.74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3.75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76	뱀장어(앵귌라종)	완전생산기준
0303.77	농어(디센트라쿠스 라브락스·디센트라쿠스 펀크타투스)	완전생산기준
0303.78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 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7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8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 및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1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1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2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2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5.10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 훈제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0	어류의 필레(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1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 넬카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옹코링쿠스 케타 · 옹코링쿠스 차비차 · 옹코링쿠스 키수츠 · 옹코링쿠스 마소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3	멸치(엔그로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한 것 또는 염수장한 것 ·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3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4	게	완전생산기준
0306.1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3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24	게	완전생산기준
0306.2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고,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 무척추 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 (pellets)(갑각류를 제외하고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10	굴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7.2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3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4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5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9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물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1.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3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21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91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403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 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3.10	요구르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버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	치즈와 커드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2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종류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406.4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90	그 밖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7.00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및 난황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그 밖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8.11	건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91	건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9.00	천연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식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 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식품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 · 멧돼지털 · 오소리털 및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2.10	돼지털 · 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 · 방광 ·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한 것 또는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 했는지에 상관없다) 및 새의 솜털(청정 · 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솜털, 충전재용 깃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 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 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 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7	아이보리 · 귀갑 · 고래수염과 그 털 · 뿔 · 사슴뿔 · 발굽 · 손톱 · 발톱 및 부리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 동물 · 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00	용연향(ambergris) · 해리향(cast oreum) · 시빗(civet)과 사향, 칸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 (신선한 것, 냉장 · 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	소의 정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91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제 6 류	
	산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 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 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및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 관근 및 근경 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 관근 및 근경 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삼수 및 접수, 버섯의 종균	
0602.10	뿌리가 없는 껌꽃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철쭉과 진달래 속의 식물(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 · 건조 · 염색 · 표백 · 침투 또는 그 밖의 가공을 한 것 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그 밖의 부분(꽃 또는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건조·염색·표백· 침투 또는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10	이끼와 지의(地衣)	완전생산기준
0604.91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7 류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 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11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21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 버스변종 포리오섬)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 (仙茅)·셀러리악·무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celery)[셀러리악(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709.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쿰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2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30	시금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40	스위트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80	그 밖의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염수·유황수 또는 그 밖의 저장용액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 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1.2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4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90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20	양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2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90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 aseolus)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살렘(s 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및 괴경(塊 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8 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 ·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1.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1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40	밤(카스타네아종)	완전생산기준
0802.50	피스타치오	완전생산기준
0802.60	마카다미아 너트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00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바·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바(guava)·망고(mango) 및 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완전생산기준
0805.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및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aurantifolia) ·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papaw)[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 · 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20	배 및 마르멜로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 · 버찌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09.20	버찌	완전생산기준
0809.3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및 로간베리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 · 빌베리와 그 밖의 박시니엄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언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811	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초본류 딸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및 구즈베리(gooseberr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일과 견과류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그 밖의 저장용액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10	버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3	건조한 과일(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그 밖의 과일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4.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 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커피의 함량을 불문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2.10	녹차(발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발효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3.00	마테(mat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건조 또는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2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건조한것 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0709.60 호 또는 제 0710.8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905.00	바닐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1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 (Cinnamomum zeylanic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Blume)]	
0906.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7.00	정향(丁香)(과실·꽃 및 꽃대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0908.10	육두구(肉荳蔻)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8.20	메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8.30	소두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 ·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1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 香)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20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30	커민(cumin)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40	캐러웨이(caraway)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50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	생강·사프란·심황(강황)·타임 · 월계수의 잎·카레 및 그 밖의 향신료	
0910.10	생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20	사프란(saffro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30	심황[강황(薑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	
1001.10	듀럼종의 밀	완전생산기준
10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00	호밀	완전생산기준
1003.00	보리	완전생산기준
1004.00	귀리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006	쌀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00	수수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밀리트 및 카나리시드, 그 밖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1008.20	밀리트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	완전생산기준
1008.90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 는 제외한다)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2.10	호밀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3.11	밀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1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20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뿔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	
1104.1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 · 입 및 펠리트	
1105.1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및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7 류는 제외한다)
1105.2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및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7 류는 제외한다)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및 가루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6.20	사고(sago) 또는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6.30	제 8 류 물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7.10	볶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7.20	볶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	전분, 이눌린	
1108.11	밀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2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3	감자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9	그 밖의 전분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20	이눌린(inul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곡물,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00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또는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1202.2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저에루크산 유채(rape, colza)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20	면실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또는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8.10	대두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1	루우산(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로오리엄 페레네 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	
1210.1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0.20	호프[잘게 부순 것 ·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1	주로 향료용 · 의료용 또는 살충용 · 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오톨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 類) ·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사용되는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20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완전생산기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워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 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 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생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리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3 류	
	락, 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 및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	아라비아 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및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 (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1	아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감초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	호프(hop)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20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1	한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302.3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 (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 (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 라피아, 청정 ·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1.10	대나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20	등나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綿) 린터(lin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01.00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2.00	소 ·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 (oleo-oil) 및 탈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또는 혼합 또는 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4	어류 또는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30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10	버진(virg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51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10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	조유	
15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또는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21	조유(고시풀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2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조유(粗油)	
15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9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	그 밖의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 (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2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나,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6.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	마가린,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 (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8.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 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2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 · 밀랍 · 그 밖의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1.10	식물성 납(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6 류	
	육류·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	소시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 (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	그 밖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 설육 또는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1	칠면조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50	소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00	육 · 어류 또는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1	연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2	청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3	정어리 · 사르디넬라(Sardinella) 및 브리스링(brisling) 또는 스프랫(spr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4	다랑어 · 가다랑어 및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5	고등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6	멸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30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1605.10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20	새우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30	바닷가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40	그 밖의 갑각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7 류	
	설탕 및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1701.11	사탕수수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12	사탕무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의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 (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1702.11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무수 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 (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704.1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3.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4.00	코코아 버터[지(fat)나 유(o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20	그 밖의 조제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 ·분말상·입상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31	속을 채운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8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생산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06 호 및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
1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06 호 및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그 밖의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 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 로니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2.11	새의 알을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30	그 밖의 파스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40	쿠스쿠스(cousco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3.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 · 낱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30	불거소맥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06 호는 제외한다)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 · 라이스페이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1	스위트 비스킷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2	와플과 웨이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40	러스크 ·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그 밖의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2.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20	송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004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90	그 밖의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2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1	깍뎃기를 벗긴 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7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1	죽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 과일 · 견과류 · 과피 및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잼 · 과일젤리 · 마말레이드(marmalad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및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91	감귤류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	달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식용에 적합한 그 밖의 식물의 부분(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11	땅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20	파인애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30	감귤류의 과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40	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50	살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60	버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70	복숭아(넥타린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80	초본류 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1	팜 하트(palm hea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2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11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009.2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4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50	토마토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1	브릭스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7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009.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0	그 밖의 모든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혼합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 · 차 또는 마테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러한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 · 차 또는 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 e) 및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12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 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20	차 또는 마테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러한 엑스 ·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차 또는 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30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 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102.20	불활성 효모,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분 및 조분과 조제한 겨자	
2103.10	간장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30	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5 퍼센트 이상일 것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1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인삼 제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제 22 류	
	음료·주류 및 식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얼음 및 눈	
2201.10	광천수와 탄산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2203.00	맥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30	그 밖의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베르뮷 및 그 밖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및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 (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 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30	위스키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50	진(gin)과 제네바(genev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60	보드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301	육 또는 설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지박	
2301.1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수지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1.20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밀기울·미강과 그 밖의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또는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2.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30	밀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4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그 밖의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및 그 밖의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3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어지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불문한다)	
2306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레이프 (rape) 또는 콜자(colza)]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7.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 [펠리트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4 류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퀄런(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10	시가(cigar)·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 (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20	퀄런(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	그 밖의 제조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10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5 류	
	소금, 황, 토속류, 석고, 석회와 시멘트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및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 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바닷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2.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3.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 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	천연흑연	
2504.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 한다)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 규암[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 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珪線石)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 (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벤토나이트(benton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30	내화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40	그 밖의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50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珪線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60	멀라이트(mull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70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20	잘게 부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 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2.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 (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 · 천연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에 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겔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12	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20	에코신과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	화강암·반암(斑 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12	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 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90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 · 파편 및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10	자갈 · 왕자갈 · 쇄석(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 또는 그 밖의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20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응결(凝結)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백운석(白雲石)	
2518.1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2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 (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0.10	석고, 무수(無水)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20	플라스터(pl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1.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및 수경성 (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生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20	소석회(消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22.30	수경성(水硬性)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	포트랜드시멘트 · 알루미나시멘트 · 슬래그시멘트 · 수퍼설페이트시 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1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	석면	
2524.10	청석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	
2525.1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20	운모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30	운모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6.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8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 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8.10	천연나트륨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2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장석(長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30	백류석, 하석과 하석 섬장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10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6 류		
광·슬랙 및 회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1	응결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12	응결시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	몰리브데늄광과 그 정광	
2613.10	볶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광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 (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 (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	슬래그(slag), 회(灰) 및 잔재물(금속 · 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21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620.60	비소·수은·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학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91	안티모니·베릴륨·카드뮴·크로뮴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7 류	
	광물성 연료 ·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 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 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상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 및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9	그 밖의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2702.1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20	응결시킨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5.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6.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의 물품,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30	크실올(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707.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 (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 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2708.10	피치(pit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 (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11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한한다)
27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 탄화수소	
2711.1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2	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3	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4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및 부타디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2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 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	석유코크스 · 석유아스팔트 및 그 밖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3.11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12	하소(煨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20	석유역청(瀝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90	그 밖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8 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규정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 28 류부터 제 38 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 3823 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그러한 화학반응이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문맥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반응” 규정은 상기 류에 분류된 어떠한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 :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 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 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규칙 2. 정제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5 류까지와 제 38 류의 목적상, 정제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정제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한한다. 가. 정제의 결과로 기존 불순물의 함량 대비 80 퍼센트의 불순물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적용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규칙 3. 혼합 및 배합 원산지규정 제 30 류 및 제 31 류, 제 3302 호, 소호 제 3502.20 호, 제 3506 호부터 제 3507 호 및 제 3707 호의 목적상,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는 상이하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원산지규정 제 30 류 및 제 31 류의 목적상, 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축소[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 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나.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단순 압착에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2 류까지와 제 35 류 및 제 38 류의 목적상,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 (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2 류까지와 제 35 류의 목적상,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비원산지 물질/구성요소는 인조혼합물에서 단순히 한 개 이상의 개별적인 물질 또는 구성요소를 분리한 결과로서, 세번이 변경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칙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분리된 물질/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또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801	플루오르 · 염소 · 브롬 및 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30	플루오르,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2.00	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	수소 · 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50	붕소,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90	셀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 (稀土類)금속 ·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 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3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20	클로로황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7.00	황산,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8.00	질산,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오산화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 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1	이산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2	이산화규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산화할로겐화물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	비(非)금속의 황화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無水)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수산화칼륨(가성칼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1	고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12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	수산화마그네슘 및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4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7.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	
2818.10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	산화철 및 수산화철, 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 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20	어스컬러(earth colou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2.00	산화코발트 및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	산화연, 연단 및 오렌지연	
2824.1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 트(massico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그 밖의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60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80	산화안티모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및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 및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20	염화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5	니켈 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1	구리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상의 하이포아 염소산칼슘, 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29.11	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0.10	황화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3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	아황산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20	그 밖의 아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30	티오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	황산염, 명반,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1	황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1	황산마그네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2	황산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4	황산니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5	황산구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7	황산바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30	명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	아질산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1	질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폴리인산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2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4	인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6	그 밖의 인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 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함유한 것에 한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40	탄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50	탄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60	탄산바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1	탄산리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2	탄산스트론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	시아나화물 · 산화시아나화물과 시아나착염	
2837.11	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20	시아나착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11	무수물(無水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20	그 밖의 붕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61	과망간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70	몰리브덴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80	텅스텐산염 [울프라메이트(wolframat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42	그 밖의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 (아지화물을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1	질산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30	금 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90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	방사성화학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 (핵분열성 또는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잔재물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 (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2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 (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44.3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 (서메트를 포함한다) ·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40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 · 제 2844.20 호 또는 제 2844.30 호의 것을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서메트를 포함 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 · 방사성 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체(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또는 스칸듐 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8.00	인화물(磷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49.10	칼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20	규소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 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00	무기 또는 유기 수은화합물(아말감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3.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 (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 (amalga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9 류	
	유기화합물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1	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4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	환식탄화수소	
2902.11	시클로헥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20	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30	톨루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1	오르토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2	메타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3	파라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50	스티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60	에틸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2.70	큐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4	사염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 이염화메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2	삼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 디브로모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1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2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5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불소와 염소만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7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51	1,2,3,4,5,6-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 INN)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5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61	클로로벤젠 · 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3.62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디·티(ISO) [클로페노탄(INN), 1,1,1- 트리클로로-2,2-비스(파라- 클로로페닐)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2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2	1 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 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4	그 밖의 부탄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 헥사데칸올 (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 (스테아릴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 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1	2-에틸-2- (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 (트리메틸올프로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5.43	만니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5	글리세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1	멘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2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1	벤질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2	크레졸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3	옥틸페놀 · 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3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 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 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 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1	2,2'- 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60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 산화케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30	1 클로로 2,3 에폭시프로판(에피 클로로히드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40	디엘드린(ISO, 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1.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1	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30	알데히드-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1	바닐린(4 히드록시 3 메톡시벤즈 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2	에틸바닐린(3 에톡시 4 히드록시 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4	케톤 및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1	아세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3	4-메틸펜탄-2- 온(메틸이소부틸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1	장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의 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1	안트라퀴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70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1	포름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2	포름산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1	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4	무수(無水)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1	초산에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5.32	초산비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6	초산디노셉(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60	부탄산 · 펜탄산 ·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70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 ·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 식모노카르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5	올레산 · 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 그 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5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6	비나파크릴 (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7	폴리카르복시산 ·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3	아젤라산 · 세바스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4	무수말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 그 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2	오рто프탈산디옥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3	오рто프탈산디노닐 또는 오рто프탈산디데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4	그 밖의 오рто프탈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5	무수프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2	타르타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4	시트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30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1	2,4,5 티(ISO)(2,4,5 트리클로로페 녹시아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 (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 및 파라티온메틸(ISO) (메틸파라티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11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29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30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또는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1	아닐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3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6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덱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 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 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1	오르토펜렌디아민 · 메타페닐렌 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 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2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31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 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2923.10	콜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1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 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4	에티나메이트(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2	구루테치미드(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20	1- 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 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 디페닐부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7.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8.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숴 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숴파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40	메티오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50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00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2	2- 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21	쿠마린 · 메틸쿠마린 및 에틸쿠마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29	그 밖의 락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1	이소사프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3	피페로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4	사프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1	피리딘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3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 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 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 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 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 (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 (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 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1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3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 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 탈(INN) · 부도바르비탈(INN) · 싸 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 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 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2933.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5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과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61	멜라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1	6-핵산락탐(엡실론-카프로락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티프릴론(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9	그 밖의 락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91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 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 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 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 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 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 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 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34.10	불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30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1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 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 졸람(INN) · 덱스트로모라마이드(I 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 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 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 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5.00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 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36.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2	비타민 B1 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3	비타민 B2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4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5	비타민 B6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6	비타민 B12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7	비타민 C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8	비타민 E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 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1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 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 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31	에피네프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40	아미노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INN) · 에틸모르핀 · 에토르핀(INN) · 헤 로인 · 히드로코돈(INN) · 히드로 모르폰(INN) · 모르핀 · 니코모르 핀 (INN) · 옥시코돈(INN) · 옥시모르 폰(INN) · 풀코딘(INN) · 테바콘(IN N) 및 테바인,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1	코카인 · 에크코닌 · 레보메탐페타 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 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및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 · 제 2938 호 또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50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 류	
	의약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선(腺)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	선 또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 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및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변성된 면역물품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 및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변성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30	백신(동물의약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 ·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 또는 그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003.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 또는 그 밖의 물품 이나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 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 ·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20	그 밖의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 id) 호르몬을 함유한 것,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 그 밖의 물품이나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50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005	탈지면 · 거즈 ·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 반창고 · 스포제)으로서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 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	의약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것에 한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6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006.7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2	폐의약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1 류		
비료		
3101.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102.6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3.10	과인산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 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의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20	3 종의 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 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2 종의 비료요소인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2 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 및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엑스,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3201.10	케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 유기유연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3.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3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견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 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04.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 유기물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5.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제 3203 호 · 제 3204 호 또는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1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 및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및 조제 그림물감 · 법랑 및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또는 유리공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 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유리 프리트와 그 밖의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08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 및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 [에나멜 · 래커(lacquer) 및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1.00	조제 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및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 박(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학생용 또는 간판도장공용· 정색용·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둥글넓적한 모양의 것·튜브들이· 병들이·접시들이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세트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 (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 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14.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 (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또는 제도용 잉크 및 그 밖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15.11	흑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 (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 (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 · 불휘발성유 · 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 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 (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301.12	오렌지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3	레몬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30	레지노이드(resinoid)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3.00	향수와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하며, 썬스크린 또는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30	헤어 래커(hair lacqu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3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4 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 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 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및 부직포	
3401.11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조제계면 활성제 ·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 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3401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11	음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2	양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3	비이온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20	소매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 · 볼트나 너트 방출제 · 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 (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11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 또는 그 밖의 재료의 처리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1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 또는 그 밖의 재료의 처리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 리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	신발용 · 가구용 · 마루용 · 차체(c oachwork)용 · 유리용 또는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 · 워딩 (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 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 ·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20	목제가구 ·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405.3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및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 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 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글루	
3501.10	카세인(casei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11	건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20	글루(glu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3507.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 · 안개 신호용품 및 그 밖의 화공품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	페로세륨 및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 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 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1.10	엑스선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2 호는 제외한다)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9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2.10	엑스선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는 제외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3702.51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3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4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5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1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3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4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5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3	사진인화지 · 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3.1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3.20	기타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4.00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 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705.10	오프셋 복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 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사진용 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3707.10	감광유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물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 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 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인조흑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2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물품,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3.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04.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 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 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런검	
3806.10	로진(rosin)과 수지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20	로진염·수지산염 또는 로진이나 수지산의 유도체(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30	에스테르 검(ester gum)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7.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 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 · 수지산 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또는 조제품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및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1	살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2	살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3	제초제 ·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4	소독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 · 제지산업 · 가죽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 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09.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3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뿔질용 또는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 · 뿔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뿔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 (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	안티녹(anti- knock)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 으로 한정한다]	
3811.11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2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3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3.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또는 바니시(vanish) 제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6.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 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 (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 · 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19.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1.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다) 또는 식물·인간 또는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1	스테아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2	올레인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3	톨유(tall oil) 지방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3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 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24.4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과 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 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 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8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 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 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20	하수 찌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30	감염성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의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3.11	발포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4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그 밖의 비닐 에스테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그 밖의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1	공중합체(共重合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	폴리아세탈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폴리 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 릴에스테르 및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30	에폭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50	알키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70	폴리(락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1	불포화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10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20	멜라민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30	그 밖의 아미노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40	페놀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50	폴리우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	석유수지 · 쿠마론- 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숄파이드 · 폴리숄폰과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그 밖의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11.10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912.1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1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 및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913.10	알긴산 · 그 염 및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4.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과 스크랩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90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 막대(rod, stick) · 형재(形 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90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	플라스틱의 관 ·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 · 엘보 · 플랜지)	
3917.1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1	연질(軟質)의 관 · 파이프 및 호스 [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40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 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90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테이프 · 스트립 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19.1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 (sheet)·필름·박(箔) 및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 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43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3	초산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3921.11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2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21.1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 샤워통 · 세면기 · 비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 (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과 세면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2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플라스틱제의 뚜껑 · 마개 · 캡 및 그 밖의 덮개류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30	카보이병 · 병 ·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40	스폴 · 콥 ·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50	뚜껑 · 마개 · 캡 및 그 밖의 덮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5.10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20	문 · 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25.3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 (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그 밖의 물품의 제품	
3926.1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30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 페르카(gutta- percha)·구아울(guayule)·치클 (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 (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3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 a-percha) · 구아울(guayule)·치클(chicle) 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 (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9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경질(硬 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또는 판·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5.1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05.2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1	판 · 시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 · 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 백(camel-back)”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7.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	고무제의 판 · 시트 · 스트립 · 막대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4008.11	판 · 시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1	판 · 시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	고무제의 관 · 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 · 엘보 · 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또는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 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 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 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 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 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11.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30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40	모터사이클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5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1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2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2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4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 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 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및 타이어 플랩(flap)	
4012.11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 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2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3	항공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	고무제의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용의 것을 포함한다),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4013.2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또는 의약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 한다)	
4014.10	콘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방어리 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4015.11	외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4016.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1	바닥 깔개와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2	지우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3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4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7.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생 것 · 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50	전신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9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1	산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 · 건조 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 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이나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 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30	돼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 (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4.11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1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4104.41 호는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5.1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105.3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2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4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젖은 상태에서 건조된 상태 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세번 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 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 (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112.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 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 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20	돼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3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패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20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 (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 · 시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2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그 밖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202	트렁크 · 슈트 케이스 · 화장품 케이스 · 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 서류가방 · 학생가방 · 안경 케이스 · 쌍안경 케이스 · 사진기 케이스 · 악기 케이스 · 총 케이스 · 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 플라스틱의 시트(sheet) · 방직용 섬유 ·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 nised fibre) ·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 화장갑 · 배낭 · 핸드백 · 쇼핑백 · 돈주머니 · 지갑 · 지도용 케이스 · 담배 케이스 · 담배쌈지 · 공구 가방 · 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 · 신변 장식용품용 상자 · 분갑 · 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1	외부표면이 가죽, 콤포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1	외부표면이 가죽, 콤포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2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 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10	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30	벨트와 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4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6.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또는 건(臃)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 을 포함하며, 제 4101 호 · 제 4102 호 또는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 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80	그 밖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90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 및 그 밖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2.11	밍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20	머리부분 · 꼬리부분 · 발부분 및 그 밖의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3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4 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펠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10	펠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2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30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2	목탄(셀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2.10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뜯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04	후프우드(Hoopwood), 쏘관 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 [지팡이 · 산류(傘類) · 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 · 휼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 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4.20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5.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	
4406.1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또는 쏘관 것, 평삭(平削)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 연마 또는 핑거- 조인트한(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1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2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ia) 및 발사(Bals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07.26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7	사펠리(Sapelli)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8	이로코(Irok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3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및 그 밖의 목재 [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 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2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 (예: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0.11	파티클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2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을 초과하고 0.8 그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이하인 것	
4411.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	합판 ·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제품	
4412.10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4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 (laminboard) 및 배튼보드(batten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 (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4.00	나무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 (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릿(pallet), 박스팔릿(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15.20	팔릿(pallet) · 박스팔릿(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칼러(pallet coll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6.00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tub) 및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7.00	나무로 만든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 신발의 나무로 만든 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 패널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20	문 ·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50	지붕을 이는 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60	기둥 및 들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2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9.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제 상자와 용기, 목제의 조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목제의 가구	
4420.1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옷걸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파쇄 · 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4501.10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2.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의 블록 모양 · 판 모양 · 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 (blank)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3.10	마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4504.10	블록 · 판 · 시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6 류	
	짚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 · 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4601.2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2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2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3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4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 (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4602.1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2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	
4701.00	기계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3.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1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703.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2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4.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1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2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5.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또는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2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30	기타(대나무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1	기계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2	화학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1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지 또는 판지제(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3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9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및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 [제 4801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 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	수제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2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40	벽지용의 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5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6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 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7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1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2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 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 하지 않는 것	
4802.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3.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또는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 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아니한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처리 또는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805.11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2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30	아황산포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4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50	펠트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	황산지·내지지·트래싱지 및 그라신지와 그 밖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6.10	황산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20	내지지(耐脂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3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40	그라신지와 그 밖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7.00	겹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 (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 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	파형의 지와 판지(구멍을 뚫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20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 (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또는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30	그 밖의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 한지(embossed) 또는 구멍을 뚫었는지 (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지와 판지 [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 (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13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4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 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2	여러 겹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 · 침투 · 피복 · 표면 착색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 · 제 4809 호 또는 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타르 ·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41	셀프접착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60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ste arin) · 기름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90	그 밖의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2.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	궤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3.1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14.10	인그레인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2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울룩불룩한 (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 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 (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4809 호는 제외한다)
48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4809 호는 제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 · 봉함엽서 · 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 · 파우치 · 지갑 및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4817.10	봉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20	봉함엽서 · 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3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 · 파우치 · 지갑 및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 · 셀룰로오스 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 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 · 클렌징티슈 · 타월 · 책상 보 · 서비에트(serviette) · 유아용 냅킨 · 탐폰(tampon) · 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 위생 용품이나 병원용품 · 의류와 의류 부속품 [제지용 펄프 ·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화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20	손수건 · 크렌싱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3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40	위생 타월 및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 및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위생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50	의류와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 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 · 포장대 및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 로 만든 서류상자 · 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4819.1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2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 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 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 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 압지철(blotting- 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 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 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 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20	연습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3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홀더 및 서철표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카본세트	
4820.5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류를 불문한다)	
4821.10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 · 스풀 · 콤팩트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	그 밖의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제지용 펄프 ·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 시트 (sheet) 및 다이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7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9 류	
	인쇄서적 · 신문 · 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 製)문서 · 타자문서 및 도면	
4901	인쇄서적 · 소책자 · 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901.10	단매의 것(접어포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1	사전·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 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2.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3.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4.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 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	지도 및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차트 (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5.10	지구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1	책자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및 카본복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9.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 (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서 그림· 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종류를 불문하고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 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 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1	서화·디자인 및 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0 류	
	견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 (waste) 및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00	견사 및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 호 또는 제 5005 호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견 노일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90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 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1.1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30	탄화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20	동물의 거친 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	양모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사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51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2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그 밖의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4.00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넷스톡(garnetted st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	양모 및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card)한 양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105.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8.10	카드(car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20	코움(comb)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10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3.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 류	
	면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1	가아넷스톡(garnetted st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3.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20	소매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5 호 또는 제 5206 호는 제외한다)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5 호 또는 제 5206 호는 제외한다)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08.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8.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09.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1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3	3 올 또는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10.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10.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11.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1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3	3 올 또는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	그 밖의 면직물	
52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5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5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아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한다)	
5301.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한다)	
5302.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 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5.00	코코넛 · 아바카(마닐라마) · 라미 (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 · 노일(noil) 및 웨이스트 (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아넷 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 지사	
5308.10	코이어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5309.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 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1.2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 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1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 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2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 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1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1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2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2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 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5.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 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 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 (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407.5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61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 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5 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5501.1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2.00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은 제외한다)	
5503.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은 제외 한다)	
5504.1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 · 실의 웨이스트 및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으로 한정 한다]	
5506.1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506.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7.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2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3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510.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20	그 밖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30	그 밖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90	그 밖의 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1.3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3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6 류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및 케이블과 그 제품	
5601	방직용 섬유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5601.10	워딩제의 위생 타월과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위생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30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	펠트(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602.10	니들룸 펄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및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 [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망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609.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1.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 (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 (kelem) · 슈맥(schumack) · 카라 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50	그 밖의[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 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702.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터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3.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2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4.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5.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 (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801.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4	경(經)파일(pile)직물 · 에핑글(é pinglé)(절단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5	절단된 경파일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4	경(經)파일(pile)직물 · 에핑글(é pinglé)(절단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5	절단된 경파일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 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 (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2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테리타월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30	터프트(tuft)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	튤(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작한 것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 한다), 레이스[원단 상태 · 스트립(strip) 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804.10	틸(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30	수제의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5.00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5806.1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및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4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덱)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 (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 (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	자수포(원단상·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1	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2	인조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 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5902.1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 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	리놀륨, 방직용 섬유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5.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 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것으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911.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및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 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 幅)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40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파일 직물("롱파일" 직물과 테리 직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의 것에 한한다)	
6001.10	"롱파일(long pi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4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005.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6.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키재킷 을 포함 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1.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4 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2.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 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6104.1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5.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06.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7.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 · 페티코트 · 브리프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 자마 · 네그리제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8.1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10	저지·폴오버·카디건·웨이스트 코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	유아용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1.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2.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1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1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3.00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4.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1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2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4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5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6117.10	쇼울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80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 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 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 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키재킷 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4 호의 것을 제외한다)	
6202.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6203.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 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04.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205.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	여성용이나 소년용 블라우스 · 셔츠 및 셔츠블라우스	
6206.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3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4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 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7.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 · 브리프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 그리제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8.1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	
6209.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	의류(제 5602 호 · 제 5603 호 · 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40	남자 또는 소년용의 그 밖의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50	여자 또는 소녀용의 그 밖의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	트랙슈트 · 스키슈트 및 수영복, 그 밖의 의류	
6211.11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12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11.3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 · 브레이스 · 서스펜더 · 가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20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30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	손수건	
6213.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	쇼올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2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4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	넥타이류	
6215.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방직용 섬유제품, 남아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	베드린넨 · 테이블린넨 ·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10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2.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2.5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으로서, 면제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및 실내용 블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6303.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3.9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1-55-適A, 適B, 適C, 適D, 適E, 適F, 適G, 適H, 適I, 適J, 適K, 適L, 適M, 適N, 適O, 適P, 適Q, 適R, 適S, 適T, 適U, 適V, 適W, 適X, 適Y, 適Z, 適AA, 適AB, 適AC, 適AD, 適AE, 適AF, 適AG, 適AH, 適AI, 適AJ, 適AK, 適AL, 適AM, 適AN, 適AO, 適AP, 適AQ, 適AR, 適AS, 適AT, 適AU, 適AV, 適AW, 適AX, 適AY, 適AZ, 適BA, 適BB, 適BC, 適BD, 適BE, 適BF, 適BG, 適BH, 適BI, 適BJ, 適BK, 適BL, 適BM, 適BN, 適BO, 適BP, 適BQ, 適BR, 適BS, 適BT, 適BU, 適BV, 適BW, 適BX, 適BY, 適BZ, 適CA, 適CB, 適CC, 適CD, 適CE, 適CF, 適CG, 適CH, 適CI, 適CJ, 適CK, 適CL, 適CM, 適CN, 適CO, 適CP, 適CQ, 適CR, 適CS, 適CT, 適CU, 適CV, 適CW, 適CX, 適CY, 適CZ, 適DA, 適DB, 適DC, 適DD, 適DE, 適DF, 適DG, 適DH, 適DI, 適DJ, 適DK, 適DL, 適DM, 適DN, 適DO, 適DP, 適DQ, 適DR, 適DS, 適DT, 適DU, 適DV, 適DW, 適DX, 適DY, 適DZ, 適EA, 適EB, 適EC, 適ED, 適EE, 適EF, 適EG, 適EH, 適EI, 適EJ, 適EK, 適EL, 適EM, 適EN, 適EO, 適EP, 適EQ, 適ER, 適ES, 適ET, 適EU, 適EV, 適EW, 適EX, 適EY, 適EZ, 適FA, 適FB, 適FC, 適FD, 適FE, 適FF, 適FG, 適FH, 適FI, 適FJ, 適FK, 適FL, 適FM, 適FN, 適FO, 適FP, 適FQ, 適FR, 適FS, 適FT, 適FU, 適FV, 適FW, 適FX, 適FY, 適FZ, 適GA, 適GB, 適GC, 適GD, 適GE, 適GF, 適GG, 適GH, 適GI, 適GJ, 適GK, 適GL, 適GM, 適GN, 適GO, 適GP, 適GQ, 適GR, 適GS, 適GT, 適GU, 適GV, 適GW, 適GX, 適GY, 適GZ, 適HA, 適HB, 適HC, 適HD, 適HE, 適HF, 適HG, 適HH, 適HI, 適HJ, 適HK, 適HL, 適HM, 適HN, 適HO, 適HP, 適HQ, 適HR, 適HS, 適HT, 適HU, 適HV, 適HW, 適HX, 適HY, 適HZ, 適IA, 適IB, 適IC, 適ID, 適IE, 適IF, 適IG, 適IH, 適II, 適IJ, 適IK, 適IL, 適IM, 適IN, 適IO, 適IP, 適IQ, 適IR, 適IS, 適IT, 適IU, 適IV, 適IW, 適IX, 適IY, 適IZ, 適JA, 適JB, 適JC, 適JD, 適JE, 適JF, 適JG, 適JH, 適JI, 適JJ, 適JK, 適JL, 適JM, 適JN, 適JO, 適JP, 適JQ, 適JR, 適JS, 適JT, 適JU, 適JV, 適JW, 適JX, 適JY, 適JZ, 適KA, 適KB, 適KC, 適KD, 適KE, 適KF, 適KG, 適KH, 適KI, 適KJ, 適KK, 適KL, 適KM, 適KN, 適KO, 適KP, 適KQ, 適KR, 適KS, 適KT, 適KU, 適KV, 適KW, 適KX, 適KY, 適KZ, 適LA, 適LB, 適LC, 適LD, 適LE, 適LF, 適LG, 適LH, 適LI, 適LJ, 適LK, 適LL, 適LM, 適LN, 適LO, 適LP, 適LQ, 適LR, 適LS, 適LT, 適LU, 適LV, 適LW, 適LX, 適LY, 適LZ, 適MA, 適MB, 適MC, 適MD, 適ME, 適MF, 適MG, 適MH, 適MI, 適MJ, 適MK, 適ML, 適MM, 適MN, 適MO, 適MP, 適MQ, 適MR, 適MS, 適MT, 適MU, 適MV, 適MW, 適MX, 適MY, 適MZ, 適NA, 適NB, 適NC, 適ND, 適NE, 適NF, 適NG, 適NH, 適NI, 適NJ, 適NK, 適NL, 適NM, 適NN, 適NO, 適NP, 適NQ, 適NR, 適NS, 適NT, 適NU, 適NV, 適NW, 適NX, 適NY, 適NZ, 適OA, 適OB, 適OC, 適OD, 適OE, 適OF, 適OG, 適OH, 適OI, 適OJ, 適OK, 適OL, 適OM, 適ON, 適OO, 適OP, 適OQ, 適OR, 適OS, 適OT, 適OU, 適OV, 適OW, 適OX, 適OY, 適OZ, 適PA, 適PB, 適PC, 適PD, 適PE, 適PF, 適PG, 適PH, 適PI, 適PJ, 適PK, 適PL, 適PM, 適PN, 適PO, 適PP, 適PQ, 適PR, 適PS, 適PT, 適PU, 適PV, 適PW, 適PX, 適PY, 適PZ, 適QA, 適QB, 適QC, 適QD, 適QE, 適QF, 適QG, 適QH, 適QI, 適QJ, 適QK, 適QL, 適QM, 適QN, 適QO, 適QP, 適QQ, 適QR, 適QS, 適QT, 適QU, 適QV, 適QW, 適QX, 適QY, 適QZ, 適RA, 適RB, 適RC, 適RD, 適RE, 適RF, 適RG, 適RH, 適RI, 適RJ, 適RK, 適RL, 適RM, 適RN, 適RO, 適RP, 適RQ, 適RR, 適RS, 適RT, 適RU, 適RV, 適RW, 適RX, 適RY, 適RZ, 適SA, 適SB, 適SC, 適SD, 適SE, 適SF, 適SG, 適SH, 適SI, 適SJ, 適SK, 適SL, 適SM, 適SN, 適SO, 適SP, 適SQ, 適SR, 適SS, 適ST, 適SU, 適SV, 適SW, 適SX, 適SY, 適SZ, 適TA, 適TB, 適TC, 適TD, 適TE, 適TF, 適TG, 適TH, 適TI, 適TJ, 適TK, 適TL, 適TM, 適TN, 適TO, 適TP, 適TQ, 適TR, 適TS, 適TT, 適TU, 適TV, 適TW, 適TX, 適TY, 適TZ, 適UA, 適UB, 適UC, 適UD, 適UE, 適UF, 適UG, 適UH, 適UI, 適UJ, 適UK, 適UL, 適UM, 適UN, 適UO, 適UP, 適UQ, 適UR, 適US, 適UT, 適UU, 適UV, 適UW, 適UX, 適UY, 適UZ, 適VA, 適VB, 適VC, 適VD, 適VE, 適VF, 適VG, 適VH, 適VI, 適VJ, 適VK, 適VL, 適VM, 適VN, 適VO, 適VP, 適VQ, 適VR, 適VS, 適VT, 適VU, 適VV, 適VW, 適VX, 適VY, 適VZ, 適WA, 適WB, 適WC, 適WD, 適WE, 適WF, 適WG, 適WH, 適WI, 適WJ, 適WK, 適WL, 適WM, 適WN, 適WO, 適WP, 適WQ, 適WR, 適WS, 適WT, 適WU, 適WV, 適WW, 適WX, 適WY, 適WZ, 適XA, 適XB, 適XC, 適XD, 適XE, 適XF, 適XG, 適XH, 適XI, 適XJ, 適XK, 適XL, 適XM, 適XN, 適XO, 適XP, 適XQ, 適XR, 適XS, 適XT, 適XU, 適XV, 適XW, 適XX, 適XY, 適XZ, 適YA, 適YB, 適YC, 適YD, 適YE, 適YF, 適YG, 適YH, 適YI, 適YJ, 適YK, 適YL, 適YM, 適YN, 適YO, 適YP, 適YQ, 適YR, 適YS, 適YT, 適YU, 適YV, 適YW, 適YX, 適YY, 適YZ, 適ZA, 適ZB, 適ZC, 適ZD, 適ZE, 適ZF, 適ZG, 適ZH, 適ZI, 適ZJ, 適ZK, 適ZL, 適ZM, 適ZN, 適ZO, 適ZP, 適ZQ, 適ZR, 適ZS, 適ZT, 適ZU, 適ZV, 適ZW, 適ZX, 適ZY, 適ZZ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3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의 포대	
6305.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	타포린 · 천막 및 차양, 텐트, 보트 · 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 돛, 캠핑용품	
6306.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7.10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20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8.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한한다),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 코디지 · 로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6310.10	선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4 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 · 리베팅 · 네일링 · 스크루잉 · 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2.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폼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 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 힐쿠션(heel cushion)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 레깅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406.91	목재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9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레토우 (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2.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고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또는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 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505.10	헤어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7.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및 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6 류	
	산류(傘 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 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 · 정원용 산류 (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 類)를 포함 한다]	
6601.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2.00	지팡이 · 시트스틱(seat- 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 및 부속품	
6603.2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7 류	
	조제 깃털 및 솜털과 조제 깃털 또는 솜털의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 · 깃털의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 (scape)와 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	인조 꽃 · 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 · 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90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 · 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	가발 · 가수염 · 눈썹 및 속눈썹 · 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인모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90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8 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	포석 · 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02	가공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 [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 및 가루	
6802.1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 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및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1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1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 (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 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 · 버리기용 · 광택용 · 정형용 또는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지석 (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 그라인딩 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1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2	그 밖의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30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	방직용 섬유재료 · 지 · 판지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기제로 한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특정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봉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식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 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또는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 나 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06.10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2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한 팽창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예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6807.10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8.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또는 목재의 대꺾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6809.11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90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0.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	석면시멘트 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1	파형의 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2	그 밖의 쉬트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3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9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gask 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 또는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1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2	지 · 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3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 · 롤 · 스트립(strip) · 세그먼트 · 디 스크(disc) · 와셔(washer) · 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그 밖의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또는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4.10	판·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	석제품 또는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815.10	비전기용 흑연 또는 그 밖의 탄소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20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9 류	
	도자제품	
6901.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 [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902.10	마그네슘 ·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 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20	알루미나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	그 밖의 내화성의 도자제품 (예: 레토트 · 도가니 · 머플 · 노 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 · 관 · 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20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 (SiO_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 바닥 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 또는 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	기와 ·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906.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흙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7.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8.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화학용 또는 그 밖의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의 통, 튜브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9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변기 통 · 수세식변기용 물통 ·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	깨진 유리 및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 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구(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20	막대(ro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1	용융석영 또는 그 밖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용융실리카제의 것	
7002.32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 (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 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 · 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30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 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 반사층 또는 무반사층 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유리[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 · 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90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30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6.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09.92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	유리제의 카보이 · 병 · 플라스크 · 단지 · 항아리 · 약병 · 앰플 및 그 밖의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보존병, 유리제의 마개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20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 ·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20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 · 주방용 · 화장 실용 · 사무용 · 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2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 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 (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 · 구부린 것 · 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 · 슬래브 · 벽돌 · 스퀘어 (square) · 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 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 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 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 · 패널(panel) · 플레이트(plate) · 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 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그 밖의 유리세공품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17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017.10	용융석영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2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과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 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 (microsphere)	
7018.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2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직물)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2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1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2	얇은 시트(sheet)(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40	로빙(roving)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1 류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펜 것·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을 제외한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2	가공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을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 (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켄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않은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켄 것)	
7103.1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1	루비 · 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	합성 또는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켄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않은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켄 것)	
7104.10	압전기용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20	기타(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이나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2	반가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8.11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3	그 밖의 반가공 형상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20	화폐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3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4.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스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116.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7117.11	커프스 링크와 스테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하며,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 류		
철강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그 밖의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1.5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 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 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02.7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80	페로텡스텐 및 페로실리코텡스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1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 · 펠릿 (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41	선삭(旋 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 (filing) · 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 (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	입과 분(선철 · 스피그라이즌 · 철강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에 한한다)	
7205.10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 (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 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 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clad)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0.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41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5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7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 (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clad)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2.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4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60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 ·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 引拔) 또는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괘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및 제 7215 호 로부터의 것은 제외한다)
7215.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 間)처리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및 제 7216 호 로부터의 것은 제외한다)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 및 제 7217 호로부터의 것은 제외한다)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유(U)형강 · 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 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 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1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2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1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2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3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 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50	그 밖의 형강(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30	그 밖의 비(卑)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 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2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3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4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25.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 間)압연한 것 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 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28.30	그 밖의 봉(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40	그 밖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6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7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80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제의 널말뚝(천공 또는 조립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철강제의 용접된 형강	
7301.10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1.2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 · 체크레일(che ck-rail)과 랙레일(rack rail)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 (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침목(크로스타이) · 이음 매판(fish-plate) · 좌철(座 鐵) · 좌철(座鐵)쌓기 · 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 립 · 받침판(bedplate) · 격재(tie)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레일의 접속 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30	첨단구조 · 교차구류 · 전철봉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 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7304.1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 ·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 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2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	철강제의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307.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와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와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00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 (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및 기둥], 구조물 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20	탑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30	문 · 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40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또는 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 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 ·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 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1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	철강제의 연선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 · 로프 및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 銑) ·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 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 한다)·그릴·망 및 울타리,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7314.12	기계류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2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 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1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1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2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20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1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물결 모양 못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 핀(cotter- pin)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6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1	스프링와셔와 그 밖의 록와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2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3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 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20	안전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30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 레인지 (range) · 화상(火 床) · 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 · 화로 · 가스 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2	액체연료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21.82	액체연료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11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23.1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2	주철(鑄鐵)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3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4	철강(주철을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령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령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	철강제의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	
7326.1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2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3	빌릿(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 (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	구리의 분과 플레이크	
7406.10	비(非)총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20	총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	
7407.10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1	구리-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8	구리의 선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1	구리-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2	구리-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구리-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9	구리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409.1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409.3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40	구리-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구리-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90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0	구리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 판지 ·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410.11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12	구리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21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22	구리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1	구리제의 관	
7411.10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1	구리-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2	구리-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구리-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2	구리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412.10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2.20	구리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415	못 ·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 (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 (nut) · 스크루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 (cotter) · 코터핀(cotter- pin) · 와셔 (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1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33	스크루, 볼트와 너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 (polishing)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1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	구리제의 그 밖의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91	주조 · 주형 ·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41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1.20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	니켈의 괴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7505.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	니켈의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7506.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	니켈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507.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20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508.10	니켈선제의 클로드 · 그릴 및 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3.1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20	충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4.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6.1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1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	알루미늄제의 관	
7608.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20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8 호는 제외한다)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난간 및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 · 봉 · 프로파일(profile)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 · 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 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또는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1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	알루미늄제의 그 밖의 제품	
7616.10	못 · 압정 · 스테이플(제 8305 호 의 것은 제외한다) · 스크루(screw) · 볼트 (bolt) · 너트(nut)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 (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 ter-pin) ·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1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 · 그릴 · 망 및 울타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 괴	
7801.10	정제한 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	납의 판 · 시트 · 스트립 및 박, 납의 분과 플레이크	
7804.11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두께 (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	아연의 더스트 · 분과 플레이크	
7903.10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4.00	아연의 봉 · 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5.00	아연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3.00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1.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4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6	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2.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4	몰리브데늄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5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 판 · 시트 (sheet) · 스트립 및 박(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6	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3.20	탄탈륨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10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입,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9.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 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 (컬럼븀) · 레늄 및 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2.12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2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 · 도구 · 칼날이 · 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 · 삽 ·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포 크와 쇠스랑, 도끼 ·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 · 초절기(草切機) · 울타리 전단기(剪斷 機) · 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공구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01.10	가래와 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20	포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30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및 쇠스랑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40	도끼 · 빌축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60	울타리전단기 · 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90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 · 슬로팅(slotting)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 · 금속 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pipe- 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2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30	금속 절단용의 가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40	파이프커터 · 볼트크로퍼 · 천공펀 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4.11	조절할 수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12	조절할 수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드릴링 · 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30	목재가공용의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1	가정용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60	블로램프(blow lam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70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80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9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 용·스탬핑(stamping)용·편칭(p unching)용·태핑(tapping)용· 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 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 (broaching)용·밀링(milling)용 ·터닝(turning)용 또는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 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프레싱·스탬핑 또는 편칭용의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07.50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밀링(mill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터닝(turn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20	목재 가공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3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40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9.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4	칼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90	그 밖의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 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 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2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skimmer) · 케이크서버(cake-server)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하나의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 · 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	
8301.10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301.5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 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 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20	카스터(c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30	자동차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5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 (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 (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 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 서신용 클립 · 레터코너(letter corner) · 서류용 클립 · 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의 것)	
8305.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거울	
8306.10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30	사진틀 ·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	비(卑)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브(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307.10	철강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 걸쇠가 붙은 프레임 · 버클(buckle) · 버클(buc kle)걸쇠 ·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 신발류 · 차양 · 핸드백 · 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8.10	훅(hook) · 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	비(卑)금속제의 전(栓)·캡과 뚜껑(크라운 코르크·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 마개용 커버·실 및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 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 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비금속제의 용접봉(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20	비금속제의 선(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30	비(卑)금속제의 도포된 봉과 심이 충전된 선(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 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원자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및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3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 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20	과열수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 · 과열기 · 그을음제거기 · 가스회수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20	스팀 또는 그 밖의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05.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하고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항공기 엔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91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반동 엔진(터보제트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액체엘리베이터	
8413.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 기체 또는 그 밖의 가스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4.51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창용 · 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5.81	냉장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그 밖의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배소(焙燒)용 · 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 · 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고 · 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1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 · 조리 · 배소(焙 燒) · 증류 · 정류 · 살균 · 저온살 균 · 증기가열 · 건조 · 증발 · 응축 또는 냉각과 같은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 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또는 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11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의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1	농산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9.32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1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0	캘린더기 또는 그 밖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1	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 · 강통 · 상자 · 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함용 · 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11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병 · 강통 · 상자 · 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함용 · 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또는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의 저울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3.90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 (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1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25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 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	
8425.1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 (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 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11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1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 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 式)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용 · 하역용 ·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 컨베이어 · 텔레페 릭)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설계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그 밖의 버켓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그 밖의 벨트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8.90	그 밖의 기계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 (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 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 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 (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및 로드롤러 (road roller)	
8429.11	무한 궤도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스크래퍼(scr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 · 정지(整 地)용 · 지균 (地 均)용 · 스크래핑(scraping)용 · 굴착용 · 탬핑(tamping)용 · 콤팩 팅(compacting)용 · 채굴용 또는 천공용 기계(토양용 · 광석용 또는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향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 plough)와 스노블로어(snow- blower)	
8430.10	향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 (snow-blow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그 밖의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1	탐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 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1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1	버킷(bucket) · 셔블(shovel) · 그 랩(grab)과 그립(gri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 의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잔디용 이나 운동장용 롤러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0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4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 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8433.11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그 밖의 건조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1	수확 · 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3.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 [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새의 알 · 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 · 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착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20	낙농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 · 사과술 · 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 · 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5.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 가금 (家禽)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家 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1	가금 사육용 기계류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 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류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류를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기계류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과실 · 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또는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류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39.2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류(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1.10	절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20	종이백 · 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제지용 펄프 · 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 · 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 · 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2.30	기계류 · 장치 및 장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상기한 기계류 · 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 [예: 평삭(平削) ·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 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오프셋 인쇄기계류(시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접지 아니한 상태 의 시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그라비아인쇄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 絲)용 · 늘림(drawing) 용 · 텍스처(texture)용 또는 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직준비기계, 방직기 · 합사기(合 絲機) 또는 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 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 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 준비용 기계	
8445.11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직물 직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 스티치본딩기(stitch- bonding machine)와 짐프사(gimped yarn) · 툴 (tulle) · 레이스 · 자수천 · 트리밍(trimming) · 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와 터프팅(tufting) 기계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횡(橫) 편직기,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 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 자카드기 · 자동 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부속품[예: 스피들 및 스피들 플라이어 · 침포 · 코움(comb)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heald) 및 종광 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8448.11	도비기와 자카드기, 이들과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 · 복사 ·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스피들 · 스피들플라이어 · 스피닝 링 및 링트래블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2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1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9.00	펠트나 부직포(원단상 또는 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1	완전자동식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0.12	그 밖의 기계(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기계(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 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또는 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 · 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 용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1.21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세탁기 · 표백기 또는 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권취기 · 재권취기 · 접음기 · 절단 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 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및 덮개, 재봉기용 바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2.10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1	자동식 유닛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4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 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또는 원피·모피 또는 피혁제의 신발 또는 그 밖의 물품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재봉기를 제외한다)	
8453.10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또는 가공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53.20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 · 레이들(ladle) · 잉곳(ingot) 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 한다)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냉간(冷間)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압연기용 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초음파·방전·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 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6.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및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 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7.3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 보링 (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 공 또는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59.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0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9.6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 (t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 pening) · 그라인딩(grinding) · 호 닝(honing) · 래핑(lapping) · 폴리 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또는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 한다)	
8460.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호닝머신 또는 래핑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 · 셰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또는 기어 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1.2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 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또는 다이스탬핑(die- 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펀칭용 또는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 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단조기 또는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62.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1	액압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드로우벤치(봉 · 관 · 프로파일 ·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 전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 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시멘 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 또는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 또는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6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 고무 · 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 또는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1	톱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평삭기 · 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 · 샌딩기 또는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나 조립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5.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또는 박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또는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물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1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 · 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8.10	수지식 취관(吹管)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9.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 발행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hectograph)나 스텐실(stencil)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 자동지불기 · 주화 분류기 ·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 또는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봉합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1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3.5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 파쇄기 · 분쇄기 · 혼합기 또는 반죽기(고체 모양 · 분말 모양 · 페이스트 모양인 토양 · 돌 · 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 · 형입기 또는 성형기(成形 機)(고체의 광물성 연료 · 세라믹페이스트 · 굳지 않은 시멘트 · 석고 또는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成形機)	
8474.10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또는 세척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47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1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1	광섬유 및 광섬유 예비 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6.2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의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7.10	사출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압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취입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진공성형기 및 그 밖의 열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8.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기(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동물성 또는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9.60	증발식 에어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또는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0.30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1.10	감압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20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40	안전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482.10	볼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기타(볼/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1	볼 · 니들 및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및 그 밖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킷(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3.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 sal joint)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및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그 밖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 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4.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전기접속자 · 절연체 · 코일 · 접촉자 또는 그 밖의 전기용품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7.1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5 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2.40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그 밖의 유도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1	금속제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전자석 커플링 · 클러치와 브레이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8506.10	이산화망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리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6.60	에어징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80	그 밖의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그 밖의 연산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니켈-카드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40	니켈-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7.80	그 밖의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이나 채소즙 추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9.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 ·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면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 자석발전기 · 점화코 일 · 점화플러그 및 예열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점화플러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그 밖의 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 8539 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 와이퍼 (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20	그 밖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 와이퍼 · 제상기와 제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 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 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기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3.10	전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8514.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그 밖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그 밖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 한다),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 또는 광자빔식 · 초음파식 · 전자빔식 · 자기펄스(magnetic pulse)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 (plasma arc)식 납땜용 또는 용접용 기기 (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1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 · 헤어컬러 ·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및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그 밖의 오븐, 쿠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및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1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 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11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셋이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변환용 및 송신용 또는 재생용 기기 [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 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전기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8519.20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 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1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부터 제 8521 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0	광학식 매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수신기거나 음성기록기기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7.12	포켓-사이즈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7.9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8528.4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28.6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1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 로용·주차장용·항만용 또는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 또는 교통관제기기 (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LCD)]나 발광 다이오드[엘이디(LED)]가 결합된 표시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 세트)에 한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無效) 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1	탄탈륨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2.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 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 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 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6.20	자동차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그 밖의 개폐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1	램프홀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6.9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 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 · 제 8536 호 또는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 과 그 밖의 기반(基 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 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9	전기식의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9.41	아크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공관 또는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촬상관)	
8540.11	천연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흑백 또는 그 밖의 단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그 밖의 광전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0.5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으로 흑백 또는 그 밖의 단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1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2	속도변조관(klys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1	수신관 또는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1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1	전력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 다이랙 및 트라이랙(감광성 디바이스를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 회로·증폭기·클록(clock)과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전기도금용 · 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4.11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전기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 또는 탄소 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8545.11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6.10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8.10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전기식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1.20	전기식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 없다][예: 공작차(workshop) · 기중기차 (crane)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 트랙라이너(trackliner) · 검사차 및 궤도 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 보기와 비셀 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2	그 밖의 보기와 비셀 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30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91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또는 비행장 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 한다) 신호용 · 안전용 또는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1	실린더 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운송용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 톤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 · 기중기차(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crane lorr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1	안전벨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8.30	제동장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 absorb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 · 창고 ·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 走式) 작업트럭,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1	전기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하고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의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1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 를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킷 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 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의 자동 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1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 trail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그 밖의 차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801.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 ·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8802.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 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1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9 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 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903.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 er craf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 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舢舨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준설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 · 부잔교 · 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0 류	
	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 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 기, 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편광재료제의 쉬트와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11	카메라용 · 영상기용 또는 사진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20	필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	안경 · 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용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9003.11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 · 보호용 또는 그 밖의 용도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 · 단안경 · 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30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또는 장기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40	즉석인화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 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6.91	카메라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07.11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 밀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20	프로젝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91	카메라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영사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9008.10	슬라이드 프로젝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2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 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30	그 밖의 투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40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8.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네가토스코프,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그 밖의 기기,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60	영사용 스크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	복합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80	그 밖의 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12.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3.1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 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 측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2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30	수준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40	사진측량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 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와 게이지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 식 진단 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2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2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20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 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1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30	엑스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 · 목재 · 직물 · 종이 · 플라스 틱)의 경도 · 항장력 · 압축성 · 탄성 또는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시험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4.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 · 액면 ·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 · 액면계 · 압력계 · 열 측정계)(제 9014 호 · 제 9015 호 · 제 9028 호 또는 제 9032 호의 기기는 제외한다)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압력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9026.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 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 ·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 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30	분광계 ·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 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90	마이크로톰, 부분품과 부속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20	액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30	전기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 ·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 ·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 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 ·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psophomet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2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20	테스트벤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41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3.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4.00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	그 밖의 클록	
9105.1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2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 · 기록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 register) · 타임레코더(time- recorder)]	
9106.10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20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9.11	알람시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 (조립된 것에 한한다),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80	그 밖의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113	휴대용시계줄 · 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20	보석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40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 · 바이올린 · 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	그 밖의 관악기(예: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프)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6.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츠 · 마라카스(maraca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온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fairground organ)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 · 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 · 디스크와 롤), 박절기 · 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 律管)	
9209.30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3 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 · 피스톨 (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3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 및 리볼버(revolver), 캡티브 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	총구장전 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303.30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 · 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1	산탄총의 총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1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3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그 밖의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306.21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4 류	
	가구,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서포트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와 램프,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항공기용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401.4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 장비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5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7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80	그 밖의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2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 · 검사대 · 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 · 치과용 의자), 회전 및 뒤로 젖힘과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치과용 의자 · 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50	침실용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7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8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 · 누비 이불 · 우모이불 · 쿠션 · 푸프(puff) 및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1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30	침낭(sleeping ba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 및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 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조명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405.91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5.92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6.00	조립식 건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5 류		
완구 ·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오락용구 ·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 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및 자동식 볼링장 용구를 포함한다)	
9504.1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2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그 밖의 게임(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504.40	오락용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 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 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506.11	스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12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21	세일보드(sail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2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40	탁구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1	로온테니스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2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506.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91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	낚싯대 · 낚시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 · 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유인용 새(제 9208 호 또는 제 9705 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9507.10	낚싯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2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30	낚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	회전목마 · 그네 · 실내사격연습장 용품과 그 밖의 흥행장용품, 순회서커스용 및 순회동물원용 용품, 순회극장용의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6 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 · 뼈 · 귀갑(龜 甲)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자개 및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 · 스테아린(stearin) · 천연수지 또는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 모프(mop)와 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squeegee) [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그 밖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21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30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40	페인트용 · 디스템퍼(distemper) 용 · 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 (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03.5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4.00	수동식 채와 어레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5.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9606.10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21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22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3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9607.11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08	볼펜, 팁(tip)이 펄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팁이 펄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1	드로잉용으로서 인디언 잉크를 갖춘 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것
9608.6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 9608 호의 연필을 제외한다), 크레용, 연필심, 파스텔, 도화용의 목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 사용의 초크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2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1.00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펠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 있는지 상관없다)	
9612.10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2.20	잉크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 ライター(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ライター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20	포켓용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80	그 밖의ライタ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또는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컬링핀(curling pin)· 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5.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 분침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6.20	화장용 분침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7.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8.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7 류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 · 데생과 파스텔(손으로만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 · 데생과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2.00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4.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고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706.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2개월 이내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규정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약정

1. 이 장에서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이 이행 약정에서 규정된 형식을 따를 수 있다.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은 이 이행 약정에서 제공된다.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러한 지침은 완성된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2. 특혜관세대우 취득을 위하여,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읽기 쉽게 작성하고 제3.19조에 따라 영어로 그리고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예시 1

원산지 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 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이름 및 직위를 표기한다]은 [수출자/생산자/생산자 및 수출자] (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로서 이 송장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뉴질랜드] (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가 원산지임을 신고한다.

비고:

서명 _____ 날짜: _____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신고 대상 상품 관련 송장에 이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신고서의 ‘비고’란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마.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 바.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 그리고
- 사. 제3.19조(원산지의 증명) 제7항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예시 2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뒷면에 작성지침이 있음)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치시오.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참조 번호:		2. 포괄증명기간: (연도/월/일) (연도/월/일) ____/____/____ 부터 ____/____/____ ____/____/____ 까지			
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참조 번호:		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5. 상품(들)의 품명	6. HS 세번	7. 특혜 기준	8. 생산자	9. 가치 평가	10. 원산지 국가
11. 비고:					

본인은 다음을 확인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신고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신고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쪽으로 구성된다.

12. 서명권자의 서명:	회사:	
이름:	직위:	
연도/월/일 날짜: -----/-----/-----	전화번호:	팩스: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방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지침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이 문서는 수출자가 읽기 쉽고 빠짐없이 작성하며, 신고시 수입자가 소유한다.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제2란: 이 신고서가 12개월(포괄증명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신고서가 포괄 신고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신고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한다.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바랄 경우, “요청에 따라 세관에 제공 가능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가능하다.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신고서가 상품의 단일선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가능할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송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 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제6란: 제5란에서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규정된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한다.

특혜 기준

- A. 그 상품이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주: 그 영역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가 되는 것은 아니다.
- B.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재료는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된 대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의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C.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그 상품의 세번에 적용되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 규정은 세번 변경과 가치 평가 간 선택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상품은 또한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제1절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D.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E. 상품이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제8란: 제5란에서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신고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신고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또는 (3)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 제9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3.4조(역내가치포함비율)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 를,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 를 명기한다.
-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KR”,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NZ” 를 기재한다)
-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이 신고서에 관하여 비교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기재한다.
-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날짜는 이 신고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다.

제 4 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 4.1 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각각의 국제적 의무 및 관세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 간 운송 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를 이루게 한다.
 - 나. 양 당사국의 행정절차를 포함한 관세법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 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통관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장한다.
 -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한다.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제 4.2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법이란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하여 운영, 적용 또는 집행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통관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제 이동을 위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행정 책임이 있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의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운송수단이란 인 또는 상품을 운송하여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 그리고

WCO 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말한다.

제 4.3 조 투명성 및 문의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 및 관행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고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2. 각 관세행정기관은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행정절차를 공표한다.
3.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제공한다.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규율하는 관세법 또는 절차의 중대한 수정에 대하여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시의적절한 통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 4.4 조 원활화 및 조화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절차 운영에 있어 상품 통관을 원활하게 한다.
2. 각 당사국의 통관절차는 가능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을 포함한 세계관세기구 기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롭게 하고, 무역 데이터 제출을 최소화하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업자가 상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의 접촉선을 제공한다.

제 4.5 조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중이 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품이 단일한 시간과 장소에 양 당사국의 관세 영역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한 상품의 동시 검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제 4.6 조 위험관리

1. 통관 절차의 운영에서, 각 관세행정기관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 반출을 포함한, 통관을 촉진한다. 관세행정기관은 제 4.13 조에 따라, 위험 관리에 관한 응용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2. 양 당사국의 국경 간 상품의 이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관세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검토한다.

제 4.7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도착 후 48 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는 절차
 -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 시간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8 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적용가능한 경우, WCO 탁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 그 특송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 서비스에 의해 운송되는 선적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서류의 제출을 허용한다.
-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4 시간 이내의 특송화물의 통관을 규정한다.
- 바. 중량 또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100 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⁸

제 4.9 조 사전심사

⁸ 이 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제한 상품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⁹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를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는

가.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상품의 상세한 설명과 사전심사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나.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신청인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다. 사전심사가 신청인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과 상황, 그리고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밖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라.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된 경우, 사전심사서가 발급 관세행정기관의 자국 언어로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규정한다.

3.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40 일 이내 또는 국내 법률에 명시한 그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발급한다. 또는

나. 원산지에 관하여, 90 일 이내에 발급한다.

4. 당사국은 제 2 항나호에 따라 요청한 추가 정보가 특정한 기간 이내에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6. 제 7 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그 심사일부터 3 년 이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그 심사서에 기술된 상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한다.

7. 당사국은 다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심사가 잘못된 사실이나 법에 기초하였던 경우

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다. 이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상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또는

라.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8. 발급 당사국은,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9. 자국 국내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 결과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10. 수입자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가 사전심사 결과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의 사실 및 상황이 사전심사가 기초하였던 사실 및 상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 4.10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행정적 심사, 판정 또는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 밖의 인이 다음에 접근하도록 규정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에 대한 행정적 재심의 단계, 그리고

나.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적 결정의 사법적 재심

2.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보는 청구인에게 제공되고 그러한 결정의 사유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제 4.11 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그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한다.
 -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및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 나.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제 4.12 조 양자 관세협의를

1. 제 4.14 조를 저해함이 없이,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 3 항에 따라 설립된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요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이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 4.14 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 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
3.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4. 관세행정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역 원활화 사안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른 협의는 제 19 장(분쟁해결) 또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4.13 조 비밀유지

1. 이 장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수집되고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인이나 당사국의 허가 없이는 원산지 결정 및 관세 사안의 운영 및 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 상 수집된 정보는 이 장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을 이행하는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작되는 행정적,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인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게는 그러한 사용 이전에 통보될 것이다.

제 4.14 조 관세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는 관세 사안 및 원산지 규정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보장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중립적인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2-가(관세 양허표)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유지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고

- 1)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 4)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장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운영 관행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 라.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 마.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분쟁 해결, 그리고
- 바. 부속서 2-가(관세 양허표)의 양 당사국의 양허표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수정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제 18.2 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승인을 제안

4. 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부터 1 년 이내에 회합하고,그 이후에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회합한다.

5. 위원회는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건전한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제 4.15 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7 조 및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 4.16 조 품목분류

양 당사국은 그들간 교역되는 상품에 1986 년 6 월 24 일 체결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적용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
- 나.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5.3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5.4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협력 활동, 관련 기술적 및 과학적 문제를 확인하고 다루기 위한 전문가 대화 및 그 밖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사안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논의, 점검 및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의 규정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 당사국 간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때에 회합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직접 대면,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 통신을 포함한 서신을 통하여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위원회는 그 결정의 서면기록을 유지한다.

5.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 및 양 당사국 간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자국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일차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5.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접촉선

1. 제5.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경로로서의 기능을 한다.

2. 접촉선은 한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모든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되는 패턴의 불합치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취할 적절한 개선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나의 제6항가호에 따라 통보가 세계무역기구에 제공됨과 동시에 접촉선은 그 당사국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하고 긴급한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 보호 조치를 통보한다.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촉선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접촉선은 모든 중대한 식품 안전 문제, 또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상태의 변화,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모든 중대한 구조적 변화, 또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체계상의 법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5.6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 증진과 표준 및 적합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의 증대 및 원활화
- 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 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 간 무역과 관련한 비용 절감
- 라.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협력의 촉진, 그리고
- 마.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제6.2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지정은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점검, 지정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정지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기관에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3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을 적용하는 한도에서 그 기술규격, 또는

나.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6.4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그 협정의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5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G/TBT/1/Rev11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과 그 이후 개정판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3.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제표준화 기구에의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각 자국의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6.6조 기술규정의 동등성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에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 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의 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

1. 각 당사국은,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절차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1조에서 규정된 대로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위한 접근을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서로의 영역의 인정기관 간 협력 약정의 인정을 촉진

나.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서로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의 이행

다.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 협정과 약정을 인정

라.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에 대한 인정

마.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에 대한 인정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일방적 인정, 그리고

사.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

5. 양 당사국은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 또는 인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6. 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약정 교섭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7. 당사국이 제6항에 따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6.8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나. 건강, 안전 및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증진, 그리고

다.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

2. 우수 규제 관행과 무역 촉진 사이의 중요한 관련성에 대하여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규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나. 양 당사국의 기술 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

- 다.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계획 개발
 - 라. 더 나은 규제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이해 및 역량 구축, 그리고
 - 마. 적절한 경우, 시장감시 정보의 교환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무역원활화 계획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적절한 경우,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투명성
 - 나. 국제표준과의 정합
 - 다. 기술규정의 조화 또는 동등성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 마. 준수 사안에 대하여 도달한 이해
4. 제3항에 언급된 계획은 적절한 경우 비대칭적 접근방법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제6.10조제2항차호에 따라 설치된 작업반에 의하여, 개별 사안 별로,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제1항부터 제5항을 이행한다.

제6.9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제2.10조, 제5.6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거나 통보를 전달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 제안의 목적과 취지 및 그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킨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그 제안을 통보할 때, 이와 동시에,

가. 한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뉴질랜드 문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뉴질랜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제6.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의 접촉선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통보를 전달한 후,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상품이 제6.12조가 적용되는 부속서 또는 이행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고 한쪽 당사국이 그 상품이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제6.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을 통하여 그 조치와 그 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 하겠다고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6.10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촉진 및 점검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다.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규제 당국, 인정 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

-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 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 바. 표준, 기술 규정,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신속히 촉진
-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원활화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고려하여 취하는 그 밖의 조치
-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그리고

차. 이 장에 따른 특정 과제를 수행할 작업반 설치

3. 양 당사국은 제2항사호에 따른 기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술 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때에 회합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접촉선이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기업 혁신 및 고용부 또는 그 승계기관

6. 접촉선은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은 접촉선의 변경이나 관련 공무원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8. 접촉선은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11조 정보교환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된 형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제6.12조 부속서와 이행 약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합의된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는 부속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을 규정하는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가. 이 장의 부속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그리고
 - 나. 제6.8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작업 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약정
3. 부속서 및 이행 약정을 개발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기존의 모든 양자적, 지역적 및 다자적 약정을 고려한다.
4. 이행 약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이는 양 당사국간 무역에 적용된다.
5. 양 당사국은 부속서 및 이행 약정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인정 협정 또는 약정 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한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하여도 적절히 고려한다

¹⁰

¹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관심분야는 통신장비, 전기 및 전자장비, 전자파적합성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관심분야는 주류를 포함한다.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정 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 7.2 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 7.4 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양허표)의 그 당사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 철폐일 또는 관세 감축 완료일 이후 5 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7.2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 7.3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2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한쪽 당사국은 제 1 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 회를 초과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어떠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특정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이 절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취해지고 있는 어떠한 기존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종료된다.

7.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 년을 넘는 경우, 적용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양허표)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7.4 조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 판정에 따라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적용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적용 당사국은 제 7.3 조제 1 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적용 당사국은 제 7.3 조제 1 항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서 제 7.2 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모든 추가 관세를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7.3 조제 4 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7.5 조 보상

1.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 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제 1 항에 따라 협의 개시 후 30 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 2 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제 7.6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원인이 아닌 경우 그러한 수입을 그 조치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또는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 7.7 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가. 양 당사국은 반덤핑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또는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는 자국의 현재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한다.¹¹ 그리고
 - 나. 「반덤핑 협정」 제 9.1 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 원칙을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제 7.8 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개시 절차 전에,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조사개시 직후에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상계 조치의 신청이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조사개시 이전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이 그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하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의 기회가 제공된다.

¹¹ 이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규범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7.9 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알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가 요청한 약속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를 제공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알리고,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가 요청한 약속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를 제공한다.

제8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상호 호혜적인 기초 하에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국 각각의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 및 투명성, 그리고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는 수출 무역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양 당사국의 규제 권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의 정책목표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다.

제8.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자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제10.2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의한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란 제1.5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에 정의된 것들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는, 「국적법」 또는 그 승계 법령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자연인에 대하여는,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른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리고

특수항공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별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 운반과 같은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제8.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한쪽 당사국의 인의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제8.6조 및 제8.10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¹²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8.2조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나. 정부조달

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라. 제8.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공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국내 서비스,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부가되는 조건

마.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는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바. 시민권, 국적,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 또는

사. 항공 운송 서비스 또는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다만, 이 장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¹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 8.6 조 및 제 8.10 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로 제한된다.

- 1)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 4) 특수항공서비스

제8.4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8.5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8.6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¹³ 또는

¹³ 이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8.7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8.8조 비합치 조치

1.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9조 보조금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보조금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GATS 제15조에 따라 합의된 모든 규율에 비추어, 양 당사국은 그러한 규율을 이 협정에 통합할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보조금의 발생가능한 무역 왜곡효과에 대한 규율 사안을 고려한다.
3.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제8.10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 가.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완전한 사항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 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 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검토 중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라.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치에 대한 사유를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거부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3. 제2항은 부속서 I 및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가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을, 영향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6. 제5항의 규정은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하는 것이 당사국의 헌법적 구조 또는 법적 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할 경우 당사국에게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당사국이 제4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표준이 고려된다.

8. 부속서 I 및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조치를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가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9.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교섭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교섭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개정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교섭에 대하여 조율한다.

제8.11조 인정¹⁴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

¹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는 이 조에 적용된다.

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8.5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12조

교육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적 및 국가적 발전 요소로서 그리고 양 당사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교육 협력에 대한 대화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8.13조

지불 및 송금

1.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경상 거래를 위한 국제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과 송금이 지불 또는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국내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바. 사회 보장, 공적 퇴직 또는 강제적인 예금 제도, 또는

사. 과세

제8.14조 혜택의 부인

1.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통보¹⁵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에 의하여 공급되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나. 서비스가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에 의하여 공급되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2. 제1항에 따라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 이후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협의는 제19장(분쟁해결) 및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¹⁵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한쪽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통보를 제공한다.

제8.15조 서비스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서비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한다.
 - 나.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 다. 양 당사국 간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기업인의 이동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조치를 모색한다.
 - 라. 전문직 서비스 사안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관심사로 확인된 분야에서 상호 인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한다. 그리고
 - 마.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개별 작업반은 공공기관 또는 업계 대표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다.
5. 서비스 위원회는 원격회의, 영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직접 대면으로 회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합 장소는 양 당사국에서 교대로 한다.

제8.16조 금융서비스 작업 계획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회합하여 이 협정에 금융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의 실현 가능성 및 편의성을 논의할 것이다.

제8.17조 통신서비스

1. 통신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GATS 통신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부속서 8-나에 첨부된 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 참조문서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1.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가치, 그리고 전문직 자격인정과 등록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전문직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사안에 관한 대화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자격 또는 전문직 등록의 인정에 대한 조기성과를 달성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및 수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국 규제기관 및 관련 전문직 서비스 산업 기관 간 또는 그들 사이의 대화의 수립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4. 그러한 인정은 규제적 결과의 인정,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수단으로서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을 통하여) 부여되는 자격 및 전문직 등록의 인정 또는 양 당사국 간 및 산업 기관 간 체결되는 인정 약정을 통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부속서 8-나 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 참조문서

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 참조문서에 규정된 원칙들은 제8.17조에 언급된 GATS 통신 부속서에 추가적인 약속이다.

참조문서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다.¹⁶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¹⁷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¹⁶ 이는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그러한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¹⁷ “필수 설비”의 정의는 “지배적 공급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뉴질랜드의 경쟁정책제도와 합치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것이다.

상기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 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이 절은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2.2 상호접속의 보장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2.5 상호접속: 분쟁 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가. 언제라도, 또는
- 나.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이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이전에 수립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4.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될 것이다.

- 가. 모든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 나. 개별 허가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될 것이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모든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¹⁸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¹⁸ 그러한 절차는 법과 규정, 공개 입찰 절차 및 협의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다.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9.1조 목적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 간 무역과 투자의 수행에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는 것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청에 대하여 간소화되고 투명한 출입국 절차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0장(투자)에 규정된 것에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제9.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상용 방문자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실제 소득원, 그리고 주된 이윤 발생 장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상품 판매자로서, 상품의 판매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나. 서비스 판매자로서,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할,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대리인이자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또는
- 다. 제10장(투자)에 정의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그 투자자의 투자를 설립, 확

장, 점점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상업적 주재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을 말한다.

가. 기업의 설립, 취득 또는 유지, 또는

나.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의 신설 또는 유지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공급될 서비스에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요건을 보유할 것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법인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취득할 것

다.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 계약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에 소개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

허용 당사국이란 제9.3조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일시 입국 신청을 접수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거주 또는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독립 서비스 공급자/전문가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상업적 주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기초한 자영 서비스 공급자일 것

나. 고도의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계약을 가질 것, 그리고

다. 그 자연인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인정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가지게 되는 3년 이상의 정식 고등교육의 결과에 따른 자격요건을 가질 것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란 공급하는 회사의 설치 또는 서비스가 기계류 또는 설비의 구매 조건일 경우, 그 기계류 또는 설비의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계약 내용인 서비스 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기업 내 전근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가진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이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용과 관련된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로 서비스 공급이나 투자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 또는 그 승계법령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른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영구적 거주 의도가 없는 한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말한다.

제9.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9-가 또는 9-나의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기업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용 방문자

나. 독립 서비스 공급자/전문가

다. 기업 내 전근자

라.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 또는

마. 계약서비스 공급자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국적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 또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0장(투자)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 상의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는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정 상의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9.4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9-가 또는 9-나의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따라, 제9.3조에 따라 달리 입국 요건을 갖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9-가 및 9-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자국 영역 내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포함한 양허를 규정한다. 이러한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포함된 각 기업인의 분류에 대하여 요건과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과 제한을 명시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허용 당사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4.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특정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5. 출입국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합리적이며 국내법에 부합하게 한다.

6. 부속서 9-가 또는 9-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입국 조건으로서 노동시장테스트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어떠한 수량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9.5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설명 자료와 관련 양식과 문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을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련 웹사이트 등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그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하는 날까지 갱신되도록 보장한다.

제9.6조 신속한 신청 절차

1. 당사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9.3조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출입국 절차 또는 그 연장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일시 입국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승인되는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 그 결정을 통보한다.

3.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시 입국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9.7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 또는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부여의 거부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제19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3.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나호에 언급된 구제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9.8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18장(제도규정), 제9.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9장(분쟁해결), 제20장(일반 규정 및 예외) 및 제21장(최종규정), 그리고 제17.2조(공표), 제17.4조(행정절차) 및 제17.5조(통보 및 정보 제공)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에 자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상용 방문자

3. 뉴질랜드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기업 내 전근자

4. 뉴질랜드의 기업 내 전근자는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5. 부록 9-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의 자연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의 자연인을 말한다.
 -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것
 -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전문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할 것

- 다.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할 것.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따른다.
 - 라.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리고
 - 마.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이 요구될 것
7.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테스트가 요구되거나,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한국의 직업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분야에서는 계약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 가.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뉴질랜드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장비 또는 그 기계류를 구입하는 한국 내 법인에 대한 서비스
- 나. 정보기술, 전자 상거래, 생명 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다. 회원 계약을 통한 한국 회계 법인 또는 사무소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의 훈련, 감사 기술의 이전,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라. 한국 국내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마. 경영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 바. 다음의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 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
 - 2)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 3) 정보 관리 서비스
 - 4) 정보 시스템 서비스, 또는
 - 5)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1. 다음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제9.4조에 따른 뉴질랜드의 약속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이 약속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일반적 약속

다음의 분류에 한정하는 입국	조건 및 제한(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상용 방문자	모든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체류 기간은 한 해 동안 총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업 내 전근자	고위 관리자 : 뉴질랜드로의 전근 신청 이전에 그 고용인에 의하여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되었던 자연인. 최대 3년의 기간 동안의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 전문가 : 뉴질랜드 내 조직 운영의 특정 부문을 담당하거나 그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전문가. 기술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 자격요건, 그리고 그 직위에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최대 3년의 기간 동안의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	1년의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입국

상용 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그리고 설치업자 및 서비스업자에 대한 상기의 일반적 약속에 더하여, 뉴질랜드는 다음의 분야별 약속을 한다.

분야별 약속

다음의 분류에 한정하는 입국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독립 서비스 공급자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계약에 기초하여 종사하는 자영 서비스 공급자) 다음의 분류에 한정한다. A. 독립적인 전문가 <u>정의</u>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뉴질랜드 내에서 유효한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고도의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자영 자연인.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는 다음을 보유하여야 한다. (i) 인정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가지게 되는 3년 이상의 정식 고등교육의 결과에 따른 자격요건, 그리고 (ii) 6년 이상의 경력. 1)과 2) 모두 독립적인 전문가가 그 전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¹⁹	(현재 GATS/SC/62, GATS/SC/62/Suppl.1 및 GATS/SC/62/Suppl.2에 규정된 바와 같이) WTO상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만, 그리고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의 입국

3. 상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노사 분쟁의 경우와, 또한 선박의 선원과 관련하여서는 미양허를 유지한다.

4. 시청각 서비스에 관하여, 1987년 「이민법」 및 1999년 「이민 규정」에 근거한 뉴질랜드 이민 정책은 업무 목적의 연예인, 공연 예술가 및 관련 지원 인력에 대한 비자 부여를 위한 특별 절차를 규정한다. 취업 비자 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러한 신청자는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 독립 기획자, 대행인 또는 제작자와 관련 공연 예술가 조합 간에 합의된 정책 지침에 따라야 한다.

¹⁹ 이러한 자격요건은 적절한 뉴질랜드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인정이 뉴질랜드 내 그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

5. 모든 요건, 규정 및 추가적 약속을 포함하여, (현재 GATS/SC/62에 규정된) 뉴질랜드의 WTO 구체적 약속 양허표상 자연인의 주재에 대한 모든 약속은 한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제10장 투자

제10.1조 목적

이 장은 각 당사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된 규칙의 틀 내 투명성의 조건 하에서, 국민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규제권한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호 호혜적 기초하에 양 당사국 간 투자의 흐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임명권자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제10.20조제3항가호 및 나호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 제10.20조제3항다호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 또는

나.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사람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 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 어느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5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그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포함한다)

다. 정부 발행 채권을 포함한 채권, 회사채 및 대부²⁰와 그 밖의 형태의 채무 및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

바. 지식재산권

사.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21,22},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²³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²⁰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즉각적인 지급만기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²¹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²²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²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그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정부 기밀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제2절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또는 당사국들 간에 추후 합의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1절 투자

제10.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10.11조와 제10.13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제8.2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제8.2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금융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4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10.5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10.6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2절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최소기준²⁴대우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 관습법상 대우의 최소기준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상 대우의 최소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적법절차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그 투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10.8조 무력충돌 또는 내란 시의 대우

1. 제10.15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²⁴ 이 조는 부속서 10-가에 따라 해석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²⁵ 모든 보상은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3. 제1항은 제10.15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0.5조에 불합치하였을 정부 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9조 수용 및 보상²⁶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국유화 또는 수용과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이하 “수용일”이라 한다)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²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 및 보상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양자의 합산 가치는 그 손실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²⁶ 이 조는 부속서 10-나에 따라 해석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지불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1장(지식재산권)과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²⁷

제10.10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다.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불, 그리고

사.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관여한 사람의 소득 및 그 밖의 보수

²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의 “취소”라는 용어가 그러한 권리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포함하며, 지식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권리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바.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강제 저축 제도, 또는

사. 과세

제10.11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하지 아니한다.²⁸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²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2 항에 언급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이 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자국의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또는
-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 및 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 나.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
29

5.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1항나호 · 다호 ·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 간의 어떠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1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13조 투자와 환경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²⁹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제10.14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통보³⁰를 조건으로, 다음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비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또는
 - 나.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2. 제1항에 따라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 이후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협의는 제19장(분쟁해결)과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0.15조 비합치 조치

1. 제10.5조, 제10.6조, 제10.11조 및 제10.12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5조, 제10.6조, 제10.11조 및 제10.12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³⁰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한쪽 당사국은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통보를 한다.

2. 제10.5조, 제10.6조, 제10.11조 및 제10.12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10.5조 및 제10.6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12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6. 양 당사국은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10.16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0.5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0.5조 및 제10.6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하여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17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또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단체, 법정 기구, 또는 기업)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식의 보장에 따라 그 당사국의 투자에게 지불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투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자격의 대위변제 또는 이전을 인정한다. 대위변제 또는 이전된 권리 또는 청구는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한쪽 당사국(또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단체, 법정 기구, 또는 기업)이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또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단체, 법정 기구,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 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10.18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

1. 이 절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그러한 위반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 주장에 관한 그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에 적용된다.

2. 이 절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투자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국민은 이 절에 따른 청구를 그 당사국에게 제기하지 아니한다. 국민이 비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 또한 보유한 경우, 그는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제10.19조 협의 및 교섭

1.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국에게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조치들에 대한 사실의 간략한 기술을 명시한 서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 및 교섭의 개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제10.20조 중재 청구 제기

1. 투자분쟁이 제10.1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서면 요청을 피청구국이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이 적용대상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이하 “의사통보”라 한다)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의사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제1절의 규정과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인은 다음의 대안 중 하나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 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이하 “중재통보”라 한다)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 절차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임명권자가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10.21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10.22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청구인에게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제1절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3년 6개월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중재통보에 어느 한쪽 당사국 국내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10.20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가 수반되는 경우

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10.23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임명권자는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그리고

나. 제10.20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차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0.24조 중재지

1. 분쟁당사자들은 제10.20조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앞 문장은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요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0.25조 협정의 해석

1.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공동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공동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판정은 그 공동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그 문제를 결정한다.

3.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한다.

제10.26조 중재의 수행

1.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분쟁당사자가 아닌 인 또는 실체로부터 수용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입장제출 수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고려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서면입장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와 같은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0.3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 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관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3.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를 포함해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5.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 반소, 상계권이거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6.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0.20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7.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8. 제7항의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잠정 검토 절차는 제9항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9.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이 조 및 제10.30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 및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합치되게,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 입장제출,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

제10.27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10.25조제3항 및 제10.2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며, 적절한 조치에는 보호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4항라호를 포함하는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0.2조(안보 예외) 또는 제20.7조(정보의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이거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어떠한 보호정보도 어떠한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 다.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다.
- 라. 중재판정부는 제3항에 따라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목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목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 마.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0.28조 준거법

- 1. 제2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제18.2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10.29조 병합

1. 제10.20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임명권자와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임명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5. 임명권자가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피청구국의 국민을 임명하도록 노력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 다. 제10.23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임명권자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10.23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10.23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10.30조 판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중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는 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격으로 입은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차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하지 아니한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7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0.20조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서 판정이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31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0-라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달된다.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0.7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 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0.7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0-나 수용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수용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가. 직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한 국유화 또는 다른 직접수용에 의하여 당사국이 투자자의 재산을 명백하게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나. 간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당사국이 투자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다.

3.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나. 정부 행위가 계약, 허가 또는 그 밖의 법적 문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이 있는 사전 서면 약속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³¹

4. 간접 수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박탈이 그 목적에 비추어 신의성실하게 채택되고 적용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여야 한다.

5.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³²

³¹ 한국이 취한 행위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³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10-다 중재 청구 제기

한국

1. 제10.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투자자가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소송 절차에서 제1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한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투자자가 한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뉴질랜드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뉴질랜드에 송달된다.

The Secreta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5 Lambton Quay
Private Bag 18-901
Wellington
New Zealand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10-나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 가. 세금의 부과에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비공개 정보의 보호를 지칭하고 또한 식물 다양성 보호를 포함한다.

제11.2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은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술적 혁신 및 무역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보호되는 대상물에 관하여,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의 사용자 및 단체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 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11.3조 일반 규정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며, 이러한 권리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 자체로 적법한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추가적 보호와 집행은 이 장에 불일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식재산 관련 그 밖의 다자협정들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4.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³³

5. 제4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의 주관 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들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 그리고

나. WIPO의 주관 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들이 허용한 적절한 유보

6. 각 당사국은 다음 내용의 투명한 지식재산권 제도 및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명확성의 제공

나. 지식재산 체계를 따르기 위하여 업계에 요구되는 행정비용 최소화, 그리고

다. 사상, 기술 및 창조적 저작물의 전파를 통한 국제 무역 활성화

7.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소진에 대한 자국의 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한다.

제11.4조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단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아니한다.³⁴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적어도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³³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민”은 관련 권리에 대하여 제11.5조제1항에 언급된 협정들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게 될 그 당사국의 모든 인을 포함한다.

³⁴ 당사국은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표의 충분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상표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6. 1883년 3월 20일에 체결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³⁵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를 유명 상표와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제3자가 상표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0.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³⁵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일반 공중의 분야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각 당사국은 소유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사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에 행정적 또는 사법적 수단, 또는 두 수단 모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제11.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1971년 7월 24일에 체결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의 제1조부터 제21조까지와 그 부록을 준수한다. 그러나 양 당사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에 따라 부여된 권리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³⁶,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³⁷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든 그의 저작물, 음반 및 방송³⁸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실연³⁹의 고정물의 복제를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그러한 고정물은 실연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4.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권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해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자국 국내법 및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³⁶ 당사국은 음반 제작에 필요한 약정을 수행하는 인이 저작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³⁷ 이 장의 목적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또한 모든 권리승계인을 지칭한다.

³⁸ 음반의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은 발행 기준 대신에 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방송의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위치해 있고 방송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에만 방송을 보호할 수 있다.

³⁹ 이 장에 대하여, “실연”이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⁴⁰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제11.6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조치, 절차 및 구제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한다.

제11.7조 접촉선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개정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제11.8조 정보의 교환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모든 신법

⁴⁰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등록 또는 부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체계의 이행에 있어서의 변화 및 진전사항, 그리고

다.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접근방식에서의 진전사항

2.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는 제11.7조에 언급된 접촉선을 통하여 전달된다.

제11.9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 규칙, 규정 및 정부정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을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각자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해가 있는 그 밖의 기관 간 접촉 및 협력의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4. 협력에 대한 모든 제안은 제11.7조에 언급된 접촉선을 통하여 전달된다.

제11.10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각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간전승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다.

제11.11조

협의를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집행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 사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지정한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요청서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협의가 모든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검토를 위하여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제19장(분쟁해결) 또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2.1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창출 및 유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감소시키고 제거하기로 약속한다.
 - 가. 사적 그리고 공적 영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영업 활동에 경쟁 법령 적용, 그리고
 - 나. 경제주체 간, 또는 생산의 원산지 및 목적지 간 차별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경쟁 법령 적용
3.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가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 과정에 있어 이 협정의 혜택이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의하여 감소 또는 상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각자의 경쟁법을 이 장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제12.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영업행위란 당사국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기업 간 반경쟁적 협정, 동조적 관행 또는 약정, 그리고 양 당사국 각국의 경쟁법에 명시된 기업단체의 결정
- 나. 지배적 지위에 있는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력의 남용, 그리고
- 다. 특히 영역 내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의 합병 또는 다른 구조적 결합

이러한 행위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어떠한 기업에 의하여서든 수행되는 것일 수 있다.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상무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사항

나. 뉴질랜드의 경우, 1986년 「상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사항, 그리고

다. 이 협정의 발효 후 위에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들의 이행 규정 및 개정사항

나. 뉴질랜드의 경우, 1986년 「공정거래법」과 그 이행규정 및 개정사항, 그리고

다. 이 협정의 발효 후 위에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제12.3조 이행

1.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이들 법과 그 집행은 투명성, 포괄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에게 발언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심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투명성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한 모든 면제는 투명하고, 그리고 공공 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제12.4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자국의 당국 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기술적 협력, 통보, 협의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제12.5조 통보

1.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제 12.8조에 언급된 접촉선을 통하여 그러한 집행 활동을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통보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그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통보는 집행 활동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제12.6조 협의와 정보의 교환

1.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 관련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최종적 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제한함이 없이, 요청 당사국이 표명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효과적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는 각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비밀유지 기준을 조건으로 한다.
4.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나 문서를 제공한 당사국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떠한 인에게도 그러한 정보나 문서를 반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한쪽 당사국의 국내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2.7조 기술적 협력

양 당사국은 자원을 조건으로, 서로에게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에 관련된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적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연수를 목적으로 한 인력 교환
- 나.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의하여 구성된 경쟁법 및 정책의 연수 강좌에서 인력이 강연자 또는 자문사로서 참여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상호 결정한 기술적 협력의 그 밖의 모든 유형

제12.8조 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서로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제12.9조
국경 간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 소비자 보호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국제 사기의 감시와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경우에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대하여 협력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당국들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기만적인 관행 또는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으로부터 자국 영역에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상품의 거짓,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링을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제12.10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3장 정부조달

제13.1조 일반 규정 및 목적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 증진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체 및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조달 사안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경쟁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투명성, 비용대비 가치, 공개적이고 효과적인 경쟁, 공정한 거래, 책임성 및 정당한 법 절차와 비차별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의 기본 원칙에 따른 정부조달 수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3.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설 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제(이하 “CPC” 라 한다) 제51 대분류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3-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공표란 널리 배포되고 일반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또는 서면 매체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제13.3조 적용범위

협정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조달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지를 불문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 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 1)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것, 그리고
-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아니하는 것

나. 구매, 리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와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다. 이 조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제13.11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달리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3. 부속서 13-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 협정, 공여, 융자, 지분참여, 보증 그리고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 라. 공공고용 계약, 또는
-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 1) 개발 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
 - 2)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는
 - 3)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것

4. 적용대상 조달의 맥락에서, 조달기관이 부속서 13-가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3.4조를 그러한 요건에 준용한다.

가액산정

- 5. 적용대상 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아니하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 1) 할증료,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 2) 그 조달이 선택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선택권의 총 가액

6.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 (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최대 총 추정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가.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다음 12개월에 걸쳐 조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나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나. 최초 낙찰 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액

7.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경우,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1)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최대 총 추정가액, 또는

2)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추정가액

나.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월 추정분할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또는

다. 계약이 확정기간 계약인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호가 적용된다.

제13.4조 일반원칙

비차별

1.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은,

-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 3.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 4. 조달기관은 적용대상 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 규정

- 5. 적용대상 조달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

- 6.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7.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수입에 부과되거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부과금,
- 나.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또는
- 다. 적용대상 조달을 규율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그 밖의 수입 규정이나 절차 및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제13.5조 이 장에 대한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채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3. 양 당사국은 제2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3.6조 정보의 공개

양 당사국에 대한 정보제공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공평하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해당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 해당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합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그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어떠한 특정 공급자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⁴¹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법 집행을 저해할 경우,

나.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다. 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하여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경우, 또는

라.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13.7조 조달 조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각 당사국은 신속하게 다음을 공표한다.

가.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 그리고

나. 원래의 공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수정사항

제13.8조 공급자 자격심사

⁴¹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뉴질랜드에게 1982년 「공공정보법」 또는 그 후속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하고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조달기관들이 그들의 자격심사 절차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 나. 조달기관들이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그들의 등록제도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3. 한쪽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자국의 조달에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입찰

4.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 가. 조달예정 공고에 적어도 제13.11조제2항가호, 나호, 바호, 사호, 차호 및 카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공급자에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 나. 해당 기관이 제13.12조제4항나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하는 유자격 공급자에게 적어도 제13.11조제2항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에 명시된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한다.
5. 조달기관이 조달예정 공고에서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6. 입찰서류가 제4항에서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모든 유자격 공급자에게 그 서류가 동시에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7. 조달기관은 공급자 유자격자 명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관심 있는 공급자가 해당 명부에 등재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는,

가. 매년 공표되어야 한다.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계속해서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 부속서 13-가에 열거된 적절한 매체에 공표되어야 한다.

8. 제7항에서 규정된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만족시켜야 하는 참여 조건과 공급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 사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 명부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게 될 경우, 조달기관은 제7항에서 언급된 공고를 해당 명부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한 번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고가

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추가 공고는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고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10.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유자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11.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13.12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신청을 검토한다. 해당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해당 공급자를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한다.

조달기관의 결정에 관한 정보

12.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공급자에게 해당 요청 또는 신청과 관련된 해당 조달기관의 결정을 신속하게 통지한다.

13.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달 참가 신청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또는 공급자를 유자격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해당 공급자가 요청하면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해당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3.9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역량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수준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 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역량,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나. 해당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4.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파산
- 나. 허위신고
-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 바. 세금 미납

제13.10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조항을 원용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제13.8조, 제13.9조, 제13.11조, 제13.12조, 제13.14조 및 제13.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다만, 입찰서류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하는 경우
-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하여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반적인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허,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관련해서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는 경우.

2. 조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해당 보고서는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을 포함한다.

제13.11조 공고

조달예정 공고

1. 각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13.10조에 기술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13-가에 기재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예정 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매체는 널리 유포되고, 그러한 공고는 적어도 해당 공고에 적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고는 부속서 13-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 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을 위하여 수립된 전체 기간 동안 하나의 접근 창구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이들의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다. 반복계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 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라. 선택사항에 대한 기술

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바.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교섭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하는지 여부

사. 적용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자.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 차. 공급자가 제출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 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 카. 조달기관이 제13.8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권유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요약공고

3.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약공고를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영어로 공표한다. 해당 요약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의 대상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 다.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조달계획 공고

4. 조달기관은 부속서 13-가에 기재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자신의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 공고”라 한다)를 각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해당 조달계획 공고는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 예정일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제13.12조 기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참가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 나. 예상되는 하도급계약의 정도, 그리고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2. 해당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관심이 있거나 참가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하다.

마감시한

3.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될 수 있다.

4.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5.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13.11조제4항에 기술된 조달계획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 공표보다 적어도 40일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하로 미리 공표하였고,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 1) 그 조달내용에 대한 기술
- 2)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 3) 관심있는 공급자가 그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는 문안
- 4) 조달에 관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 5) 제13.11조제2항에 따른 조달예정 공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확보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 나. 반복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이 항에 근거한 입찰 기간을 후속 공고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최초의 조달예정 공고에서 적시하는 경우, 또는
 -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제4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6. 조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설정한 입찰 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 가. 조달예정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 다. 해당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7. 제5항과 연계하여 제6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설정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 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8.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조달예정 공고와 입찰서류 모두를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제13.13조 기술규격

1. 조달기관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5.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조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제13.14조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공급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조달예정 공고에서 이미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해당 조달 및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 나. 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및 서류의 목록을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 다. 해당 기관이 계약의 낙찰에 적용할 모든 평가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그 밖의 요건

- 마.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 바.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 사.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2.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의 인도일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함에 있어, 해당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정도 및 공급 지점으로부터 상품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요구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3.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특히 가격 및 그 밖의 비용 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및 인도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4. 조달기관은 신속하게,

-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입찰서류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서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 다.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정

5. 조달기관이 낙찰 전에 조달예정 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제시한 기준 또는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전달한다.

-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참가 중인 모든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수정하여 개정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13.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해당 조달기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3.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6. 조달기관이 제출된 다른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사용하거나,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3.16조 낙찰 후 정보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참가한 공급자에게 조달기관의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통지하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6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낙찰 정보의 공표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조달기관은 부속서 13-가에 기재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고를 전자적 수단으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해당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다.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 라. 낙찰금액 또는 낙찰에 있어서 고려된 최고 및 최저 청약
- 마. 낙찰일, 그리고
- 바. 사용된 조달 방법의 종류, 그리고 제13.10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서류, 보고서 및 전자적 추적 가능성의 유지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 가. 제13.1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 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제13.17조 공급자 이의제기에 대한 국내 심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 장의 조치 이행 위반 주장과 관련된 공급자의 이의제기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하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급자가 자국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해명을 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조달의 맥락에서 조달에 관한 조달 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청취하거나 검토할 권한이 있는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이의제기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제13.18조 조달에서의 전자적 통신의 이용

1. 양 당사국은 실시 예정인 정부 조달에 대한 기회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에 따라 자국의 공급자를 위한 상업적 기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조달 공급 기회에 관한 통합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단일 전자 포털을 유지하고, 정부 조달과 관련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은 부속서 13-가에 명시되거나 단일 전자 포털에 기재된 정보에 제시된다.

3.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입찰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서를 접수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조달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가 채택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허가받지 아니한 그리고 은밀한 변경으로부터 서류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나. 조달기관의 네트워크상의,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의 예시적 조달계획에 관한 정보를 그 기관이 회계연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제2항에 언급된 전자적 포탈에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제13.19조 부속서의 개정, 수정 및 정정

1. 한쪽 당사국이 부속서-13가에 대한 경미한 정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성격의 그 밖의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정정 또는 수정은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2. 기업화와 상업화 또는 민영화의 결과로, 한쪽 당사국이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유로 부속서 13-가의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제안된 수정은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3.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또는 정정 제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 또는 정정 제안의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당사국에게 자국의 이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시킨다.

4. 양 당사국은 기술적 협의를 통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는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한쪽 당사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기술된 것 외의 사유로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상조정을 제공한다. 제안된 개정은 제21.4조(개정)에 따라 발효된다.

6. 공동위원회는 결정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발효된 개정, 수정 또는 정정을 반영하여 부속서 13-가를 갱신한다.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절 기관 목록

한국 양허표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문화재청
4. 방위사업청 (아래 주해3을 참조)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관세청
9. 산림청
10. 특허청
11. 기상청
12. 병무청
13. 농림축산식품부
14. 문화체육관광부
15. 교육부
16. 고용노동부
17. 환경부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9. 외교부
20. 여성가족부
21. 행정자치부
22. 법제처
23. 보건복지부
24. 법무부
25. 국토교통부
26. 국방부 (아래 주해3을 참조)
27. 해양수산부
28. 국가보훈처
29. 인사혁신처
30. 국민안전처 (아래 주해5를 참조)
31. 미래창조과학부
32. 기획재정부
33. 산업통상자원부
34. 통일부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 국가인권위원회
37. 경찰청(아래 주해5를 참조)
38. 국세청
39. 국무조정실
40. 국무총리비서실
41. 조달청(아래 주해4를 참조)
42. 농촌진흥청
43. 중소기업청
44. 통계청
45. 대검찰청

뉴질랜드 양허표

1. 캔터베리 지진재건청
2. 왕실법률국
3. 자연보호부
4. 교정부
5. 내무부
6. 총리 · 내각부
7. 교육감사원
8. 정부통신보안국
9. 국세부
10. 뉴질랜드 국토정보부
11. 문화유산부
12. 환경부
13. 일차산업부
14. 기업혁신고용부
15. 국방부
16. 교육부
17. 외교통상부
18. 보건부
19. 법무부
20. 남태평양도서부
21. 사회개발부
22. 교통부
23. 여성부
24. 뉴질랜드 관세청
25. 뉴질랜드 방위청
26. 뉴질랜드 경찰청
27. 중대사기 수사국
28. 국무위원회

- 29. 뉴질랜드 통계청
- 30. 마오리 개발부
- 31. 재무부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주해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해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해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13.5조 및 제20.2조(안보 예외)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의 연방공급분류(FSC)범주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다.

FSC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FSC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FSC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FSC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FSC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FSC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FSC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FSC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FSC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FSC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FSC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FSC 3416	선반

FSC 3417	절삭기
FSC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FSC 4110	냉장장비
FSC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FSC 4520	난방 및 온수장비
FSC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FSC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FSC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FSC 5530	합판 및 단판
FSC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부품
FSC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FSC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폰 및 스피커
FSC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FSC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FSC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FSC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FSC 6840	살충소독제
FSC 6850	각종 특수화학물
FSC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FSC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FSC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FSC 7350	식탁용 식기
FSC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FSC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FSC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FSC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FSC 8110	드럼 및 깡통
FSC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FSC 9310	종이와 판지

주해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주해5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이 장은 제13.5조에 규정된 대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절 적용대상 상품 및 서비스

한국 양허표

상품

이 장은 제1절에 열거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서비스

WTO/MTN.GNS/W/120 문서에 포함된 WTO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다음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 밖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u>GNS/W/120</u>	<u>CPC</u>	<u>설명</u>
1.A.b.	862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15 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함)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83107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1.F.e.	86761*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86764	기술적 진단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u>GNS/W/120</u>	<u>CPC</u>	<u>설명</u>
	8814*	임업 부수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는 제외)
1.F.g.	882*	어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유지 및 보수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서비스
1.F.q.	876	포장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1.F.s.	87909*	속기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
2.D.e.	—	
6.A.	9401*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음성 녹음)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11.A.b.	7212*	
11.A.d.	8868*	국제운송(연안운송 제외)
11.F.b.	71233*	선박의 유지 및 보수
11.H.c	748*	컨테이너화물운송(연안운송 제외)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해운대리업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해운중개서비스

GNS/W/120 CPC

설명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11.I. －

－ 통관서비스
철도화물운송주선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초기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건부 수정양허안에 기재된 세부사항의 “일부분” 을 가리킨다.

뉴질랜드 양허표

상품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명시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서비스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명시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장은 *MTN.GNS/W/120* 문서에 제시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제(CPC)에 따라 적시된 서비스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조달(CPC 851-853)

나. 공중보건 서비스 조달(CPC 9311, 9312, 9319를 포함한 CPC 931)

다. 교육 서비스 조달(CPC 921, 922, 923, 924 및 929)

라. 복지 서비스 조달(CPC 933 및 913), 또는

마. 제5절에 명시된 조달

제3절 건설서비스

한국 양허표

이 장은 제1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체제(CPC) 제51대분류상의 모든 건설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건설서비스는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다.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 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뉴질랜드 양허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부속서 제1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MTN.GNS/W/120 문서에 제시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제(CPC) 제 51 대분류상의 모든 건설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건설서비스는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다.

제4절 기준가

상품	:	130,000 SDR
서비스	:	130,000 SDR
건설서비스	:	5,000,000 SDR

이 절에 규정된 기준가는 2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각 조정사항은 1월에 효력이 발생한다.

각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 비율을 이용하여 이 장에 따른 기준가액을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로 계산하여 공표한다.

환율은 자국통화로 표시된 기준가에 앞서 그 해의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각국 통화의 일일 가치 평균이다. 환율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국통화로 표시된 기준가는 2년 동안 고정된다.

가.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이 조정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1천만원까지 반올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1억원까지 반올림될 수 있다.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이와 같이 조정된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1천 뉴질랜드 달러까지 반올림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SDR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주요한 변화가 이 장의 적용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협의한다.

제5절 일반주해

한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뉴질랜드 양허표

이 장은 재외공관의 건설, 정비 또는 비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이 부속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인 또는 정부 당국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정부 공급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절 단일 전자적 접근 지점

한국의 경우,

www.g2b.go.kr 또는 필요한 경우 전자 관보 <http://gwanbo.korea.go.kr>

뉴질랜드의 경우,

<http://www.gets.govt.nz>

제 7 절
접촉선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339-012

뉴질랜드의 경우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Government Procurement Branch
Level 3, 15 Stout Street
PO Box 10729
Wellington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4.1조 목적

이 장은 특히 다음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수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이 협정의 동반자 측면의 강화와 상호 관심있는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의 진전
- 나. 농림수산 영역에서 무역 및 경제적 관계의 강화와 이해의 증진, 그리고
- 다.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양 당사국 간 기존 농업 및 임업 협력 약정을 강화하는 것
 - 1) 상호 관심있는 분야에서 협력의 증가
 - 2) 농림수산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의 촉진
 - 3) 농림수산 영역에서 연구, 과학, 기술 및 교육의 역할을 촉진
 - 4) 상호 경제적 성장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을 촉진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민간 영역의 중요한 역할의 장려, 그리고
 - 5) 국제 규범 및 의무의 고수를 촉진하는 것

제14.2조 적용범위

-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이행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2.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은 이 협정의 다른 장과 양 당사국 간 기존 협력 약정⁴²에 따라 양 당사국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련된 모든 협력 활동을 보충할 것이다.

⁴² 2007년 4월 26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농림부와 뉴질랜드 농림부 간의 농업협력 약정」 및 1997년 4월 29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산림청과 뉴질랜드 임업부 간의 임업 협력에 관한 약정」

제14.3조 협력 활동

1. 제14.1조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는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농림수산 정책 사안에 관한 정책 대화 및 다음의 분야를 포함하는 농림수산 영역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 1) 농림수산 영역에서 정부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과학, 기술 및 교육
- 2)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농림수산 영역의 역할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또는
- 3) 농림수산영역에 관련되는 경제 및 무역 사안

나. 상호 경제적 이익의 분야에서 농림수산 영역의 민간 부문 참여, 그리고

다. 다음과 같은 그 밖의 협력 활동

- 1) 기술 협력
- 2)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 3) 전문가,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교류
- 4) 학회, 세미나 및 워크숍, 또는
- 5) 공동 교육 훈련, 특히 농림수산 분야 교육기관의 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것

2. 국제포럼에서 일어나는 이니셔티브 및 활동을 고려하면서 협력 활동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합의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활동의 세부 내용과 그 이행을 규정하는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제14.4조 농업

양 당사국은 한국과 뉴질랜드 농업인들 및 기업농들 간의 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농업 사안에 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 가. 축산 및 축산 가공업, 작물경작, 원예, 관개농업 및 천연섬유 생산을 포함한 농업
- 나. 농업개혁 및 농업정책
- 다. 농업 경제
- 라. 세대교체 및 농가승계 계획
- 마. 농촌개발
- 바. 환경 및 천연자원 경제와 관리
- 사. 식물, 동물 및 인체 영양의 작물학적 및 유전학적 향상을 포함한 영양
- 아. 지속가능한 보전농경기술, 그리고
- 자.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농업사안

제14.5조 임업

양 당사국은 상호 호혜적 협력과 확고한 무역 관계가 공급의 안정성을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임업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목재 제품의 무역의 증진
- 나. 임업 영역에서의 투자
- 다. 산림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 라. 기후 변화가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
- 마. 산불관리 및 통제
- 바. 산림간벌

사. 산림해충 통제

아. 농가임업

자. 불법 벌채 및 관련 무역의 방지, 그리고

차.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제14.6조 수산업 및 양식업

1. 양 당사국은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의 경제적 및 환경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규제 요건과 합치되도록 서로의 수산 영역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예를 들어 다음에 관련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양해충

나. 레저어획

다.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라. 수산업 경제와 자원 관리

마. 양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책 및 규제적 요건

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획,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수산업 및 양식업 사안

3. 양 당사국은 가능한 수산업 협력 약정을 검토할 것이다.

제14.7조 식량 공급 안보

1. 양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 공급의 유지와 식량 안보 목적의 이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세계적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3. 장기적 식량안보를 달성하는데 있어 무역 및 투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농업 및 식량에서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에 관련된 주요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협력 체제(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를 통하여, 그 상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된 요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사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수출하는 식량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금지나 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서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의 효과와 가능한 대안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수출 금지나 제한이 도입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견의 조기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실시한다.

제14.8조 농림수산협력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과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가. 양 당사국의 각 정부 기관, 산업, 기관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접촉의 지원 및 강화

나. 적절한 경우 이 장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 기관, 민간 영역의 대표자, 교육 및 연구 기관과 함께 일하는,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지정

다.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이행 약정들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이나 분쟁의 해결

라. 추가적인 협력 분야의 모색,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

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각 회합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14.9조 재원

1. 이 장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장에 구상되어 있는 협력 활동은 적절한 재원이 지원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행가능함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경로를 통하여 그러한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시하는 특정 협력 활동을 위한 재원의 공급을 검토한다.

제14.10조 이견 및 분쟁의 해결

1.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이행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견 또는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한다.
2.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이를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이행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이견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공동 위원회의 지침을 구할 수 있다.

제 15 장 노동

제 15.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자유무역과 투자가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 년)(이하 “국제노동기구 선언”이라 한다), 및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2008 년)의 원칙을 준수하는 고용 조건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와 유의미한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기대를 증진하는 것
- 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각 당사국의 노동제도, 건전한 노동정책 및 관행,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역량과 능력 개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장려하고 달성하는 것
- 다.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근로 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호, 증진 및 집행하는 것, 그리고
- 라. 상호간의 관심 또는 우려가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

제 15.2 조 일반 원칙

1.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정책 및 그에 따른 관행에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구현된 다음의 원칙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 다. 아동노동의 실질적인 폐지, 그리고
- 라.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의 철폐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 및 국가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 및 우선 순위에 따라 자국의 노동법, 규정 및 관행을 설정, 운영 및 집행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통하여, 제 1 항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집행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재량을 행사하고 집행에 대한 자원의 할당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4. 면제 또는 이탈이 제 1 항에 규정된 원칙에 불합치할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 1 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제 15.3 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1. 각 당사국은, 행정, 준사법, 또는 사법 재판소를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절차 및 제도가 자국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에게 적절하게 접근 가능하고, 투명, 공정 그리고 공평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자국의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자국의 대중에 알리는 메커니즘을 자국의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따라 적절히 개발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이 명확하고, 잘 이해되며, 널리 협의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한다.

제 15.4 조 제도적 장치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국 노동부 내에 노동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노동 위원회

2. 양 당사국은 노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및 부처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 또는 그 지명자를 포함한다.

3. 위원회는

가.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나. 합의된 협력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다. 상호 관심 있는 노동 사안에 관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한다.

라.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 위원회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4. 위원회는 제 15.5 조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공동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 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대중의 참여

5. 위원회와 각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 15.5 조 협력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양자, 지역 또는 다자 수준에서 추구될 수 있는 잠재적 협력 분야의 예시적 목록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포함된 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법령 및 관행

나. 노사관계

다. 근로조건

라. 산업안전보건

마. 인적자원개발

바. 노동통계

사. 생산성 향상 관련 프로그램, 방법론 및 경험,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3.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

가. 연구 방문과 그 밖의 기술 교류를 포함한 대표단, 전문가, 학자, 교사 및 강사 간의 교류

나. 양 당사국의 노동법 및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의 교류

다. 공동회의,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대외접촉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의 조직

라. 합작 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마. 공동연구사업, 연구 및 보고

바. 노동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포럼에서의 협력,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교류 또는 협력

4.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이후 첫 번째 단계로서 양국의 초기 우선사항 또는 관심분야의 목록을 교환한다.

5. 제 3 항에 따라 합의된 모든 협력활동은 이용가능한 자원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의 노동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상호 결정에 의하여 개시한 모든 특정 활동이나 사업도 별도 약정⁴³에 문서화될 수 있다.

⁴³ 별도의 약정은 예를 들어 국제기구나 국제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노조와 사용자 또는 그 밖의 인, 그리고 단체가 잠재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5.6 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출된 협의 요청의 접수를 한쪽 당사국이 인지한 때부터 30 일 이내에 개시된다.

3.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18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협의 기간을 정한다.

4. 한쪽 당사국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도록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 후 90 일 이내에 소집되며, 그 사안의 해결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5. 위원회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론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6. 양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를 이행한다.

7. 제 4 항에 따른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8.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6 장 환경

제 16.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경제 성장, 사회적 복지,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상호 보완적임을 인정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증진하는 것
- 나.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천연자원 및 사회기반시설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전한 환경 정책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것
- 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형성을 장려하는 것
- 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무역 관련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 마. 정책 및 관행, 과학 지식, 그리고 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각 당사국의 환경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달성하고 양 당사국의 확대된 관계를 강화하는 것

제 16.2 조 일반원칙

1. 각 당사국은 자국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고, 천연 및 사회기반시설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 및 국가적 우선 순위를 수립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을 채택, 수정, 운영 및 집행하는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이 자국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합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에 부여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7.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자국의 환경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위한 절차 및 제도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것을 보장한다.

제 16.3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 및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칙 간의 상호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 또는 투자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환경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제 16.4 조 환경친화적 무역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로서 양국 경제에 있어서 환경에 유익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기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환경에 유익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 16.5 조 투명성

제 17.4 조(행정절차)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와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6.6 조 환경영향 검토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는 데에 대한 자국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한다.

제 16.7 조 제도적 장치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제 16.8 조에 따른 환경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한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자국 부처 내의 사무소를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으로 지정한다.

환경위원회

2. 양 당사국은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가.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나. 협력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다.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한다.

라.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 위원회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대로 회합⁴⁴한다.

5. 3년 후 또는 달리 합의한 대로, 위원회는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하고, 공동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 협의

6.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견해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국의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따라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을 자국 대중에 알리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각 위원회 회합의 종료시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제 16.8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국의 국가적 우선 순위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관련된 경우, 정부와 비정부단체(상업, 산업, 교육 및 연구 기관을 포함한다)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 사안에 대한 양자,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16-가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환경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제 16.9 조 협의

⁴⁴ 위원회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직접 대면으로 회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회합 장소는 양 당사국에서 교대로 한다.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출된 협의 요청의 접수를 한쪽 당사국이 인지한 때부터 30 일 이내에 개시된다.
3. 상호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18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 2 항에 따른 협의 기간을 결정한다.
4.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요청 후 90 일 이내에 회합한다. 접촉선은 위원회의 회합 전에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한다.
5. 심의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는 독립적인 한 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론 및 권고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를 이행한다.
8. 제 4 항에 따른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9.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6-가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양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잠재적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으며, 이 목록은 양자, 지역 또는 다자적 수준에서 추구될 수 있다.

- 가. 특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 나. 다자간 환경 협정과 국제 무역 규칙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 교환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 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
- 다.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교환
- 라.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및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마. 무역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개발
- 바. 환경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대중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의 증진,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상호 관심이 있는 환경에 관련된 그 밖의 영역

2. 무역과 관련된 환경 및 에너지 사안에 대한 양국 공통의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 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보급
- 나.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

다. 특히, 국제 에너지 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에너지 측면을 담당하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그리고

라. 자국 영역에서의 에너지 활동이 환경적 우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하는 모든 조치

3.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수단을, 적절한 경우, 장려하고 활성화한다.

가. 상호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나. 환경 전문가 및 관리 인력의 교류

다. 기술적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라. 워크숍 및 우수 관행의 교환,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결정한 협력의 그 밖의 모든 유형

4. 협력 활동의 확인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이후 첫 번째 절차로서 양국의 최초 우선 순위 목록을 교환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협력을 위한 잠재적 영역의 확인과 상호 결정한 협력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자국의 비정부 분야 및 그 밖의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장 투명성

제1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17.2조 공표

-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⁴⁵ 보장한다.
- 2.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17.3조 재심 및 불복 청구

-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⁴⁵ 인터넷 또는 인쇄된 형식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규정된 불복 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제1항에 언급된 결정이 이행되고, 그 결정이 그 부서 또는 당국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7.4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7.2조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해당 문제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 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를 것

제17.5조 통보 및 정보제공

1. 한쪽 당사국이 현행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 협정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에 달리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 현행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모든 현행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보, 요청, 정보 또는 답변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18.4조(접촉선)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전달된다.

4.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에 적절히 통보된 때에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가 제3항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보, 정보 또는 답변은 그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제18장 제도규정

제18.1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회합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은 그의 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8.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1.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그리고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2. 공동위원회는

- 가. 임시 또는 상설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임시 또는 상설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사안을 회부하거나 이들이 제기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다.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 마. 이 협정에 따른 이행 약정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바. 그 자신의 적절한 절차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 사.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자. 비정부 인 또는 집단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3조 공동위원회의 회의

1.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각 당사국이 순차적으로 의장을 맡는다. 공동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맡은 당사국은 회의의 모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3.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정한다.

제18.4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을 서로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제19장 분쟁해결

제19.1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협의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19.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9.6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피소 당사국이란 제19.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제19.3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는
- 나.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 2)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 3)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또는 불합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조치를 적용한 결과로, 제2장(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3장(정부조달)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제19.4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19.5조 해석규칙

1.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영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공법의 조약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해석된다는데 합의한다.
2.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은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19.6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제19.3조에 언급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모든 이견은 가능한 한 양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19.3조에 기술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를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요청에 답변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15일, 또는
 -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4. 각 당사국은,
-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성질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5. 협의는 비밀로 하며, 모든 추가 절차에서 어느 쪽 당사국의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9.7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9.8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으로 보내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또는
 -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 접수일부터 60일

2. 양 당사국은 협의 과정에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달리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 설치 요청은 다음을 적시한다.
 - 가. 문제가 되는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 조치
 - 나.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 그리고
 - 다. 제소의 사실적 근거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을 선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 가. 중재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 일 수 있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중재패널의 의장인 세 번째 중재인으로 임명하기 위한 최대 3인의 후보 명부를 제공한다.
 - 다. 양 당사국은 나호에 따라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세번째 중재인을 공동 합의로 임명한다.
 - 라.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에서 통상적인 주거를 가지지 아니하는 비당사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 마.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남아 있는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나호에 규정된 후보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5. 모든 중재인은,
 -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라. 어떠한 자격으로도 분쟁중인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마.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분인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수립된 중재인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6.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제4항에 따라 마지막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 중재인은 원래의 중재인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 중재인이 임명되는 동안 중단된다.

8. 제19.13조부터 제19.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재패널이 설치되는 경우,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 원래의 중재패널과 동일한 중재인을 둔다. 이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 중재인이 원래의 중재인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원래의 중재패널의 의장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19.9조 중재패널의 기능

1. 중재패널은,

가. 다음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 1) 사건의 사실관계
- 2)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 3) 이 협정에의 합치성, 그리고

나.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사와 판정을 한다.

2.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3.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재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근거와 함께 제19.11조제2항과 제

19.11조제3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 판정 및 적용가능한 경우 권고를 하며, 제 19.11조제2항과 제19.11조제7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이 장의 규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9.10조 절차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른다.

2.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이 장과 부속서 19-가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총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패널이 총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중재인이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과 관련되어 있는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양 당사국은 그렇게 취득된 모든 정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제19.11조 중재패널 보고서

1. 중재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재패널 설치일부터 45일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최초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실 조사결과

나. 다음에 대한 중재패널의 판정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 2)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19.3조나호3목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다. 중재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쟁점에 대한 패널의 판정, 그리고

라. 조사결과와 판정의 근거

3. 양 당사국의 공동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19.10조제4항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나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예외적인 경우, 중재패널이 제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정 기간과 함께 지연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8. 중재패널은 최종보고서에서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9.3조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판정에서 불합치 제거 또는 무효화나 침해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9.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비밀 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공문서로 공개한다.

제19.12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중재패널이 자신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중재패널은 재개된다. 중재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절차를 종료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중재패널의 의장에 게 통보한다.
3.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재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제19.13조 이행

1. 중재패널이 제19.11조제8항에 따라 조사결과와 판정을 내린 경우, 피소 당사국은 즉시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따른다. 즉시 따르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소 당사국은 조사결과와 판정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준수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양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된다.
2.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19.8조제8항에 따라 원래의 중재패널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고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에 따라 합리적 기간을 결정한다.
3. 중재패널은 제2항에 언급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19.8조제8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보고서는 합리적 기간과 판정의 근거에 관한 중재패널의 판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입장을 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회의를 소집하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제19.14조 합리적 기간 내 준수

1.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 기간의 종료 전에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합리적 기간 내에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제 19.8조제8항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래의 중재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3. 제2항에 언급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추정기간과 함께 지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9.15조 불이행의 경우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합리적 기간의 만료 이전에 피소 당사국이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제19.1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이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제19.14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이 협정상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소 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보상 조정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청의 접수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접수로부터 30일 후 그러한 혜택 정지를 시작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항에서 발생하는 혜택의 정지 권한은 중재패널이 제4항에 따라 설치되었고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할 야기한다고 판정한 조치나 그 밖의 사안에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한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은 동일한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알리는 통지에는 그 결정이 근거한 사유를 적시한다.

4.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반대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를 통하여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사안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의 중재패널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소집한다.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와 판정을 포함한 단일의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에 따라 혜택의 정지 수준을 수정한다.

6. 이 조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권리가 행사된 경우,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면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를 통하여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의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는 동안 제소 당사국은 혜택의 정지를 계속할 수 있다.

7. 보상과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다.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의 정지도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의 완전한 준수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보상과 혜택의 정지는, 이 협정상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철회되거나 이 협정과 합치하도록 개정되거나, 또는 양 당사국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달리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제19.16조 검토

1. 양 당사국이 제19.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 합치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요청된 중재패널에 회부되어 결정된다.

2. 그러한 요청은 다음 중 이른 시기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가. 합리적 기간의 만료일, 또는

나. 제19.13조의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피소 당사국의 제소 당사국에 대한 통보의 접수일

3.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사안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의 중재패널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4. 이 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소집한다.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러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추정기간과 함께 지연에 대한 사유를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지연은 15일의 추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피소 당사국이 제19.13조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19.15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모든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제19.17조 비용

사안의 특정한 정황을 이유로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패널의 의장의 비용과 중재패널 절차의 수행에 수반되는 그 밖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1. 이 규칙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이해된다.

통보

2. 모든 서면 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또는 전자 전송 또는 발송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에 의하여 전달된다.

3. 각 당사국은 모든 서면 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포함하여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 통지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제공한다. 서면 통지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4.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 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5. 문서 전달 마감일이 당사국의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중재의 개시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 기준을 따르는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회합은 직접 대면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컴퓨터 연결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에 의하더라도 수행될 수 있다.

일정표

7.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15일 이내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8. 중재패널 절차의 일정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각각의 입장을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 입장제출을 위하여 정확한 마감기한을 정하고, 양 당사국은 그 기한을 존중한다. 서면 입장에서 양 당사국은 사안의 사실과 자국의 주장을 기술한다.

9.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중재패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운영

10. 중재패널의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으로든지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위원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12. 모든 결정과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의 배타적 책임으로 유지된다.

13. 이 규칙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4.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중재패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보조인 또는 지정된 기록원을 보유할 수 있다.

15. 중재패널의 심의는 기밀이다. 중재패널의 위원 및 제14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보유한 사람은 중재패널절차 및 심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심리

16. 의장은 양 당사국과 중재패널의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⁴⁶ 의장은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사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심리를 소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7.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피소 당사국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18.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추가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19.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에 임석한다.⁴⁷

⁴⁶ 제19.8조제8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원래의 중재패널 의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⁴⁷ 제19.8조제8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원래의 중재패널 의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 심리일 5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심리에 참석할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중재패널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또한 심리 일시 및 장소를 공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패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한 사유로 결정하는 경우, 심리는 부분적으로 비공개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특히,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상업적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로 개최된다.

22. 각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재패널에 의하여 수행된다.

23.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쪽 당사국에게든 직접 질의할 수 있다.

24. 각 당사국은 제7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정하는 심리 이후 특정 시일 내에 그들의 구두 진술의 서면본을 중재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서면질의

25.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절차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한쪽 당사국에게만 질의하는 경우에는,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질의의 사본을 제공한다.

26. 중재패널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은 한쪽 당사국은 제7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설정한 일정표에 따라 서면 답변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과 중재패널에게 전달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비밀유지

27. 제21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심리를 비공개 회의로 개최하는 한도에서,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심리를 비밀로 유지한다.

28. 각 당사국은,

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9.10조에 의한 중재패널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29.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심리 후 15일 이내에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본을 또한 제공한다.

30. 이 규칙의 어떠한 사항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의사전달 금지

3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3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중재인과도 접촉하지 아니한다.

33. 어떠한 중재인도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중재패널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지 아니한다.

외부조언자 입장

34.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영역 내의 인 및 단체와 양 당사국 영역 외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단체로부터 외부조언자 입장을 수락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35. 그러한 모든 입장은,

가. 중재패널 설치 후 특정 일수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러한 일수는 제7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정한다.

나.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중재패널이 검토중인 사실적 및 법적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36. 그 입장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중재패널 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37.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한 모든 외부조언자 입장의 사본을 양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자신이 접수한 위 규칙의 규정에 합치하는 모든 외부조언자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이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기간 계산

38. 특정 날짜 또는 사건 전, 후 또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이 장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어떤 사안이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중재패널이 어떤 사안의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일자는 그 일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9.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하는 날과 다른 날에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초로 계산되는 모든 기간은 그 문서가 접수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제20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20.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11장(지식재산권) 및 제14장(농림수산업협력)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 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8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및 제10장(투자)의 목적상, GATS 제14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국가적 작품 또는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데 필요하거나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적 가치를 가진 창작 예술⁴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0.2조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는 것

⁴⁸ “창작 예술”은 공연예술(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한다),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및 비디오, 언어 예술,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토착적 전통 관습 및 현대적 문화 표현물, 디지털 양방향 매체, 그리고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혼성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예술의 발표, 수행 및 해석에 수반된 활동과 이러한 예술 형태 및 활동의 기술적 진보와 연구를 포괄한다.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과 재료에서의 그러한 거래와 관련되거나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되는 조치
- 2)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 3)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제20.3조 국제 수지 보호 조치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와 대외 재정상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 정책 또는 환율 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상품 무역의 경우에는, 1994년도 GATT 및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수입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체적 약속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또는

다.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로부터의 수익의 송금에 관련된 지급에 관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은,

가.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 마.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당사국과 사전에 조율할 것이다. 그리고
 - 바.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은 모든 비당사국에 비해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경제적 발전에 더욱 필수적인 경제적 영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특정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제한 또는 제한의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5.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제20.4조 건전성 조치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를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20.5조 과세 예외

-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가. 제2.3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나. 제2.12조(수출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 제8.4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 또는 투자나 재산의 가치⁴⁹(다만, 그 투자나 재산의 이전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⁵⁰

라.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최혜국 대우), 제10.5조(내국민 대우) 및 제10.6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 투자나 재산의 가치⁵¹(다만, 그 투자나 재산의 이전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유산취득, 증여 및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조세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 언급된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나.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다.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라. 개정 시점에서 그 개정이 위의 조들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대한 개정

마. 거주지 또는 설립지에 기반하여 인들을 구별하는 과세조치를 포함하여,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⁴⁹ 이는 양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투자나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⁵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이 호의 적용대상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 호에 언급된 조세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이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⁵¹ 이는 양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투자나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는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다만, 그 과세조치가 양 당사국의 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⁵² 또는

바. 연금신탁, 퇴직기금, 또는 연금, 퇴직연금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러한 신탁, 기금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 규제 또는 감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4. 제2항가호 및 나호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제10.11조제2항부터 제10.11조제4항까지의 규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10.9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0.9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0.9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제10.20조(중재청구 제기)에 따라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것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0.20조(중재청구 제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6.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목적상,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양 당사국 간에 시행 중인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을 말한다.

8.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9.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10. 이 조의 목적상,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1.5조(정의)에 규정된 관세

나. 제1.5조(정의)에서 관세의 정의의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모든 조치, 또는

⁵² 양 당사국은 이 항이 GATS 제14조라호가 서비스 또는 직접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GATS 제14조라호의 주석을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양해한다.

다. 수입관세

제20.6조 와이탕이 조약

1. 그러한 조치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마오리족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뉴질랜드가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9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달리 적용된다. 제19.8조(중재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와 불합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한국에 의하여 요청받을 수 있다.

제20.7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금융기관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
- 다. 법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 또는
- 라.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20.8조 비밀유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보를 받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사법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공개나 이용이 정보를 받는 당사국의 국내 법적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장 최종규정

제21.1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2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21.3조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전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1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전달일부터 18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은 종료된다.

제21.4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통합되거나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21.5조
가입**

이 협정은 양 당사국 간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그 밖의 국가나 개별 관세 영역이 가입하거나 연합할 수 있다.

**제21.6조
정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한국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 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8.8조제1항가호 및 제10.15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⁵³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⁵⁴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⁵³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⁵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8.8조제1항 및 제10.15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8.8조제1항가호 및 제10.15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8조제1항다호 및 제10.15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7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0.5조(내국민 대우), 제10.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11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2012호,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4616호, 2013.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0호, 2013.6.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 1)(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1919호, 2013.7.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 조의2(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 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 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1929호, 2013.7.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 · 정비 · 해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정검사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업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4519호, 2013.4.2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법률 제11873호, 2013.6.7) 주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68호, 2012.10.1)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5호, 2013.4.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가.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또는 나.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1860호,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4.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한다.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업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4.18)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2107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총리령 제1016호,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508호, 2012.10.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1010호, 2013.3.23)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2390호, 2014.1.2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24800호, 2013.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6조(별표14)(총리령 제1041호, 2013.10.2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985호, 2013.7.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11984호, 2013.7.30)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할 수 없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8.6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2025호, 2013.8.6)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2023호, 2013.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 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 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1647호, 2013.3.2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2092호, 2013.8.13)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도선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1756호, 2013.4.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 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선 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 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 및 제135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u>투자</u>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는 해당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항공기 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강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별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 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2045호, 2013.8.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306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1933호,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제41조의2(국토교통부령 제19호, 2013.7.1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 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 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사업을 인수한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 (법률 제12035호, 2013.8.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기간공중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공중통신서비스를 위 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한다. 기간공중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 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 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 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 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이나 규정상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채(제8.7조)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률 제12634호, 2014.5.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115호, 2014.7.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23919호, 2012.6.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 · 리스 · 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2107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총리령 제1016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 리스 ·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2091호, 2013.8.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0524호, 2011.4.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1825호, 2013.5.28)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8920호, 2008.3.21)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1823호, 2013.5.2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10321호, 2010.5.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노무 자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11962호, 2013.7.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오직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 (법률 제10866호, 2011.7.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39호, 2014.10.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3.1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10570호, 2011.4.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중개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 11882호,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 의2 및 제19조의3(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 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86호, 2013.8.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 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구재(제8.7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법률 제12299호, 2014.1.21)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1928호, 2013.7.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제60조(법률 제11998호, 2013.8.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7조(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5.2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법률 제11943호, 2013.7.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 11690호, 2013.3.23)

온천법 제7조(법률 제11896호, 2013.7.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가, 건축전문가로 등록하고 건축사무소를 설치한 한국 건축사 자격자와 공동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2093호, 2013.8.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668호, 2013.3.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853호, 2012.6.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64호, 2012.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3년 10월 29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

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 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업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분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11048호, 2011.9.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2012.7.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업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12036호, 2013.8.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4847호, 2013.11.20)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11622호, 2013.1.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24665호, 2013.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절반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및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법률 제11770호, 2013.5.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채(제8.7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24628호, 2013.6.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57호, 2012.6.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수의사법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11354호, 2012.2.22) 민법 제32조(법률 제11728호, 2013.4.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내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사무소를 설치한 면허 받은 수의사만이 수의 또는 수생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 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7조)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률 제11915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 제11713호, 2013.3.2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1464호, 2012.6.1)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1803호, 2013.5.22)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11750호, 2013.4.5)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1965호, 2013.7.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4543호, 2013.5.2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799호, 2013.10.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도록 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 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24183호, 2012.11.20)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한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0.11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022호, 2013.3.23)
유보내용	<u>투자</u>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장이 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의 국민이 아닌 인이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 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 현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뉴질랜드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정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1641호, 2013.3.22)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종자산업법 제42조(법률 제11704호, 2013.3.23)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2059호, 2013.8.1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호, 2013.5.1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4조(내국민 대우) 및 제
8.6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48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법률 제12093호, 2013.8.13)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12093호, 2013.8.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한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음

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한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가. 영화: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나. 애니메이션: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그러나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국내 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60퍼센트 이하가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보도·오락·드라마·영화·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해당 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

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용량을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⁵⁵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02호, 2013.5.27) 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0호, 2013.12.4)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전력공사(KEPCO)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DHS)용 열병합발전(GHP)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⁵⁵ 부속서 I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⁵⁶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 11845호, 2013.5.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13.8.9)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KOGAS) 지분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⁵⁶ 부속서 I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주해

1. 이 부속서의 뉴질랜드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뉴질랜드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6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2.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3. 뉴질랜드 유보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다. 조치는 유보된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유보항목이 적용되는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4.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유보항목 해석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전체적으로 고려된다.

뉴질랜드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조치 1993년 회사법
1993년 재무보고법

유보내용 투자

회사법 및 재무보고법에 따라 수립된 뉴질랜드의 재무보고 제도와 합치되게, 다음의 해외 비상장 회사는 기업등록소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되고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

나.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대기업으로서, 의결권의 25퍼센트 이상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행사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지분이 다음에 의하여 보유되는 모든 대기업

1)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자회사 또는 법인

2)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법인, 또는

3) 뉴질랜드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인

다.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자회사 또는 법인인 모든 회사

다음의 기준 중 최소한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대기업으로 본다.

가.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 자산이 1천만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

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 매출액이 2천만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 또는

다.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규직에 상당하는 피

고용인이 50인 이상

해외 회사가 이미 기업등록소에 감사받은 기업집단 재무제표를 제출한 뉴질랜드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최혜국 대우(제8.5조)
조치	1953년 특허법 S.100(2)(a)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특허 변호사의 등록은 1953년 특허법 S.100(2)(a)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영국국민 또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제한된다.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2001년 낙농업 구조개혁법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2001년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 및 규정은 가축개량회사(LIC)가 주식회사화되거나 그 밖의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가 그 회사가 보유하는 관리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축개량회사(LIC)가 청산되거나 뉴질랜드의 회사명부에서 삭제되는 경우, 또는 뉴질랜드 정부가 상기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받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다른 낙농 회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과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국적과 거주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은 가축개량회사(LIC)에 정보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젓소 검사에 관련되는 정보에 적용된다.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은 또한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에의 접근이 뉴질랜드 낙농업에 유익하지 아니하거나 해로운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며, 국적 또는 거주지 사항 및 정보의 이용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 조건들은 정보의 이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낙농업 구조개혁법(DIRA)은 가축개량회사(LIC)의 지분을 보유할 수있는 인을 제한하며, 이 제도는 담당 장관의 동의 없이는 개정될 수 없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코러스 유한회사 정관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코러스 유한회사 정관은 단일 해외 실체가 49.9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뉴질랜드 정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이사의 최소 절반은 뉴질랜드 시민일 것이 요구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조치	1989년 무선통신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1989년 무선통신법상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를 위한 대리인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을 위한 인가나 관리권의 취득, 또는 그러한 인가나 관리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기업혁신고용부의 최고 행정관의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농업 및 농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상, 뉴질랜드 정부는 양봉, 과수재배, 홉 재배, 사슴 사육 또는 사슴 사냥으로부터 얻은 생산물, 또는 염소의 생산물, 즉 염소의 털이나 섬유(이하 “일차생산물” 이라 한다)의 생산자가 일차생산물의 판매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은 독점판매 및 취득권한(또는 그 이하의 권한)을 보유한 법정 판매당국의 설립, 그리고 다음과 같은 측면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의 제공을 규정한다.

- 가. 판매당국의 기능, 권한, 임명, 구성원 및 해체
- 나. 판매당국의 사안 관리
- 다. 판매당국에 의한 일차생산물의 취득 및 그렇게 취득한 일차생산물의 가격책정과 지불방식과 관련된 사안
- 라. 일차생산물의 생산, 유통, 허가 및 판매와 관련된 사안
- 마. 일차생산물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과 관련된 사안
- 바. 판매당국의 목적상 요구되는 정보의 취득
- 사.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과 관련된 위반행위 및 처벌에 대한 규정

분야	항공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1990년 민간항공법 장관 지침
유보내용	<u>투자</u>

면허를 받은 항공운송기업만이 뉴질랜드의 국제 항공사로서 정기 국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항공운송기업만이 뉴질랜드 내에서 외국 국제 항공사로서 연안운송을 포함한 국제 정기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부 장관 또는 차관 중 어느 한쪽이 국제 항공 서비스 면허의 발급을 결정한다. 비정기 항공 운송 서비스는 적절한 면허 또는 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지침에 따른 교통부 차관의 승인 중 어느 하나가 요구된다. 그러한 결정은 뉴질랜드의 양자 및 다자 간 항공 서비스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면허는 항공사가 뉴질랜드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거나, 뉴질랜드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분야	항공 운송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조치	2009년 뉴질랜드 항공 정관
유보내용	<u>투자</u> 뉴질랜드 정부의 허가가 없는 한, 외국 국민은 뉴질랜드 항공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가.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 또는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과 ‘관련된’ 어떠한 인도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서면 동의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뉴질랜드 항공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가질 수 없다. 나. 뉴질랜드 항공의 본점과 주 사업장은 뉴질랜드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에서 최소 3인은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 의 과반수는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마. 이사회 의장은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 뉴질랜드 항공은 뉴질랜드 내에서의 설립 및 등록이 지속되어야 한다.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한국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 의무는 제8.8조제2항 및 제10.15조제2항에 따라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8.8조제2항 및 제10.15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투자

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2012)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3)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신속히 뉴질랜드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3)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려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10.18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 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10장(투자)의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한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

인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0장(투자) 제2절이 준용되며, 제10장(투자) 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0장(투자) 제2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10장(투자) 제1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1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7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의 부속서 I 및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의 신주 발행 주식이 아닌 기발행 주식을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규정)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방위사업법 제35조(법률 제11713호, 2013.3.2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 취득이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법률 제11690호, 2013.3.23)

농지법 제6조(법률 제11694호, 2013.3.23)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공익사업, 대중교통, 공공주택, 보건 및 보육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
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
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
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
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
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
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
고, 한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 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 사항
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
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그 부
록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
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와 관련한 어떠한 제
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8.8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8.7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 라. 통신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10.11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비료에 대한 도매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다음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외국인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 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 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 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우편 서비스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다.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병역법(법률 제11849호, 2013.6.4)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8조 및 제78조의2(법률 제12093호, 2013.8.13) 방송법 시행령 제14조,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의3(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 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업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 또는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0조 (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 2012.8.1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17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적용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서비스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신문 발행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 2011.7.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분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관광진흥법 제5조, 제21조 및 제28조(법률 제12406호, 2014.3.1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법률 제12154호, 2014.1.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법률 제12348호, 2014.1.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대통령령 제25511호, 2014.7.28)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22조 및 제48조(법률 제12437호, 2014.3.1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 및 제22조(법률 제12434호, 2014.3.18) 경륜·경정법 제4조, 제19조 및 제24조(법률 제12688호, 2014.5.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법률 제11998호, 2013.8.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뉴질랜드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뉴질랜드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 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뉴질랜드 법무회사(로펌)란 뉴질랜드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사가 뉴질랜드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포함하여 회계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39호, 2014.10.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3.14)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현지주재(제8.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원자력 진흥법(법률 제11714호, 2013.3.23) 대외무역법(법률 제11873호, 2013.6.7)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9호, 2013.5.31)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제10.2조(정의)의 “투자” 정의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되며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또는
-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책임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0.2조(안보 예외)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뉴질랜드

주해

1. 이 부속서의 뉴질랜드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6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2.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3. 뉴질랜드 유보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비합치 조치의 성격 또는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포함된다. 이에 규정된 조치는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4.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유보항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가 우선한다.

뉴질랜드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공공의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다음의 사항 1) 보육 2) 보건 3) 소득 보장 및 보험 4) 공교육 5) 공공주택 6) 공공훈련 7) 대중교통 8) 공익사업 9) 사회 보장 및 보험, 또는 10) 사회 복지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식수의 배분, 수집, 처리 및 유통을 포함하여, 물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병에 담긴 광수, 탄산수와 천연수의 도매 및 소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시점에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이양 행위의 일부로서만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
- 나. 뉴질랜드 정부가 전부 또는 과반을 소유하는 기업이 유일한 서비스 공급자가 되거나 한정된 수의 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
- 다. 고위경영진 및 이사의 구성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
- 라. 현지주재를 요구하는 것, 또는
- 마. 서비스 공급자(들)의 법적 형태를 명시하는 것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을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인에 대한 그 기업의 지분 또는 그 기업의 자산 판매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뉴질랜드는 GATS상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62, GATS/SC/62 Suppl.1, GATS/SC/62/Suppl.2)에 규정된대로 GATS의 제16조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⁵⁷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규정된 대로 수정된다.

⁵⁷ 이는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의 규정이 부속서 I의 뉴질랜드 유보목록의 시장접근유보항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투자

뉴질랜드는 자국의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다음의 투자 행위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뉴질랜드 기관 내 25퍼센트 이상의 어떤 유형의 지분⁵⁸ 또는 의결권⁵⁹의 취득 또는 지배로서, 이전 비용 또는 자산가치가 5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나. 뉴질랜드 내에서 사업운영의 개시 또는 사업자산을 포함한 기존 사업의 인수로서, 그 사업 또는 자산의 개시 또는 인수에 수반되는 총 비용이 5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다. 달러가치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해외투자 법률에 따라 민감하다고 간주되거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일정 유형의 토지의 취득 또는 지배, 그리고
- 라. 달러가치에 관계없이, 상업적 어획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을 보유하는 뉴질랜드 기관 내 25퍼센트 이상의 어떤 유형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취득, 또는 상업적 어획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의 취득

뉴질랜드는 자국의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승인 기준을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⁵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이라는 용어는 지분 및 그 밖의 유형의 증권을 포함한다.

⁵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결권’은 뉴질랜드 기관 이사회 구성의 25퍼센트 이상에 대한 지배권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2005년 해외투자법

1996년 어업법

2005년 해외투자규정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자유화에 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이는 경제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그러한 협정 당사자들 간에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상 사안

분야	모든 분야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의 통제,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토지 자원, 토지 또는 수원의 지분을 포함하여 유적지 관리 목적(역사적 그리고 자연 유적지), 공공 문화시설, 그리고 경관 보존을 위하여 조성된 보호 구역, 또는 나. 법령 하에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 하에서 보호되는 생물종
기존의 조치	1987년 보존법 및 다음에 열거된 법령: 가. 1987년 보존법의 제1양허표 나. 1991년 자원관리법, 그리고 다. 1974년 지방정부법 및 이후의 개정사항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련된 어떠한 국적 또는 거주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동물 복지, 또는 나.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식물, 동물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존 1) 국내 및 수출 식품의 식품안전성 2) 동물사료 3) 식품기준 4) 차단 방역 5) 생물다양성, 또는 6) 식물 또는 동물 상품의 건강 상태의 증명 이 유보의 어떠한 내용도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의무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의 어떠한 내용도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의무 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해안 및 해저, 국제법에 정의된 내수(그러한 내수의 하상, 하층토 및 경계를 포함한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해상 할양을 포함하여 대륙붕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 하에서 취하여지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91년 자원관리법 2011년 해양 및 연안지역(타쿠타이 모아나)법 1964년 대륙붕법 1991년 국유 천연자원법 2012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환경영향)법

분야	사업 서비스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대중에 대한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소방 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항공화재진압 서비스를 제외한 소방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75년 소방서비스법 1977년 산림 및 농촌지역 소방서비스법

분야	사업 서비스 연구 및 개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국립연구소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 및 개발 서비스로서 그러한 연구가 공공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또는 나. 물리과학, 화학, 생물학, 공학 및 기술, 농업 과학, 의학, 약학 그리고 그 밖의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분야	사업 서비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나. 기술적 진단 서비스 다. 그 밖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라.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서비스, 또는 마. 약물 검사 서비스

분야	사업 서비스 수산업 및 양식업 수산업 및 양식업 관련 서비스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어류육상반입, 해상에서 가공되는 어류의 최초 육상반입, 그리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뉴질랜드 항구예의 접근(항구 특권)을 포함하여, 외국의 어업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1996년 어업법 및 2004년 양식개혁법에 포함된 기존 조치의 예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해외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은 수산업부 책임자의 허가 없이, 그리고 책임자가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요건을 조건으로, 상업적 어업행위 또는 어류 수송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외국 어선 또는 어류 수송선은 뉴질랜드 내수 또는 항구에 진입하기 전에 책임자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그 선박이 국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자는 그 선박의 뉴질랜드의 내수 진입을 위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다. 해외의 인이 임시 어획 경력, 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을 배분받을 수 있거나,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기 전에 장관 승인이 요구된다. 라. 1996년 「어업법」 S.296B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명시된 기능, 의무, 또는 권한은

명시적인 기준과 부합하는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만 이전될 수 있다.

- 마. 외국 연구선은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류, 해조류 또는 수중 생물을 어획하기 위하여 수산업부 장관의 허가가 요구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에너지 제조업 도매 거래 소매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설정을 포함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이용, 유통 또는 소매를 금지, 규제, 관리 또는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광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광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이민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와 관련된 이민 사안 관련 이민 자문을 인에게 제공하는 자연인에 관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면허 요건 및 그러한 요건의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뉴질랜드가 정보 공유 또는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 내 뉴질랜드의 면허 요건의 집행과 관련된 상호 협정에 가입하는 한도에서, 최혜국 대우 의무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이 유보는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우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우편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및 그 밖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공동제작 약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특혜적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그러한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1978년 「뉴질랜드 영화위원회법」 S.18은 뉴질랜드 영화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뉴질랜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영화로 한정한다. 이 기준은 해당 상대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제작된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및 그 밖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내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의 진흥그리고 공중 라디오 및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에서의 지역 콘텐츠 진흥과 관련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 하에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2001년 낙농구조조정법(DIRA) 7(1)(a)절 에 의하여 승인된 합병으로 생긴 협동 낙농 회사(또는 승계기관)의 지분 보유, 또는 나. 그 회사 또는 승계기관의 자산의 처분
기존의 조치	2001년 낙농구조조정법 및 이후의 규정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호주 외의 모든 시장에서 신선 키위의 수출 마케팅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99년 키위산업구조조정법 및 규정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관세할당, 국가별 특혜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가 시행 중인 시장에 대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분류 내에 해당하는 수출품의 유통 권한에 대한 정부보증 배분제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건의 명시, 또는 나. 그러한 배분제의 수립 또는 운영에 따른 도매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유통 권한의 배분 이 유보는 농업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별 세번의 상품과 관련된 도매 및 유통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하는 효과를 의도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에 명시된 서비스 분야가 관세할당, 국가별 특혜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일부인 한도에서 투자에 대하여 이 유보항목이 적용된다.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관련 산업 내에서 의무 공동 판매계획이 채택 또는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지가 있는 경우, 뉴질랜드는 다음에서 파생되는 상품의 수출 판매를 위한 의무 판매계획(“수출 판매전략” 이라고도 한다)의 수립 또는 이행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농업
- 나. 양봉
- 다. 원예
- 라. 수목재배
- 마. 경작농업, 또는
- 바. 가축업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이 유보의 맥락에서, 의무 판매계획은 시장 참여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수출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기존의 조치	1987년 뉴질랜드 원예수출기관법

분야	교육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교육 용어 및 명칭의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용어는 1989년 교육법 S.29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학”, “교육대학”, “기술전문대학” 및 “기술기관”을 포함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입양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모든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관련 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민간 분야에 의하여 제공되는 한도에서, 뉴질랜드는 다음의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병원 서비스, 또는 나. 출산 서비스 및 조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

분야	오락, 문화 및 스포츠(시청각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도박, 베팅 및 매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003년 도박법 및 규정 2003년 매춘개혁법 2003년 경주법 2004년 경주(피해 예방 및 최소화) 규정 2009년 경주(뉴질랜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협회) 규율

분야	오락, 문화 및 스포츠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국가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민족학적, 고고 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화재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 관, 기록보관소 및 그 밖의 문화유산수집기 관이 문서화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집품 을 포함한다. 나. 공공 기록보관소 다. 도서관 및 박물관 서비스, 또는 라. 역사 또는 종교 유적지, 또는 역사적 건축물 의 보존에 관한 서비스

분야

운송
해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뉴질랜드에 위치한 항구와 뉴질랜드에 위치한 다른 항구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의 해상 운송, 그리고 뉴질랜드 내 동일한 항구 내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운송(해상 “연안운송”)
- 나. 일정 항구 서비스(도선, 예항 및 예인 보조, 연료공급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항만장의 서비스, 항행원조, 비상보수시설, 정박, 통신·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하여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그 밖의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의 제공. 그러나 국제 해상운송 공급자에 대하여 상기의 항구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뉴질랜드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 라. 뉴질랜드에서의 선박 등록, 또는
- 마. 선원 규제 및 자연인의 주재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선원의 뉴질랜드 입국

분야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뉴질랜드는 담배 제품 및 주류의 도소매업 서비스에 대하여, 공중 보건 또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가

한국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u>분야/하위분야</u>	<u>시장접근 개선사항</u>
<u>연구 및 개발 서비스</u>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u>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u>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u>광업 부수 서비스</u>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u>포장서비스</u>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u>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u>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는 제외한다) 여행 대행 서비스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뉴질랜드

이 부속서 II-61쪽 뉴질랜드 유보항목의 목적상, GATS상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62, GATS/SC/62 Suppl.1, GATS/SC/62/Suppl.2)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다음의 분야에서 개선된다.

<u>분야/하위분야</u>	<u>시장접근 개선사항</u>
<u>전문직 서비스</u>	
가.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u>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가.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 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CPC 845)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u>그 밖의 사업 서비스</u>	
가. 사진 서비스(CPC 875)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복제 서비스(CPC 87904)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는 명시된 서비스가 CPC번호가 적용되는 전체 활동범위의 일부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양 당사국” 이라 한다)는,

시청각물 분야에서 두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확대하며,

양 당사국의 시청각 산업 및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청각물 공동제작의 확대와 촉진을 희망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류가 양 당사국 간 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란 권한있는 당국이 공동으로 승인한 사업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공동제작자와의 협력으로 만든 시청각물을 말하며, 제5조가 적용되는 시청각물을 포함한다.

시청각물이란 매체물에 구현된 영상의 집합, 또는 영상 및 음성의 집합을 말하며, 영화, 텔레비전 및 비디오 녹화물,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형식의 제작물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부록에서 각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을 말한다.

공동제작자란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하나 이상의 한국 국민 또는 시청각 제작 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뉴질랜드 국민 또는 시청각 제작 회사, 또는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그 비당사국의 공동제작자를 말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 또는 그 승계법률의 의미 내에서의 한국 국민 또는 한국 영주권자,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 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그리고

2008년 협정이란 2008년 9월 29일 웰링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제 2 조 국내 시청각물로서의 인정 및 혜택의 부여

1. 이 부속서에 따라 제작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현재 발효중이거나 향후 발효될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되거나 부여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완전한 자격을 가진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1항에 언급된 국내 법과 규정, 그리고 제1항에 언급된 혜택에 관한 세부사항의 사본을 제공한다.
3.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내에서 부여될 수 있는 모든 혜택은, 그 밖의 모든 관련 국제 의무를 조건으로, 그 당사국의 관련 조치에 따라 그러한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 공동제작자에게 부여된다.

제 3 조 사업의 승인

1. 이 부속서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공동 승인이 요구된다.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어떠한 공동제작자도 공동 경영, 소유 또는 지배 관계가 없어야 하나,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 자체에 내재한 한도에서는 예외로 한다.
2. 승인 절차는 신청시 그리고 촬영 착수 전에 이루어지는 승인, 그리고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완성 후 이의 배급 전에 이루어지는 검토로 구성된다.
3. 그러한 승인의 신청은 부록에 규정된 요건들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에 합치한다. 신청을 고려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은 이 부속서 및 부록에 합치되는 한도에서 각국의 정책 및 지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법과 규정상 가능한 한도에서 시청각 공동제작 승인 신청의 승인, 거부,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제 4 조 기여도

1. 각 시청각 공동제작에 있어서 다음은 각국의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한다.

가. 공동제작자의 실연, 기술, 기능 및 창의적 참여도, 그리고

나. 각 공동제작자 국가에서의 제작비 지출

2. 시청각물 공동제작자 각각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의 약정으로 결정된다. 방송 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외의 공동제작에 있어서 이 기여도는 시청각물의 최종 제작비용의 20에서 80퍼센트 사이가 된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 기여도는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이 된다.

제 5 조 비당사국과의 공동제작

1. 어느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유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비당사국의 공동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부속서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공동 승인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승인은 비당사국 공동제작자의 기여도가 한국과 뉴질랜드 공동제작자의 개별 기여도 중 적은 기여도 이하인 제안으로 한정된다. 이에 더하여, 비당사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도 모두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한다.

3. 모든 비당사국 공동제작자는 비당사국과 어느 한쪽 당사국 간에 시행 중인 공동제작 협정의 조건에 따라 시청각물의 제작을 위하여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제 6 조 참여

1.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인은 한국 및 뉴질랜드의 공동제작자, 또는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당사국의 공동제작자이다.

2.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 가. 대본 또는 재정이 요구하는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제한된 수의 실연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예외적인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제한된 수의 기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작

1.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또는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촬영되고 후반 제작된다.
2.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포함된 촬영장면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시청각물을 위하여 특별히 촬영되거나 창작된다.

제 8 조 현지 촬영

1. 권한 있는 당국은 참여 중인 공동제작자의 장소, 국가 또는 촬영지 외의 장소, 국가 또는 촬영지에서의 현지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2.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라 현지 촬영이 승인되는 경우, 현지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의 시민은 군중 예술가, 단역 또는 현지 촬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추가 피고용인으로서 고용될 수 있다.

제 9 조 언어

1. 각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한국 또는 뉴질랜드 중 어느 한쪽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또는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비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또는 위의 허용된 언어의 조합으로 제작된다.
2. 공동제작자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 밖의 모든 언어 또는 방언으로 된 나레이션, 더빙 또는 자막 처리는 허용된다.
3. 개봉 후 영화를 그 밖의 모든 다른 언어로 더빙하는 것은 참여하는 공동제작자의 영역 외의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4. 대본에서 요구되는 한, 각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어떠한 언어로 된 대화 일부도 포함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말 및 크레딧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이와 관련된 홍보물은 그 시청각물이 “대한민국-뉴질랜드 공식 공동제작” 또는 “뉴질랜드-대한민국 공식 공동제작”임을 명시하는 크레딧 타이틀이나, 적절한 경우, 한국, 뉴질랜드 및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의 참여를 나타내는 크레딧 중 하나를 포함한다.

제 11 조 입국 원활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제작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한국 또는 뉴질랜드로 입국 및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제 12 조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률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을 위한 기술 장비의 일시적 반입을 수입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허용한다.

제 13 조 배급

양 당사국은 국제 시장에서 시청각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국제 배급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4 조 기술 협력

양 당사국은 컴퓨터 그래픽, 가상 현실 및 디지털 영화 기술과 같은 시청각물 및 관련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 협력 활동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제도적 장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절한 부처와 기관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제 16 조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요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안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주선, 조정, 중개 또는 비구속적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위원회는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3. 제19장(분쟁해결)은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 또는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부속서 및 부록의 지위**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그러나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투자), 제19장(분쟁해결) 및 제20장(일반 규정 및 예외)은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부속서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부속서가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우선한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의 모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부속서의 부록은 이 부속서에 관한 이행 약정을 구성하며, 이 부속서의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된다.

4. 이 부속서의 제19.2조를 조건으로, 부록의 모든 수정은 임시 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부록의 어떠한 수정도 이 부속서의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한다.

5. 부록의 수정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확인되며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제 18 조 **부속서의 발효 및 2008년 협정의 종료**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
2. 2008년 협정은 이 부속서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3. 2008년 협정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협정은 2008년 협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그 종료 이전에 완성되지 아니한 모든 공동제작 영화에 대하여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9 조 **개정**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 간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한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공한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공한을 통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변경은 공한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제 20 조 **존속 및 종료**

1. 이 부속서의 기간은 발효일부터 3년 동안이며, 그 이후에는 추가 3년의 기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해당 3년의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부속서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부속서는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료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그 종료 이전에 완성되지 아니한 모든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1.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도록 의도된 시청각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

2. 부속서의 규정들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자는 촬영을 개시하기 전에 공동제작물 지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에 기재된 문서를 첨부할 것이다.

가. 작품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저작권의 소유에 관한 서류 사본

나. 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시놉시스

다. 관련된 각국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도 목록

라.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에 대한 주요 촬영 기간 및 장소를 기술한 주간 단위의 작업 계획

마.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예산

바. 제작 일정

사.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도, 재정적 기여도 및 공동제작자 간 시장 및 이윤 배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안을 명시하는 제작자 간에 체결한 공동제작 계약서, 그리고

아. 사업의 기술적 및 재정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